

2009 예산정책보고서 제9호

BUDGET AND POLICY

2010년도 예산안 분야별 세출현안 검토

2009. 12

2009 예산정책보고서 제9호

2010년도 예산안 분야별 세출현안 검토

2009. 12

이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의거 작성되었으며,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발 간 사

2010년도 재정운용은 경제활력과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며,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가 당초의 우려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대내외 경제 여건에 불확실성이 남아 있으므로, 2010년에도 경제안정과 성장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세수여건 악화와 복지지출 등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재정 소요를 고려할 때,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과제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그동안 축적된 사례와 경험을 토대로 지난 10월에 「예산안 분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하여 11월 초에 「2010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분야별·기능별 접근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2010년도 예산안 분야별 세출현안 검토」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기 발간된 「2010년도 예산안 분석」과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을 토대로 하였으며,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검토보고서 등을 반영하여 주요 세출사업의 현안을 정리하였습니다.

제1부 「분야별 자원배분 추이와 계획」에는 분야별 자원배분의 과거 5년간 추이와 향후 5년간 계획을 수록하고, 자원배분체계를 연도별로 비교하여 정리 하였습니다. 제2부 「2010년도 예산안 분야별 세출현안」에는 SOC, 보건복지, 교육, 그리고 R&D 등 총 12개 분야로 구분하여, 예산안심의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 주요 세출사업의 현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심의 시 크게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09년 12월 1일

국회예산정책처장 신 해 룡

목 차

제1부 분야별 자원배분 추이와 계획

- I. 2010년도 분야별 자원배분 / 1
- II. 분야별 자원배분 추이와 계획 / 5

제2부 2010년도 예산안 분야별 세출현안

I.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 13

- 1.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자원배분 15

[지식경제부]

- 2.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의 사업계획 보완 필요 18
- 3. 서민층 지원 대상물품 조정을 통한 예산 절감 필요 20
- 4. 전력부하관리사업의 한국전력공사 비용 분담 필요 23
- 5. 가스냉방보급확대지원사업 예산안의 신규 편성 재검토 필요 25
- 6. 도시가스 주배관망 건설지원사업의 계획량 과다 27
- 7. 전력효율향상사업 LED 조명기기 지원단가 인하 필요 29
- 8. 전원개발용자사업 유지 필요성 검토 31
- 9.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의 세부사업별 성과관리시스템 필요 33
- 10. 한국전기안전공사 출연금 적정 규모 검토 36

[중소기업청]

- 11. 시험평가기능고도화사업의 성과반영 필요 38

II. SOC 분야 / 43

1. SOC 분야 재원배분 45

[국토해양부]

2. 철도자동화시설지원사업 재검토 필요 48
3.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의 연례적인 사업지연 50
4. 소사~원시 복선전철사업의 사업추진 지연 52
5. 일반국도 설계비 내역 구체화 55
6. 항만시설 유지보수비의 연례적 집행 저조 57
7. 해양 및 수자원관리사업의 예산안 편성 부적정 60

[행정안전부]

8. 지방도로구조개선사업 투자우선순위 조정 63

III. 농림수산식품 분야 / 67

1. 농림수산식품 분야 재원배분 69

[농림수산식품부]

2. 경영이양직접지불금의 과다편성 71
3. 소득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사업의 집행가능성 저조 73
4.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의 사업공정 지연과 주택 과잉공급 75
5. 시군유통회사 설립지원사업의 조정 필요 77
6. 경관보전직불제 사업량 전년수준 유지 필요 80
7. 한국농어촌공사 출자금 적정성 검토 83
8. 농어업재해보험기금 출연금 규모 재검토 필요 86

IV. 보건·복지 분야 / 89

1. 보건복지분야 재원배분 91
2. 경제위기 대응 주요사업의 실효성 검토 94
3. 사회안전망 등 복지재정의 구조적 문제 99

4. 단기 일자리사업의 체계적 지원 미흡	102
5. 인력양성사업의 정부지원 타당성 검토	107
6. 4대 공적연금기금 운용과 사업비 편성상 문제점	110

[보건복지가족부]

7. 기초생보자 양곡할인사업의 소관분야 이관 문제	114
8. 긴급복지지원사업 예산안의 과소편성 문제	116
9. 기초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가구별 소득인정액 차등 미반영	118
10. 기초노령연금 지급사업 예산안의 과다편성 문제	120
11. 중증장애인연금사업의 근거법 제정결과에 따른 예산반영 문제 ...	122
12. 보건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의 집행실적 부진	124
13. 방과후돌봄서비스사업의 유사중복	126
14. 아동청소년통합서비스지원사업의 국고보조율 형평성 문제	128
15.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문제	129
16. 보육시설미이용아동양육지원사업 예산의 과다편성	131
17. 건강보험 지원 예산안에 대한 제한적 심의 문제	133

[노동부]

18. 난임부부지원사업의 국민건강증진기금 이관 부적절	135
19. 청년층·고령자 대상 고용촉진사업의 사업비 과다계상	137
20. 고용보험사업의 집행실적 저조 및 사업설계 미비	140
21. 우선선정직종훈련지원사업의 차별성 미흡	143
22. 산재보험기금 책임준비금 산정체계 미비 등	145
23.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사업의 집행실적을 고려한 편성 미흡	148

[여성부]

24. 성 관련 피해여성 지원사업간 보조율 재조정 검토	151
25. 사업성과를 고려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예산안 조정	153

[식품의약품안전청]

26. 노로바이러스 검사사업 중복 추진문제	156
-------------------------------	-----

[국토해양부]

- 27.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재원 배분 적정성 문제 158
- 28. 사회취약 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의 국비지원 확대 필요 161
- 29. 지역별 공공임대주택의 수요공급 불일치 문제 165

[행정안전부]

- 30.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관리 강화 필요 169

V. 교육 분야 / 177

- 1. 교육분야 재원배분 179

[교육과학기술부]

-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쟁점현안 검토 181
- 3.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육성사업 지원내역 조정 필요 185
- 4. 국제교육교류협력활성화사업의 확대규모 및 신규내역 검토 188
- 5. 입학사정관제 도입지원사업의 적정성 문제 191
- 6. 대학구조개혁지원사업의 재정지원 재검토 필요 194
- 7. 해외산업체맞춤형 전문기술인력양성사업의 방향 명확화 필요 197
- 8. 영어교육격차해소사업 집행실적 부진반영 필요 200
- 9. 학업성취도평가사업의 소요예산 적정규모 검토 202

VI. 문화·체육·관광 분야 / 205

- 1. 문화체육관광분야 재원배분 207

[문화체육관광부]

- 2.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 관련 설계비 과다계상 209
- 3. 전략콘텐츠산업육성사업의 별도 기본경비 계상 등 재검토 212
- 4. 첨단융복합콘텐츠기술개발사업의 기술료 수입 저조 215
- 5. 사회문화예술교육활성화사업의 실제 운영기간 반영 필요 218
- 6. 관광진흥개발기금 일부 사업의 실적행부진 반영 220

7. 체육진흥투표권 위탁관리비 적정산정 필요	225
8. 국립극단 법인화추진사업 규모 조정 필요	227
9.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중 대규모 사업의 별도 분리 필요	229
10. 문화재보호기금의 재원확보 방안 마련 필요	232

VII. 환경 분야 / 237

1. 환경분야 재원배분	239
--------------------	-----

[환경부]

2. 하수도사업 예산지원의 지자체간 재원배분 조정 검토	241
3. 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비 재검토 필요	244
4. 공단폐수처리시설 운영실적을 고려한 예산안 조정	246
5. 물산업선진화 및 수출산업화 지원사업의 제반 문제	248
6. 저탄소 녹색성장 시범사업의 유사중복 및 계획 미비	251
7. 토양지하수 오염정화 사업의 필요성 대비 추진기반 미흡	254
8. 수계관리기금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문제	258

VIII. 국방 분야 / 261

1. 국방분야 재원배분	263
2. 국방비 총괄분석: 불필요한 조직·업무 조정 필요	266
3. 환차익으로 국방 여유예산 1,268억원 발생	272
4. 사이버방호사령부창설사업의 계획 및 법적근거 미비	274

[국방부]

5. 국방대학교 선진화를 위한 구조조정 필요	276
6. 기무사령부 방위력개선사업 분석업무의 부적절성	279

[방위사업청]

7. 방위력개선비 편성은 국방개혁 방향과 배치	281
8. 방위력개선비 군별 편성비율 추세: 해군 감소	283
9. 10대 해외획득사업 외화지출 5~10% 축소조정 필요	285

10. 조기경보통제기(E-X)사업 외자예산 50% 축소 문제	288
11. 과학화경계시스템사업 분산관리의 예산낭비성 반영 필요	290
12. 대대급 C4I사업 1~2년 유예 검토	292
13. 음향무기(소리총)개발에 대한 전략적 집중투자 검토	294

IX. 외교·통일 분야 / 297

1. 외교·통일 분야 재원배분	299
------------------------	-----

[외교통상부]

2. 외교통상부 외화예산의 환차익 발생 가능성	302
3. 공적개발원조(ODA)의 무상원조 확대 필요	304
4. 재외공관 현지인 행정원 역량강화사업의 과다편성	307
5. 정상회의 참가 및 총리순방사업 과소편성 부적절	309
6. 외교정보 전용망 구축 및 운영사업 연례적 전용의 반영	311
7. 글로벌코리아 미래전략기반 네트워크 강화사업의 계획 미흡	312
8. 글로벌 인적인프라 구축사업 신규추진 필요성 미흡	314
9. 재외공관 국유화사업 이자부담 과다 문제	316

[통 일 부]

10. 남북협력기금 수입계획안 일부 조정 검토	318
11. 남북협력기금 여유자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필요	320
12. 사회 통일교육 내실화사업 민주평통과 유사기능 효율화 필요	322
13.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신규 지원사업 효과미흡	324
14.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교육사업 지방비 확보 차질 우려	326
15.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의 체계적인 사업관리 필요	328
16. 북한정세지수 개발사업의 신중한 추진 필요	331

X. 공공질서·안전 분야 / 333

1.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재원배분 335

[법 무 부]

2. 검찰청 예산의 독립편성 필요 337
3.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의 국가책임 미흡 340
4. 갱생보호사업 분석 : 복지예산의 또다른 사각지대 342

[경 찰 청]

5. 도로교통공단 출연금 규모 조정 필요 346
6.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방안 시범도시 운영사업 조정 검토 349
7. 집회시위 관리장비 예산 조정 필요 353
8. 부검안경비의 인상률 조정 필요 355
9.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업무이양 여부와 청사이전사업의 연계 검토 필요 357
10. 다기능 현장증거분석실 구축 도입물량 조정 필요 359

[해양경찰청]

11. 해양오염예방사업의 국토해양부 사업과 중복추진 문제 361
12. 적성검사 프로그램 신규개발 재검토 필요 363
13. 해상교통관제사 신규 인력양성 재검토 필요 364

[소방방재청]

14. 재난피해자심리안정지원사업의 집행부진 반영 필요 366

XI. 일반공공행정 분야 / 369

1. 일반공공행정 분야 재원배분 371
2. 기준환율 변경을 통한 외화예산안의 원화경비액 감액 필요 373
3.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지원 예산안 쟁점 검토 376
4. 공공기관 인턴사업의 사회복지분야 강화 필요 381

[국무총리실]

5. 국가온실가스 인벤토리시스템 구축사업 관련부처 간 조정미흡 384

[금융위원회]

- 6. 모기지론이차보전사업과 국민주택기금사업 간 유사중복 386
- 7. 구조조정기금의 부실자산 인수정리 사업규모 축소 필요 388

[국가보훈처]

- 8. 순국선열 위패봉안관 건립사업 적정 추진 필요 391
- 9. 6·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 적정 추진 필요 393

[기획재정부]

- 10.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의 적정성 검토 395
- 11. 재정사업 성과평가의 환류 미흡 397
- 12.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용 성과미흡 399
- 13. 일시차입금이자상환 사업비 규모 조정 필요 402
- 14. 미래기획위원회 업무 중복 방지 위한 노력 필요 405
- 15. 공공자금관리기금 용자사업 집행실적 부진 반영 407
- 16. 외국환평형기금의 공자기금예수금 규모 과다 가능성 409
- 17. 외국환평형기금의 한국투자공사 위탁 규모 축소 필요 412
- 18. 대외경제협력기금 대개도국차관사업 집행부진 반영 414

[국 세 청]

- 19. 납세안내 및 세금교육 지원사업의 예산 과다편성 416
- 20. 대형집단상가 등 기준시가 산정사업의 집행실적 부진 반영 418

[관 세 청]

- 21. 밀수감시단속 포상금 예산안의 조정 필요 420

[행정안전부]

- 22.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환경 개선유지 사업의 타당성 재검토 필요... 423
- 23. 국가시험시행사업 연례적 불용 반영 필요 426

XII. R&D 분야 / 429

1. R&D 분야 자원배분 431

[지식경제부]

2.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의 차차년도 연구비의 편성 문제 434
3. Eco-Ener 플랜트 경쟁력 확보사업의 유사 중복 436
4. QoLT 기술개발사업의 유사 사업간 협의추진 필요 438
5. 부품소재산업경쟁력향상사업의 공동주관기술개발 비중 확대 필요 ... 439

[교육과학기술부]

6. 과학기술진흥기금의 공자기금예수금 이자상환 부적절 441
7.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의 범위 제한 필요 444
8. 핵융합에너지개발사업 자원배분 방향 검토 필요 445

제 1 부 분야별 자원배분 추이와 계획

I. 2010년도 분야별 자원배분

- 정부 총지출 291.8조원 규모의 2010년도 예산안은
‘재정운용 목표’를 ① 경제활력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 뒷받침
② 안정적 수준의 재정건전성 관리에 두며
‘자원배분 중점’을 ① 경제활력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 ②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 ③ 법질서 확립 및 국가위상 제고에 두고 있음

- 12대 주요 분야별 세출규모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4.4조원(4.9%), SOC 24.8조원(8.5%),
농림·수산·식품 17.2조원(5.9%), 보건·복지 81조원(27.8%),
교육 37.8조원(13.0%), 문화·체육·관광 3.7조원(1.3%),
환경 5.4조원(1.9%), 국방(일반회계 29.6조원, 10.1%),
외교·통일 3.4조원(1.2%), 공공질서·안전 12.9조원(4.4%),
일반공공행정 49.5조원(17.0%),
R&D 13.6조원(총지출 대비 4.7%)수준임

 - 보건·복지, 일반공공행정, 교육 및 국방의 4개 분야에
정부 총지출의 67.8%인 198조원 배분

- 분야별 배분재원은 전년(본예산) 대비 증가율이 정부 총지출 증가율
(2.5%)보다 높은 분야(7개)와 낮은 분야(5개)로 구분되는데, 이는 정부가
2010년에 달성하려는 재정운용목표와 방향성을 같이 하는 것임

〈주요 분야별 자원배분 : 2008~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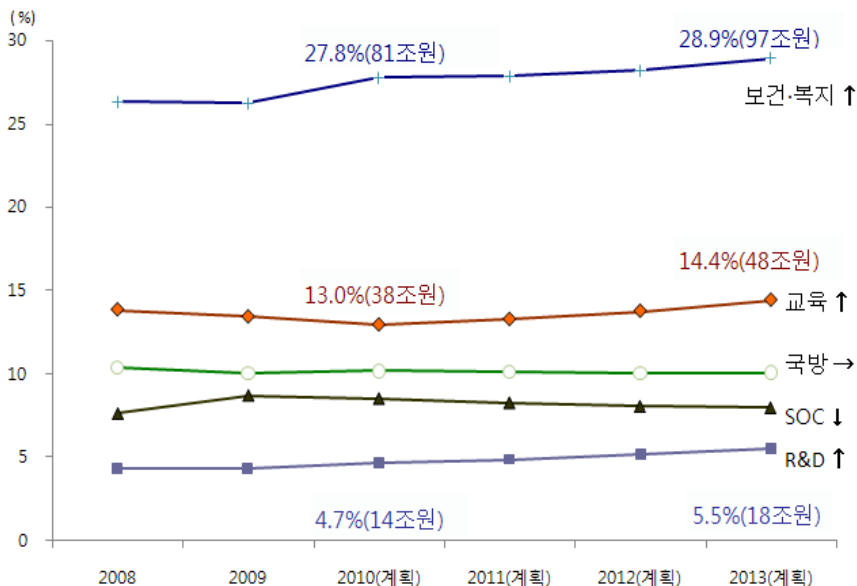
(조원, %)

	2008		2009		2010안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예산안	증가율 ¹⁾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2.6 (4.9)	14.7	16.2 (5.7)	20.8	14.4 (4.9)	-10.9
SOC	19.6 (7.6)	20.5	24.7 (8.7)	25.4	24.8 (8.5)	0.3
농림·수산·식품	16.0 (6.2)	16.8	16.9 (5.9)	17.3	17.2 (5.9)	2.1
보건·복지	67.7 (26.3)	68.8	74.6 (26.2)	80.5	81.0 (27.8)	8.6
교육	35.6 (13.8)	36.1	38.2 (13.4)	39.2	37.8 (13.0)	-1.2
문화·체육·관광	3.3 (1.3)	3.3	3.5 (1.2)	3.6	3.7 (1.3)	7.8
환경	4.5 (1.8)	4.5	5.1 (1.8)	5.7	5.4 (1.9)	5.1
국 방(일반회계)	26.6 (10.3)	26.6	28.5 (10.0)	29.0	29.6 (10.1)	3.8
외교·통일	2.8 (1.1)	2.8	3.0 (1.1)	3.0	3.4 (1.2)	14.7
공공질서·안전	11.7 (4.5)	11.7	12.3 (4.3)	12.4	12.9 (4.4)	4.3
일반공공행정	45.9 (17.9)	45.9	48.6 (17.1)	51.7	49.5 (17.0)	1.8
R&D	11.1 (4.3)	11.1	12.3 (4.3)	12.7	13.6 (4.7)	10.5
총 지 출	257.2 (100.0)	262.8	284.5 (100.0)	301.8	291.8 (100.0)	2.5

주: 1) 2009 본예산 대비

자료: 대한민국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각년도.

〈분야별 자원배분 비중: 2008~2013년〉



자료: 대한민국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각년도.

- 증가율이 정부 총지출보다 높은 분야는 통일·외교(14.7%), R&D(10.5%), 보건·복지(8.6%), 문화·체육·관광(7.8%), 환경(5.1%), 공공질서·안전(4.3%), 국방(3.8%)의 7개 분야
 - 증가율이 정부 총지출보다 낮은 분야는 농림수산식품(2.1%), 일반공공행정(1.8%), SOC(0.3%), 교육(-1.2%), 산업·중소기업·에너지(-10.9%)의 5개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 감소는 경기부양을 위해 지원된 산업금융의 감소(1.3조원 감)에 기인
- 따라서 2010년도 예산안의 재원배분은 ‘경제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추었던 2009년도 재정운용’과 비교할 때, 경기부양을 위해 확대되었던 경제개발 분야의 세출 증가를 완화하고 재정건전성 회복을 도모하면서, 한편으로 경기하락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0년도 예산안 개요」, 2009. 10.

[담당] 서세욱 예산분석관(788-4625)

II. 분야별 자원배분 추이와 계획

1. 분야별 자원배분 추이 : 2005~2009년

□ 금융위기 발생 이전인 2005년에서부터 2009년에 이르기까지의 분야별 자원배분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GDP 대비 분야별 자원 비중(최종예산 기준)〉

(단위 : %, %p)

분 야	2005	2006		2007		2008		2009 ¹⁾	
		전년대비 증가분	전년대비 증가분	전년대비 증가분	전년대비 증가분	전년대비 증가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4	1.4	0.0	1.3	-0.1	1.4	0.1	2.0	0.6
SOC	2.1	2.0	-0.1	1.9	-0.1	2.0	0.1	2.4	0.4
농림·수산·식품	1.6	1.7	0.0	1.6	0.0	1.6	0.0	1.7	0.0
보건·복지	5.9	6.2	0.3	6.3	0.1	6.7	0.4	7.7	1.0
교육	3.2	3.2	0.0	3.1	0.0	3.5	0.4	3.8	0.2
문화·체육·관광	0.3	0.3	0.0	0.3	0.0	0.3	0.0	0.3	0.0
환경	0.4	0.4	0.0	0.4	0.0	0.4	0.0	0.5	0.1
국방(일반회계)	2.4	2.5	0.0	2.5	0.0	2.6	0.1	2.8	0.2
외교·통일	0.2	0.3	0.1	0.2	0.0	0.3	0.0	0.3	0.0
공공질서·안전	1.1	1.2	0.1	1.1	-0.1	1.1	0.0	1.2	0.0
일반공공행정	4.4	4.3	-0.1	4.3	0.0	4.5	0.1	5.0	0.5
기타 ²⁾	1.1	1.3	0.1	1.1	-0.1	1.1	-0.1	1.3	0.2
R&D ³⁾	0.9	1.0	0.1	1.0	0.0	1.1	0.1	1.2	0.1
총 지 출 ⁴⁾	24.2	24.7	0.4	24.3	-0.3	25.7	1.3	28.9	3.3

주: 1) 추가경정예산 기준.

2) 통신, 과학기술, 예비비 포함.

3) 16개 분야에 각각 포함된 R&D 지출 합계.

4)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의 총계에서 계정간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 제외.

자료: 대한민국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각년도.

-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재원배분의 변화가 심하게 나타난 분야는 보건·복지분야임
 - 보건·복지분야는 2000년대 이래 정책의 확장 추세와 더불어 계속 증가하여 왔으나, 특히 위기에 직면하여 더욱 늘어남
 - 2008년 GDP 대비 비중이 전년도에 비해 0.4%p 증가하였고, 2009년도 예산에서도 전년도에 비해 1.0%p 증가
 - 이는 정부가 민생안정, 일자리 창출 및 국민들의 복지욕구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위해 많은 재원을 투자한 것에 기인
-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의 경우, 2009년에 전 분야 중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음
 - 2007년에는 전년대비 0.1%p 감소하다가, 2008년에 0.1%p 증가
- SOC분야의 경우,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2009년에는 전년대비 0.4% 증가하여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의 증가율(0.6%)을 하회함
-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 및 SOC분야와 유사한 추이를 나타내는데, 2009년 이전에는 GDP 대비 비중이 -0.1~0.1%p의 소폭 증감 하다가, 2009년에는 GDP 대비 0.5%p의 높은 증가양상을 보임
- 교육분야의 경우, 2005~2007년까지 GDP 대비 1.6% 정도로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0.4%p, 0.2%p 증가함
- R&D분야는 금융위기 전후로 큰 변화 없이 전년대비 동일수준 내지 0.1%p 증가를 반복적으로 나타냄

2. 분야별 자원배분 계획 : 2009~2013년

- 정부가 2009년 10월 제출한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13년까지의 분야별 자원배분 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특성을 나타냄

〈2009년 계획의 분야별 자원배분〉

(단위 : 조원, %)

분야	2009				2010안			2011계획		2012계획		2013계획	
	본예산(수정)		추경		규모	증가율		규모	증가율	규모	증가율	규모	증가율
	규모	증가율	규모	증가율		본예산 대비	추경 대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6.2	10.2	20.8	41.5	14.4	-10.9	-30.8	15.1	4.9	15.9	5.3	17.0	6.9
SOC	24.7	20.5	25.4	23.9	24.8	0.3	-2.4	25.3	2.0	25.9	2.4	26.7	3.1
농림·수산·식품	16.9	0.6	17.3	3.0	17.2	2.1	-0.6	17.4	1.2	19.2	10.3	17.6	-8.3
보건·복지	74.6	8.4	80.5	17.0	81.0	8.6	0.6	85.3	5.3	90.7	6.3	96.9	6.8
교육	38.2	5.8	39.2	8.6	37.8	-1.2	-3.6	40.7	7.7	44.3	8.8	48.3	9.0
문화·체육·관광	3.5	6.1	3.6	9.1	3.7	7.8	2.8	3.8	2.7	3.9	2.6	4.0	2.6
환경	5.1	13.3	5.7	26.7	5.4	5.1	-5.3	5.5	1.9	5.7	3.6	5.8	1.8
국방(일반회계) ¹⁾	28.5	7.1	29.0	9.0	29.6	3.8	2.1	30.9	4.4	32.3	4.5	33.7	4.3
외교·통일	3.0	7.1	3.0	7.1	3.4	14.7	13.3	3.4	0.0	3.4	0.0	3.4	0.0
공공질서·안전	12.3	5.1	12.4	6.0	12.9	4.3	4.0	13.2	2.3	13.7	3.8	14.0	2.2
일반공공행정	48.6	5.9	51.7	12.6	49.5	1.8	-4.3	52.7	6.5	54.0	2.5	54.8	1.5
기타 ¹⁾	12.9	16.2	13.2	18.9	12.1	-0.4	-8.3	13.3	9.9	13.0	-2.3	13.1	0.8
R&D ²⁾	12.3	10.8	12.7	14.4	13.6	10.5	7.1	14.9	9.6	16.6	11.4	18.4	10.8
총 지출	284.5	8.3	301.8	14.8	291.8	2.5	-3.3	306.6	5.1	322.0	5.0	335.3	4.1

주: 1. 증가율은 전년예산 대비.

1) 통신, 과학기술, 예비비 포함.

2) 16개 분야에 각각 포함된 R&D 지출 합계.

자료: 대한민국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각년도.

- 2011~2013년 기간의 분야별 재정운용을 살펴보면, 같은 기간에 정부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4.7%)보다 높은 분야와 낮은 분야로 구분됨
- 연평균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교육(8.5%), 보건·복지(6.2%), 산업·중소기업·에너지(5.7%)의 3개 분야임

- 낮은 분야는 국방(4.4%), 일반공공행정(3.5%), 공공질서·안전(2.8%), 문화·체육·관광(2.6%), SOC(2.5%), 환경(2.4%), 농림수산식품(1.1%)의 7개 분야임
- 경제개발에 속하는 SOC분야와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의 경우, 두 분야에 대한 자원배분은 한쪽이 많이 늘면 다른 쪽이 덜 늘고, 또 한쪽이 많이 줄면 다른 한쪽은 덜 줄어들어, 경제개발비 전체규모는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해 복지분야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경제개발 분야들에 대한 재정투자가 다소 정체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크게 늘어날 여지가 많지 않음
 - 이러한 여건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인 보완·개선 노력 필요
- 보건·복지와 같은 사회개발분야의 자원배분 수준이 OECD 회원국 등 선진국에 비해 다소 낮은 편이지만, 향후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과 더불어 노령층에 대한 사회보장 및 보건·복지분야 지출은 크게 증가할 것임
 - 증가하는 복지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기 위해서는 재정누수와 낭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달체계 개선이 필수적임
- 경제활력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개발을 위한 투자라고 할 수 있는 R&D분야에 대한 자원배분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계획임
 - R&D지원은 엄밀한 성과평가에 토대를 두는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급속하게 규모를 확대해 나가기보다 적절한 수준의 지출확대를 통하여 투자효율을 제고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임

3. 재원배분체계의 연도별 비교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원배분체계와 관련한 문제점은 각 중기재정계획 간에 분야별 재원배분체계가 변경되어 왔다는 것임
 - 재원배분에 관한 분야의 수를 보면, 2004~'08년 계획의 16개 분야를 제시하였으나 2005~'09년 계획에서는 17개로 확대되었다가, 2009~'13년 계획에서는 12개로 축소하여 제시
 - 재원배분체계 중 R&D, 국가균형발전, 정보화, 국가혁신서비스 등은 '기능별' 지출분류(회색영역에 해당)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명기해야 하나, 「2004년 계획」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이들 지출을 기능별 지출과 별도로 명기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
-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2008년도 예산」을 비롯한 최근의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예산의 재원배분 상황은 R&D와 SOC를 포함한 12개 분야만을 제시하고 있어, 정부 총지출의 전체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며, 일관성도 결여되어 있음
 - 다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R&D분야와 '국토 및 지역개발', '교통 및 물류'를 합한 SOC분야의 지출통계를 제시하여 동 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16개 분야의 전망치를 모두 제시하여 중기재정계획의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자원배분체계 비교〉

2004~2008 계획	2005~2009 계획	2006~2010 계획	2007~2011 계획	2008~2012 및 2009~2013 계획
▶ 산업·중소기업	▶ 산업·중소기업	▶ 산업·중소기업	▶ 산업·중소기업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SOC	▶ 수송교통수자원	▶ 수송교통지역개발	▶ 수송교통지역개발	▶ SOC
▶ 농어촌	▶ 농림해양수산	▶ 농림해양수산	▶ 농림해양수산	▶ 농림수산식품
▶ 사회복지	▶ 사회복지·보건	▶ 사회복지·보건	▶ 사회복지·보건	▶ 보건·복지
▶ 교육	▶ 교육	▶ 교육	▶ 교육	▶ 교육
▶ 문화관광	▶ 문화관광	▶ 문화관광	▶ 문화관광	▶ 문화체육관광
▶ 환경	▶ 환경보호	▶ 환경보호	▶ 환경	▶ 환경
▶ 국방	▶ 국방	▶ 국방	▶ 국방	▶ 국방
▶ 외교통일	▶ 통일·외교	▶ 통일·외교	▶ 통일·외교	▶ 외교·통일
	▶ 공공질서·안전	▶ 공공질서·안전	▶ 공공질서·안전	▶ 공공질서·안전
▶ 일반행정	▶ 일반행정	▶ 일반공공행정	▶ 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
▶ R&D	▶ R&D	▶ R&D	▶ R&D	▶ R&D
▶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재정확충	▶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재정	▶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재정확충	▶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재정	
▶ 정보화	▶ 정보화	▶ 정보화	▶ 정보화	
	▶ 인건비	▶ 인건비	▶ 인건비	
			▶ 민간투자	
	▶ 성장동력 확충			
	▶ 인적자원 개발			
▶ 국가서비스 혁신				
▶ 국제이자예비비				
▶ 사회안정				
16개 분야	17개 분야	15개 분야	16개 분야	12개 분야

주: 음영은 기능별 지출(분야별 지출)에 해당.

자료: 대한민국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각년도.

[자 료] 국회예산정책처,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2009. 11.

[담 당] 박승준 경제분석관(788-4662)

제 2 부

**2010년도 예산안
분야별 세출현안**

I. 산업 · 중소기업 · 에너지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2010년도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대비 10.9% 감소한 14조 4,379억원임
 -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늘어났던 산업금융지원 부문이 크게 감소하였음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2010년도 예산안 현황 〉

(단위: 억원, %)

	2009 (A)	2010안 (B)	증 감	
			(B-A)	(B-A)/A
산업진흥고도화	48,546	51,261	2,715	5.6
무역 및 투자유치	6,765	4,563	-2,202	-32.5
에너지 및 자원개발	45,847	46,034	187	0.4
산업금융지원	49,556	31,267	-18,289	-36.9
산업기술지원	7,737	7,425	-312	-4.0
산업중소기업 일반	3,613	3,829	216	6.0
합 계	162,065	144,379	-17,686	-10.9

주: 2009년도는 본예산 기준임

자료: 대한민국정부,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09.

-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향후 5년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재정 투자를 연평균 1.3% 확대한다는 계획임
 - 이는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 4.2% 보다 낮음
 - 산업진흥·고도화와 에너지 및 자원개발에 대한 투자가 각각 연평균 5.7%와 4.3% 증가할 계획임

〈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투자계획 〉
(단위: 억원, %)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	162,065	144,379	151,037	159,053	170,448	1.3
산업진흥고도화	48,546	51,261	53,648	56,491	170,448	5.7
무역 및 투자유치	6,765	4,563	4,767	5,020	5,384	-5.5
에너지 및 자원개발	45,847	46,034	48,162	50,715	54,347	4.3
산업금융지원	49,556	31,267	32,710	34,454	36,921	-7.1
산업기술지원	7,737	7,425	7,772	8,184	8,770	3.2
산업중소기업 일반	3,613	3,829	3,978	4,189	4,489	5.6

주: 2009년도는 본예산 기준임

자료: 대한민국정부, 「2009 ~ 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09.

-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 산업금융 부문 2010년 예산안은 3조 1,267억원으로 2009년 예산 8조 4,256억원(본예산: 4조 9,556억원) 대비 5조 2,989억원(본예산 대비 1조 8,289억원) 감소하였음
- 특히, 중소기업청의 융자사업 2010년 예산안은 3조 1,355억원으로 2009년의 5조 8,555억원(본예산: 4조 2,555억원) 대비 2조 7,200억원(본예산 대비 1조 1,200억원) 감액되었음

〈 중소기업청의 2010년도 융자사업 예산안 현황 〉

(단위: 억원, %)

2009		2010 예산안 (B)	증 감	
본예산	추경 (A)		(B-A)	(B-A)/A
42,555	58,555	31,355	-27,200	-46.5

자료: 중소기업청, 2009. 10.

- 2010년에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용자사업 규모가 크게 축소된 상황에서 중소기업에 유동성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 용자사업의 지원 대상을 민간 금융과 차별화되게 운용하여 지원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용자심의 조건, 용자사업기간 및 금리 등을 조정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용자사업을 운용함에 있어 자금 조달이 가능한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고, 기술성·사업성은 있으나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워 시장실패 영역에 있는 중소기업 지원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음
 -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높아진 운전자금 지원 비중, 직접대출 중 신용대출 비중, 재무여건이 취약한 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 등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 정책자금 대출금리를 중소기업의 위험도를 반영, 차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에 대한 대출을 촉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자 료] 국회예산정책처, 「산업·중소기업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 『2010년도 예산안 분석 III』, 2009. 11.

[답 당] 이화실 예산분석관(788-4628)

[개 요]

- 지식경제부 소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비R&D)사업 및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R&D)사업
 - 예산안: 3,255억원(전년대비 61.4% 증)
 -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9,282억원이 투입될 계획(R&D사업 6,312억원, 비R&D사업 2,970억원)
 - 지경부의 예산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출연되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광역경제권별로 구성되는 선도산업 지원단과 협약을 맺고 예산을 출연함
 - 최종적으로는 선도산업 지원단이 세부과제 수행기업과 협약을 맺고 사업비를 지급함
- 전국을 5대 광역경제권과 2대 특별광역경제권으로 나누고, 광역경제권별로 1~2개 신성장 선도산업을 대표산업으로 육성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
 - 2010년도에 세부사업으로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을 신설하고, 예산안에 500억원을 반영(R&D사업 250억원, 비R&D사업 250억원)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의 2010년도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2009 (본예산)	2010안	전년대비	
			증가액	증가율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R&D)	141,169	210,000	68,831	48.8
광역선도산업육성	141,169	185,000	43,831	31.0
광역연계·협력사업 육성	-	25,000	25,000	순증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비R&D)	60,501	115,500	55,000	90.9
광역선도산업육성	58,831	90,000	31,169	53.0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	25,000	25,000	순증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 사업기획	1,669	500	-1,169	-70.0
합 계	201,669	325,500	123,831	61.4

자료: 지식경제부

[현안 검토]

- 지식경제부와 지역발전위원회는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추진 관련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지역 주도의 자율적 기획으로 추진한다는 방향만 수립한 상태임
-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을 공간적으로는 광역권 내 시·도간 연계·협력 사업과 광역권간 및 글로벌 연계·협력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임
 - 광역권 내 시·도간 연계·협력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과 차이가 없음
 - 이는 기존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확대 추진하면서 총 사업비 규모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광역 연계·협력사업의 공간적 유형 〉

구 분	특 징
권역내	광역권 내 시·도간 연계·협력 사업 (예: 대전-충북-충남)
권역간·글로벌	광역권간 및 글로벌 연계·협력 사업 (예: 강원-대경, 제주-프랑스)

자료: 지식경제부, 2009. 10.

-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은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평가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의 추진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자 료] 국회예산정책처,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의 사업계획 미비」, 『2010년도 예산안 분석 III』, 2009. 11.

[담 당] 전용수 예산분석관(788-4628)

[개 요]

- 지식경제부 소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서민층 에너지 저소비·고효율제품 교체지원 사업
 - 예산안: 300억원(신규)

〈 서민층 에너지 저소비·고효율제품 교체지원사업의 2010년도 예산안 현황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09년 예산(A)	2010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
				(B-A)/A
서민층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제품 교체지원	-	30,000	30,000	순증
- 냉장고	-	10,730	10,730	순증
- 선풍기	-	467	467	순증
- 일반세탁기	-	3,099	3,099	순증
- 디지털 TV	-	15,704	15,704	순증

자료: 지식경제부, 「201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2009.10.

- 향후 5년간 전체 사회복지시설 중 20%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소비효율 2등급 이하인 냉장고, 에어컨, 드럼세탁기, TV 가운데 5년 이상 사용한 제품을 각각 고효율 냉장고, 선풍기, 고효율 일반 세탁기, LED TV로 교체할 계획임
 - 사업기간 : 2010 ~ 2014(5년간), 총사업비: 1,231억 7,000만원

〈서민층 에너지 저소비·고효율제품 교체지원사업 총사업비〉

(단위: 백만원)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투자액	30,000	27,000	24,300	21,870	20,000	123,170

자료: 지식경제부, 「201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2009.10.

[현안 검토]

- 정부 투자액 대비 에너지 절약 효과가 과소하고, 일부 제품의 경우 보급 시기 조정을 통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동 사업 예산안의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정부가 2010년에 전체 사회복지시설 중 20%를 대상으로 300억원을 투자하여 에너지 다소비·저효율 제품을 교체할 경우 1년에 절약 가능한 에너지량은 약 2,876MWh, 전기요금은 약 3억 1,500만원(할인 요금 적용 시 2억 5,200만원)임
 - 사회복지시설이 전기요금 절감액으로 정부 투자비용을 회수하는데 약 95.2년(정부투자액/전기요금 절감액)이 소요, 전자제품의 평균수명이 5~10년이므로 사회복지시설은 정부 투자비용의 약 5.3~10.5%만 에너지 절약분으로 회수

< 연간 에너지절약 효과 추계 >

(단위: KWh/년, 백만원)

지원제품명	절감량	절감액 (할인 적용시)	소요산출 근거
냉장고	2,003,356	220(176)	236KWh/대.년*42,444개소*20%
일반세탁기	322,574	35(28)	38KWh/대.년*42,444개소*20%
선풍기	178,265	19(15.2)	21KWh/대*42,444개소*20%
디지털 LED TV	371,809	41(32.8)	20W/개*42,444개소*20%*2,190시간/년=1,000
계	2,876,004	315(252)	

주: 1. 전기요금은 110원/KWh를 적용하였음.

2. 사회복지시설은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 사용시 20% 할인요금을 적용하고 있음

자료: 지식경제부.

- 특히, 지원 대상 물품 가운데 LED TV는 에너지절약효과에 비하여 비용이 매우 높은 편이고, 전기냉장고와 세탁기의 에너지 효율기준도 2011년부터 강화될 계획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관련 물품의 보급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LED TV의 경우 2009년 3월 이후 출시되어 현재 보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고 제품가격도 기존 디지털 TV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임에도 2010년 예산안의 52.3%인 157억원이 디지털 LED 보급에 편성
- 전기냉장고와 세탁기 효율기준 강화를 위하여 지식경제부는 기술표준화사업 및 공청회를 추진하였으며 2010년 관련 고시를 개정,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
- LED TV, 전기냉장고, 세탁기의 경우 보급시기를 조정하면 절감전력이 많아져 예산의 효율성이 보다 높아질 수 있음

[자 료] 국회예산정책처, 「서민층 지원대상물품의 조정을 통한 예산 절감 필요」, 『예산안 분석 III』, 2009. 11.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서민층 에너지 저소비·고효율제품 교체지원사업」, 『2010년도 지식경제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09. 11.

[담 당] 이화실 예산분석관(788-4628)

[개 요]

- 지식경제부 소관 전력산업기반기금 전력부하관리사업
 - 예산안: 685억 6,500만원(전년대비 5.4% 감)
 - 전력부하관리사업은 최대 전력 수요를 억제하고 전력 부하를 평준화함으로써 전원설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임

〈 전력부하관리사업의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현황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09 계획(A)	2010 계획안(B)	증감 (B-A)	(B-A)/A
전력부하관리	72,500	68,565	-3,935	-5.4

자료: 지식경제부, 「201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2009. 10.

[현안 검토]

- 전력부하관리를 통한 이익의 대부분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 귀속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한전이 사업비용의 50%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사업추진방식을 변경하고 그에 따라 예산안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발전시설 투자는 침두부하에 따라 결정되므로 전력부하관리를 통하여 발전자회사 및 한전의 투자비용을 낮추고 기존 설비의 투자수익률을 높일 수 있음. 6개 발전자회사는 한전이 100%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 이므로 전력부하관리를 통한 이익의 대부분은 한전에 귀속

- 미국, 영국, 일본의 전력시장은 경쟁이 도입되어 다수의 전력사업자가 경쟁하는 체계로, 송전과 판매를 한전이 독점하고, 한전 및 그 자회사가 2008년 전체 발전량의 93.5%를 생산하는 우리나라와 상황이 다름

〈전력부하관리사업에 대한 지식경제부와 국회예산정책처 입장 비교〉

구분	지식경제부	국회예산정책처
전력회사의 소극적 대응 문제	- 직접적 이익이 귀속되는 발전자회사는 경쟁체제이므로 부하관리 비용 부담을 회피하는 무임승차가 발생할 우려가 높고, 송전 및 판매 회사인 한전은 판매 증대를 통한 수익창출을 우선으로 하므로 자발적 수요관리 시행 참여가 불확실	- 전력부하관리는 피크 수요를 감소시켜 기존설비의 수익성을 증대 - 6개 발전자회사는 한전이 100% 소유한 자회사이고, 한전은 국가가 소유한 공기업이라는 점에서 투자회피로 인한 이익의 대부분이 한전에 귀속되므로 한전은 부하관리를 할 유인이 있음
외국의 사례	-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공익적 부담금으로 부하관리 사업 추진	- 미국, 영국 등은 전력시장에 경쟁이 도입되어 전력시장이 독점적 공기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와 상황이 다름

자료: 심재철의원에게 제출한 국회예산정책처 결산분석보고서에 대한 지식경제부 의견을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자 료] 국회예산정책처, 「전력부하관리사업의 추진 방식 변경 필요성」, 『예산안 분석 III』, 2009. 11.

[담 당] 이화실 예산분석관(788-4628)

[개 요]

- 지식경제부 소관 에너지 및 자원사업회계 가스냉방보급확대지원사업
 - 예산안: 100억원(신규)
 - 보조, 한국도시가스협회에서 시행(예정)
- 가스냉방보급확대지원사업은 하절기 전력수요 분산 및 동고하저의 천연가스 수요개선에 효과적인 가스냉방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임
 - 한국가스공사는 그동안 자체적으로 가스냉방 설치 건물주 및 설계사무소에 설치 및 설계장려금을 지원하여 왔음. 그러나 2010년부터는 정부가 재정으로 가스냉방보급확대지원사업을 지원할 계획임

[현안 검토]

- 지식경제부는 2008년 결산 심사 시 가스 수요관리는 국가적 수요관리 보다는 자체 수익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설명한바 있으므로 정부가 재정으로 이를 지원하여야 할 필요성은 크지 않음
 - 지식경제부는 2008년 결산 심사 시 한국가스공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수요관리는 보관이나 저장비용 증가 등을 억제하기 위한 성격으로 일종의 수익을 위한 재고관리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어 정부 지원을 받는 전력수요관리와 다르다고 설명한바 있음
 - 가스수요관리가 한국가스공사의 자체 수익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스수요관리에 대하여 정부가 100% 재정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가스냉방보급확대사업은 「도시가스사업법」의 개정을 전제로 편성된 예산안이므로 법률안의 심사 추이에 따라 동 사업 예산안에 대한 심의도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정부는 「제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향후 가스 산업 도입·도매 시장에 경쟁을 도입할 경우 가스공사에서 공적 부담을 지기보다는 재정에서 수요관리를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
 - 「제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르면 2010년 중 가스분야 도입·도매 부문에 신규 판매사업자를 허용하여 경쟁을 도입할 계획임
 - 가스 산업에 경쟁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도시가스사업법」의 개정이 필요하나, 관련 법률안은 2009년 9월 28일에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11월 25일 지식경제위원회에 상정된 상태임
 - 가스 산업에 경쟁을 도입할지 여부에 대하여 국회가 정책적 결정을 한 후 이에 따라 가스수요관리사업 비용의 부담주체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가스냉방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2010년부터 바로 한국가스공사 자체 추진에서 정부 부담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자 료] 국회예산정책처, 「가스냉방보급확대지원사업의 신규 추진 재검토 필요」, 『예산안 분석 III』, 2009. 11.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가스냉방 보급확대 지원사업」, 『2010년도 지식경제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09. 1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스냉방보급확대 지원: 법적 근거 미비 및 과다계상 문제」, 『2010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2009. 11.

[담 당] 이화실 예산분석관(788-4628)

[개 요]

- 지식경제부 소관 에너지및자원산업특별회계의 도시가스 주배관망 건설 지원사업
 - 예산안: 300억원 (전년대비 3.55% 감)
 - 주배관망 확충에 필요한 투자비는 한국가스공사가 회사채 발행으로 조달하고, 그에 따른 발생이자를 예산으로 전액 지원함

〈 도시가스 주배관망 건설지원사업의 2010년도 예산안 현황 〉

(단위: 백만원, %)

	2009	2010안	전년대비	
			증가액	증가율
도시가스 주배관망 건설지원	31,100	30,000	-1,100	-3.55

자료: 지식경제부, 2009. 10.

- 동 사업은 수익성이 없어 시장에서는 공급되지 않는 도시가스 서비스를 국가 시책상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1조 6,000억원으로 예상됨
 -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1,056Km의 주배관을 연결하고 관리소 103개소를 신·증설할 계획임

[현안 검토]

- 공익서비스책무 보상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국가 보상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함

- 「철도산업발전법」 제32조, 「해운법」 제1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등에는 벽지노선 운행손실, 특수계층 운임감면에 따른 손실 등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낙후지역 및 도시가스 소외지역 판별기준, 지원기준과 방식 등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함
- 2009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9월말 기준 당초 예산 311억원 전액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음
- 노선 설계,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사업자 선정 등의 절차 이행에 당초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 세부 배관 노선 확정 과정에서 전국 미공급지역 해당 지자체, 도시가스사 등으로부터 의견 수렴 및 협의, 민원 해결 등으로 사업이 지체됨에 따라 착공 시기가 지연되었기 때문임
- 2010년에 304.29Km의 주배관을 연결할 계획¹⁾이나, 과도한 물량을 계획한 것으로 보임
-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가스공사의 연도별 건설물량은 연간 33Km 정도이며, 2008년에는 49Km, 2009년에는 10월말 현재 62.1Km(2009년 계획은 156.9Km)임
 - 연간 계획물량을 균형적으로 배분할 필요가 있음

[자 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시가스 주배관망 건설지원: 법적 근거 마련 필요 및 '10년 사업물량 과다 계획」, 『2010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2009. 11.

[담 당] 전용수 예산분석관(788-4628)

1) 당초 국회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2010년 계획물량이 294Km였으나, 계획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변경함

[개 요]

- 지식경제부 소관 전력산업기반기금 전력효율향상사업
 - 예산안: 616억 2,000만원(전년대비 14.2% 증)
 - 전력효율향상사업은 고효율 전기기의 사용을 촉진하여 전기소비 절감 및 합리적 전기사용을 유도하고 국민들에게 절감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임
 - 2010년에는 고효율 전동기 및 펌프에 대한 지원을 폐지하는 등 기존 사업을 일부 구조조정하고 LED 조명기기 보급 예산을 확대
 - 2010년 LED 조명기기 보급 예산안은 347억 1,000만원으로 285.7% 증가

〈전력효율향상사업 기금운용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09년 계획(A)	2010년 계획안(B)	증 감	
			(B-A)	%
전력효율향상	53,980	61,620	7,640	14.2
○ 고효율기기 지원	51,980	61,620	9,640	18.5
■ 조명기기	9,000	34,710	25,710	285.7
(지역에너지절약사업)	(-)	(9,000)	(9,000)	(순증)
■ 에너지복지	35,500	19,110	△16,390	△46.2
■ 인버터	5,000	6,300	1,300	26.0
■ 스마트계량기	1,000	-	△1,000	순감
■ 변압기	300	1,500	1,200	400.0
■ 펌 프	200	-	△200	순감
■ 자판기	-	-	-	-
■ 전동기	980	-	△980	순감
○ 전기소비진단	2,000	-	△2,000	순감

주: 1. 조명기기 사업에서 지자체에 LED 신호등 등을 보급하는 사업은 2009년까지는 지역 에너지 절감사업에 편성되었으나 2010년부터 동 사업으로 편성됨

2. 전기소비진단사업은 2010년부터 전기와 열을 합친 에너지 진단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중소기업 진단보조 사업으로 일원화함

자료: 지식경제부, 「201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2009.10.

[현안 검토]

- LED 조명기기의 절감전력 대비 지원단가가 높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LED 조명기기 지원단가를 낮추고 관련 예산안을 감액 조정할 필요
 - 2010년 보급대상 기기들의 절감전력당 지원단가를 비교해 보면, LED 조명기기의 지원단가는 매우 높은 수준임
 - LED 유도등의 경우 절감전력당 지원단가가 인버터의 26.7배(2010년 지원단가 조정 시 53.3배), 변압기의 8배임
 - LED 조명등의 경우에도 인버터의 4.6배(2010년 지원단가 조정 시 9.2배), 변압기의 1.4배임

〈고효율 기기 절감전력 kW당 지원단가〉

품 목	절감전력/개	지원단가/개	지원금/kW	비 고
LED유도등	0.003kW	12,000원	400만원	12,000원/0.003kW
LED조명등	0.050kW	34,500원	69만원	34,500원/0.050kW
안정기	0.027kW	2,175원	8만원	2,175원/0.027kW
인버터 (37kW 기준)	12.6kW	1,887,000원	15만원	1,887,000/12.6kW
변압기 (750kVA 기준)	3.8kW	1,900,000원	50만원	1,900,000/3.8kW

주: 인버터의 경우 지원금을 2010년부터 15만원/kW에서 7.5만원/kW로 축소할 계획임

자료: 지식경제부

- LED 유도등과 LED 조명등의 가격 추이를 볼 때, LED 조명기기에 대한 지원단가를 인하하고 관련 예산안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LED 유도등의 경우 일반기기와 고효율기기의 가격 차이가 LED 조명등과 비교할 때 높지 않아 일반기기와 고효율기기의 가격 차이 중 일부를 보조해주는 지원금을 높게 적용할 합리성이 떨어짐
 - 정부 예산안 산정 시 12만원이었던 LED 조명기기(12W) 가격이 2009년 10월말 현재 64,500원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현재의 지원단가 적용시 물품 가격의 91.5%까지 정부가 보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자 료] 국회예산정책처, 「전력효율향상사업 LED 기기 지원단가 조정 필요」, 『예산안 분석 III』, 2009. 11.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력효율향상사업」, 『2010년도 지식경제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09. 11.

[담 당] 이화실 예산분석관(788-4628)

[개 요]

- 지식경제부 소관 전력산업기반기금 전원개발용자사업
 - 예산안: 100억원(전년 동)
 - 전원개발용자사업은 발전사업자에게 장기 저리로 용자금을 제공하여 전원개발사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전원개발촉진 및 전력공급능력 확보를 통한 전력수급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임

〈 전원개발용자사업의 기금운용계획안 현황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09 계획(A)	2010 계획안(B)	증감 (B-A)	(B-A)/A
전원개발용자	10,000	10,000	-	-

자료: 지식경제부, 「201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2009. 10.

[현안 검토]

- 지원대상, 동 사업 규모가 전원개발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전원개발용자사업의 실효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의 계속 추진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동 사업의 지원대상은 대부분 한전 자회사 등 민간에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대기업이므로 지원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려움
 -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동 사업을 통한 지원금이 전원개발투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8%에 불과하여 동 사업이 전원개발투자금 조달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또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여유자금 감소로 용자사업 예산안을 2010년에 69.4% 축소하였는바, 예산이 전액 또는 대폭 감액된 타 사업과 비교하여 볼 때, 동 사업을 계속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2010년 전력산업기반기금 용자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09년 계획액(A)	2010년 계획안(B)	증 감	
			B-A	%
신재생에너지 보급용자	74,000	20,000	△54,000	△73
전력수요관리용자	14,000	-	△14,000	△100
전원개발용자	10,000	10,000	-	-
농어촌전화사업용자	30	-	△30	△100
계	98,030	30,000	△68,030	△69.4

자료: 지식경제부, 「201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2009.10.

[자 료] 국회예산정책처, 「전원개발용자사업 예산의 감액 조정 필요성」, 『예산안 분석 III』, 2009. 11.

[담 당] 이화실 예산분석관(788-4628)

[개 요]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와 지방비 매칭으로 수행
 - 예산안: 3,232억원(전년대비 13.9% 감)
 - 사업추진방식 : 자치단체보조 및 출연
 -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 KIAT, 테크노파크 등
 - 사업기간 : 1999~계속
 - 총사업비 : 6조 3,468억원(국비 3조 4,703억원)
-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한 지역별 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인프라, 인력양성, 기술지원, R&D 등)함으로써 지역혁신체제(RIS)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09	2010안	전년대비	
			증가액	증가율
4+9지역진흥사업	299,551	292,295	-7,256	-2.4
혁신산업기반구축	37,432	-	-37,432	-100.0
지방기술혁신사업	21,100	18,038	-3,062	-14.5
테크노파크조성사업	17,508	12,950	-4,558	-26.0
합 계	375,591	323,283	52,308	-13.9%

자료: 지식경제부

[현안 검토]

-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은 기반시설투자가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향후 기업지원 서비스가 증가할 전망에 있어 사업의 추진체계 및 성과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필요함

-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의 총사업비는 중앙정부의 국비와 지방정부의 지방비로 구성됨
- 국비는 건축비나 장비구입과 같은 기반시설구축에 한정되었고 지방비는 운영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협약한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부담이 커진다는 점에서 지역특화센터 및 테크노파크의 성과평가를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함
- 건축물과 시설물에 대한 지원이 끝난 지역특화센터 중 기술지도 및 자문 성과도 저조하거나 운영비가 자체수입액을 초과하는 센터가 다수 있음
 - 기업 입주율이 50%가 안되는 센터가 7개소임 (운영중인 센터의 11.7%)
 - 입주한 기업이 3개 이하인 센터가 12개소임 (운영중인 센터의 20%)
 - 지역의 기술거점역할을 해야하는 지역특화센터의 기술자문건수가 연간 10건 미만인 센터가 10개소 (운영중인 센터의 15.9%)
 - 장비가동율이 20%이하인 센터가 12개소임 (운영중인 센터의 18.2%)
 - 운영비 보조가 필요한 센터가 20개소임 (자료제출 기관의 45.5%)
 - 인건비 보조가 필요한 센터가 34개소임 (자료제출 기관의 77.3%)
- 지역특화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자체수입액이 운영비와 시설의 감가상각분을 초과하여 시설물의 교체비용을 충당할 수 있어야 하나, 상당수 특화센터가 운영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음
 - 2008년 전체 지역특화센터 운영비 보조는 82억원, 인건비 보조는 150억원에 달함
 - 전남의 특화센터는 2008년 운영비와 인건비로 62억원을 지출했으나 자체수입금은 8억원에 불과함
 - 경북의 특화센터는 2008년 운영비와 인건비로 53억원을 지출했으나 자체수입금은 4억원에 불과함
 - 운영비를 재정으로 충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센터가 지역기업에 실질적인 필요가 있다는 평가결과에 기초해야하므로 향후 지역특화센터의 운영 실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센터별 기능 및 역할에 제고가 필요함

- 지방기술혁신사업(총사업비 1,645억원)은 산·학·연 공동연구개발과제 및 지역 성장동력 제고를 위한 첨단산업기술개발을 지원을 목적으로 함에도 기술개발실적이 저조함
 - 지역연구개발클러스터구축사업(157억원/2010년)의 최근 3년간 국외특허등록이 1건에 불과함. 국내특허등록은 84건이나 이 역시 연구개발규모가 작은 지자체주도연구개발지원사업(23억원/2010년)의 105건보다 성과가 작음
 -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내 연구개발사업은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R&D)과 지방기술혁신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동일한 사업내에서 별도의 연구개발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은 운영의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연구개발사업과 지방기술혁신사업을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지역특화센터와 테크노파크의 건립과 장비구축에 총 예산의 51%가 기반시설에 투자되었으므로 향후 기반시설구축 완료로 사업비가 줄어들어 드는 것은 동 사업이 도입된 초기부터 예정되었던 사항임
 - 계획된 기반시설 완료후에도 예산규모가 지속되지 않도록 엄정한 관리가 필요함
 - 기반시설구축은 2010년부터 혁신산업기반구축이 종료되고 기존의 지역진흥사업에서도 향후 1~2년이내 계획된 설비가 구축되므로 추가사업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전체 사업규모는 지금의 2/3수준으로 줄어든 연 2천억원 상당 규모가 될 것임

[자 료] 국회예산정책처,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평가」, 2009. 11

[담 당] 허가형 사업평가관(788-4679)

[개 요]

-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기설비의 설치상태가 공사계획 인가(신고) 내용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등 다양한 전기안전과 관련된 수수료수익을 독점적으로 누리는 것 외에 조사연구사업, 시설안전지원, 안전관리홍보, 전산인프라 구축 등의 전력기금 사업을 통하여 수익 발생
-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출연금은 2004년 이후 사업의 범위 확대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 예산안은 103억원
 - 2010년 예산안은 시설안전관리사업 1,815백만원, 전기안전관리홍보사업 2,900백만원, 긴급출동 고충처리 2,479백만원, 주기별점검 등 510백만원, 영유아 보육시설 개선사업 1,815백만원, 전산인프라구축 807백만원 등으로 구성

〈한국전기안전공사 정부출연금〉

(단위: 백만원)

	2010안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출연금	10,326	11,926	11,743	9,084	6,986	6,000	5,664

자료: 한국전기안전공사 2004~2008년 감사보고서.

[현안 검토]

- 한편 공사는 전기안전과 관련하여 일정부분 독점권을 부여받아 사업을 영위함으로 인하여 최근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익이 발생

〈한국전기안전공사 경영실적〉

(단위: 백만원)

	2008	2007	2006	2005	2004
사업수익	225,166	207,379	191,210	173,590	172,590
당기순이익	19,660	6,844	2,032	871	△409

자료: 한국전기안전공사 2004~2008년 감사보고서.

- 사업수익 등의 확대에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흐름으로 유형자산 투자와 차입금 상환 등 재무활동에 자금을 집행하여도 현금의 순증가가 최근 3년 동안 95억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현금흐름〉

(단위: 백만원)

	2008	2007	2006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9,182	25,483	16,59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0,358	△16,282	△7,733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000	△5,920	△7,500
현금의 증감	4,824	3,281	1,359
기 초 현금	15,897	12,706	9,837
기 말 현금	20,811	15,987	11,196

자료: 한국전기안전공사 2004~2008년 감사보고서.

- 정부로부터 제공받는 독점권은 일종의 간접적인 정부지원이며, 이를 통하여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고도 현금성자산이 남는 상황에서 기금사업 수행에 따른 사업비를 모두 예산요구액으로 반영하는 것은 과다함
 - 예산당국과 관계부처는 공사에 대한 출연금예산 지원 시, 공사의 독점적 위치로 인하여 벌어들이는 수익, 당기순이익의 규모 및 안정적인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출연금이 과다하게 편성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자 료] 국회예산정책처, 「공공기관 정부지원예산 적정성 평가」, 2009. 11

[담 당] 이은경 사업평가관(788-4671)

[개 요]

- 중소기업청 일반회계로 수행
 - 예산안: 22억원(전년대비 8.3% 감)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사업기간 : 2004~계속
- 지방중소기업청의 시험·연구장비를 보강 및 확충하여 전면적인 이용 개방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4년 도입하였고 2005년 이후 124억원이 투자됨
 - 지방중기청의 시험·연구장비를 국제규격 수준의 시험방법에 부합되게 확충, 지방중소기업의 장비부족 애로를 해소하고자 추진
 - 중소기업의 R&D 및 도입장비 공동활용 촉진을 위해 지방청의 장비 이용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하였으며 경기 침체로 중소기업 연구개발 및 보유 장비 공동활용 극대화를 위해 지방중기청의 장비이용 수수료를 2011년 6월까지 면제함

〈지방청 시험평가 기능고도화 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09	2010안	전년대비	
			증가액	증가율(%)
지방청 시험평가기능 고도화	2,400	2,200	-200	-8.3

자료: 중소기업청

- 2010년 예산은 11개 지방중소기업청에 환경·안전·신뢰성 분야의 시험 분석 연구장비 보강 및 확충에 활용할 예정임
(산출내역 : 2,200백만원 = 100백만원/대 × 22대)
 - 현재 772대의 시험장비를 운용하고 있으며 사용연수 10년 이상의 노후장비는 353대로 전체의 44%에 해당하여 장비의 교체를 위해서는 2008~2010년동안 150억원 규모의 예산투입이 필요하다고 추정함

[현안 검토]

- 중소기업청의 장비 대여 및 시험평가기능은 지역전략산업지원기관과 중복 가능성이 있음
 - 중소기업청은 지방중기청의 시험평가기능을 시험분석, 장비이용, 성능 인증으로 소개하고 있으나 이는 테크노파크나 지역특화센터, RIC, 지자체연구소의 기능과 중복의 소지가 있음
 - 지방 중기청의 소재지가 통상 산업집적지라기 보다는 지역의 시·도청 소재지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의 장비 활용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실제로 시간이 지날수록 실적이 감소함
- 사업의 성과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드는 경향이 있음
 - 장비를 활용한 시험·연구개발 등의 지원실적이 2005년에는 13만 3,629건이었으나 2008년에는 10만 4,372건으로 줄었으며 2009년 상반기 실적은 2008년의 42%에 불과하여 2009년 성과도 전년 보다 낮을 것으로 추정됨
 - 장비이용실적은 2006년 12만 3,649건에서 2007년 15만 6,161건으로 다소 증가했으나 2008년에는 12만 2,732건으로 다시 감소함

< 지방중기청 시험평가사업의 성과 >

(단위: 건)

	2005	2006	2007	2008	2009.6
시험·연구개발 지원실적	133,629	131,627	117,613	104,372	44,113
장비이용실적	n.a	123,649	156,171	122,732	n.a.

자료: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청에서 제출한 2010년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동 사업의 성과지표를 ‘시험연구장비활용지원건수’로 정하면서 목표치를 7만건으로 잡았으나, 이는 2008년의 시험연구개발지원실적이 10만건이었고 이후 46억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됨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목표가 낮음

〈 중소기업청의 기술개발인프라구축사업의 성과목표 〉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20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007	2008	2009	2010			
시험연구장비 활용지원 (건)	-	-	-	7만	최근 3년간 지원건수를 참고하여 7만건을 목표치로 설정	‘10년도 설비이용 건수	자체 조사

자료: 중소기업청 2010년 성과계획서

- 전체 장비의 44%가 노후 장비임에도 수수료를 받고있지 않아 장비 구입 및 운영이 예산으로만 충당됨. 이 경우 설비의 경쟁력이 지속 떨어지게 됨

〈 지방청의 장비 구입내역 〉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9	계
실적	신청	68	42	38	32	21	201
	지원	68	42	38	32	19	199

자료: 중소기업청

- 지방청 시험인증기능을 전문화하거나 관련 지역내 기술거점기관으로 통합 이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지방청 시험평가기능은 연구개발기능보다는 공공기관으로서 시험인증 기관으로의 성격이 큼. 하지만 11개 지방청이 모두 시험인증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은 아니며 부산, 대구, 광주, 경기, 대전 등 일부 지방청만 (국내공인)자격요건을 갖춘

- 지방청에서 지역내 모든 산업부문의 제품에 대한 시험평가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지역내 주력산업의 경우 시험연구개발 및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지역전략산업지원기관이 있음
- 지역내 관련기술거점기관인 TP나 지역특화센터, RIC 등으로 설비를 이관·통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히 광역시의 경우 지리적으로도 지방청과 지역전략산업지원기관이 근접하므로 중복의 소지가 높음

[자 료] 국회예산정책처,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평가」, 2009. 11

[담 당] 허가형 사업평가관(788-4679)

II. SOC 분야

- SOC 분야 2010년도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대비 0.3% 증가한 24조 8,074억원임
 - 수송·교통 부문이 15.1% 감소한 반면 지역개발부문이 68.6% 증가하였음

〈 SOC 분야 2010년도 예산안 현황 〉

(단위: 억원, %)

	2009 (A)	2010안 (B)	증 감	
			(B-A)	(B-A)/A
수송·교통	201,925	171,353	-30,572	-15.1
도로	94,731	78,065	-16,666	-17.6
철도	47,454	40,672	-6,782	-14.3
도시철도	15,898	11,382	-4,516	-28.4
해운·항만	21,298	18,350	-2,948	-13.8
항공·공항	592	656	64	10.8
물류 등 기타	21,952	22,228	276	1.3
지역개발	45,512	76,721	31,209	68.6
수자원	22,657	52,615	29,958	132.2
지역 및 도시	14,047	15,891	1,844	13.1
산업단지	8,808	8,216	-592	-6.7
합 계	247,436	248,074	638	0.3

주: 2009년도는 본예산 기준임

자료: 대한민국정부, 「2009 ~ 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09.

- SOC 분야의 재정지출 규모는 2009년 24.7조원에서 2013년 26.7조원으로 향후 5년간 연평균 2.0%의 증가율을 보임
 - 부문별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수송·교통부문이 1.6%, 지역개발부문이 3.6%로, 수송·교통부문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저조

- 같은 기간 R&D 분야(10.5%), 보건·복지·노동 분야(6.8%) 뿐만 아니라 정부 총지출 증가율 4.2%와 비교해도 SOC 분야의 재정지출 규모 증가율은 낮은 편임

〈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SOC분야 투자계획 〉

(단위: 억원,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연평균 증가율
수송·교통	201,925	171,353	179,258	195,523	214,929	1.6
도로	94,731	78,065	80,884	85,893	91,440	-0.9
철도	47,454	40,672	43,323	49,535	56,847	4.6
도시철도	15,898	11,382	11,924	12,935	14,579	-2.1
해운·항만	21,298	18,350	19,094	20,625	22,622	1.5
항공·공항	592	656	697	789	923	11.7
물류 등 기타	21,952	22,228	23,337	25,746	28,517	6.8
지역개발	45,512	76,721	73,966	63,541	52,393	3.6
수자원	22,657	52,615	48,454	35,254	20,699	-2.2
지역 및 도시	14,047	15,891	16,745	18,836	21,286	11.0
산업단지	8,808	8,216	8,767	9,451	10,408	4.3
SOC 분야	247,436	248,074	253,224	259,064	267,322	2.0

자료: 대한민국정부,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09. 10.

- 정부의 재정운용 정책방향은 SOC 재정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SOC 부문간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할 계획임
 - 녹색성장을 위한 수자원·철도 부문에 중점 투자하고, 경제위기에 따라 한시적으로 지원되었던 사업은 실효성을 검토하여 조정할 계획임
 - 시급성이 낮은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핵심 사업을 선정, 완공위주로 중점 투자하여 재정지출을 효율화해 나갈 계획임
 - SOC 투자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공기업·민간투자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하는 재정투자 보완대책도 병행 추진할 계획임

- 정부는 국내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2009년도 수정 및 추경예산을 통해 한시적으로 급증한 SOC 재정투자 증가율을 적정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부문간·부문 내 투자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재원을 배분 하려는 것으로 보임
- 총지출에서 SOC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8.7%에서 2013년 8.0%로 지속적으로 감소할 계획임

< SOC분야 중기재정지출 규모(2009~2013년) >

(단위: 조원,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연평균 증가율
정부 총지출(A)	284.5	291.8	306.6	322.0	335.3	4.2
SOC분야 재정지출(B)	24.7	24.8	25.3	25.9	26.7	2.0
SOC분야 재정지출 비중(B/A)	8.7	8.5	8.3	8.0	8.0	-

자료: 대한민국정부,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09. 10.

- 향후 SOC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인 점을 감안하면, SOC 투자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분석 기법과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각 부문 및 세부 부문간 효율적인 자원배분 계획을 수립하고 면밀한 성과분석을 통해 SOC 재정투자의 성과를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음

[자 료] 국회예산정책처, 「주요분야의 재정운영계획 평가」, 『NABO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2009. 11.

[담 당] 양성선 예산분석관(788-4629)

[개 요]

- 철도자동화시설지원사업은 철도공사의 인력운영의 효율화를 통하여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도록 하기 위하여 철도시설의 자동화·현대화 비용을 철도공사에 지원하는 사업임
 - 예산안: 1,000억원(전년대비 동일)
 - 지원형태는 민간자본보조(국고보조를 100%)이고, 정부는 한국철도공사에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 동안 총 5,277억원을 지원할 계획
 - 2010년 예산안은 역운영 효율화, 안내업무 자동화, 지선구간운전취급 집중화 등 10개 세사업에 1,000억원이 편성

〈2010년도 철도자동화시설지원사업 예산안〉

(단위: 억원, %)

	2009	2010안	전년대비	
			증가액	증가율
철도자동화시설지원	1,000	1,000	0	0.0

자료: 국토해양부, 「2010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2009. 10.

[현안 검토]

- 철도공사의 경영실적 추이를 보면, 공사출범 초기인 2005년도와 2006년도에는 각각 6,062억원, 5,26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나, 2007년에 당기순이익이 1,333억원이 발생하여 흑자로 전환되었고, 2008년에 5,140억원으로 증가하였음

- 2009년도에도 1조 620억원의 흑자가 추정되고 향후에도 흑자경영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동 사업은 한국철도공사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성된 사업으로 동 사업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음

〈한국철도공사의 당기순이익 추이(2005~2009년)〉

(단위: 억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계획	추정
당기순이익	-6,062	-5,260	1,333	5,140	9,040	10,620

자료: 한국철도공사, 2009. 10

- 철도공사의 용산역세권 개발, 자산매각 등 지속적인 자구개선 노력에 따라 흑자경영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임에도 국가재정으로 철도공사의 인력운영 효율화를 지원하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철도공사의 흑자 확대를 감안하여 향후 철도공사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은 적정규모로 축소조정 되어야 할 것임. 동 사업의 국고지원 비율을 현재 100%에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철도공사에 대한 합리적인 경영분석 등을 통해 정부가 철도공사에 지원해야 할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재정지원의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 재정립이 필요

[자 료] 국회예산정책처, 「철도공사의 흑자전환에 따라 철도자동화시설지원사업 재검토 필요」, 『예산안 분석 III』, 2009. 11.

[담 당] 양성선 예산분석관(788-4629)

[개 요]

- 원주~강릉 복선전철사업은 중부~동부간을 횡축으로 하는 철도망(원주~강릉간 120.0km)을 건설하는 사업임
 - 예산안: 260억원(전년대비 30% 증)
 - 지원형태는 철도시설공단에 출연(국고 100%), 총사업비는 1조 8,652억원임
 - 동 사업을 2010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사유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는 민자적격성조사와 사업추진방식(재정 또는 민자) 결정 결과에 따라 재정사업으로 결정시 실시설계 추진을 위한 소요액을 반영한 것으로 설명

〈2010년도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 예산안〉

(단위: 억원, %)

	2009	2010안	전년대비	
			증가액	증가율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	200	260	60	30.0

자료: 국토해양부, 「2010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2009. 10.

[현안 검토]

- 동 사업의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을 보면, 당초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2007년 5.2%, 2008년 0.0%, 2009년 9월말 현재 0.7%에 불과하여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극히 부진함
 - 동 사업은 2009년 11월 현재 민자적격성조사가 진행 중으로 사업추진방식(민자 또는 재정사업)이 결정되지 않아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하였음

〈최근 3년간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 도	예산액 (A)	전년이월	전용 (조정)	예산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
2007	10,000	-	(-9,482)	518	518	5.2
2008	1,000	-	(-1,000)	0	0	0.0
2009.9월말	20,000	-	-	20,000	145	0.7

자료: 국토해양부, 2009. 10

- 향후 민자적격성조사 결과, 사업추진방식이 재정사업으로 결정시 노반 실시설계 착수 지연으로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대규모 이월이 불가피 하고, 민자사업으로 결정시 사업추진절차상 금년 내 집행소요가 없으므로 타 사업비로 조정하여 집행할 것으로 전망됨
- 동 사업의 2010년도 예산안은 사업추진방식(민자 또는 재정)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사업으로 결정될 경우를 가정하여 실시설계비 260억원이 계상되었음
 - 향후 예산안 심의 전까지 동 사업의 사업추진방식이 결정되면 그 결과에 따라 2010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2009년 11월 현재 진행 중인 민자적격성조사 결과, 민자사업으로 결정될 경우 민자추진 절차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민자협상에 1년 이상 소요되므로 2010년에는 협상 등에 따른 부대비용만이 소요될 것이고, 재정사업으로 결정될 경우 2009년도 실시설계비 이월예상액을 감안하여 조정이 필요함

[자 료] 국회예산정책처, 「일반철도 건설사업의 사업추진 여건을 감안한 적정 예산편성 필요」, 『예산안 분석 III』, 2009. 11.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의 과도한 예산 계상」,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2009. 11.

[담 당] 양성선 예산분석관(788-4629)

[개 요]

- 소사~원시 복선전철사업은 경인선, 수인선 등 동서로 계획된 수도권 전철의 연계수송을 위한 남북연결 노선(소사~원시간 23.1km)을 건설하는 사업임
 - 예산안: 300억원(2,900% 증)
 - 지원형태는 철도시설공단에 출연(국고 100%), 사업기간은 2003~2014년, 총사업비는 1조 8,883억원임
 - 2010년 예산안이 대폭 증가한 사유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는 2009년 말 민자협상을 완료하고 2010년 용지매수 및 본격적인 공사 착공을 위해 용지매입비를 반영한 것으로 설명

〈2010년도 소사~원시 복선전철사업 예산안〉

(단위: 억원, %)

	2009	2010안	전년대비	
			증가액	증가율
소사~원시 복선전철	10	300	290	2,900.0

자료: 국토해양부, 「2010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2009. 10.

[현안 검토]

- 소사~원시 복선전철사업의 최근 2년간 예산집행 실적을 보면, 당초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2008년 9.0%, 2009년 9월말 현재 7.3%에 불과하여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하였음

- 동 사업의 2009년도 집행부진 사유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는 동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이나, 민자협상 지연으로 용지매입 착수가 불가능함에 따라 미집행 예정액을 타 사업비(덕소-원주 복선전철)로 조정하여 집행한데 기인한 것으로 설명

〈최근 2년간 소사~원시 복선전철사업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 도	예산액 (A)	전년이월	전용 (조정)	예산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
2008	1,000	-	(-910)	90	90	9.0
2009.9월말	1,000	-	(-820)	180	73	7.3

자료: 국토해양부, 「2010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2009. 10.

- 이와 같이 민자협상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예산을 계상하고, 그 대부분을 타 사업으로 전용-조정한 것은 부적절한 예산편성임.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추진 여건을 고려하여 집행가능성을 감안한 예산편성을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임

〈연도별 소사~원시 복선전철사업 집행부진 사유〉

(단위: %)

연 도	집행률	집행부진 사유
2008년	9.0	우선협상대상자 협상 및 실시계획 승인 등 사업추진 일정 상 용지매입 불가
2009년 9월말	7.3	'09.11월 실시협약체결 예정으로 BTL 추진일정 상 금년 용지비 집행 곤란하여 미집행이 예상되는 용지비를 타 사업비로 조정하였음

자료: 국토해양부, 2009. 10.

- 동 사업은 2008년 8월에 민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었으나 민자협상이 지연된 바, 향후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 실시협약 체결,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실시계획 승인 등 추진일정을 감안하면, 2010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용지매입비 300억원의 연내 집행가능성이 불투명하므로 일부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자 료] 국회예산정책처, 「일반철도 건설사업의 사업추진 여건을 감안한 적정 예산편성 필요」, 『예산안 분석 III』, 2009. 11.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사~원시 복선전철사업의 과도한 예산 계상」,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2009. 11.
[답 당] 양성선 예산분석관(788-4629)

[개요]

- 2010년도 일반국도 건설 예산안은 8,215억원으로, 2009년 예산액 1조, 1,340억원보다 27.6%에 해당하는 3,125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예산안: 8,215억원(전년대비 27.6% 감)
 - 일반국도 건설의 구체적 내역은 시설비 6,180억원, 용지비 1,125억원, 감리·설계비 등 910억원임.

〈2010년도 일반국도건설 예산안〉

(단위: 억원, %)

	2009	2010안	전년대비	
			증가액	증가율
일반국도건설	10,144	7,305	-2,839	-28.0
일반국도건설지원(조사설계)	1,196	910	-286	-23.9
합 계	11,340	8,215	-3,125	-27.6

자료: 국토해양부, 「2010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2009. 10.

[현안 검토]

- 2010회계연도 일반국도 건설을 위한 설계비는 기본조사 설계비 369억원, 실시설계비 222억원 등 591억원이 편성되었음. 이러한 설계비는 총액으로 편성되어 예산안 편성 및 심의 단계에서는 구체적 집행 내역을 알 수 없는 실정임
 - 정부는 예산연도 1~3월에 당해연도의 일반국도 설계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국도를 포함한 도로 건설에 있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실시는 해당 도로건설사업의 확정을 의미하므로, 동 예산의 세부내역을 명기하지 아니하는 것은 기본·실시설계 대상인 해당 국도건설의 예산심사를 불가능하게 하여 국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제약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따라서 예산편성 단계에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대상 국도사업을 선정하여 예산내역을 명시함으로써 국회에서 일반국도 건설관련 예산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심사과정이 객관화·투명화 될 수 있어야 할 것임

[자 료] 국회국토해양위원회, 「일반국도 설계비 예산편성 개선 필요」,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09. 11.

[담 당] 양성선 예산분석관(788-4629)

[개 요]

- 항만시설 유지보수는 노후화된 항만시설을 적기에 유지·보수하여 항만 기능을 유지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임
 - 예산안: 1,515억원(전년대비 18.4% 감)
 - 2010년도 예산안은 운영비, 민간대행 등의 비총액계상사업²⁾ 174억원과 유지보수비 전반에 대하여 계상한 총액계상사업 1,341억원 등 총 1,515억원임

〈2010년도 항만시설 유지보수 예산안〉

(단위: 억원, %)

	2009	2010안	전년대비	
			증가액	증가율
비총액계상	175	174	-1	-0.5
총액계상	1,682	1,341	-341	-20.3
합 계	1,857	1,515	-342	-18.4

자료: 국토해양부, 「2010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2009. 10.

[현안 검토]

- 항만시설유지보수사업(총액계상)의 최근 4년간 예산집행실적을 보면,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75.9%~85.1%에 그치고 있고 매년 전용·불용 및 대규모 이월(이월률 13.5~15.8%)이 반복되고 있음

2) 항만시설유지보수는 전부 총액계상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었으나, 국회의 200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에 따라 수요예측이 가능한 일부 비목(관서운영비, 용역비, 감문위탁사업비 등)의 사업은 2006년부터 총액계상 예산사업에서 제외하여 별도 비목(비총액계상)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음

- 특히 매년 이월과 불용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7년 이후에는 타사업 전용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바, 이는 당초 예산이 실소요액보다 과도하게 편성된 데 따른 것으로 보임

〈최근 4년간 항만시설유지보수사업(총액계상)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 도	예산액	전년 이월	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2006	119,082	11,569	1,543	132,194	112,530	16,161	1,784	85.1
2007	128,444	16,161	-1,683	142,922	108,525	22,585	11,812	75.9
2008	120,631	22,584	-15,824	127,391	104,884	18,133	4,374	82.3
2009. 9말	168,221	18,133	-480	185,874	94,016			50.6

자료: 국토해양부, 2009. 10.

- 동 사업은 매년 집행액이 1,000억 내지 1,100억원 수준인데 2010년에 특별히 추가적인 소요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1,340억원을 편성한 바,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동 사업의 내역 중 본부에 편성된 긴급보수비³⁾의 연도별 편성 및 집행현황을 보면, 태풍피해가 크게 발생한 해에도 32억원 수준에 불과하며, 2008년과 2009년 9월말까지 긴급보수비 전액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
 - 사용하지 못한 긴급보수비는 연도 말에 각 지방항만청에 배정함으로써 결국 불용되거나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등 무리한 예산집행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바, 긴급보수비를 현실에 맞게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3) 태풍 등 기상이변에 따른 항만시설 피해 발생 시 긴급복구를 위해 본부에 일정액을 편성함.

〈긴급보수비의 연도별 편성 및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 예산액(교특-총액)	131,184	119,082	128,444	120,631	168,221
- 긴급보수비 편성	10,006	10,203	14,224	17,396	12,845
- 긴급보수비집행	3,228	2,853	602	-	-

자료: 국토해양부, 2009. 10.

- [자 료] 국회예산정책처, 「항만시설유지보수비의 연례적인 과다이월을 감안한 예산편성 필요」, 『예산안 분석 III』, 2009. 11.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지보수(총액): 연례적 과다 편성으로 인한 실집행 저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2009. 11.
 [담 당] 양성선 예산분석관(788-4629)

[개 요]

- 해양 및 수자원관리사업은 국토보존 및 쾌적한 연안환경 조성을 위한 연안정비사업,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해양쓰레기정화사업 및 해양관광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해양관광자원시설지원사업 등 3개의 세 사업으로 구성
 - 예산안: 474억원(전년대비 8.2% 증)
 - 지원형태는 자치단체보조이고, 국고보조 비율은 연안정비사업은 70%, 해양쓰레기정화, 해양관광자원시설지원사업은 50%임
 - 해양관광자원시설 지원사업은 지자체의 해양관광 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0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23.0%가 증가한 162억원이 편성

〈2010년도 해양 및 수자원관리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09	2010안	전년대비	
			증가액	증가율
연안정비	28,986	28,309	-677	-2.3
해양쓰레기정화	1,672	2,900	1,228	73.4
해양관광자원시설지원	13,189	16,217	3,028	23.0
합 계	43,847	47,426	3,579	8.2

자료: 국토해양부, 「2010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2009. 10.

[현안 검토]

□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예산편성 필요

- 해양 및 수자원관리사업의 예산 과목구조를 보면, 2009년까지는 연안환경관리사업(연안정비, 해양쓰레기정화)과 해양관광자원개발사업(해양관광자원시설조성) 등 별도의 프로그램 및 단위사업으로 편성되었으나, 2010년 예산안은 해양환경보전 프로그램의 해양 및 수자원 관리 단위사업 내의 1개의 세부사업으로 통합되어 편성됨

〈해양 및 수자원관리사업의 예산과목구조 변경〉

구 분	예 산 체 계
총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환경보전 프로그램(1000) - 연안환경관리 단위사업(1060) - 연안정비(301), 해양쓰레기정화(301) 세부사업 ○ 해양정책및영토관리 프로그램(2000) - 해양관광자원개발 단위사업(2060) - 해양관광자원시설조성 세부사업(300)
변경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환경보전 프로그램(1000) - 해양 및 수자원관리 단위사업(1060) - 해양 및 수자원관리 세부사업(300)

자료: 국토해양부, 2009. 10.

- 해양관광자원개발(해양관광자원시설지원)은 해양관광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연안환경관리(연안정비 및 해양쓰레기정화)와는 정책목표와 사업성격이 다른 사업임
- 그런데 이들 사업을 동일 프로그램 및 단위사업으로 통합하여 편성하는 것은 동일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사한 사업들을 묶어 예산을 편성하는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종전과 같이 별도의 프로그램과 단위사업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임

□ 해양관광자원시설지원사업의 연례적인 집행실적 부진

- 동 사업의 사업시행주체인 지자체의 최근 연도의 예산집행 실적을 보면,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2.6~42.1%에 불과하고 매년 과다 이월이 반복되고 있음
 - 동 사업의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사업시행주체인 지자체의 행정절차 (인·허가 등) 이행 및 실시설계 지연에 따라 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파악됨

〈연도별 해양관광자원시설지원사업의 지자체 실제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국토해양부				지자체 실제 집행실적					
연 도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률 (B/A)	교부액	전년 이월	예산현액 (C)	집행액 (D)	이월	집행률 (D/C)
2005년	3,070	3,070	100	3,070	-	3,075	80	2,990	2.6
2006년	7,900	3,450	43.7	3,450	2,990	10,890	545	10,345	5.0
2007년	9,100	9,100	100	4,650	10,345	14,995	3,643	11,352	24.3
2008년	4,175	4,175	100	4,175	11,352	15,527	6,530	8,997	42.1
2009.8말	13,189	11,639	88.2	11,639	8,997	20,636	8,410	-	40.8

자료 국토해양부, 2009. 10.

- 동 사업의 연례적인 집행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23.0%가 증가한 162억원(신규 11개소, 계속 11개소)이 계상됨
- 동 사업의 집행률을 제고하고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전년도 예산집행 실적과 사업계획 및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 사업진행상황과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전절차가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지자체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월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자 료] 국회예산정책처, 「해양 및 수자원관리사업의 부적정한 예산안 편성」, 『예산안 분석 III』, 2009. 11.

[답 당] 양성선 예산분석관(788-4629)

[개 요]

- 지방도로의 구조 및 시설을 개선함으로써 교통사고 사망자 및 부상자수를 줄이고 교통안전수준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2010년 예산안: 2,521억원(전년대비 8.4%증가)
 - 지방도로구조개선사업을 구성하는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안전한보행환경개선사업 등 4개 사업의 예산안 총액임
 -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은 일정기준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지점을 선정하여 문제점을 개선하는 사업
 -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은 지방관리도로의 굴곡부, 급커브, 급경사, 노폭 협소구간 등 불합리한 도로구조를 개선하는 사업
 -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방지시설,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하는 사업
 - 안전한보행환경조성사업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도 신증설, 안전횡단 시설개선, 가로환경 정비, 부체도로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

〈2010년도 지방도로구조개선사업 예산〉

(단위: 억원, %)

	2009	2010안	전년대비	
			증가액	증가율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	180	171	△9	△5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910	865	△45	△4.9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736	835	99	13.5
안전한보행환경조성사업	500	650	150	30
합 계	2,326	2,521	195	8.4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현안 검토]

- 첫째, 객관적인 교통통계에 입각하지 않거나 불합리한 기준에 따라 사업 대상지역이 선정되고 있어 이를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음
 - 사업선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객관적인 통계에 입각하여 사업 대상지역의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업 대상 지역의 적합성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 둘째, 사업 대상지역의 중복가능성으로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중복가능성에 대한 각별한 검토가 필요함
 - 안전해보행환경조성사업과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이 국토해양부의 교통약자보행편의구역사업과 중복가능성이 있고 지방도로구조개선 4개 사업 간에도 사업 대상지역의 중복가능성 있어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음
- 셋째, 교통통계 정보에 대한 접근이 자유롭지 않고 정보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업추진주체 간 긴밀한 정보공유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 넷째, 성과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환류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사고유형별 개선방안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에 대한 효과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다섯째,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용효과적인 사업에 재원이 우선배분 될 수 있도록 예산투자 원칙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 지방도로구조개선 4개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여 보다 비용효과적인 사업에 재원이 우선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도와 지방도로로 이원화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통합추진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지방도로구조개선 4개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현재와 같이 국도와 지방도로로 이원화하여 도로구조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방식과 국도와 지방도로를 통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 중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 사업방식인가를 검토하여 관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음

[자 료] 국회예산정책처, 「지방도로구조개선사업 평가」, 2009. 11.

[담 당] 여차민·고성철·박제성 평가관(788-4751)

Ⅲ. 농림수산물식품 분야

- 농림수산물분야의 2010년도 세출예산안은 2009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2.1% 증가한 17조 2,274억원임
- 부처별 예산안을 보면 농림수산물부의 경우 2009년도 대비 0.1% 증가한 14조 6,434억원, 농촌진흥청의 경우 2009년도 대비 44.1% 증가한 9,098억원, 산림청의 경우 2009년도 대비 5.7% 증가한 1조 6,086억원이 편성되었음
 - 농촌진흥청의 예산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농촌진흥청의 이전비용 2,482억원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임

〈농림수산물분야의 2010년도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2009년 예산	2010년 예산안	전년대비 증감	
			증감액	증감률
농림수산물부	146,363	146,434	71	0.1
예산	97,277	95,985	△1,292	△1.3
기금	49,086	50,449	1,363	2.8
농촌진흥청	6,315	9,098	2,783	44.1
산림청	15,220	16,086	866	5.7
기타(영어자금 등)	848	656	△192	△22.6
농림수산물분야 합계	168,746	172,274	3,528	2.1

주: 기타는 농축산경영자금, 영어자금 등 농수산물분야의 공자기금과 산림청의 복권기금 등임.

자료: 1. 농림수산물부, 「20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2009.10.

2. 농촌진흥청, 「2010년도 예산안 개요」, 2009.10.

3. 산림청, 「2010년도 예산안 개요」, 2009.10.

-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농림수산식품분야의 예산은 향후 2013년까지 연평균 1.2%로 증가할 예정임
 - 그러나 국가 총지출에서 농림수산식품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5.6%에서 2013년 5.0%로 감소할 예정임

〈농림수산식품분야 자원배분 계획〉

(단위: 억원, %)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농림수산식품 분야	168,514	172,114	174,342	191,728	176,483	1.2
농업·농촌	134,940	136,701	140,232	156,532	140,737	1.1
수산·어촌	13,507	13,805	13,499	14,025	14,074	1.0
임업·산촌	15,348	16,232	15,345	15,715	16,067	1.2
식품업	4,719	5,376	5,266	5,456	5,605	4.4

자료: 대한민국정부,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09. 10.

- 농림수산식품분야의 자원배분 계획을 보면 농어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구하기 위해 식품산업에 대하여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음
 - 농림수산식품분야의 재정규모에서 농업·농촌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80.1%에서 2013년 79.8%로 약간 감소함
 - 수산·어촌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8.0%에서 8.0%로, 임업·산촌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9.1%에서 9.1%로서 거의 동일하게 계획하고 있음
 - 한편, 식품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2.8%에서 2013년 3.2%로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자 료] 국회예산정책처,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안 현황」, 『2010년도 예산안 분석 III』, 2009. 11.

[담 당] 변재연 예산분석관(788-4630)

[개 요]

-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경영이양직접지불 사업
 - 예산안: 929억 1,300만원(전년대비 10% 증)
 - 사업기간: 1997년~계속
 - 사업시행주체: 한국농어촌공사
 - 지원조건: 민간경상보조(국고 100%)
-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은 10년 이상 장기간 농업을 경영하고 65~70세에 농업에서 조기 은퇴하는 고령농가의 은퇴 후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전업농의 영농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임

〈경영이양직접지불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09	2010안	전년대비	
			증가액	증가율
경영이양직접지불	84,497	92,913	8,416	10.0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09. 10.

[현안 검토]

- 경영이양직접지불금의 2009년 1월부터 변경된 제도에 따르면, 종전에 농지를 매도·임대차한 약정기한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업인들은 2009년도 한 해 동안 재계약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경영이양 대상 농지가 제도변경 전에는 진흥지역 ‘논’에 한정되었지만, 제도변경 후 농업진흥지역 밖에 ‘논·밭, 과수원’까지 확대되는 등 새로운 제도개선 조건을 이행하여야 하므로 기 이양 고령농업인들의 참여가 부진하여 재계약이 저조한 실정임

- 2009년 9월 30일 현재 시점에서 매매·임대한 고령농들의 재계약 체결 실적을 살펴보면, 매매의 경우 4,813ha를 계획하였지만 실적은 1,504ha로 계획대비 31.2%에 불과하고, 임대차의 경우 17,360ha를 계획하였지만 실적은 5,879ha로 계획대비 33.9%에 불과한 실정이고 월별 재계약 추이를 살펴볼 때⁴⁾ 더 이상의 체결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2009년도 재계약 체결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

(단위: ha, 백만원)

	2009년도		매매		임대차	
	면적	예산	면적	예산	면적	예산
계획	22,173	66,304	4,813	14,224	17,360	52,080
실적(2009.9.30 현재)	7,383	16,985	1,504	4,248	5,879	12,737
계획 대비 실적(%)	33.3	25.6	31.2	29.9	33.9	24.5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 2009년도 임대차 재약정 실적의 저조는 2010년도 예산안 편성내역 중 2004~2008년까지 임대차 분할지급⁵⁾ 예산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2010년도 예산안에서 2009년도 예산편성 대비 실적에서 큰 차이가 난 2004~2008년까지 임대차 분할지급 예산안은 당초 계획물량이던 15,682ha에서 9,000ha를 감한 면적만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동 면적을 감하여 2004~2008년까지 임대차 예산안 규모에서 일부 감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자 료]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영이양직접지불금의 과다편성으로 인한 일부 감액 조정」,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2009. 11.

[담 당] 변재연 예산분석관(788-4630)

4) 상반기 2~5월까지 재계약이 체결되다가 점차 감소하고 있음.

5) 2010년도 예산안 분할지급 산정시 '04~'08년까지를 기준으로 설정한 이유: 임대이양의 경우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부칙 제3조(종전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약정자에 관한 경과조치)제1항 제2호에서 임대기간을 5년으로 계산토록 규정하고 있어 보완된 제도 시행일('09.1.6) 기준 임대이양기간 5년이 끝나지 아니한 면적은 '04 이후 임대이양만 해당됨.('08년까지 일시금으로 지급)

[개 요]

□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소득보전직불사업

○ 예산안: 500억원(전년대비 25% 증)

- 발동기준: FTA 발효 후, 대상품목은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사후 지정을 하도록 하고, 발동요건은 해당품목 당년 조수입이 기준조수입⁶⁾ 이하로 하락하고, 수입량이 기준수입량 이상으로 증가할 것을 요건으로 하였음
- 지급기준은 조수입 하락분의 85%를 보전하도록 하였고, 집행기간은 한·미FTA 발효 후 7년간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지원대상은 FTA이전부터 당해 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함

□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폐업지원사업

○ 예산안: 600억원(전년대비 20% 증)

- 소득보전직불금 발동기준을 충족하는 품목에 한하여 폐업지원비를 지원함

〈소득보전직불 및 폐업지원사업 예산안〉

(단위: 억원, %)

	2009	2010안	전년대비	
			증가액	증가율
소득보전직불	400	500	100	25.0
폐업지원	500	600	100	20.0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09. 10.

-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업분야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은 단기적으로 피해보전장치를 운용하면서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서 한·미 FTA체결로 인한 급격한 수입증가 가능성에 대비하여 마련한 단기적인 피해보전장치가 피해보전직불사업과 폐업지원사업임

6) 기준조수입은 한·미FTA 발효 이전 5개년 중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조수입의 80%임.

- 소득보전직불사업은 FTA의 이행으로 인한 수입증가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생한 피해분의 일정부분을 직불금으로 보전하여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것으로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 대비 25%인 100억원이 증액된 500억원임
- 폐업지원사업은 한·미 FTA 이행으로 인해 해당품목에 대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 폐업지원 대상품목으로 선정하고 사후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대비 20%인 100억원이 증액된 600억원으로 편성되었음

[현안 검토]

- 소득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은 2009년도 현재 한·미 FTA 발효를 전제로 집행이 유보된 사업임
 - 한·미 FTA 관련 미국 내 현안 사항을 보면, 한·미 FTA 관련 자동차 문제해결 필요성이 일부 제기되고 있고, 의료보험 개혁법안 추진 등의 사유로 통상정책 수립 및 한·미 FTA 의회 심의 등 통상관련 현안은 의료보험 개혁법안 추진이 완료되는 등의 조치 이후 다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2010년도에도 그 집행이 불투명한 상황임
 - 한·미FTA 협정이 발효되더라도 국내농산물의 가격하락으로 인해 당해연도 조수입이 기준조수입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차년도에 피해발생정도를 산정·지원해야 하므로, 이러한 검토결과에 기초하여 판단할 경우 동 사업들의 2010년도 집행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2010년도에도 불용이 예상되는 소득보전직불 및 피해보전 기금계획안의 일부를 좀 더 시급한 사안으로 전환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소득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은 감액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자 료]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미 FTA 발효지연에 따른 소득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사업의 집행가능성 저조에 따른 감액」,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2009. 11.

[담 당] 변재연 예산분석관(788-4630)

[개 요]

-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
 - 예산안: 203억 1,600만원(전년대비 874.4% 증)
 - 총사업비: 1,009억원(국고보조 730억원, 용자 525억원, 지방비 114억원)
 - 사업량: 5개소, 700세대 규모, 사업기간: 2009~2011년
- 30~40대의 젊은 인력을 농어촌에 유치함으로써 지역 농산업의 핵심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쾌적하고 저렴한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임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09	2010안	전년대비	
			증가액	증가율
농어촌뉴타운 조성	2,085	20,316	18,231	8744
기본설계비	2,085	-	△2,085	순감
기반시설비	-	14,018	14,018	순증
임대·분양 주택건축비	-	6,298	6,298	순증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09. 10.

[현안 검토]

- 농림수산식품부의 2009년도 사업추진계획 대비 10월 현재 5개 지구별 사업추진현황을 보면, 계획일정보다 3~4개월 정도 지연될 것으로 보임
 - 8월까지 기본계획 및 마을정비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나 현재까지 승인을 받은 곳은 5개 지구 중 장성(9월) 한 곳임
 - 2009년도 사업공정 지연으로 인해 2010년 예산의 원활한 집행 및 효율적 사업추진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업공정 지연분에 대한 예산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범사업 5개 지구 합계 30~40대 연령층을 대상으로 700호의 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예산산출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지난 6년간 동 연령층의 귀농 추이를 보면 주택공급이 과다 산출되어 있음
 - 아래 표는 전국적으로 지난 6년간 30~49세의 귀농 추이를 나타낸 것으로서, 연도별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평균증가율이 114%인 점을 고려하면 2009년에는 약 1,170명이 귀농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전국적으로 한해 1,170명이 귀농하고 있는 것에 비해, 5개 시범지구에 건설되는 주택수는 700세대로서 과다함

〈최근 6년간 전국 귀농현황(2004~2009)〉

(단위: 명)

연령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30~39세	243	287	315	386	328	358
40~49세	402	393	565	766	699	818
합계	645	680	880	1,152	1,027	1,170

주: 2009년 수치는 평균증가율로 추계한 것임.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귀농·귀촌 종합대책」, 2009. 4.

- 농림수산식품부 주최로 2008년 4월 24~25일에 개최되었던 「제2차 시장·군수 농정워크숍」에서도 지구별 100~200세대는 무리한 계획이며, 20~30세대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음⁷⁾
- 이와 같은 상황과 더불어, 현재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이 본 사업이 아닌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사업규모를 일부 축소하여 경과를 지켜본 후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따라서 농림수산식품부는 주택공급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에 반영된 2010년 예산안은 일부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자 료] 국회예산정책처,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의 사업공정 지연과 주택 과잉공급」, 『예산안 분석 III』, 2009. 11.

[담 당] 변재연 예산분석관(788-4630)

7) 농림수산식품부, 「시장·군수 농정워크숍」, 2008. 4.

[개 요]

-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및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시군유통회사 설립·지원사업
 - 예산안: 259억 2,000만원(전년대비 18.0% 증)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보조사업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지원되는 융자사업으로 구분됨
 - 사업량: 2009년 6개소, 2010년 신규 6개소 설립·지원
- 소규모 지역농협 중심의 산지유통조직 체계에서 벗어나 규모화·전문화된 새로운 형태의 선진유통조직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임
 - 내역별로 보면, 보조사업의 경우, 2009년도에 설립된 시군유통회사 6개소의 설립초기 경영안정을 위한 법인설립자금의 2년차 분할지원액인 39억 6,000만원과 신규 6개소 설립을 위한 1년차 분할지원액인 39억 6,000만원을 합하여 79억 2,000만원이 편성됨
 - 융자사업은 신규 6개소에 대해 30억원씩 180억원이 편성됨
 - 정리하면 농림수산식품부는 6개의 신규 유통회사 설립을 위한 예산 219억 6,000만원을 편성한 것임

〈시군유통회사 설립·지원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09	2010안	전년대비	
			증가액	증가율
시군유통회사 설립(보조)	3,960	20,316	3,960	1000
시군유통회사 지원(융자)	18,000	18,000	-	0.0
합계	21,960	25,920	3,960	18.0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09. 10.

- 농림수산식품부는 내년 시군유통회사 신규 6개소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사업중단시 정부 정책의 신뢰성·일관성에 타격을 주고, 기존 6개 시군유통회사의 사업추진 동력이 급격하게 상실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현안 검토]

-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 설명 자료에서는 시군유통회사 설립·지원사업의 성과목표를 ‘6개 회사 설립’으로 단순 투입지표로서 설정하고 있음
 - 그러나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서 본 사업의 성과목표를 ‘산지 규모화·전문화를 통한 소비지에 대한 거래 교섭력 제고’로 설정하였으며, 성과지표로서는 ‘시군유통회사의 처리비중’으로 설정하고 있음
 - 시군유통회사의 처리비중 지표의 측정방식은 (시군유통회사 매출액/지역생산액)×100%이며, 2009년 목표치는 10%로 설정하고 있음
- 아래 표는 현재 운영중인 6개 유통회사의 9월 현재까지의 매출실적과 12월까지의 매출계획, 그리고 12월까지의 매출계획액의 지역생산액 대비 비중 등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나타낸 것임

〈시군유통회사별 성과지표 달성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매출실적		지역생산액 대비 비중 (A)	목표치 (B)	성과지표 달성도 (A/B)
	9월까지 실적	12월까지 매출계획			
고흥	49.6	93.6	6	10	60
보은	7.5	62.5	7	10	70
완도	18.0	72.0	5	10	50
의령	74.4	114.4	5	10	50
합천	229.1	339.1	8	10	80
화순	20.0	60.0	3	10	30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09.10.

- 우선 9월까지의 실적을 감안하였을 때 12월까지의 매출계획은 무리하게 산출한 측면이 있음

- 이렇게 산출된 12월까지의 매출계획액의 지역생산액 대비 비중조차 3~8%로서 목표치 10%보다 낮음
- 한편 2009년도 예산안 심의 당시 국회에서는 시군유통회사 설립사업의 유사중복문제⁸⁾, 시군유통회사 설립지원사업의 신중한 접근 필요⁹⁾, 유사중복으로 인한 신규사업의 중단·축소 필요¹⁰⁾ 등과 같이 신규사업 지원을 축소하고 향후 성과를 평가한 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예산을 감액 조정한 바 있음
- 이와 같은 국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는 성과계획을 제대로 달성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신규 유통회사 6개소 설립에 대한 예산안을 편성한 것은 문제임
- 또한 성과지표로서 단순 투입지표인 ‘유통회사 설립 개소수’로 설정하고 있는 것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009년도 시군유통회사 설립·지원사업 예산 조정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정부안	감액	2009 예산	부대의견
시군유통회사 설립(보조)	6,600	△2,640	3,960	10개소→
시군유통회사 지원(응자)	30,000	△12,000	18,000	6개소로 축소

자료: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9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08.12.

- 사업성과가 부진한 상태에서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따라서 2010년에 편성된 신규 유통회사의 6개소 설립·지원을 위한 예산에 대해서는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자 료] 국회예산정책처, 「시군유통회사 설립·지원사업의 성과지표 점검」, 『예산안 분석 III』, 2009. 11.,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존 산지조직의 운영현황 및 시군유통회사의 성과평가 후 확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2009. 11.

[담 당] 변재연 예산분석관(788-4630)

8) 국회예산정책처, 「2009년도 예산안 분석 II」, 2008.10.

9)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2008.11.

10)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2008.11.

[개 요]

-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 예산안: 156억 7,900만원(전년대비 62.7% 증)
 - 사업기간: 2005~2017년
 - 사업규모: 2012년까지 연간 2만ha 추진 목표
 - 지원조건(보조): 국고 70%, 지방비 30% (동계작물 100만원/ha, 하계작물 170만원/ha, 경관보전활동비 30만원/ha)
- 경관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고 경관보전활동을 통한 도농교류 및 농촌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
 - 내역별로 보면 경관협약에 따라 121억 1,000만원(전년대비 61.7% 증가)이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작물 재배 보조금’ 에, 34억 6,800만원(전년대비 65.1% 증가)이 경관 협약 마을주민에 대한 경관보전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경관보전활동 기금’ 에 편성됨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09	2010안	전년대비	
			증가액	증가율
경관보전직불제	9,640	15,679	6,039	62.7
작물재배보조금(보조)	7,490	12,110	4,620	61.7
경관보전활동기금(보조)	2,100	3,468	1,368	65.1
행정비 및 컨설팅비	50	83	33	66.0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09. 10.

[현안 검토]

- 농림수산식품부의 농림사업시행지침서(2009)에 따르면 경관보전직불제의 대상인 ‘경관작물’이란 초화류로서 경관형성이 주목적이고 효과가 우수한 작물(목본류 제외)로 정의하고 있음
 - 아래 표는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작물의 재배 추이를 나타낸 것임. 시장·군수에게 임의적 작물재배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유채·메밀·자운영 등 경관작물의 재배비중이 점차 감소되고 있는 반면, 청보리·밀과 같은 일반 사료작물 및 식량작물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경관보전직불제 대상면적은 2005년 471ha에서 2009년에는 16,171ha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현재 지자체 및 지역주민도 높은 사업참여 의향을 보이고 있으나, 이러한 외형적인 사업량 확대에 비해 사업성과는 오히려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경관보전직불제 성과에 대한 성주인(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본 사업의 궁극적 목표인 ‘마을 경관개선에 기여했다’는 답변은 2007년도에 비해 줄어들었으며, ‘농가 소득향상’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2007년도 조사 결과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음

〈경관보전직불제 성과 추이¹¹⁾〉

(단위: 점)

경관보전직불제 성과	성과점수	
	2007	2009
마을경관 개선에 기여	4.3	3.8
마을의 방문객 증가	4.0	3.3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	3.4	3.4
마을의 공동체 의식 향상	3.8	3.2
주민의 경관가꾸기에 대한 인식증대	4.0	3.5

주 1. 경관보전직불제 시행 140개 지자체의 공무원 115명에 대한 조사결과임.

2. 성과점수는 응답결과를 5점 척도로 점수화하여 구한 평균값으로 5점에 가까울수록 성과가 높고 0점에 가까울수록 낮음.

자료: 성주인, 「농촌활성화를 위한 경관의 보전과 활용」, 농업 농촌의 길 2009 심포지엄, GS&J Institute, 2009.10.

11) 농림수산식품부는 본 사업의 성과지표를 ‘지역활성화 프로그램 연계정도’로 설정하고 있으며, 측정방법은 ‘시행마을/연계마을×100’이며 2009년 목표치는 84%임

- 2008년부터 청보리나 밀과 같은 사료작물과 식량작물이 경관보전직불제 지원대상 작물에 포함되었던 것이 위의 조사결과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즉 경관형성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청보리나 밀이 지원대상 작물이 됨에 따라 ‘경관관리’ 목적보다는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더욱 늘어난 것임
- 이와 같이 외형적인 사업량 확대가 오히려 사업성과를 저하시키고 있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상황에서 2010년 사업량을 전년수준으로 동결하는 한편, 시급히 사업의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음

[자 료] 국회예산정책처, 「경관보전직불제의 성과미흡」, 『예산안 분석 III』, 2009. 11.

[담 당] 변재연 예산분석관(788-4630)

[개 요]

-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일반회계 한국농어촌공사 출자사업
 - 예산안: 100억원(전년대비 100% 증)
 - 총사업비: 5조원(2000~계속, 2009년까지 1조 2,950억원)
 - 사업량: 법정자본금 5조원 범위 내 자본금 확충을 위한 현금 및 현물 출자
 - 사업시행주체: 한국농어촌공사(국고 100% 출자)
- 한국농어촌공사 출자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 6조의 규정을 근거로 정부가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임
 -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예산 증액사유에 대해 공사의 자체 수입기반이 부족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출자금을 재원으로 수리시설물을 활용한 소수력 발전사업 등 자체수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한국농어촌공사 출자사업 예산안〉

(단위: 억원, %)

	2009	2010안	전년대비	
			증가액	증가율
한국농어촌공사 출자	50	100	50	1000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09. 10.

[현안 검토]

- 2009년 예산안 심의 당시, 국회는 한국농어촌공사가 2005년부터 영업이익을 실현하고 있고, 정부 유상증자의 이자수익의 비중이 높다면서 여유자금이 과다한 것을 지적하고 2009년 예산안 100억원 중 50억원을 감액 조정¹²⁾한 바 있음
- 한국농어촌공사의 매출액 규모는 매년 2조 5,000억원 전후이고, 2008년에는 2조 6,361억원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당기순이익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영업외수익 중 이자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2008년까지 18.3~69.0%이고 2005년 이후 증가하였으며, 2008년의 경우 42.6%로서 적지 않은 비중임
 - 이자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정부가 유상증자를 통해 한국농어촌공사에 출자한 자산을 단기금융상품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해서 획득한 이자수익임
 - 정부 유상증자 이자가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81.9%에서 축소되기는 하였지만 2008년 62.7%로 적지 않은 비중임
 - 더욱이 “이자순이익(이자수익-이자비용)/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 2008년 58.9%로서 여유자금이 많은 공기업을 구분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20%기준¹³⁾보다 높아 이자수익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12)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9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소위원회 심사자료」 2008.11,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9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08.12

13) 공기업 여유자금 관리의 실효성을 검토할 때 여유자금 과다여부를 “이자순이익(이자수익-이자비용)/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비율이 20%를 상회하는지에 따라 과다여부를 구분하였으며 자세한 것은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 현안분석 제20호 「공기업 여유자금 관리의 실효성 제고방안」 2008. 10을 참고할 것.

〈한국농어촌공사의 영업외수익 내역(2003~2008)〉

(단위: 백만원,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영업외수익(A)	90,314	94,524	36,503	44,122	33,891	53,961
이자수익(B)	17,439	17,278	16,938	24,459	23,370	22,995
(B/A*100)	(19.3)	(18.3)	(46.4)	(55.4)	(69.0)	(42.6)
정부유상증자 이자(C)	14,286	13,102	11,657	17,091	15,728	14,421
(C/B*100)	(81.9)	(75.8)	(68.8)	(69.9)	(67.3)	(62.7)
이자비용(D)	92	45	72	163	204	229
이자순이익(B-D=E)	17,347	17,233	16,866	24,296	23,166	22,766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F)	23,054	10,059	64,117	26,404	31,599	38,644
(E/F*100)	(75.2)	(171.3)	(26.3)	(92.0)	(73.3)	(58.9)

주: 2004년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 이자순이익보다 적은 이유는 유형자산감액손실이 발생하였기 때문임.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2008 회계년도 결산서」, 2009. 2.

- 이와 같이 이자수익은 당기순이익의 일부를 구성하여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적립금으로 사내유보(87.0~98.6%)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출자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자 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농어촌공사 출자금 적정성 검토」, 『예산안 분석 III』, 2009. 11.

[담 당] 변재연 예산분석관(788-4630)

[개 요]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은 농어업 거대재해 위험을 보장하는 국가 재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하였고, 일정손해률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지급에 대비하여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출연금에 지원받음
 - 예산안: 350억원(전년대비 40% 증)
 - 농작물재해재보험의 경우 손해율 180%를 초과하는 손해와 양식재해수산물재보험의 경우 손해율 140%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정부가 위험을 인수하도록 되어 있음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출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예산안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	20,000	15,000	20,000	20,000	25,000
양식수산물재해재보험기금	-	-	-	5,000	10,000
합 계	20,000	15,000	20,000	25,000	35,000

주: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은 농작물과 양식수산물을 합한 금액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현안 검토]

- 농작물보험재보험금과 양식수산물보험재보험금의 지급 실적 매우 저조
 - 2005~2008년도까지 재보험금 지급 실적이 거의 없었으며, 2009년 9월말 현재 농작물재해 손해율이 120~130%, 양식수산물재해는 8.6%로 2009년도에도 집행가능성이 매우 낮음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사업 집행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농작물보험 재보험금	210	-	230	6	230	-	240
양식수산물보험 재보험금	-	-	-	-	48	-	48
합 계	210	-	230	6	278	-	288

주: 2009년 집행실적은 9월말 기준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 특히, 양식수산물 재해재보험의 재보험금 계획액은 전년과 동일한 48 억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정부출연금은 전년대비 100% 규모인 100 억원(50억원 증)으로 편성한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 재해보험재보험금사업의 집행잔액은 여유자금으로 흡수되어 여유자금 규모를 증대시켜 2009년 9월 기준 여유자금이 1,271억원에 달함
 - 2009년 9월 기준 여유자금 규모는 2010년도 농어업재해보험재보험금 계획액 288억원 대비 4.4배에 달함

〈2007년~2009년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여유자금 규모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여유자금 잔액	214	643	457	911	735	1,271

주: 2009년 실적은 9월말 기준 실적치임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 2010년도 농특회계 출연금 350억원은 2013년까지 1회 거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필요한 재원 2,854억원과 2013년까지 확보될 기금 재원 1,328억원과의 차액을 4년간 균등하게 지원받는 것으로 하여 산정됨

- 그러나, 기금 재원 중 여유자금 규모를 과소 추계한 경향이 있어, 여유자금을 늘릴 경우 기금의 재원이 증가되므로, 출연금 규모를 일부 감액 조정 가능
 - 2009년도 남은 기간 동안 보험금 집행가능성이 매우 낮아 9월말 기준 여유자금이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2009년말 여유자금 규모가 9월말 기준과 동일한 1,271억원 수준이 되는 경우, 기금 재원이 약 367억원 증가하게 되므로, 2010년도 출연금 규모는 92억원 가량 감액 조정 가능
- 기금의 재원 확보 차원에서 출연금을 미리 확보하고자 한다면, 기 확보된 여유자금 중 일정액을 공자기금에 예탁¹⁴⁾하는 방안 검토 필요
 - 향후 필요한 시기에 예탁금을 회수하여 사업비에 이용하는 것도 전체 국가 재정 건전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

[자 료] 국회예산정책처, 「사업성기금에 대한 정부 지원 실태 분석」, 『예산안 분석 II』, 2009. 11.

[답 당] 정금희 예산분석관(788-4627)

14)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여유자금 운용의 한 방법으로 재원의 소유는 농어업재해보험 기금이지만 당장 사업에 이용되지 못할 여유자금을 공자기금에 대여하여, 향후 재원이 필요한 시기에 공자기금으로부터 회수하는 구조로,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발행하는 국채 발행 규모를 축소할 수 있음

IV. 보건 · 복지 분야

- 정부는 2010년 예산안에서 정부 총지출 291.8조원 중 27.8%에 해당하는 81조 398억원을 보건·복지분야에 배분
 - IMF 통계기준 비교를 위해 2006년부터 사회복지분야로 분류된 주택부문을 제외할 경우 2010년 복지재정지출은 64조 3,856억 원으로, 정부 총 지출의 22.1%를 차지함
 - 2010년 보건·복지분야 예산안은 서민 및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확대, 일을 통한 능동적 복지 실현을 위해 고용안전망 확충 및 국민건강 증진과 예방적 보건의료체계 확충을 위해 전년 본예산 대비 8.6%, 전년 추경 대비 0.8% 증가함

〈보건·복지분야 투자계획〉

(단위: 억원, %)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보건·복지분야	745,892	810,398	852,822	906,963	969,206	6.8
사회복지	677,229	737,827	771,257	823,944	882,277	6.8
기초생활보장	71,427	73,001	74,962	77,064	79,236	2.6
취약계층지원	10,536	15,012	13,383	13,502	13,714	6.8
공적연금 ¹⁾	238,197	260,886	289,686	327,567	364,161	11.2
보육·가족 및 여성	19,296	22,976	25,377	26,021	27,688	9.4
노인·청소년	32,534	35,852	39,389	40,259	41,617	6.3
노동	117,547	123,190	125,409	124,824	127,876	2.1
보훈	33,596	35,773	37,213	38,893	41,113	5.2
주택	150,172	166,542	161,161	171,056	182,020	4.9
사회복지일반	3,924	4,595	4,677	4,758	4,852	5.5
보건	68,663	72,571	81,565	83,019	86,929	6.1
보건의료	14,544	16,303	20,518	20,579	21,343	10.1
건강보험지원	52,039	53,827	58,122	59,456	62,830	4.8
식품의약품안전	2,080	2,441	2,925	2,984	2,756	7.3

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자료: 대한민국정부, 「2009 ~ 2013 국가재정운용계획」, 2009.

- 보건·복지분야 재원배분의 주요 과제로는 높은 의무지출로 인한 복지예산의 경직성,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미흡으로 인한 복지재정의 비효율성, 복지예산 증가에 따른 지방비 부담 가중 등을 들 수 있음
 - 복지예산은 법령에 의해 지출의무가 규정되는 의무지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새로운 자격급여 도입에 관한 입법 뿐 아니라, 기존 법률에 따른 재정소요 변동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010년도 복지재정 및 의무지출 규모〉

(단위: 억원, %)

	2009		2010안	2009년 본예산 대비 증가율	2009년 추경 대비 증가율
	본예산	추경			
정부 총지출(조원, A)	284.5	301.8	291.8	2.6	-3.3
복지재정(B)	745,893	804,151	810,398	8.6	0.8
(총지출 대비 비중, B/A)	(26.2)	(26.6)	(27.8)	-	-
[의무지출](C)	538,191	563,956	579,344	7.6	2.7
(복지재정 대비 의무지출 비중, C/B)	(72.2)	(70.1)	(71.5)	-	-
기초생활보장급여	69,843	73,162	71,486	2.4	-2.3
기초노령연금(구 경로연금)	24,697	24,697	27,236	10.3	10.3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3,097	3,097	2,018	-34.8	-34.8
중증장애인기초연금	-	-	1,519	순증	순증
보육료 지원	13,146	13,146	16,980	29.2	29.2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3,284	3,284	3,869	17.8	17.8
건강보험 지원	52,040	52,040	53,827	3.4	3.4
공적연금	238,197	238,197	260,884	9.5	9.5
고용보험	56,562	79,008	59,282	4.8	-25.0
산재보험	43,728	43,728	46,470	6.3	6.3
보훈	33,597	33,597	35,773	6.5	6.5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2009)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재정리.

-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노력을 통해 복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고, 차등보조율 제도 확대 및 분권교부세율 상향조정 등을 통해 복지예산 증가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과 지방비 대응부담: 2006~2010년〉

(단위: 조원, %)

	2006	2007	2008	2009	2010(안)	연평균 증가율
정부 총지출	224.1	238.4	262.8	301.8	291.8	7.0
보건복지가족부 일반회계예산	9.71	11.53	15.85	19.27	19.12	19.3
국고보조사업(복지부 소관)	6.04	7.82	11.16	13.02	13.91	23.9
대응 지방비 부담	2.15	2.85	5.07	6.15	6.87	35.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0년도 예산안 분석Ⅱ」, 2009.

[자 료] 국회예산정책처, 『NABO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2009. 11.

[담 당] 김대철 예산분석관(788-4633)

[개 요]

-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2009년도 추경에 신규로 반영되거나 증액된 57개 주요사업 중, 21개 사업은 한시사업으로서 2010년도 예산안이 반영되지 않아 종료될 계획임
 - 경제위기 대응 주요사업의 2010년도 예산안: 8.9조원(전년추경 대비 68.9% 감)
 - 2010년도 예산안이 계상된 36개 주요사업 중, 4개 사업을 제외한 32개 사업은 전년 추경대비 감액 계상됨

〈2009년도 경제위기 대응 주요사업의 2010년도 예산안 반영 현황〉

(단위: 억원, %)

	2009		2010안	전년(본예산) 대비		전년(추경) 대비	
	본예산	추 경		증가액	증가율	증가액	증가율
종료사업(21개 사업)	21,587	87,268	-	-	-	순감	순감
계속사업(36개 사업)	96,357	198,773	88,938	-7,419	-7.7	-109,835	-55.3
총 계(57개 사업)	117,944	286,041	88,938	-29,006	-24.6	-197,103	-68.9

주: 총계 및 소계는 전 부처 사업을 대상으로 한 수치가 아닌, 57개 주요사업의 총계 및 소계임
 자료: 각 부처, 「2010년도 예산안 설명자료」, 2009. 10.

[현안 검토]

- 2009년도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추진된 사업에 대한 효과성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향후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보다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 필요
 - 2009년도에 종료될 예정인 주요 한시사업을 살펴보면, 21개 사업 중 12개 사업은 추경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9개 사업은 추경을 통하여 증액된 바 있음

- 고용위기를 타파하기 위하여 추경 신규사업으로 추진된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 및 「미취업 대졸생 조교 등 학내채용」, 노동부의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지원금」 및 「고용유지(교대제전환)지원금」, 보건복지가족부의 「한시생계구호」 등의 사업은 대부분 2009년도에 종료되는 한시사업임
- 한시사업은 추경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3T 전략에 근거하여 사업을 계획하여 추진되었는데, 일부 한시사업의 경우 3T 전략 중 한시성(Temporary)은 충족하였으나, 사업계획 단계에서 목표 집단에 대한 집중성(Targeted)이 부족하고, 집행단계에서 조기집행과 같은 적시성(Timely)을 충족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노동부의 고용유지(교대제전환)지원금의 경우, 신청자가 없어 2009년도 사업비(182억원) 집행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사업계획 단계에서 목표 집단에 대한 면밀한 고려가 부족한 상태에서 추진되었기 때문임
 - 또한 중소기업청 소관 「폐업 자영업자 전업지원용자사업」의 경우도 신청자 부족으로 2009년도 예산 1,000억원 중에서 950억원을 타 사업(소상공인 응자)으로 전용하였고, 나머지 50억원의 예산 집행률도 56%에 불과(2009. 11. 23일 기준)함
- 따라서 경제위기가 급박한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을 면밀하게 계획하고 추진하기 어려울 경우, 신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 실업급여와 같이 기존에 효과가 검증된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2009년도 추경시 증액된 사업 중 2010년도 예산안이 반영된 사업에 대한 예산안 규모 및 사업내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 필요
 - 경제위기 대응 사업 중 계속사업 예산안: 8.9조원(전년추경 대비 55.3% 감)
 - 대규모 한시적 단기 일자리사업인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은 고용의 경기후행성을 감안하여 연장 추진될 예정이나, 사업추진 상의 문제점이 제기됨
 - 전년추경 대비 66.4% 감액된 4,456억원(10만명)이 계상되었으나, 단순 취로사업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

- 증액계상된 사업 중 노동부의 「디딤돌 일자리창출사업」(503억원)은 단기 일자리사업의 정비방향과 부합하지 않으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노동부 시정조치결과와 다소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행정안전부의 「공공기관 청년인턴제」(176억원)의 경우, 지자체 재정 여건 및 행정수요 증가추이, 행정인턴 채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탄력적 사업운영 미흡

〈2009년도 경제위기 대응 주요사업의 2010년도 예산안 반영 현황〉

(단위: 억원, %)

	2009		2010안	전년(본예산) 대비		전년(추경) 대비	
	본예산	추경		증가액	증가율	증가액	증가율
총 계	117,944	286,041	88,938	-29,006	-24.6	-197,103	-68.9
중요사업 소개	21,587	87,268	-	-	-	순감	순감
[교육과학기술부]							
교과교실제 한시지원	-	1,500	-	-	-		
화장실 등 시설환경 개선	-	1,275	-	-	-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	-	498	-	-	-	순감	순감
미취업 대졸생 조교 등 학내채용	-	323	-	-	-		
미취업 대졸생 대학내 교육훈련	-	150	-	-	-		
[노동부]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대부	270	3,000	-	-	-		
연장급여	17	6,744	-	-	-		
무급휴업 근로자 지원	-	496	-	-	-	순감	순감
중소기업고용안정자금대부	-	619	-	-	-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지원금	-	900	-	-	-		
고용유지(교대제전환)지원	-	182	-	-	-		
[보건복지가족부]							
사회 보건복지시설 개량	-	2,000	-	-	-	순감	순감
한시생계구호	-	4,181	-	-	-		
[중소기업청]							
신용보증기관 출연	11,000	27,000	-	-	-		
지방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화(응자)	1,000	1,000	-	-	-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	600	2,600	-	-	-	순감	순감
폐업 자영업자 전업지원(응자)	1,000	1,000	-	-	-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응자)	3,000	3,000	-	-	-		
[국토해양부]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700	2,700	-	-	-	순감	순감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4,000	6,000	-	-	-	순감	순감
[기획재정부]							
국공채인수(지방교육채인수)	-	23,000	-	-	-	순감	순감

(단위: 억원, %)

	2009		2010안	전년(본예산) 대비		전년(추경) 대비	
	본예산	추경		증가액	증가율	증가액	증가율
계속사업 소계	96,357	198,773	88,938	-7,419	-7.7	-109,835	-55.3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1,095	1,200	750	-345	-31.5	-450	-37.5
국립대학시설확충	3,622	5,440	3,407	-215	-5.9	-2,033	-37.4
[보건복지가족부]							
긴급복지	515	1,533	529	14	2.7	-1,004	-65.5
자활사업	2,614	3,074	3,656	1,042	39.9	582	18.9
노인일자리확충	1,155	1,432	1,271	116	10.0	-161	-11.2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700	1,195	1,100	400	57.1	-95	-7.9
[노동부]							
구직급여	29,272	37,927	33,660	4,388	15.0	-4,267	-11.3
체불생계비대부	200	2,200	200	-	-	-2,000	-90.9
신규고용촉진장려금	1,151	1,266	1,151	-	-	-115	-9.1
고용유지지원금	583	3,653	998	415	71.2	-2,655	-72.7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985	1,331	1,765	780	79.2	434	32.6
디딤돌 일자리창출	-	446	503	순증	순증	57	12.8
지역고용촉진지원금	-	30	30	순증	순증	-	-
취업장려수당	-	111	39	순증	순증	-72	-64.9
[농림수산식품부]							
수리시설개보수	4,000	4,670	3,800	-200	-5.0	-870	-18.6
[산림청]							
숲가꾸기	3,132	4,213	3,132	-	-	-1,081	-25.7
산림서비스증진	593	856	381	-212	-35.8	-475	-55.5
산불방지대책	362	510	524	162	44.8	14	2.7
[중소기업청]							
지역신용보증 지원	-	3,700	500	순증	순증	-3,200	-86.5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850	2,850	1,000	150	17.6	-1,850	-64.9
긴급경영안정지원(융자)	7,000	15,000	2,500	-4,500	-64.3	-12,500	-83.3
소상공인 지원(융자)	5,000	10,000	3,000	-2,000	-40.0	-7,000	-70.0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출자	9,000	9,000	400	-8,600	-95.6	-8,600	-95.6
중소기업은행출자	5,000	8,000	400	-4,600	-92.0	-7,600	-95.0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출자	3,000	5,500	1,500	-1,500	-7.7	-4,000	-72.7
국공채인수(지방채인수)	6,000	44,000	10,000	4,000	66.7	-34,000	-77.3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수출보증지원	3,100	5,100	1,000	-2,100	-67.7	-4,100	-80.4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	230	400	280	50	21.7	-120	-30.0
[행정안전부]							
희망근로프로젝트	-	13,280	4,456	순증	순증	-8,824	-66.4
공공기관 인턴제	190	374	176	-14	-7.4	-198	-52.9
도로명및건물번호활용	113	261	42	-71	-62.8	-219	-83.9
[환경부]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	640	1,747	568	-72	-11.3	-1,179	-67.5
국립공원사업	921	1,204	807	-114	-12.4	-397	-33.0

(단위: 억원, %)

	2009		2010안	전년(본예산) 대비		전년(추경) 대비	
	본예산	추경		증가액	증가율	증가액	증가율
[국토해양부]							
하천재해예방	5,090	6,890	4,926	-164	-3.2	-1,964	-28.5
[여성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40	139	129	89	222.5	-10	-7.2
[국방부]							
부서관인건비-유급지원병	204	241	427	223	109.3	186	77.2

주: 총계 및 소계는 전 부처의 전 사업을 대상으로 한 수치가 아닌 표에 제시된 57개 주요사업의 총계 및 소계임
자료: 각 부처, 「2010년도 예산안 설명자료」, 2009. 10.

[담 당] 이진우 예산분석관(788-4638)

[개요]

- 2010년도 사회안전망 예산안은 80조 5,983억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8.6% 증가한 것으로 편성
 - 정부가 분류한 12개 재원분야 중 복지재정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대비 8.6% 증가한 81조 398억원으로, 사회안전망 예산과 거의 비슷함
 - 사회보험으로 구성된 1차 안전망 예산안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적연금 급여지출의 자동적인 증가로 인해 45조 6,236억원으로 편성
 - 기초생활급여 등 공공부조사업으로 구성된 2차 안전망 예산안과 사회서비스가 주요 사업인 주요 사업인 3차 안전망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대비 각각 1.7%, 12.2% 증가한 7조 498억원과 27조 9,249억원으로 편성

〈사회안전망 주요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09 (본예산)	2010안	전년대비	
			증가액	증가율
건강보험지원	52,040	53,827	1,787	3.4
공적연금	238,197	260,884	22,687	9.5
산재보험기금	43,728	46,470	2,742	6.3
고용보험기금	56,562	59,282	2,720	4.8
보훈급여	33,597	35,773	2,176	6.5
[1차 안전망(사회보험)] 소계	424,124	456,236	32,112	7.6
기초생활급여	66,427	66,473	46	0.1
자활급여	2,899	3,984	1,085	37.4
재산담보부생계비용자	-	41	41	순증
[2차 안전망(공공부조)] 소계	69,326	70,498	1,172	1.7

	2009 (본예산)	2010안	전년대비	
			증가액	증가율
긴급복지지원	515	529	14	2.7
취약계층 지원 등	46,929	55,461	8,532	18.2
보육·가족 및 여성	19,295	22,976	3,681	19.1
노동	17,257	17,438	181	1.0
주택	150,171	166,542	16,371	10.9
보건의료	14,611	16,303	1,692	11.6
[3차 안전망(사회서비스 등)] 소계	248,778	279,249	30,471	12.2
합 계	742,228	805,983	63,755	8.6

주: 세부내용은 주요사업이므로, 합계와 다를 수 있음

자료: 각 부처 예산안 자료를 가지고 국회예산정책처가 재작성

[현안 검토]

- 유사중복사업 통합 미흡, 4대 사회보험 부정수급 관리 등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 미흡
 - 정부는 복잡다기한 복지사업 136개를 52개로 통합·단순화함으로써 사업효과성을 제고하는 성과를 보였지만, 보건복지가족부의 노인돌봄 서비스사업, 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등 기존 세부사업을 단순하게 통합 하는데 그치거나, 방과후 돌봄서비스사업 등 통합사업에서 제외된 사업들도 일부 파악됨
 - 기초생활급여 등 자격급여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조직 강화와 인력 보강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의 경우에도 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사회보험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도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부정수급 노력으로 인한 예산절감액은 기초생활급여를 제외하고 기초노령연금, 장애수당 등 나머지 자격급여 예산안 산출에는 반영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사회안전망 등 복지예산은 법령에 의해 지출의무가 규정되는 의무지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10년도 사회안전망 예산안에서 의무지출이 58조에 이르러, 사회안전망 예산의 71.9% 및 복지재정의 71.5%를 차지함
 - 정부 전체 재정규모가 2009년 추경보다 3.3%가 줄어 절대액 자체가 축소된 상황에서도 타 분야와 비교하여 사회안전망 등 복지재정에 상당한 배려를 한 모습이나,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의무지출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복지예산에서 재량지출 규모는 예년보다는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보임
 - 보건복지가족부의 경우 총지출에서 신규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정부양곡할인사업 등 타 분야에서 복지 분야로 이관한 사업들도 있었음
 - 2010년 공적연금 기금운용계획안에서의 신규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모든 신규사업이 취약계층이나 복지수혜대상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지방 이전 등의 인프라 구축 및 정보화사업으로만 구성
 - 복지사업의 기본취지 상 안정적인 재정확보 및 목적에 맞는 회계·기금간 이관작업이 2010년 예산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변경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으나, 여전히 사회안전망 등 복지예산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따라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방안에 따라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완화되겠으나, 장기적인 차원에서 차등보조율 제도를 다른 복지관련 국고보조사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국세인 부가가치세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될 경우 내국세의 0.94%로 내국세에 연동되어 있는 분권교부세율의 경우 내국세율이 작아지므로 일정기간 존치연장을 전제로 할 경우 분권교부세율을 상향조정하거나 목적예비비를 편성하는 방안 마련 필요

[자 료] 국회예산정책처, 「사회안전망 등 복지재정 예산안 분석」, 『예산안 분석 II』, 2009. 11.

[담 당] 김대철 예산분석관(788-4633)

[개 요]

□ 일자리 대책 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를 주축으로 수행하는 다 부처 사업으로,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지원과 고용안정, 그리고 직업훈련 등의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실업해소 및 신속한 노동시장 진입 도모

○ 예산안: 8.8조원(전년본예산 대비 12.0% 증)

– 2010년도 국가 총지출 규모(291.8조원) 대비 3.0% 비중

– 「직접 일자리 창출」 예산안은 3.5조원으로, 총 일자리사업 예산안 대비 39.8% 비중이며, 계획인원은 55만명에 달하며, 이 중에서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예산안은 1.3조원으로 전년도 추경(1.6조원) 대비 18.8% 감소하였으며, 계획인원은 2.6만명 감소한 14만명

□ 단기 일자리사업은 고용의 경기후행성을 감안하여, 2010년에도 연장하여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계상

○ 예산안: 5,138억원(전년추경 대비 63.6% 감)

– 주요사업은 「희망근로 프로젝트」, 「디딤돌 일자리」,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등 3개 사업

〈2010년도 단기 일자리 주요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억원, %)

	2009		2010안	전년추경 대비	
	본예산	추경		증가액	증가율
희망근로 프로젝트 (행정안전부)	-	13,280 (25만명)	4,456 (10만명)	-8,824 (-15만명)	-66.4 (-60.0)
디딤돌 일자리 (노동부)	-	446 (1만명)	503 (1.1만명)	57 (0.1만명)	12.8 (10.0)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행정안전부)	190 (0.6만명)	374 (1만명)	179 (0.5만명)	-195 (-0.5만명)	-52.1 (-50.0)
합 계	190 (0.6만명)	14,100 (27만명)	5,138 (11.6만명)	-8,962 (-15.4만명)	-63.6 (-57.0)

자료: 각 부처

[현안 검토]

-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은 노령자 및 주부의 참여비중 과다, 높은 중도탈락율, 단순 취로사업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등 사업추진 상의 문제점이 제기되므로, 사업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할 필요 있음
 - 2009년도 추경(1조 3,280억원)대비 66.4% 감액된 4,456억원이 계상되었으며, 계획인원은 60% 감소한 10만명
 - 지원대상자 중 노령자 및 주부의 참여비중 과다
 - 2009. 10월 현재 전체 수혜자 대비 48.4%(11.9만명)가 60대 이상(65세 이상 31.2%)이며, 주부가 22.8%
 - 2009. 9월말 기준으로 선발인원(32.6만명) 대비 중도 포기율은 23.4%(7.6만명)에 달하여, 사업 참여자에 대한 적절한 근로환경을 제공하지 못함
 - 중도포기의 주요 원인은 업무형태 불만 및 근무환경 불만
 -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 일부 사업이 기존의 공공근로와 유사한 단순 취로사업
 - 총 사업비 중 재료비의 비중을 25%로 책정하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편익이 항구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사업을 운영하려 하였으나, 여전히 단순 취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가 발생
- 「디딤돌 일자리창출」(503억원)의 증액계상은 단기 일자리사업의 정비방향과 부합하지 않으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노동부 시정조치 결과와 다소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예산안의 증액 계상 적정성과 사업내용에 대한 검토 필요
 - 타 단기 일자리사업이 감액 계상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사업만 특별히 증액하여 계상한 것은 단기 일자리사업의 정비방향과 부합하지 않음

-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4,456억원, 10만명)와 「공공기관 청년인턴제」(179억원, 4,680명)도 전년대비 66.4%와 52.1% 각각 감액 계상
- 사업내용이 국회 결산시정요구사항에 대한 노동부 시정조치결과와 다소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2009년도 동 사업이 지원한 일자리를 보면, 자활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사회적일자리가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는 과거 사회적일자리 중 '공익형'에 대한 지원과 유사함
 - 국회는 예결산 심의를 통하여 '공익형'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것을 노동부에 요구하였고, 노동부는 국회의 요구대로 시정조치 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음
 - 따라서 향후 '공익형'과 유사한 사회적일자리에 대한 지원은 지양할 필요 있음
- 지원대상 중복으로 사업추진 상의 혼선을 초래하며, 지원조건의 차이로 인한 사업형평성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 필요
 - 취업취약계층인 저소득층, 자활대상자, 노숙자, 새터민 등의 지원대상이 「희망근로 프로젝트」, 「디딤돌 일자리창출」, 「자활사업」 등 3개 사업이 상당부분 중복
 - 지원대상 중복으로 「디딤돌 일자리창출」의 경우 계획인원(1만명) 대비 지원인원 비율이 69%에 불과(2009. 10. 12일 현재)하고, 예산 집행률도 14.6%에 불과
 - 보건복지가족부의 「자활사업」(3,984억원)의 경우, 자활근로자의 임금수준(월 43만원)이 희망근로 프로젝트 참가자(월 86만원)보다 적어 임금격차로 인한 사업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우려 있음
-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1.3조원)의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단기 일자리사업을 연장하여 추진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회서비스일자리에 대한 지원을 점차적으로 확대할 필요 있음
 - 사회서비스일자리는 타 산업에 비해 '취업유발계수'가 높은데 반해,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고용비중은 여전히 낮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고용창출 여력은 충분할 것으로 생각됨

- 2007년 기준 한국의 사회서비스 고용비중은 13.8%에 불과하여, 일본 17.0%, 스웨덴 32.5%보다 낮으며, OECD 평균(21.3%)보다도 7.5%p 낮은 수준

□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있으나, 관련 제도는 여전히 미흡

○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독려하고, 법령에 사회적기업 생산 물품을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하는 등 개선 방안 검토 필요

〈2009년도 경제위기 대응 주요 일자리 사업의 예산안 반영 현황〉

(단위: 억원, %)

	2009		2010안	전년(본예산) 대비		전년(추경) 대비	
	본예산	추경		증가액	증가율	증가액	증가율
일자리 대책 사업 전체	78,966	121,199	88,407	9,441	12.0	-32,792	-27.1
[행정안전부]							
희망근로프로젝트	-	13,280	4,456	순증	순증	-8,824	-66.4
공공기관 인턴제	190	374	176	-14	-7.4	-198	-52.9
도로명 및 건물번호호환용	113	261	42	-71	-62.8	-219	-83.9
[보건복지가족부]							
자활사업 ¹⁾	2,614	3,074	3,656	1,042	39.9	582	18.9
노인일자리확충	1,155	1,432	1,271	116	10.0	-161	-11.2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700	1,195	1,100	400	57.1	-95	-7.9
[노동부]							
실업급여	33,265	48,648	35,222	1,957	5.9	-13,426	-27.6
신규고용촉진장려금	1,151	1,266	1,151	-	-	-115	-9.1
고용유지지원금	583	3,653	998	415	71.2	-2,655	-72.7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985	1,331	1,765	780	79.2	434	32.6
디딤돌 일자리창출	-	446	503	순증	순증	57	12.8
지역고용촉진지원금	-	30	30	순증	순증	-	-
취업장려수당	-	111	39	순증	순증	-72	-64.9
무급휴업 근로자 지원	-	496	-	-	-	순감	순감
중소기업고용안정자금대부	-	619	-	-	-	순감	순감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지원금	-	900	-	-	-	순감	순감
고용유지(교대제전환)지원	-	182	-	-	-	순감	순감
[교육과학기술부]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	-	498	-	-	-	순감	순감
미취업 대졸생 조교 등 학내채용	-	323	-	-	-	순감	순감
미취업 대졸생 대학내 교육훈련	-	150	-	-	-	순감	순감
[산림청]							
숲가꾸기	3,132	4,212	3,132	-	-	-1,080	-25.6
산림서비스증진	593	856	381	-212	-35.8	-475	-55.5
산불방지대책	362	510	524	162	44.8	14	2.7
[환경부]							
국립공원사업	921	1,204	807	-114	-12.4	-397	-33.0
[지식경제부]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	230	400	280	50	21.7	-120	-30.0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자원 총조사	-	101	42	순증	순증	-59	-58.4
[여성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40	139	129	89	222.5	-10	-7.2
[국방부]							
부서관인건비 - 유급지원병	204	241	427	223	109.3	186	77.2

주: 1) 지역자활센터 활성화 제외.

자료: 각 부처, 「2010년도 예산안 설명자료」, 2009. 1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일자리 대책 예산안 분석」, 『예산안 분석 II』, 2009. 11.

[담당] 이진우 예산분석관(788-4638)

[개요]

□ 2010년도 일자리사업 중 인력양성 주요사업은 「해외산업체 맞춤형 전문기술인력양성」, 「금융전문인력양성」, 「방송영상산업인력양성」 등 3개 사업을 들 수 있음

○ 예산안: 96.8억원(전년대비 70.4% 증)

- 교육과학기술부의 「해외산업체 맞춤형 전문기술인력양성사업」은 전문대학의 발전을 선도하는 우수대학 지원을 통해, 국제적 수준의 전문 직업기술교육 거점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내 146개 전문대학 중 6개 내외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임
- 금융위원회의 「금융전문인력양성사업」은 부족한 금융전문인력의 효과적인 양성·공급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녹색금융리더양성'(15억원)과 '실무 금융전문인력'(녹색금융전문가 등, 10억원)으로 편성됨
- 문화관광체육부의 「방송영상산업인력양성사업」은 방송인적자원의 효율적 개발과 디지털 방송제작 저변 확대 및 방송교육격차 해소 등을 목적으로, 현업 방송인력의 재교육을 실시하는 '방송연기자 재교육과정'을 계획

〈인력양성 주요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09		2010안	증가액	증가율
	본예산	추경			
해외산업체 맞춤형 전문기술 인력양성(교육과학기술부)	-	-	3,000	순증	순증
금융전문인력양성(금융위원회)	1,500	1,500	2,500	1,000	66.7
방송영상산업 인력양성(문화관광체육부)	4,180	4,180	4,180	-	-
합 계	5,680	5,680	9,680	4,000	70.4

자료: 각 부처

[현안 검토]

- 교육과학기술부의 「해외산업체 맞춤형 전문기술인력양성사업」(30억원, 신규)은 정부지원에 있어 대학 간 형평성 문제, 국내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여도 저조, 사업목표 불분명 등으로 정부지원 타당성 미흡
 - 해외 진출 대기업과 활발히 연계를 맺고 있는 특정대학에 정부가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타당성이 미흡하며, 정부지원에 있어 대학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 있음
 - 국내 일자리 창출에 직접적인 도움이 이루어진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목표가 불분명
 - － 인력 양성 사업인지, 전문대학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사업인지, 해외 유학생 유치 기반 사업인지에 대한 중심 목표가 불분명
- 금융위원회의 「금융인력양성사업」(25억원)의 경우,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적합한 측면이 있음
 -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통하여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금융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금융권이 수혜대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적합
 - 대학 및 금융권에서 금융전문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 데 우선적으로 노력할 필요 있음
- 문화관광체육부의 「방송영상산업 인력양성사업」(42억원)의 추진은 역할분담에 관한 부처간 협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사업간 유사중복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비 조정 필요
 - 문화관광체육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인력양성과 관련된 협의 도출
 - － 협의의 주요내용은 현업 방송인력은 방송통신위원회, 예비 방송인력은 문화관광체육부가 주관한다는 내용

- 문화관광체육부가 '방송연기자 재교육과정' 운영을 통하여 현업 방송인력의 재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2개 부처간 협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는 현업 방송인력양성 사업과 중복될 우려 있음

[자 료] 국회예산정책처, 「일자리 대책 예산안 분석」, 『예산안 분석 II』, 2009. 11.

[담 당] 이진우 예산분석관(788-4638)

[개 요]

- 2010년도 공적연금기금의 조달 및 운용액 규모는 국민연금기금의 경우 82조 2,766억원을 포함하여 전년대비 0.6% 증가한 총 106조 3,745억원으로 편성
 - 특히 보전금 및 일반회계전입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정부내부수입은 8조 9,125억원으로 전년대비 6.3% 증가함
 - － 이는 공무원연금기금과 군인연금기금의 적자보전금이 연금수급자 증가로 인해 전년대비 23.2% 증가하였기 때문임
 - － 공무원연금기금과 군인연금기금은 2000년도 이후 저부담·고급여의 연금 수급구조 불균형과 인구고령화에 의해 연금수지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데,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01년의 6,113억원에서 2010년의 3조 4,603억원을 거쳐 2030년 29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
 - －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이 통과될 경우 어느 정도의 재정안정화를 달성하여 장기적으로 수지적자로 인한 국고보전금 증가추세를 완화할 것으로 보이며, 군인연금의 경우에도 공무원연금과 같이 재정안정화 방안을 포함하는 개혁법안을 마련 중임
 - 기금 운용에서는 연금급여, 수당 등 급여지출 사업비 21조 6,750억원 등으로 구성된 주요 사업비가 전년대비 10.5% 증가한 26조 129억원으로 편성
 - 기금관리운영비는 보수동결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1.4% 감소한 5,291억원으로 책정
 - 여유자금 운용의 경우 투자 상품의 운용기대수익률이 전반적으로 낮게 책정됨에 따라 전년대비 2.2% 감소한 79조 8,325억원으로 편성

〈공적연금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억원, %)

	2009 (본예산)	2010안	전년대비	
			증가액	증가율
자체수입	398,223	384,247	-13,976	-3.5
정부내부수입	198	102	-96	-48.5
사업비	77,395	92,231	14,836	19.2
기금운용비	4,334	4,312	-22	-0.5
여유자금운용	741,919	726,223	-15,696	-2.1
국민연금기금 소계	823,648	822,766	-882	-0.1
자체수입	45,239	48,976	3,737	8.3
정부내부수입	59,674	64,272	4,598	7.7
사업비	106,162	111,990	5,828	5.5
기금운용비	629	604	-25	-4.0
여유자금운용	22,674	21,241	-1,433	-6.3
공무원연금기금 소계	129,465	133,836	4,371	3.4
자체수입	29,579	34,517	4,938	16.7
정부내부수입	7,433	7,012	-421	-5.7
사업비	31,791	34,544	2,753	8.7
기금운용비	400	372	-28	-7.0
여유자금운용	49,956	49,099	-857	-1.7
사학연금기금 소계	82,147	84,015	1,868	2.3
자체수입	3,555	3,463	-92	-2.6
정부내부수입	16,539	17,739	1,200	7.3
사업비	20,080	21,363	1,283	6.4
기금운용비	3	3	0	0.0
여유자금운용	1,798	1,762	-36	-2.0
군인연금기금 소계	21,881	23,128	1,247	5.7
합 계	1,057,142	1,063,745	6,603	0.6

주: 세부내용은 주요항목이므로, 합계와 다를 수 있음

자료: 각 연금공단,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2009. 10.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재정리

[현안 검토]

- 국민연금의 기금운용공사 설립사업은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 설립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제로 2010년도에 신규로 129억원을 계상
 - 그러나 동 사업은 이미 2009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이 제정되지 않은 관계로, 2009년 예산안 260억원이 전액삭감됨
 - 동 사업과 관련된 법률안은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 설립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정부로부터 2008년 8월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계류 중인 상태임
 - 동 개정법률안은 현재의 기금운용체계를 대폭 개편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합의되기가 어려우므로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임
- 2010년도 공무원연금의 신규시설 건립사업의 예산안은 전년대비 51.4% 증가한 351억원으로 계상
 - 동 사업의 최근 3년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매년 50% 이하의 저조한 집행실적을 보여주고 있음
 - 따라서 2010년 예산안에서는 이미 부지를 확보한 사업이나 민원문제 등이 해결되어 공사가 이미 시작된 사업에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사학연금과 군인연금의 경우 공적연금간 연계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20년 미만 재직자가 퇴직한 경우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2010년 사학연금의 연금급여 및 군인연금의 퇴직급여 예산안에서 20년 미만 재직자가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퇴직일시금 예산이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정부는 공적연금간 연계제도가 2009년 8월부터 시행되었으나, 지금까지 연계신청자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퇴직일시금 대상자 감소를 반영하지 않고 2010년도 예산안을 편성함
 - 2010년도 사학연금 연금급여사업의 예산안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연금수급자 증가로 인해 전년대비 15.4% 증가한 1조 4,239억원으로 계상
 - 2010년도 군인연금 퇴직급여사업의 예산안은 연금수급자 증가로 인해 전년대비 7.1% 증가한 1조 7,987억원으로 계상
- 따라서 2010년도 사학연금의 연금급여 및 군인연금의 퇴직급여예산안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계신청율 실적치를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공적연금 기금운용계획안 분석」, 『예산안 분석 II』, 2009. 11.

[담당] 김대철 분석관(788-4633)

[개 요]

- 정부양곡할인사업(구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사업)은 차상위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연중 공급하여 경기 침체에 따른 대상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
 - 2010년 동 사업의 예산안(일반회계)은 전년 본예산 대비 580.4% 증가한 1,112억원으로 편성
 - 동 사업의 2010년 예산안이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원인은 2009년까지 농림수산식품부의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추진하던 기초생보자 양곡할인사업이 2010년부터 복지부의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사업으로 이관

〈정부양곡할인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09 (본예산)	2010안	전년대비	
			증가액	증가율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16,343	18,122	1,779	10.9
기초생보자 양곡할인	-	93,081	93,081	순증
정부양곡할인 소계	16,343	111,203	94,860	580.4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2009. 10.

[현안 검토]

- 기초생보자 양곡할인사업은 당초 쌀소비 촉진차원에서 2002년 2월부터 농림수산식품부의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지원하고 있음

- 그러나 2010년 예산안에서 기초수급자를 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고, 복지부 일반회계사업 중 차상위 양곡할인지원사업을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관계로, 기초생보자 양곡할인사업을 복지부 일반회계로 이관·편성
 -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는 동 사업의 이관에 대해 기초생활수급자는 최저생활이 보장되고 있으므로 쌀소비를 목적으로 추가지원할 법적근거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주장
- 결국 기초생보자 양곡할인지원사업의 이관여부는 담당부처의 소관회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초생보자가 지속적으로 양곡할인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임
- 통상적으로 관련사업을 일반회계에서 추진한다면, 일반회계예산이 부족할 경우 읍면동별로 배정된 사업양이 부족하므로 못 받는 가구의 불만제기 및 기존의 신청 받은 양곡에 대해서도 추가적 공급중단이 불가피
 - 반면 농림부의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추진한다면 모든 신청자에게 공급 중단 없이 연중 지원이 가능하고, 할인 확대 등 저소득층 지원을 통한 양곡수급 관리기능이 강화됨으로써 탄력적으로 양곡 수급이 가능
- 따라서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사업은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각 부처 고유사업과의 형평성 및 지속가능한 사업추진 등의 이유로, 보건복지가족부의 일반회계 사업이 아니라 기존의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자 료] 국회예산정책처, 「보건복지분야 재정분석」, 『예산안 분석 IV』, 2009. 11.

[담 당] 김대철 예산분석관(788-4633)

[개 요]

- 2010년도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대비 2.7% 증가한 529억원으로 편성
 - 정부는 내년도 경기상황이 호전되어 2009년 추경 때와 같이 일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계층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전년 본예산 보다 약간 증가한 2010년도 동 사업의 예산안을 편성

〈긴급복지 지원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09 (본예산)	2010안	전년대비	
			증가액	증가율
긴급복지 지원	51,532	52,912	1,380	2.7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2009. 10.

[현안 검토]

- 정부는 2010년 긴급복지 지원사업 예산안을 편성할 때 지원단가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이나 규정이 없는 관계로, 연례적으로 적용되는 지원단가의 기본 상승률을 3%로 가정
 - 문제는 2010년의 경우 최저생계비 인상률이 2.75%로 책정된 상황에서, 긴급복지 지원단가를 최저생계비 인상률보다 높은 3%로 가정하여 편성한 것은 두 제도의 수급조건 형평성 측면에서 어긋나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2010년 동 사업의 예산안에서 기초생계비의 적용을 받는 생계지원 등 모든 긴급지원사업의 경우 최저생계비 인상률과 동일한 지원단가 인상률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이렇게 생계지원 등 모든 긴급지원 종류의 단가 인상률을 최저생계비 인상률인 2.75%로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2010년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예산안은 과다계상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앞으로의 긴급복지 지원사업 예산편성에서 지원단가의 경우 최저생계비 인상률을 따르도록 지침이나 규정에 구체적으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2009. 5. 28)에 의해 초·중·고등학생을 지원하는 교육지원이 신설되었고, 지원기간이 당초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었으며, 연장지원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지원대상이 확대
- 따라서 2010년 예산안에서는 이런 지원대상 확대와 지원기준 완화로 인한 지원건수 증가분을 반영해야 할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2009년 상반기의 동 사업의 지원실적을 살펴보면, 물론 경제위기로 인해 신빈곤층이 올해 상반기에 많이 발생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원건수와 지원인원수에서 2008년 대비 큰 폭의 상승률이 있었음
 - 그런데 2010년 동 사업의 예산안은 2009년 본예산 대비 14억원이 증가하는데 그쳤음
 - 따라서 내년도 점차적으로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긴급복지지원제도의 홍보강화로 인해 제도에 대한 국민인지도가 높아져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경우 2010년 동 사업의 예산안을 증가하는 방안을 검토
- 따라서 동 사업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원 단가는 최저생계비 인상률에 맞추면서 지원대상자는 법규정 개정에 지원기준 완화 및 홍보강화로 인한 제도인지도 상승에 따라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므로 동 예산안을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자 료] 국회예산정책처, 「보건복지분야 재정분석」, 『예산안 분석 IV』, 2009. 11.

[담 당] 김대철 예산분석관(788-4633)

기초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가구별 소득인정액 차등 미반영

[개요]

- 기초생활급여 중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2010년도 예산안은 각각 전년 본예산 대비 0.1% 증가한 2조 4,492억원 및 전년 본예산 대비 14.1% 감소한 5,628억원으로 편성
 -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예산안이 전년대비 감소하게 된 주된 이유는 급여산정방식을 기존 개인별 방식에서 가구별 방식으로 변경하였기 때문
 - 생계급여 수급자수 기준으로는 2010년 예산안의 경우 2009년 추경 시의 수급자수(1,631,913명)(2009년 본예산 기준 1,586,033명)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편성
 - 최저생계비는 2009년(3%)보다 0.25%p 낮은 2.75%로 가정하였고, 평균 소득인정액은 2009년 0% 보다 높은 2.4%로 책정

〈기초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09 (본예산)	2010안	전년대비	
			증가액	증가율
생계급여	2,446,001	2,449,192	3,191	0.1
주거급여	654,880	562,824	-92,056	-14.1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2009. 10.

[현안 검토]

-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중요한 정책변수로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것이 필요한데, 2009년 1분기

대비 2009년 2분기 평균소득 증가율인 2.9%에서 소득분배 악화를 고려하여 0.5%p를 삭감한 2.4%를 적용

- 그러나 2009년 2분기 소득인정액 상승률을 살펴본 결과, 가구별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
- 또한 소득분배 악화를 고려하여 일률적으로 0.5%p를 삭감한 구체적인 근거도 없고, 국회예산정책처(NABO)의 경기전망과 같이 내년도 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률이 각각 2.5%와 4.7%이라고 전망하면서 2009년보다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고 예측함
- 따라서 소득분배 악화를 고려한 0.5%p를 삭감 없이 가구별 소득인정액 증가율을 각각 적용하여 생계급여예산과 주거급여예산을 추정할 경우 생계급여예산과 주거급여예산은 과다계상되었을 가능성 내포
-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르는 재정절감액과 예비자금 예산안 산출근거가 매우 불확실하여 구체적인 산출근거에 따른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복지전달체계 개편(지출 효율화)에 따른 재정절감액이 1,505억원으로 산정되었고, 사회복지통합망 구축에 따른 재정절감 효과를 추정하여 예산안에 반영하였으나, 현재 추진 중인 점을 고려하여 소득증가율 2%에 상당하는 예산액(35,500백만원)을 예비자금으로 추가 반영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보건복지분야 재정분석」, 『예산안 분석 IV』, 2009. 10.

[담당] 김대철 분석관(788-4633)

[개 요]

- 기초노령연금 지급사업의 2010년도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대비 2,539억원(10.3%)이 증가한 2조 7,236억원으로 편성
 -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2007년에 도입된 기초노령연금 지급사업은 「기초노령연금법」에 의거하여, 2010년 전체노인의 70%에게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하는 법정급여사업임

〈기초노령연금 지급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09 (본예산)	2010안	전년대비	
			증가액	증가율
기초노령연금 지급	2,469,726	2,723,631	253,905	10.3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2009. 10.

[현안 검토]

- 정부는 부부공동수급율(35%)의 경우 2008년 12월 기준 실적치를 반영하였으나, 2009년 들어서 평균 38% 정도의 실적치가 안정적으로 나타남
 - 국회예산정책처(NABO)는 「2008회계연도 결산분석」을 통해 2008년 기초노령연금 지급예산의 과소계상 원인이 부부공동수급율이 부정확하게 예측되어 이 변수의 정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

- 따라서 2010년 동 급여사업의 예산안에서 2009년 부부공동수급을 실적치인 38%를 적용하면,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이 과다계상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부부공동 연금수급자의 경우 일정소득이 있어 감액지급 받는 대상자그룹에서의 수급율(64%)이 전액지급 대상자그룹(3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전액대상자의 부부공동수급율 실적치(38%)와 감액대상자의 부부공동수급율 실적치(64%)를 각각 적용하면,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이 과다계상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정부는 이렇게 예산안 편성 산출식을 조금만 변경하여도 기초노령연금 급여예산액에 많은 변화가 있는 만큼 정확한 변수 및 산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2010년도 동 사업의 예산안에서 2009년 부부공동수급을 실적치인 38%와 전액대상자의 부부공동수급율 실적치(38%) 및 감액대상자의 부부공동수급율 실적치(64%)를 각각 적용하면,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이 과다계상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자 료] 국회예산정책처, 「보건복지분야 재정분석」, 『예산안 분석 IV』, 2009. 11.

[담 당] 김대철 예산분석관(788-4633)

[개 요]

- 중증장애인연금사업은 중증장애인의 열악한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장애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 최소한의 국가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임
 - 2010년도 동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56%인 326,000명을 대상으로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하며, 2010년 7월 시행예정으로 6개월분 연금액인 1,519억원으로 편성

<중증장애인연금사업의 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09 (본예산)	2010안	전년대비	
			증가액	증가율
중증장애인연금	-	151,919	151,919	순증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2009. 10.

[현안 검토]

- 중증장애인연금사업은 2009년 국회에 제출된 「중증장애인연금법(안)」이 통과되어야 가능한 사업이고, 현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에 회부된 동 법률안은 합의해야 할 여러 가지 논의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국회에서 통과하기에는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임
 - 장애를 노령과 같은 사회적 위험(social risk)으로 간주한다면, 기초노령연금과 같이 대략적인 지급대상 범위를 법률에서 명시 필요

- 18세 이상 저소득 중증장애인으로 지급대상을 명시하다보니, 지급대상 집단에서 차상위 이상의 65세 이상 중증노인과 같이 전혀 장애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집단이 발생
 - 법률안이 내년 7월 이전에 통과하더라도 2010년 예산안에서 가정한 장애연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미흡
 - 급여의 적절성 측면에서 신규로 진입하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부가급여 지급 검토
 -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중증노인의 부가급여 경과규정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증노인과 법 통과 이후 차상위계층으로 소득이 하락한 65세 이상 중증노인과의 형평성에서 문제 발생
 - 동 법률안은 기초노령연금과 같이 차등보조율 적용 검토 필요
- 따라서 중증장애인연금은 법률 제정을 전제로 편성된 예산안이고, 동 법률안에서 지급대상이나 지급수준 등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임

[자 료] 국회예산정책처, 「보건복지분야 재정분석」, 『예산안 분석 IV』, 2009. 11.

[답 당] 김대철 예산분석관(788-4633)

[개 요]

- 일반회계의 장사시설 설치사업과 농특회계의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사업은 지자체 자본보조사업으로, 장기간의 시설 건축기간,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부담과 지역주민의 넘비현상 등으로, 집행실적이 부진
 - 2010년도 장사시설 설치사업의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대비 17억원 (5.4%)이 감소한 299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의 2010년도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과 동일한 625억원으로 편성

〈장사시설 설치사업과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의 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09 (본예산)	2010안	전년대비	
			증가액	증가율
장사시설 설치(일반회계)	31,606	29,898	-1,708	-5.4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농특회계)	62,503	62,503	0	0.0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2009. 10.

[현안 검토]

- 장사시설은 전년도 재정사업자율평가를 한 후 미흡한 사업으로 판정되어 「2010년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자체적으로 10%의 예산을 삭감하도록 되어 있으나, 2010년 동 사업의 예산안이 전년 대비 5.4% 삭감에 그침

- 따라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지자체의 집행실적이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2010년 동 사업의 예산안에서 추가적인 5% 예산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의 경우 최근 3년간 지자체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실집행률이 매년 50% 이하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2009년의 경우에도 8월까지 예산현액 625억원 중에서 144억원만 실집행하여 실집행률이 23%에 그침
 - 동 사업의 집행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다른 보건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과 같이 보건기관 신축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당해연도 예산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거나, 집행되지 못하기 때문임
 - 그러나 대부분의 보건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의 2010년 예산안이 집행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전년대비 삭감됨
 - 그러나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의 지자체 집행실적이 2010년에 갑자기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 않아 이미 부지를 확보한 지자체이거나, 확실하게 집행될 수 있는 보건소 신·증축에만 2010년 예산안을 편성하여 동 사업의 집행실적을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보건복지분야 재정분석」, 『예산안 분석 IV』, 2009. 11.

[담당] 김대철 예산분석관(788-4633)

[개 요]

- 2010년도 방과후돌봄서비스사업(구 아동청소년발달지원서비스사업)의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대비 25.0% 증가한 926억원으로 편성
 - 2008년에 세부사업으로 추진하던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사업,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사업,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사업을 통합시키고, 방과후돌봄통합모델 시범사업을 신규로 포함

〈방과후돌봄서비스사업의 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09 (본예산)	2010안	전년대비	
			증가액	증가율
방과후돌봄서비스	74,062	92,614	18,552	25.0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2009. 10.

[현안 검토]

- 방과후돌봄서비스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분야 주요 통합정비사업으로 2010년 동 사업에 포함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외에 방과후보육, 청소년야학운영지원, 청소년공부방 지원사업을 통합하기로 발표
 - 그러나 2010년 동 사업의 예산안에 포함된 사업들은 기존 3개 사업만 포함되었고, 청소년육성기금에서 이관된 청소년야학 운영지원사업은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을 뿐, 방과후보육사업과 청소년공부방 지원사업은 아직까지 통합하지 않았음

- 따라서 2010년 동 사업의 예산안에서 방과후보육사업과 광역지원발전특별회계의 청소년공부방 지원사업까지에 통합시켜 편성해야 할 것으로 보임

[자 료] 국회예산정책처, 「보건복지분야 재정분석」, 『예산안 분석 IV』, 2009. 11.

[담 당] 김대철 예산분석관(788-4633)

[개 요]

- 2010년도 아동청소년통합서비스지원사업(드림스타트지원사업)의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대비 33.6% 증가한 301억원으로 편성
 - 동 사업은 시·군·구별 빈곤아동 고밀집 1개 지역을 거점 사업지역으로, 2009년 75지역에서 2010년에는 100개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

〈아동청소년통합서비스지원사업의 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09 (본예산)	2010안	전년대비	
			증가액	증가율
아동청소년통합서비스지원	22,545	30,109	7,564	33.6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2009. 10.

[현안 검토]

- 동 사업은 2008년 핵심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2012년까지 207개소로 연차 확대가 예정됨에 따라,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으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많은 지자체가 동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 따라서 전액 국고지원(서울 66.67%, 지방 100%)은 아동청소년 분야 지자체 경상보조사업의 국고보조율과 비교하면 많은 혜택이 있으므로 아동청소년 분야 지자체 경상보조사업(서울 30%, 지방 50%)과 같이 지자체에 센터 운영비의 일부를 지방비로 부담시켜야 할 것으로 보임

[자 료] 국회예산정책처, 「보건복지분야 재정분석」, 『예산안 분석 IV』, 2009. 11.

[담 당] 김대철 예산분석관(788-4633)

[개 요]

-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양육자의 야근·출장·질병 등 일시적이고 긴급 돌봄이 필요한 가정 및 저소득 영아 양육 맞벌이 가정에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임
 - 2010년도 동 사업의 예산안은 영아 정기돌봄서비스(신규, 44억원)를 포함한 198억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42억원(27.1%)이 증가함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의 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09 (본예산)	2010안	전년대비	
			증가액	증가율
아이돌보미 지원	15,502	19,705	4,203	27.1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2009. 10.

[현안 검토]

- 정부는 2010년도에 신규로 영아 정기돌봄서비스 제도를 도입하여 보육료지원 소득 하위 50%(맞벌이가구의 경우 1인 25% 경감으로 인해 소득하위 50%가 되는 가정 포함)의 12개월 미만 아동 1,249명에게 영아 정기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 정부는 영아 정기돌봄서비스 이용자 1,249명을 추정할 때 대상자의 서비스 이용율을 60%로 가정하였고 동 사업 수혜자는 보육시설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동 사업의 세부사업인 “긴급·일시 돌봄서비스”를 아주 적은 비용(시간당 1,000원, 최대 연 480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계층임

- 그러나 “가” 형의 경우 월 46만원, “나” 형은 월 57.5만원을 부담하여야 하는데 월 평균 224만원(3인 가구 기준) 미만의 소득을 얻는 가구가 월 46 ~ 57.5만원을 부담하는 것은 경제적 부담이 크고 이용율이 그리 높지 않을 것이므로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원 대상 소득 수준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자 료]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2009. 11.

[담 당] 김대철 예산분석관(788-4633)

[개요]

- 보육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 사업의 2010년도 예산안은 657억원으로 전년본예산 대비 102.7% 증액
 - 동 사업은 2009년 7월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2009년도에는 6개월분의 예산이 반영되었고, 2010년도에는 12개월분이 반영됨에 따라 전년대비 10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기존 보육사업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을 위주로 지원함에 따라, 주변에 보육시설이 없거나 장애·질병 등으로 보육시설 이용이 어려운 아동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도입
 - 차상위계층 0~1세 아동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씩 양육수당 지원

〈2010년도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09 (본예산)	2010안	전년대비	
			증가액	증가율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일반회계)	32,390	65,664	33,274	102.7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2009. 10.

[현안 검토]

- 동 사업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을 대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예산안 편성을 위해서는 지원대상자수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전제되어야 함

- 정부는 2010년도 예산안 편성시 단순히 지원대상자수를 전년과 동일하다고 보았으나, 통계청의 2010년 추계인구, 정부의 보육시설미이용 추계 등을 이용하여 정확하게 산출할 필요
 - 차상위계층 0~1세 영유아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또는 「보육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 사업으로부터 보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로, 두 사업의 지원대상자수 추계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추계해야 함
 -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은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본 사업은 시설 미이용 아동이 전년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는 등 두 사업이 상이한 기준으로 지원대상자 수를 추계한 결과 과다추계됨
 - 정부는 2009년도와 동일한 11만 4천명으로 계상하였으나, 통계청의 2010년 추계인구, 정부의 보육시설미이용 추계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도출된 지원대상자수는 8만 6천명으로, 예산안 조정 필요

[자 료] 국회예산정책처, 「보육사업의 예산안 분석」, 『예산안 분석 IV』, 2009. 11.

[답 당] 김태은 예산분석관(788-4637)

[개요]

- 2010년도 건강보험 관련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대비 2.7% 증가한 5조 4,959억원으로 편성
 -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은, 1998년 지역의료보험 도입 이후 지역가입자 급여비의 50%를 지원하다가, 2006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상당’ 지원(국고 14%, 국민건강증진기금 6%)으로 변경
 - 2010년도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예산안은 보험료예상수입액 27조 931억원의 14%에 해당하는 3조 7,930억원과 과징금예상수입액 107억원의 50%인 54억원을 합한 규모임
 -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되는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은 보험료예상수입액의 6%로 규정되어 있으나,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는 부칙 규정에 의해, 부담금예상수입액 1조 6,355억원의 65%인 1조 630억원으로 편성
 - 건강보험 국고보조금은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외에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사용자로서 부담금과 차상위계층의 건강보험 전환으로 인한 본인부담금 차액 지원도 포함됨

〈2010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

	2009 (본예산)	2010안	전년대비	
			증가액	증가율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일반회계)	3,656,585	3,798,385	141,800	3.9
건강보험가입자 지원(국민건강증진기금),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국가부담금(일반회계)	1,026,246	1,063,062	36,816	3.6
차상위계층 지원(일반회계)	147,876	113,870	-34,006	-23.0
합 계	5,350,928	5,495,891	144,963	2.7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2010년도 예산안 개요」, 2009. 10.

[현안 검토]

-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은 5조원을 초과하지만, 지원액 편성의 근거가 되는 보험료 예상수입액 등에 대한 국회심사가 제한되어, 구체적인 산정기준에 대한 검증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국가부담금은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 또는 보험료율에 의해 결정되지만, 지원금의 편성기준이 되는 보험료 예상수입액 또는 보험료율은 예상치로 실제 차년도 보험료수입액을 결정하는 보험료율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 이후 결정되어 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에 대한 검증이 어려움
 - 200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국회 심의시 보험료율을 5.23%(보험료율 인상률 3%)로 예상하고 예산안을 편성·심의하였으나, 그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험료율을 동결함에 따라 예산안 편성에 적용된 보험료율과 실제 보험료율이 괴리
 - 최근 3년간 보험료율을 검토해보면, 예산안 편성시 적용된 보험료율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보험료율이 일치한 적 없음
- 국고지원금에 대한 엄중한 심사와 재정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이 통합재정의 범주에 포괄되어 적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 제도적 정비 필요

<예산안 편성에 적용된 보험료율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보험료율>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안)
예산안 편성시	보험료율(%)	4.61%	5.06%	5.23%	5.18%
	보험료율인상률(%)	(3.0%)	(6.0%)	(3.0%)	(2.0%)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 결정	보험료율(%)	4.77%	5.08%	5.08%	(미정)
	보험료율인상률(%)	(6.5%)	(6.4%)	(0.0%)	(미정)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요구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 답변자료

[자 료] 국회예산정책처, 「국민건강보험 정부지원 예산안 분석」, 『예산안 분석 IV』, 2009. 11.
[담 당] 김태은 예산분석관(788-4637)

[개요]

- 난임부부지원사업은 2010년에 일반회계에서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이관·편성된 사업으로, 2010년도 예산안은 전년본예산 대비 109.9% 증가한 255억원으로 편성
- 2010년도 일반회계에서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신규이관·편성된 사업은 6개로, 이 중 2개가 「난임부부지원 운영」과 「난임부부지원 지자체경상보조」로 난임부부지원 사업임
 - 두 사업은 기금사업으로 이관되면서, 임산부·아동 건강관리, 찾아가는 산부인과, 가임기 여성건강증진 사업 등의 사업 함께 「산모건강관리」 사업에 통합·편성

〈2010년도 난임부부지원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2009 (본예산)	2010안	전년대비	
			증가액	증가율
난임부부지원 운영	57	57	-	-
난임부부지원 지자체경상보조	12,073	25,401	13,328	110.4
합 계	12,130	25,458	13,328	109.9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2009. 10.

[현안 검토]

- 난임부부지원 사업의 목적은 난임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율 증진으로 건강관리사업, 사전예방적 건강증진사업 등을 사용목적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목적과 부적합함

-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용도는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에 의해 건강사업관리, 보건교육, 사전예방적 건강증진사업 등으로 제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는 난임부부지원 사업은 사전예방적 건강증진사업으로 보기 어려움
- 일반회계에서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이관된 사업의 비중은 24.8%로 높은 편이며, 이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이 보건분야의 일반적인 재원조달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재정규율 차원에서 점검 필요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국민건강증진기금 예산안 분석」, 『예산안 분석 IV』, 2009. 11.

[답 당] 김태은 예산분석관(788-4637)

[개 요]

- 2010년도 일자리사업 중 청년층·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촉진 사업 중 주요사업은 노동부 소관 고용보험기금에서 수행되는 「신규(청년)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 「기업전직지원센터 운영지원」 등 3개 사업이 있음
- 예산안: 540억원(전년본예산 대비 11.5% 증)
 - 「신규(청년)고용촉진장려금사업」은 청년을 신규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최초 6개월간 54만원(제조업 72만원), 이후 6개월간 36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사업」은 50세 이상 실직 고령자를 위한 취업능력 향상 패키지 프로그램이고, 동 사업 중 '해외취업프로그램'(10억원, 250명)은 국내·해외 어학 및 직무연수와 더불어, 구인처 발굴을 통하여 동남아 해외취업을 연계하는 사업임
 - 「기업전직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은 기업이 자체 전직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퇴직 예정자에게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최초 설치비용의 80%를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임

〈청년층·고령자 대상 주요 고용촉진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09		2010안	전년본예산 대비	
	본예산	추경		증가액	증가율
신규(청년)고용촉진장려금	47,377	52,099	47,377	-	-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	1,061	1,061	5,651	4,590	432.6
기업전직지원센터 운영지원	-	-	1,000	순증	순증
합 계	48,438	53,160	54,028	5,590	11.5

자료: 각 부처

[현안 검토]

- 「신규(청년)고용촉진장려금」(474억원)의 경우, 제도변화에 따른 집행 실적 부진을 고려하여 사업비의 감액 조정 필요
 - 지원대상의 적정성, 사중손실, 부정수급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지원대상 범위를 축소
 - 지원대상을 '29세 이하로서 보험 피보험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를 고용한 사업주'에서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의 사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29세 이하의 자로서 3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던 자를 알선을 통해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로 청년층 지원대상 범위를 축소
 - 개정된 시행령이 시행(2009. 1. 1일)되면서, 2009. 9월말 현재 당초계획 대비 집행률은 37.2%(176억원), 계획현액 대비 집행률은 33.9%에 불과
 - 집행률 저조는 법령 개정 시 수요예측이 면밀하게 수행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음을 의미하며, 그 결과 2008년도 결산 때와 마찬가지로 불용액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도 커지고 있음
-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57억원) 중 ‘고령자 해외취업프로그램’(10억원, 250명)은 사업계획이 미비한 점을 감안하여 사업비를 감액 조정할 필요
 - 유사사업인 노동부 「글로벌 취업지원사업」에서도 원활한 언어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해외취업의 장애요소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 고령자가 단기간에 언어를 습득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 임금격차를 감내하고 선진국도 아닌 동남아 국가에 취업하여 정착할 의사가 있는 고령자 수요가 충분할 지에 대해서도 의문
 - 하위 직급이 아니라, 고령자에게 걸 맞는 직위를 제공하는 구인처를 발굴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의문

- 구체적인 세부추진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2010년도 훈련인원(250명)을 축소하여 시범적으로 실시(50명 수준)한 후, 사업성과 평가를 거쳐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 검토
 - 외교통상부와 지식경제부도 2010년도 신규사업으로 「중장기 자문단파견사업」 및 「퇴직전문가파견 지원사업」을 각각 50명 수준으로 계획
- 「기업전직지원센터 운영지원」(10억원)의 경우, 사업설계 상의 유사중복 문제를 감안하여 사업추진 재검토 필요
 - 전직지원서비스는 전직지원센터(노사공동재취업센터 포함)와 고용지원센터에서 담당
 - 특히 전직지원센터의 경우, 전년(당초계획)대비 1.3배인 118억 2,400만원에 달하는 2010년도 사업비 확대를 통하여 전직지원 서비스 활성화를 계획
 - 전직지원센터(노사공동재취업센터 포함)와 기업전직센터는 기본적인 서비스 내용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사업장 규모에 따라 2개의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게 되거나, 동일한 대상(중소기업)에 대하여 2개의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게 되어, 일관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따라서 기업전직지원센터 설치를 신규로 지원하기보다, 사업비가 확대 계상된 기존의 전직지원센터(노사공동재취업센터 포함)를 중심으로 실직(예정)자에게 내실있는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보다 나은 대안으로 볼 수 있음

[자 료] 국회예산정책처, 「일자리 대책 예산안 분석」, 『예산안 분석 II』, 2009. 11.

[담 당] 이진우 예산분석관(788-4638)

[개요]

- 노동부 소관 고용보험기금 「교대제전환지원금사업」
 - 예산안: 61억원(전년과 동일)
 - 교대제를 새로이 실시하거나 교대제를 실시하던 사업주가 조를 늘려 교대제를 전환(4조 이하에 한함)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된 근로자 1인당 분기 180만원(대규모 기업 120만원)씩 1년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사업
- 고용보험기금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선도기업육성사업」
 - 예산안: 14억원(신규)
 - 건설업계가 임시·일용직 위주로 고용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불안정이 가중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
 - 건설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전문건설업 25개 공종 중 기계화 작업에 주로 의존하는 5개 공종을 제외한 공종별로 20개 업체를 선정하여 시범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

[현안 검토]

- 「교대제전환지원금사업」(61억 1,200만원)은 전반적인 제도 활용도가 급감하고 있다는 점과 유사한 목적의 사업폐지 사례, 고용의 경기후행성, 그리고 2009. 9월말까지의 집행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사업비를 감액 조정할 필요 있음
 - 2004년 이후 동 제도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대부분이 이미 수혜를 받아, 동 제도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

- 2007년 이후 집행실적이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이며, 2008년 하반기 경제위기 발생 이후 실적이 더욱 저조(당초계획 대비 집행률 52.5%)하였으며, 2009. 9월말 현재 당초계획(61억 1,200만원) 대비 집행률은 18.4%(11억 2,600만원)에 불과
- 동 사업과 유사한 목적으로 동일시기(2004. 10월)에 도입된 「중소기업 신규업종진출지원금」, 「재고용장려금」, 그리고 「중장년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 등 3개 사업도 사업주의 활용도 저조와 효과성 미흡 등으로 2009. 1월부터 폐지
- 동 사업과 같이 임금보조금을 일정부분 지원하는 것이 기업의 교대제 전환 및 고용확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커다란 유인이 되지 못함
-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선도기업육성사업」(14억 2,100만원)은 사업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범사업 실시가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사업비의 조정 검토 필요
- 전문건설업 20개 공종별로 업체를 선정하여 인건비 10억원(업체 당 평균 20명의 인건비로 5,000만원 지원)과 노무관리 지원 3억원(업체당 1,500만원) 등 지원
- 동 사업은 2008년에 신규로 추진된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사업」의 실적저조에 대한 대안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나, 사업설계 측면에서 기존 사업과 큰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집행실적 저조가 재현될 우려 있음
 - 2008년도 결산결과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사업」은 당초계획 29.4억원 대비 집행률 0.1%, 2009. 9월 현재 당초계획(29.4억원 대비 집행률 0.4%)임
 - 수주규모와 기후적 요인에 의해 작업중단이 빈번한 건설업의 특성상, 건설사업장에서는 시공수주가 없을 경우에도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등 비용 발생
 - 따라서 인건비 등의 일부 지원이 사업주에게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임

- 유사한 목적과 내용으로 실시했던 사업실패 사례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2010년도에는 사업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그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봄

[자 료] 국회예산정책처, 「노동분야 재정분석」, 『예산안 분석 IV』, 2009. 11.

[담 당] 이진우 예산분석관(788-4638)

[개요]

- 노동부 소관 고용보험기금 「민간우선선정직종훈련지원사업」과 「대한상의우선선정직종훈련지원사업」
 - 예산안: 「민간우선선정직종훈련지원사업」 697억원(전년대비 9.4% 감), 「대한상의우선선정직종훈련지원사업」 302억원(전년대비 9.9% 감)
 - 「민간우선선정직종훈련지원사업」과 「대한상의우선선정직종훈련지원사업」은 모두 우선선정직종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민간 훈련기관과 대한상공회의소의 8개 인력개발원에 지원해 주는 사업임

[현안 검토]

- 민간과 대한상의의 우선선정직종훈련지원사업의 차별성이 약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상의에 대해서는 훈련 기관 심사없이 일괄적으로 훈련인원을 배정
 - 대한상을을 통해 수행하는 우선선정직종 훈련의 경우, 2008년도부터 단기과정을 확대하고 있는데, 단기과정의 경우 민간훈련기관의 훈련과 차별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단기과정 중 1년 과정은 차량제어정비, 컴퓨터응용기계, 기계설계제작 등 10개 과정에 훈련계획인원 740명, 6개월 과정은 특수용접의 1개 과정에 훈련인원은 60명임
 - 단기과정 훈련은 민간훈련기관에서도 실시하고 있어, 특별히 대한상의의 8개 훈련기관에 경쟁없이 직업훈련인원을 배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향후 「민간우선선정직종훈련지원사업」과 「대한상의우선선정직종훈련지원사업」을 통합하여 전체 공공 및 민간 훈련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을 공모하고,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자 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09. 11.

[답 당] 이진우 예산분석관(788-4638)

[개 요]

- 노동부 소관 산재보험기금 「산재보험급여」
 - 예산안: 3조 8,205억원(전년대비 5.1% 증)
 - 「산재보상보험법」 제1조와 제36조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의무지출로서, 요양·휴업·장해 등 9개 급여항목으로 구성됨
 -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부담해야할 업무상 재해보상 책임을 국가가 대행하여 신속하 업공정하업보상하여 산재근로자 및 가족의 생활안정 도모
- 산재보험기금 「산재보험급여」 중 ‘직업재활급여’
 - 예산안: 87억원(전년대비 76.8% 감)
 - 1~9급 산재장애인 중 2008. 7. 1일 이후 산재치료가 종료된 자가 직업훈련 및 직장복귀 지원금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직업재활급여'가 적용되고, 2008. 6. 30일 이전 산재치료 종결자는 기존 「산재근로자 직업훈련」과 「산재근로자 직장복귀지원금」 대상자로 분류
- 산재보험기금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 예산안: 135억원(전년 동)
 - 산재근로자 및 유족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는 '산재생활안정자금'(130억원)과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신청 후 30일이 경과하였으나 승인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재해근로자에게 요양비의 일부를 대부하는 '요양비 대부'(5억원) 등 2개 세사업으로 구성

[현안 검토]

□ 연금급여비 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부담 가중

- 2010년도 산재보험급여비(3조 8,205억원)는 2003년도 급여비의 1.5배 수준에 달하며, 급여비 지출 증가의 주요 요인은 장해연금, 유족연금, 상병보상연금으로 구성된 연금급여비 지출의 급증
 - 2003~2010년간 연평균 증가율: 연금급여비 18.0%(vs. 비연금 급여비 3.0%)
 - 실적기준 수급자 수의 2003~2008년간 연평균 증가율: 연금 수급자 수 17.0%(vs. 총 수급자 수 6.0%)
 - 총 급여비 대비 연금지급액 비중: 15.3%(2003) → 31.9%(2010),
연금수급자 수 비중: 16.7%(2003) → 34.0%(2010)
- 연금급여는 수급자 사망 시까지 지속적으로 지출이 발생하므로, 연금 수급자 수의 증가는 재정에 상당한 부담 초래
 - 후세대는 미래의 당해연도 연금급여비 부담뿐만 아니라, 선대로부터 이어온 급여비까지 부담하는 문제 발생

□ 수정된 책임준비금 산정식은 최근 연금급여비의 급증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산재보험 운용에 있어 책임준비금의 적정규모와 관련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 있음

- 산재보험 책임준비금 확보율은 2007년 47.0%에서 2010년 140.8%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이는 적립액의 증가보다는 단순히 책임준비금 산정기준을 수정하였기 때문
- 연금급여비 지출의 급증을 감안하여 책임준비금 산정식을 현실성 있게 수정함으로써, 향후 안정적인 산재보험재정 운용을 위한 정확한 정보의 생산 필요

□ ‘직업재활급여’ 중 직업재활훈련 사업비의 집행실적 부진을 고려하여, 2010년도 직업재활훈련 사업비 조정 필요

- 2009. 9월말 현재 2.1%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2008년에도 집행률이 0.2%에 불과하여 집행실적 저조 문제는 심각
 - '직업훈련급여'의 저조한 집행실적은 제도변화에 대한 충분한 홍보 등을 통하여 산재근로자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등의 사업 활성화 노력이 미흡했던 것이 주요요인으로 파악됨
 - 기존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사업」은 훈련시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의 70%를 훈련수당으로 지원하였으나, '직업재활급여' 신설 이후 훈련시간에 따라 훈련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기준 강화
- 「생활안정자금 용자사업」 중 세사업인 '요양비 대부'의 집행실적 저조를 고려한 사업 조정 필요
 - 2008년도 결산결과 당초계획 40억원이 전혀 지출되지 않았고, 2009. 9월말 현재 당초계획 25억원 중 지출액이 1,544만원(10명)으로 집행률이 0.6%에 불과
 - 노동부는 2009년말 지출액이 2,400만원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
 - 집행실적 저조원인은 지원조건이 현실적인 여건과 차이가 있어 지원대상이 적었고, 대부가 부채라는 부정적 시각과 건강보험에 가입한 대부분의 재해근로자가 등 사업 활용유인이 적었기 때문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노동분야 재정분석」, 『예산안 분석 IV』, 2009. 11.

[담당] 이진우 예산분석관(788-4638)

[개 요]

□ 노동부 소관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중소기업 선진복지제도도입사업」

○ 예산안: 10억원(신규)

- 선진기업복지와 관련된 제도 도입을 독려하여 중소기업의 근무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인재 유치와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계획
- 선진 기업복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중소기업 선진복지 지원단'을 통하여 6개 권역에 걸쳐 기업복지(우리사주, 사내복지기금, 선택적 복지 등) 제도를 안내하고 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광고 및 인쇄물 등을 통한 홍보 등을 주요내용으로 함

□ 근로자복지진흥기금 「4인 이하 사업장 퇴직연금 운영지원사업」

○ 예산안: 5억원(신규)

- 2010. 12월말까지 퇴직연금제도를 확대·적용해야 하는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적 부담을 최소화(관리비용의 절감)하면서, 영세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재원 마련을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위탁운영을 통한 퇴직연금의 체계적인 연금 설계, 부담금 징수, 가입자 관리, 연금지급 등 공적서비스를 준비할 목적으로 지원
- 사업비의 구체적인 내용은 퇴직연금 전문인력 채용, 퇴직연금운용 관리 전산시스템 임대 도입, 퇴직연금 부담금 징수 및 적립금 운용, 퇴직연금제도 홍보 및 가입자 교육 등임.

[현안 검토]

- 「중소기업 선진복지제도도입사업」의 사업내역 중 ‘중소기업 선진복지 지원단’을 통한 컨설팅 사업은 타 컨설팅 사업의 사업성과 저조를 고려한 사업비 편성 필요
 - 「임금피크제 컨설팅」을 비롯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컨설팅」 등 노동부의 기존 컨설팅 사업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
 - 기업체에서 제도도입 등에 대한 인식전환 등의 성과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경기에 민감한 기업이 지속적으로 비용부담이 수반되는 제도의 도입을 꺼려하는 것으로 파악
 -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범사업으로 제한적으로 실시한 다음,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추후 확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바, 2010년도 컨설팅 사업 관련 사업비를 조정할 필요 있음
 - ‘선진기업복지 컨설팅’은 시범운영 후, 추후 사업의 효율성과 집행 실적을 평가하여 노동부 소관 컨설팅사업과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임
 - 노동부는 컨설팅 사업을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통합·조정할 바 있다고 밝혔으나,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마나 컨설팅사업을 포함시켜 추진하는 것은 기존 문제점 지적에 대한 근본적인 시정이 될 수 없음
- 「4인 이하 사업장 퇴직연금 운영지원사업」의 경우, 근로복지진흥기금 사업으로서의 부적격성과 관련 법규가 미비하므로, 관련 법률안의 개정과 함께, 동 기금보다는 일반회계에 계상되어야 할 필요 있음
 - 퇴직연금사업자의 자격이 없는 근로복지공단이 퇴직연금사업을 수행하려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임
 - 근로복지공단이 기금계획안에서와 같이 퇴직연금사업자로서 퇴직연금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4조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함

- 동 사업은 기금사업으로 수행되기에는 부적합한 측면이 있음
 - 「근로자복지기본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목적조항¹⁵⁾,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의 조성재원¹⁶⁾,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의 용도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사업으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보임
 - 「국가재정법」은 기금설치에 대하여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에서는 정부로 하여금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 퇴직연금업무 수행 관련 지원, 퇴직연금 지급보장장치 마련 등 수급권 보호 방안 강구 등의 책무를 부여하고 있어 동 사업은 정부의 책무로 일반회계 사업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임

[자 료] 국회예산정책처, 「노동분야 재정분석」, 『예산안 분석 IV』, 2009. 1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2010년도 노동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09. 11.

[답 당] 이진우 예산분석관(788-4638)

-
- 15) 「근로자복지기본법」제1조(목적)는 “이 법은 근로자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조(목적)는 “이 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함
 - 16)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조성재원 중 다소 불안정한 로또복권 수입이 주재원인 복권기금전입금이 큰 비중을 차지함

[개요]

- 여성부 소관 일반회계 성매매피해자 구조사업 등
 - 예산안: 106억원(전년본예산 대비 2.3% 감)
 - 여성부는 성적(sexual) 피해여성 지원과 관련하여, '성매매피해자구조 지원', '집결지성매매여성자활지원사업',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 그리고 '가정폭력·성폭력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와 같이 4개 재정사업을 운영

〈2010년 성 관련 피해여성 지원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09 (본예산)	2010안	전년대비	
			증가액	증가율
성매매피해자구조지원	1,718	1,546	-172	-10.0
집결지성매매여성자활지원	2,165	1,356	-809	-37.4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기금)	1,558	1,535	-23	-1.5
가정폭력·성폭력피해회복 및 재발방지(기금)	5,427	6,184	757	13.9
합 계	10,868	10,621	-247	-2.3

자료: 여성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및 「2010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영계획(안) 개요」, 2009. 10.

[현안 검토]

- 성적 피해여성 지원과 관련된 상이한 사업을 비교하여 보면, 지원방식의 차이뿐만이 아니라 지원규모에 있어서도 차이가 존재하여, 성 피해 여성간 국고지원에 있어 격차발생이라는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으므로 국가적 차원의 지원에 있어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과 같이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의 다양한 법률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과 달리 지자체 경상보조가 아닌 민간경상보조를 통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사업비 100%를 지원하는 것은 일면 이해가 된다고 할 수 있음
- 하지만 유사한 성관련 피해여성간 특히 성매매피해여성과 집결지성매매여성을 위한 의료·법률·직업훈련 지원에 있어 국고보조의 차이를 둔다는 것은 특정 피해여성에 대해 국가정책의 우선권이 주어지고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음

〈성 관련 피해여성 지원사업 추진체계 비교〉

(단위: %)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집결지성매매 여성자활지원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	가정폭력·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
사업주체	여성부, 지자체, 상담소 및 보호시설	여성부, 지자체, 상담소	여성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여성부, 지자체, 상담소 및 보호시설
사업방식	지자체 경상보조	지자체 경상보조	민간경상보조	지자체 경상보조
보조율	50-80	100	100	50-70
수혜자	성매매피해여성	집결지성매매여성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여성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여성

주: 성매매피해자구조지원과 가정폭력·성폭력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의 경우 서울은 50% 지방은 70~80%를 보조

자료: 여성부 내부자료 정리, 2009. 10.

[자 료] 국회예산정책처, 「성 관련 피해여성 지원사업간 국고보조율 재조정 필요」, 『예산안 분석 IV』, 2009. 10.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2009. 11.

[담 당] 강상규 예산분석관(788-4635)

[개 요]

□ 여성부 소관 일반회계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 예산안: 197억원(전년 추경대비 76.1% 증)
- 전년대비 동 사업 예산안 편성의 특징은 기존 여성친화기업문화조성사업과 여성발전기금사업인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설치운영사업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사업의 세부사업으로 흡수·통합된데 있음
- 또한 2009년까지 경력단절여성만이 아니라 청년여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지원했으나, 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 지원에 특화하기 위하여 기존 청년여성 직업훈련사업을 노동부로 이관한데 다른 특징이 있음

〈2010년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09 (추경예산)	2010안	전년대비	
			증가액	증가율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4,000	12,856	8,856	221.6
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	2,993	6,841	3,848	128.6
청년여성 직업훈련	2,431	-	-2,431	순감
여성친화기업문화조성	260	-	-260	순감
여성새로일하기 지원본부설치·운영	1,500	-	-1,500	순감
합 계	11,184	19,697	8,513	76.1

자료: 여성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2009. 10.

[현안 검토]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주요 사업추진매체로 하고 있는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은, 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만이 아니라 직업상담, 주부 인턴제 및 취업설계사 제도운영, 일/가정양립을 위한 취업지원서비스 등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세부사업의 추진형태를 분석하면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이를 고려한 2010년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예산안의 조정이 필요
 - 직업훈련사업의 경우, 과연 1-3개월의 단기간에 걸친 직업교육으로 경력단절여성이 교육받은 직종에 전문성을 갖고 장기간 취업이 가능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과정당 실제 취업실적을 반영하여 과정수 및 지원액을 결정하고, 특히 취업에 있어 보다 많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과정은 과정 수를 줄이고 교육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으로 지원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2008년의 경우 여성지역특화 및 지역 산업체 수요맞춤형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고학력과정과 고급 IT 및 비전통적 여성진출 직종교육을 받은 전문과정 수료자의 취업률이 각각 59.8%와 63.3%로 일반과정 수료자의 취업률 79%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취업설계사제도, 주부인턴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취업서비스 등은 2009년 신규사업인 바, 각각의 사업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판단될 때까지 지원규모를 증액하여 편성하기 보다는 전년도 수준으로 조정함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취업설계사운영'의 경우, 아직 구체적으로 이들의 자격기준이나 역할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못하고, 이들이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에 어느 정도의 기능을 하였는지에 대한 실제적 평가가 결여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10년 취업설계사운영 예산안은 지원단가의 인상과 더불어 센터당 운영인원의 증원을 계획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될 수 있음

- '주부인턴제 운영'은 경력단절여성의 직장적응훈련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동 사업의 취지가 단순한 사업체의 주부인턴 채용인원 증가가 아니라 인턴과정을 통해 직장생활을 경험한 경력단절여성의 직장적응력을 높이는데 있으므로, 주부인턴을 경험한 취업여성의 직장적응 정도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반영하여 주부인턴에 대한 지원규모와 지원인원을 결정해야 할 것
 - ** 주부인턴제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알선을 통해 주부인턴을 채용하는 사업체에 인턴 1인당 3개월 동안 월50만원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2010년에는 동 사업을 위하여 55억원을 지원할 계획
- 일/가정 양립 등을 위한 취업지원서비스의 경우, 2009년 실제 사업 내용이 일/가정 양립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사업이거나 시범사업의 성격을 가진 것이 대부분이며, 실제 일과 가정 양립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서의 어떠한 기여를 하는가에 대한 평가도 결여된 상황
 - 2010년 '여성인적자원 개발시스템구축사업'의 세부사업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개발"이라는 연구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바, 동 연구개발사업의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2010년 일/가정양립 등을 위한 취업지원서비스사업에 대한 예산안은 조정할 필요가 있음

[자 료] 국회예산정책처,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추진체계의 취약성」,
『예산안 분석 IV』, 2009. 11.

[답 당] 강상규 예산분석관(788-4635)

[개요]

-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일반회계 ‘노로바이러스 검사체계 확립사업’ 및 ‘노로바이러스 안전관리사업’
 - 예산안: 24억원(전년본예산 대비 56.2% 증)
 - 노로바이러스 검사 관련사업은 「식중독균 검사체계 확립사업」의 세부사업인 노로바이러스 검사체계확립과 「식중독안전관리사업(R&D)」의 세부사업인 노로바이러스 안전관리사업으로 구성
- 최근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발생건수의 증가에 대응하여, 정부는 2008년 ‘식품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동 대책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방식약청 관할지역을 중심으로 지하수 노로바이러스 오염실태조사 및 검출시설의 사후관리사업 추진
 - 식중독 발생 환자수 대비 원인별로는 세균에 의한 것이 45.9%이고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 28.5%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노로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가 원인이 되는 식중독 발생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실정
 - 2008년 전체 식중독 발생건수의 19.5%가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노로바이러스검사 관련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09 (본예산)	2010안	전년대비	
			증가액	증가율
식중독균 검사체계 확립 (노로바이러스 검사체계 확립)	1,717 (1,501)	1,411 (1,085)	-306 (-406)	-17.8 (-27.7)
식중독 안전관리(R&D) (노로바이러스 안전관리)	-	2,320 (1,260)	순증	순증
합 계	1,717 (1,501)	3,731 (2,345)	2,014 (844)	117.3 (56.2)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2010년도 예산안 사업설명 자료(II-1)」, 2009. 10.

[현안 검토]

-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학교 및 청소년수련원의 노로바이러스 오염실태라는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자체사업(노로바이러스 검사체계 확립사업)과 용역사업(노로바이러스 안전관리사업)으로 분리·추진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건당 검사단가의 차이가 발생하여 예산낭비의 여지가 큼
 - 자체사업으로 추진되는 노로바이러스 검사체계 확립사업의 경우, 노로바이러스 검사 1건당 비용이 50만원이나, 이를 연구용역으로 추진하면 자체용역은 45만원 그리고 외부용역은 70만원이 소요

〈사업별 노로바이러스 검사비〉

(단위: 원)

		검사단가	건수	총비용
노로바이러스 검사체계 확립		500,000	1,300 (650건, 2회)	650,000,000
노로바이러스 안전관리(R&D)	자체용역	450,000	600 (300건, 2회)	270,000,000
	외부용역	700,000	1,100 (550건, 2회)	770,000,000

자료: 식약청, 내부자료, 2009. 10.

- 동일 내용의 조사사업을 검사단가의 차이가 나는 두 개 사업으로 분리·추진하지 말고, 하나의 사업 속으로 정리·통합하고 검사단가가 비싼 외부용역 건수를 최대한 줄임으로써 예산안의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자 료] 국회예산정책처, 「노로바이러스 검사 관련 유사·중복사업 추진」, 『예산안 분석 IV』, 2009. 11.

[답 당] 강상규 예산분석관(788-4635)

[개 요]

- 국토해양부 소관 국민주택기금 보금자리주택 사업
 - 기금운용계획안: 8조 8,119억원(전년대비 42.6% 증가)
 - 국민임대주택 사업 3조 9,984억원, 영구임대주택 사업 3,119억원, 공공임대주택 사업 2조 2,277억원, 분양주택 사업 2조 2,739억원임
 - 사업기간은 2009~2018년이고 150만호 공공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임
 - 국민임대주택 40만호, 영구임대주택 10만호, 10년 공공임대주택(지분형임대주택 포함) 20만호, 전세임대주택 10만호, 공공분양주택 70만호 등
-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을 수요자 맞춤형 「보금자리 주택」으로 통합하고, 향후 10년간 총 150만호(연평균 15만호)를 공급하는 사업임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억원, %)

	사업명	2009년 계획액(A)	2010년 기금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비고
국민임대	국민임대출자	10,550	10,724	174	1.7	건설
	국민임대(용자)	21,934	26,229	4,295	19.6	
	매입임대자본이전	2,497	2,331	-166	-6.7	기존주택매입
	매입임대지원(용자)	700	700	-	-	미분양주택매입
	소 계	35,681	39,984	4,303	12.1	
영구임대	영구임대출자	708	3,119	2,411	340.5	건설
공공임대	공공임대(용자)	11,000	22,277	11,277	102.5	건설
공공분양	분양주택지원(용자)	14,400	22,739	8,339	57.9	건설
합 계		61,789	88,119	26,330	42.6	

자료: 국토해양부, 「2010년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개요」, 2009. 10.

[현안 검토]

□ 분양주택지원 사업 확대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의 주요 사업 재원배분의 적정성 문제

- 국민주택기금 사업은 임대주택, 분양주택, 수요자용자, 주택개량 등 크게 4개의 주요 분야로 나눌 수 있음
 -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사업은 공공이 직접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영역에 포함됨
 - 수요자용자 사업은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 사업 등 직접적으로 사업대상자에게 용자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임
 - 주택개량 사업은 주거환경개선 사업등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보수 비용을 용자해 주는 사업임
-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전체에서 차지하는 2010년 분양주택 사업의 비중은 전년대비 2.2%p 증가한 8.2%가 되었고, 반면 수요자용자사업은 전년대비 9.5%p 감소한 20.5%임

〈2010년 국민주택기금 주요 분야별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억원, %)

구분	2009년 계획액(A)	2010년 기금안(B)	증감액(B-A)	증감률(B-A)/A
임대주택 사업	47,741 (19.9)	65,608 (23.7)	17,867	37.4
분양주택 사업	14,400 (6.0)	22,739 (8.2)	8,339	57.9
수요자용자 사업	71,780 (30.0)	56,977 (20.5)	-14,803	-20.6
주택개량 사업	1,180 (0.5)	100 (0.04)	-1,080	-91.5
국민주택기금 전체	239,720 (100.0)	277,474 (100.0)	37,754	15.8

주: () 안의 수치는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국토해양부, 「2010년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개요」(2009.10)를 기초로 재구성

- 사업효과의 즉시성이나 저소득층 주거안전망 확충이라는 차원에서 분양주택지원 사업 확대보다는 임대주택이나 수요자용자사업의 확대가 바람직함
- 수도권 분양주택 공급 물량 확대에 따른 청약과열문제
 - 공공의 수도권 분양주택 공급 확대로 인해 사업대상자의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로 인해 청약과열과 사업수혜자의 과도한 개발이익 향유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 분양주택 사업의 확대시행은 기존의 주거관련 자원 배분구조를 변경시킬 수 있으므로 사회적 적정 공급량만을 고려하여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함

[자 료] 국회예산정책처, 『2010년도 예산안 분석Ⅲ』, 2009. 11.

[담 당] 한정수 예산분석관(788-4632)

[개 요]

- 국토해양부 소관 일반회계 사회취약 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
 - 예산안: 415억원(2010년 신규사업)
 - 국비 70%, 지방비 30%(서울은 국비:지방비 = 60:40, 그 외의 지역은 국비:지방비 = 80:20)씩을 분담하는 보조사업임
 - 사업시행은 국가지정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행하며, 사업 수혜자는 주택을 소유한 기초생활수급자임
 - 사업기간은 2010~2016년이며, 총사업비는 3,000억원(지방비 포함 시 4,300억원)임
- 동 사업은 사회취약 계층의 열악한 주택 개·보수 비용 지원을 통해 주거복지정책 효과 극대화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임
 - 주거복지정책에서 소외된 자가 소유 취약계층의 열악한 주택을 개·보수하기 위해 재정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사회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09	2010안	전년대비	
			증가액	증가율
사회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	-	41,483	순증	-

자료: 국토해양부, 「2010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I)」, 2009. 10.

- 보건복지가족부의 ‘2007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85만 2,420가구 중 주택을 소유한 기초생활 수급자는 14만 5,977가구이며, 이 중 48.9%인 7만 1,329가구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등 주거여건이 열악하여 개선이 필요함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현황: 2007년 기준〉

(단위: 가구, %)

총 가구수	주거유형		자가주택자의 건축상태						
	임차 등	자가보유	양 호	개선필요	개 축	긴급보수	편의도모 보수	환경개선	기타
852,420	706,443 (82.9)	145,977 (17.1)	74,648 (51.1)	71,329 (48.9)	1,299	994	9,253	11,532	48,251

자료: 국토해양부, 「2010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I)」, 2009. 10.

[현안 검토]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택 개보수가 필요한 자가(自家) 소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주택 개·보수 지원을 통해, 자가(自家) 소유로 인해 주거복지정책에서 소외되어 온 사회취약 계층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 자가 소유 사회취약 계층의 주거환경 지원 확대와 주택 개·보수 기준 정립 필요¹⁷⁾
 - 국토해양위원회의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2009. 11)에 따르면, 주택 개보수가 필요한 자가(自家) 소유 기초생활수급자가 7만여 가구에 달하고 있어, 사회취약 계층의 시급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동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7) 국토해양위원회,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09. 11.

- 또한, 사회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은 2010년도 신규사업인 만큼 사업의 적절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 전 주택의 건축 상태 및 세대별 특성 등을 감안한 주택 개·보수 기준 정립이 필요함
- 정부는 2010년도에 시급히 주택보수가 필요한 10,000가구를 대상으로 총 6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국고 부담 비율 70%를 감안하여 2010년도 예산안으로 415억원을 편성함
 - $(10,000\text{가구} \times \text{가구당 } 600\text{만원}) \times 0.7 = 415\text{억원}$
 - 주택 개·보수단가는 다가구매입임대주택 보수 평균비용적용(한국토지주택공사)
 - 건축 400만원 + 기계 100만원 + 전기 100만원 = 600만원
- 사업비의 지방비 분담에 따른 지방 재정 악화 및 사업차질 문제
 - 지방정부는 현재 자체재원(지방세)과 의존재원(지방교부세)이 모두 감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재정자립도가 매년 감소하고 있어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어려움
 - 또한 지방정부 세출예산의 경우 법정 의무지출에 따른 경직성 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지방비 부담이 존재하는 신규사업의 실시는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
 - 동 사업은 국비 70%, 지방비 30%인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나 지방재정여건이 어려운 일부 지자체의 경우 원활한 집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존재함
 - 재정당국은 동 사업과 유사한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국비: 지방비 = 50:50)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동 사업을 국비·지방비 분담 사업으로 결정하였으나,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 사업의 경우 사업규모가 크지 않아(2010년 예산안은 19억원임) 지방에서 부담해야 하는 지방비는 2010년도의 경우 총 19억원에 불과함

-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방재정부담의 완화를 위해서는 예산의 증액 조정을 통해 지방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분담비율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비부담을 90%로 상향조정할 경우 125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10,000\text{가구} \times \text{가구당 } 600\text{만원}) \times 0.9 - 415\text{억원}(2009\text{년도 예산안}) = 125\text{억원}$

[답 당] 한정수 예산분석관(788-4632)

[개요]

- 국토해양부 소관 일반회계 일반회계에서 국민주택기금으로의 전출금 사업
 - 예산안: 1조 1,683억원(전년 대비 34.5% 증)
 - 국민임대주택은 유형별 사업비의 10~40% 출자·보조, 영구임대주택은 사업비의 85% 출자·보조하는 사업임
 - 사업시행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이며, 사업 수혜자는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자(소득 1~4분위),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임
 - 사업기간은 1998~2018년이며, 총사업비는 22조 7,012억원임
- 동 사업은 보금자리정책의 일환으로 무주택 서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거주 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재고목표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임

〈일반회계에서 국민주택기금으로의 전출금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09	2010안	전년대비	
			증가액	증가율
일반회계에서 국민주택기금으로의 전출금	868,690	1,168,287	299,897	34.5

자료: 국토해양부, 「2010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I)」, 2009. 10.

□ 정책적 여건: 국민임대주택의 다량 공급필요

- 2005년도에 실시한 인구주택 총 조사의 우리나라의 소유자별 주택현황에 의하면 자가 비율이 55.6%에 불과하고 월세(사글세 포함)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비율 또한 19%로 매우 높은 실정이어서, 서민의 주거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자가 비율을 높여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임대주택을 다량 공급이 필요함

〈소유자별 주택 보유현황〉

(단위: 호, %)

	자 가	전 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무 상	합 계
주택 수	8,828,100	3,556,760	2,394,557	333,206	284,092	490,413	15,887,128
비 중	55.6	22.4	15.1	2.1	1.8	3.1	100

자료: 국토해양부

- 수도권과 서울의 공급 주택수에서 멸실 주택수를 차감한 실 주택공급수를 중심으로 전세가격 상승률과 주택가격 상승률을 비교하면 실 주택공급이 충분하지 아니한 해에는 전세가격과 주택가격의 상승률이 높으므로 충분한 주택의 공급이 필요함

〈수도권과 서울의 주택 멸실 및 공급현황〉

(단위: 호)

지역	연도	멸실 주택수	공급 주택수	실 공급주택수	전세가격 상승률	주택가격 상승률	미 분양주택수 (매년 12월 기준)
수도권	2005	10,788	197,901	187,113	3.8	5.1	12,242
	2006	18,086	172,058	153,972	10.4	20.3	4,724
	2007	15,901	302,551	286,650	3.7	5.6	14,624
	2008	9,913	197,580	187,667	1.7	5.0	26,928
	2009	7,105	75,888	68,783	2.7	0.9	23,362(8월말)
서울	2005	16,023	51,797	35,774	2.3	6.3	574
	2006	15,844	39,694	23,850	9.8	18.9	529
	2007	18,124	62,842	44,718	3.7	5.4	454
	2008	17,759	48,417	30,658	1.1	5.0	2,486
	2009	10,957	12,097	1,140	4.0	2.1	1,960(8월말)

주: 멸실 주택수는 건축물대장 상에 등록된 주택의 멸실 수이며 수도권은 경기, 인천지역임
자료: 국토해양부

[현안 검토]

- 국민임대주택의 재고 및 임대율을 살펴보면, 미 임대율이 전체적으로는 0.49%로서 높지 않으나 부산은 8.32%이고 강원은 1.4%, 충북은 2.21%, 충남은 1.19%임

〈국민임대주택 재고 및 임대율〉

구분	재고	준공 후 미 임대	미 임대율
서울	37,220		-
부산	8,718	725	8.32%
대구	10,159		
인천	15,318		
광주	13,294		
대전	6,342		
울산	5,634		
경기	79,194		
강원	9,269	130	1.40%
충북	12,808	283	2.21%
충남	10,352	123	1.19%
전북	13,501		
전남	9,208		
경북	9,668		
경남	13,773		
제주	3,598		
합계	258,056	1,261	0.49%

주: 1. 준공 후 미 임대: 입주종료시점 이후까지도 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세대(단, 입주 후 계약해지, 재계약 등 일시적인 공가는 미 임대 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2. 2009. 4월말 기준.

자료: 국토해양부.

-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인하여 서울 등의 경우 임대주택 입주를 위해 기다려야 되는 기간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차질 없는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임

- 한편, 최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1989년부터 시작된 영구임대주택 건설사업은 재정부담의 과중을 이유로 19만호를 건설한 후, 1993년부터 중단되었다가 2009년부터 다시 향후 10만호를 건설할 예정임
- 그러나 경기도와 인천의 경우 입주 시까지 평균 대기월수가 40개월 이상이어서 영구임대주택의 충분한 공급과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수요조사가 필요함

〈수도권 지역 영구임대주택 평균 대기월수 현황〉

지 역	단지수	가구수	평균 대기기간(월)
서 울	15	23,628	2
경 기	18	19,664	46
인 천	4	6,054	41
계	37	49,346	30

주: 2008. 6.30 기준

자료: 국토해양부

[자 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2009. 11.

[담 당] 한정수 예산분석관(788-4632)

[개요]

- 행정안전부 소관 일반회계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 예산안: 4,456억원(전년대비 8,824억원, 66.4%감)
 - 사업추진방식 : 지자체 보조(국고 보조율 77.8%)
 - 사업기간 : '09~계속
 - 지원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제1항(국가 및 지자체의 실업대책 시행의무)
- 경제위기하 근로능력이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차상위계층, 경제위기
로 인한 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 등)을 대상, 근로와 연계한 한시적
생계지원
 - 인건비 및 재료비 등 지자체 경상보조 4,449억원, 희망근로 T/F 운영비 7
억원 편성
 - 인건비는 10만명에 대해 월 85만 9,000원을 4개월 동안 지급하는 것으로 산
출하여 2,673억원 편성
 - 정부는 참여인원을 10만명으로 산정한 이유를 2009년 참여인원(25.6만명)의
40% 가량이 실업자, 휴·폐업자이고, 차상위계층 또한 10만명 수준임을 감안하
여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
 - 재료비는 전체 지자체 경상보조금 4,449억원의 39.9%인 1,776억원 편성

〈2010년도 희망근로 프로젝트 예산안 편성현황〉

(단위: 백만원, %)

	2009 (추경)	2010안	전년대비	
			증가액	증가율
희망근로 프로젝트	1,328,000	445,600	-882,400	-66.4

자료: 행정안전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자료」, 2009. 10.

[현안 검토]

- 경제위기로 인한 실직자 및 휴폐업 자영업자 지원이라는 사업취지와 달리 지원대상 중 노령자 및 주부 과다
 - 10월 중순을 기준으로 희망근로 지원대상자의 연령대별 선발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인원 중 48.2%인 11만 8,814명이 60대 이상(65세 이상 31.2%)이며, 70대 이상도 3만 4,968명으로 13.8%
 - 60대 이상의 비율이 50% 이상인 광역자치단체가 16개 중 8개
 - 희망근로 지원대상자의 전 직업별 현황을 살펴보면, 주부가 22.8%로서 가장 높은 비중¹⁸⁾
 - 충북(31.6%), 경남(30.0%), 전남(28.7%)
- 9월말 기준 선발인원 32만 6,498명 중 중도포기자가 7만 6,308명(23.4%)로 과다
 - 경기도의 중도포기인원이 2만 3,348명(31.3%)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주(37.8%), 충남(32.2%), 경기(32.3%), 인천(26.9%), 울산(26.4%), 대전(24.5%), 서울(22.5%), 광주(21.9%), 충북(20.6%) 등 9개 지자체의 중도포기율이 20% 이상
 - 업무형태 불만 및 근무환경 불만으로 인한 중도포기자가 1만 1,647명(15%)
- 9월말 기준으로 희망근로 작업 중 사고 발생인원은 1,560명(사망 25명, 부상 1,535명)
 - 경기 435명, 서울 160명, 부산 108명, 인천 106명, 경남 92명
 - 주요 사망원인은 교통사고(8명), 지병(6명), 주요 부상원인은 미끄러짐(427명), 실족(173명), 교통사고(134명)

18)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해 전체 참여인원 중 여성 세대주의 비율이 18.8%라고 설명하고 있음

- 기존의 공공근로 사업과의 차별화를 위해 재료비의 비중을 늘렸으나, 일부에서는 여전히 단순 취로사업을 실시
 - ‘수변구역 정비, 하천변 외래식품 제거’, ‘녹지환경미화단 운영’, ‘행락지 환경정화’, ‘연안 쓰레기 제거’, ‘5대강 하천쓰레기 수거처리’, ‘산간 폐전자제품 등 쓰레기 수거’, ‘외래 유해식물 제거’, ‘지역별 목은 쓰레기 집중 수거’ 등
 - 행정안전부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단순 취로사업을 중단하도록 조치하였는데, 이로 인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부당하고 논란 야기
- 2010년도 예산을 확정하기에 앞서 2009년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사업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안을 심의할 필요
-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중간평가 결과 시·도별 우수사례와 일본의 고용 대책 사례를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기초자치단체에 전파할 필요가 있음
- 희망근로 프로젝트 중간평가 결과 시·도별 우수사례

시·도	우수 추진 사례
서울특별시	- 자치구의 재정여건을 감안 자치구 부담액 전액을 시에서 지원 - 추진조직 강화(경제진흥관→경쟁력강화본부장) - Green Trekking Circle사업에 희망근로 사업 접목, 사업추진 효과 극대화
부산광역시	- 선택과 집중에 의한 핵심사업 위주 사업선정, 생산성 도모 (그린웨이 조성사업(502억, 36%), 도심재생 사업(536억, 38%))
대구광역시	- 단체장의 높은 관심도와 적극적 홍보로 전국최고 모집율(176%) ※ 시정혁신 기획단 및 시민단체(12개)와의 간담회 개최 등 의견수렴을 통해 노숙자, 쪽방 거주인 추가 선발
인천광역시	- 인천세계도시축전과 연계시켜 깨끗한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한 환경정비 및 도시축전 행사도우미 사업을 시의성있게 실시
광주광역시	- 16개 시·도 중 유일하게 임금 월 2회 지급으로 근로자의 편의 도모 - 지방비 추가확보(10억원) 계획 수립 등 생산적 사업 추진의지를 보임
대전광역시	- 사업발굴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 실시(202개 발굴 103개 사업 추진)
울산광역시	- 급여지급 프로그램 자체개발 보급
경기도	-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도지사로 변경, 역량결집에 노력 - 홍보 DVD(2009 희망근로사업, 희망으로 경기날다) 자체제작 배부 - 생산적 사업발굴 추진을 위한 자문단 운영
강원도	- 실국장급 도추진지원단을 구성, 추진상황 점검 및 독려 - 주요간부들이 지역신문에 칼럼 등을 활발히 게재 (강원일보 기획시리즈, '강원도를 바꾼다')
충청북도	- 상품권 사주기 전국최초 전개, 희망근로 홍보 UCC 자체제작 - 홈페이지를 내실있게 구성, 운영하고 있음
충청남도	- 업무소관별 책임관리제 도입, 업무분야별로 사업장 방문 및 관리 - 주민창안 일자리 사업 발굴(지하관정일제조사, 취약계층 심부름 사업 등)
전라북도	- 상품권 유통범위를 도 단위로 확대, 사용자 편의 도모
전라남도	- 랜드마크 사업 등 생산적 사업, 저탄소 녹색성장 비중이 높음(43%)
경상북도	- 23개 시군과 온라인상에서 자료공유(Hope 2000 웹하드) - 전용홈페이지를 제작하여 네트워크 구축
경상남도	- 현장중심의 적극적인 사업추진(도지사 및 간부 86회 현장방문) - 지방비 40억원 추가 편성, TV, 라디오, 신문 등 120회 대대적 홍보 등 희망근로 사업을 도정의 최우선과제로 선정 노력
제주도	- 지역적 특성을 살리고 기존 사업과 연계한 사업발굴 추진 노력이 돋보임 (제주 '올레' 가꾸기 사업, 감귤안정생산을 위한 열매따기 사업 등)

자료: 행정안전부, “희망근로 프로젝트 중간평가 결과보고”, 2009. 8

□ 일본의 고용대책 사례

- 일본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육아·의료, 농림수산업, 환경·저탄소 등 10개 분야 206개 일자리 사례를 포함하는 「긴급고용대책 참고사례」를 정리하여 발표하였음
- 고용대책사업례에는 고령자 수발과 아동보육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복지시설인 ‘플렉시블 지원센터’의 설립, 전통공예품의 후계자 육성지원 등과 같이 복지와 지역진흥 등 지방이 안고 있는 과제를 해소하기 위한 고용시책을 포함하고 있음
- 또한 「향토고용재생특별교부금」(2,500억엔, 한화 3.4조원)을 설치하는 등 9,000억엔의 고용대책 재원을 마련하고, 광역자치단체는 특별교부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여 기초자치단체의 고용창출사업 실시를 실효성 있게 지원하고 있음

〈일본의 고용대책 사례 : 206개 전체목록〉

분야	일자리 사례
수발·육아·의료	Flexible 지원센터, 보육소 고용촉진사업, 지역의 다양한 육아지원촉진사업, 장애인 지역취로촉진사업, 의사사무작업 보조자 설치지원사업, 병원내 아동보육운영사업, 병원안내업무 등 의료서비스 및 환자서비스향상사업, 왕진 및 방문간호사 이송서비스사업, 특정건강진료 및 특정보건지도 실시를 향상사업, IC태그 활용 아동 안전활동, IC태그 활용 고령자 안전확보, 고령자 종합지원콜센터, 여성 의사 상담사업, 주소미상자에 대한 결핵대책추진사업, 예방접종장려 추진계획, 건강운동지도사·건강운동 실천지도사의 취업조성사업, 지역육아 지원고용촉진사업, 친숙한 장소에서 일시 타아사업, 출산·육아 응원도우미사업, 다양한 육아인재 양성연수사업, 재취업 희망 여성 취직 지원사업, 아동학대방지협력단 확보사업, 아동양호시설 등 지원향상사업, 모자가정의 취업지원강화사업, 형무소출소자의 일상생활지원사업, 생활보호제도의 원활한 실시지원사업, 장애인 지역생활지원사업, 고령자 생활지원활동사업, 특정건강진료 및 특정보건지도 종사자 확대사업, 간호보조 지원사업(후생농업협동조합연합회 운영병원), 영양사보조 지원사업(후생농업협동조합연합회 운영 병원)

분야	일자리 사례
농림 수산업	<p>농업분야의 단기 고용창출사업, 원예산지 단기 고용확보·신규진입촉진사업, 도농교류 추진관련 신규고용창출사업, 경작포기지 개선사업, 바이오매스 활용관련 간벌재 등 수입이용체제정비사업, 간벌 및 간벌재 이용촉진, 선구적 사업연계·고용지원사업, 수출촉진컨설팅, 중소기업소매업자의 산지공동조달 사업, 식품소매업무기능 강화, 사료용 쌀 생산 및 유통사업 지원사업, 농상공연계설비정비사업, 국산조사료 촉진사업, 강한 농업만들기 교부금 활용 고용창출사업, 국산원재료 공급력 강화대책사업, 신도불이 모델타운사업, 퇴비유통·이용촉진지원사업, 전업농 경영다각화 및 경영규모 확대 추진사업, 농산어촌 지역 활력 발굴사업 관련 고용창출, 토지개량시설의 안전대책지원, 지역농산물 직판장 활용사업, 농지재생사업, 신규고용확대 여선리스사업, 오가닉 모델타운 지원사업, 농촌체험형 숙박시설 및 농가 레스토랑</p>
환경· 저탄소	<p>주택용 태양광발전도입 지원대책사업, 학교 등 태양광 발전이용설비 설치사업, 표류 및 표착 쓰레기 지역대책지원사업, 자연공원 청소사업, 해안환경 개선운동, 저탄소도시 관련 녹색일자리 창출사업, 탄소상쇄 추진지원사업, 농지농업용수 등 지역자원 확보사업, 농업촌락배출 오니 리사이클 촉진사업, 농업용조정저수지 수질보전활동 및 지원사업, 우량어장보호 관련 감시강화사업, 환경생태계 보전활동, 숲 경관재생사업, 전기버스 개발보급, 지역순환네트워크 구축사업, 향만녹지 환경관리사업, 낚시진흥을 통한 지역활성화사업, 리사이클 정보센터 추진사업, 방치어선 대책추진과 관리위탁사업, 바다 환경보전촉진사업, 음식물쓰레기 에탄올화 모델사업, 이산화탄소 저감 단열 리모델링 보급촉진사업, 자연환경 개선사업, 등산로 등 위험장소 점검 및 안전대책사업, 야생동물의 생활환경피해대책, 외래종 방제를 통한 환경개선, 생물다양성 온난화영향 조사사업, 방치된 개 및 고양이 수용사업, 수변환경 재생모델사업, 재사용 및 수선추진지원사업, 우량처리시설 조성사업, 환경파괴 우려 폐기물 사전철거사업, 병설처리정화조 전환추진 조사사업, 에코 투어리즘 추진, 쓰레기 투기 감시 및 방치쓰레기 수거사업, 환경인 재배출사업, 이산화탄소방출 감시단 파견사업, 환경보전사업자 투자촉진사업, 소수력 시민발전소 추진사업</p>
교육· 청년지원	<p>학교서포터, 청년자립지원 원조사업,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지원사업, 직업교육의 외부인재활용사업, 기업퇴직자 활용 교육지원매칭 추진사업, 지역의 IC태그 활용향상사업, 대학의 지역공헌 및 교육기능 충실위한 업무지원사업, 대학의 지역공헌사업, 체험활동을 통한 지역활성화계획, 대인기피자 사회활동지원사업, 창업예비군양성사업, 지역 산학연계 직업교육지원 사업, 항구의 역사적 거리를 활용한 생애학습 충실화사업, 자연체험환경학습사업, 차세대 폐기물처리작업원 육성사업, 방과 후 아동 교실</p>

분야	일자리 사례
관광진흥·지역산업	매력 있는 관광지개발사업, 지역산업 판로확대 및 경쟁력강화, 지역철도 활성화와 지역자원 활용 사업 창출, 전통공예품의 후계자 육성 등 지원체계 구축, 쇼핑도우미사업, 지역특산품사업 활성화, IC태그를 활용한 농산물 브랜드화, IC카드를 활용한 지역교류촉진사업, 영상배급시스템을 이용한 지역정보발신사업, 웹통신기술을 활용한 예술활동촉진사업, IC카드를 활용한 관광지원사업, 지역문화재를 활용한 지역활성화사업, 중소기업소매업자 출장형 판매 촉진, 타 업종 경험을 활용한 어업진입사업, 수산가공유통 및 양식관련 고용창출사업, 산촌지역 신규사업창출, 그린 투어리즘 서포터인재활용사업, 지역자원을 활용한 레스토랑운영지원사업, 산업유산을 활용한 과소지역 활성화사업, 인터넷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지원사업, 국제교류추진사업, 세토해(瀬戸内海) 국제학술제 협력사업, 중산간지역 비즈니스창출사업, 상점가 활용을 통한 생활형서비스 충실사업, 지역자원활용을 통한 신상품 안테나샵 개설, 산업관광 활용형 지역 만들기 사업, 철도원육성사업, 항구 활성화사업, 항구크루즈를 활용한 관광객 유치 사업, 항구의 매력을 활용한 관광진흥사업
방송·정보통신	지상디지털방송대응촉진사업, 정보처리기술 관련 취업지원사업, 학교교무정보화 통한 고용창출, 제조업 종사노동자및실직자의 정보통신 업종전환지원
정주외국인에 대한 일상생활 지원	정주외국인 자녀에 대한 일본어교육 등 지원(문부과학성), 외국인유학생에 대한 대학생활지원 보조사업, 정주외국인 자녀에 대한 일본어교육 등 지원(문화청), 의교통역자 양성 및 확보사업, 일본계외국인 고용기업의 자녀교육지원, 일본계외국인 일본어교육지원사업, 일본계외국인 일본어교육 및 직업훈련지원사업
방법·방화	계좌이체사기 방지 위한 주의환기 사업, 방화안전대책 보급개발사업,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법지도사업, 통학로 등 방법활동, 유치소업무 지원사업, 공항 내 화물지구 경비업무, 방재기상정보 활용체제강화추진사업
문서전자화, 조사 등 행정사무, 정보제공	전자행정 기반구축위한 행정문서 전자화, 토지대장 조사 작업, 국민건강보험징수촉진 및 적용적정화사업, 건강질병대책 보급개발 및 상담사업, broadband 세미나, 개인 및 커뮤니티 비즈니스 보급개발 지원사업, 지자체의 아웃싱 관련 고용취업 창출사업, 공문서기록관·도서관·박물관 소장문서 등 전자화, broadband 보급추진 의식조사, 유적출토품역사적 자료·민속 문화재 정리 및 공개를 통한 지역문화 진흥사업, 장기이식 및 골수은행 보급개발등록 추진사업, 지자체 의약품등 감시관련 업무 임시강화사업, 약물남용방지보급 개발사업, 지자체 식품위생관련 업무 임시강화사업, 장애인 시설보급개발사업, 의료사무의 전산화사업, 국영토지개량사업의 행정문서 전자화지원사업, 농촌마을 배수시설개발보급사업, 농업수리시설관리관련 자료의 전자화사업, 해안보전시설의 현황조사사업, 지역정보정비사업, 지반(地盤)정보의 전자화, 지리공간정보의 전자화, 사방관련정보 개발사업, 사방정보전자화사업, 하천환경·방재정보 통지개발사업, 전국중소하천의 생태맵 작성사업

분야	일자리 사례
기타	위법광고물 제거 긴급지원, 역주변 공터 등을 활용한 자전거 주차장 정비사업, 공립학교시설의 내진진단 및 보강설계사업 관련 긴급고용사업, 빌딩관리 인재육성 및 정착촉진사업, 안심·안전한 수도서비스 확보사업, 식품위생 관리자 자격취득 지원사업, 장애인등 피난지원사업, 농업용 저수지 긴급점검, 농촌마을 배수시설 유지관리 및 감시업무, 농업용 도로 유지관리촉진, 적정계량센터사업, IT컨설팅 활용촉진사업, 공설시험연구기관을 활용한 직업훈련 및 섬유산업관련 기업 소개사업, 외국기업유치촉진사업, 해안보전시설의 현황조사사업, 항만시설의 현황조사사업, 사방관련 유지관리작업, 동경 국제공항 통일출입증 도입관련 관리업무, 공항 내 조류피해 방지업무

자료: 日本 緊急雇用·經濟對策實施本部의 「雇用對策事業例」(2009. 2)를 참조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안 분석 V」, 2009. 11.

[담당] 오세일 예산분석관(788-4640)

V. 교육 분야

- 2010년도 교육분야 투자는 전년 본예산 대비 1.2% 감소한 37조 7,707억원으로, 정부총지출 증가율 2.5%보다 3.7%p 낮은 수준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8,247억원)을 제외하면 6.5% 증가임
- 교육분야에서 각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유치등교육 84.9%, 고등교육 13.4%, 평생·직업교육 1.4%, 교육일반 0.3%임
 - 유아 및 초등교육부문 비율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동 부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1조 8,263억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 2013년까지의 교육분야 투자계획을 보면 연 평균 증가율이 6.0%이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등으로 인해 고등교육부문 증가율이 7.6%로 다른 부문에 비해 높은 편임

〈교육분야 투자 계획〉

(단위: 억원, %)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교육분야	382,448	377,757	406,844	443,142	483,442	6.0
유초중등교육부문	329,681	320,541	344,909	377,693	414,229	5.9
고등교육부문	46,371	50,702	55,227	58,537	62,081	7.6
평생·직업교육부문	5,101	5,258	5,411	5,571	5,739	3.0
교육일반부문	1,295	1,256	1,297	1,341	1,393	1.8

자료: 대한민국정부,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09. 10.

- 세입 감소 예상으로 인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009년 본예산 대비 2.5% 감액된 31조 8,263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시·도 교육청의 지방교육채 발행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방교육재정교금 내국세 법정교부율 상향 조정 등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방안 필요
 - 시·도 교육청 및 초·중등학교 운영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으로 일선 교육환경 여건 악화가 우려됨
 - 2009년도 추경에서의 교부금 감액과 관련하여, 당시 국회가 부대의견으로 채택한 시·도 교육청 지방교육채 이차보전 지원(2011년까지)을 위해 「공공관리자금 이차지원」(185억원)이 신규 반영된 상황임
 - 지방교육채 발행 등의 임시방편은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큼

[자 료] 국회예산정책처, 「NABO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2009. 11.

[답 당] 장은덕 예산분석관(788-4634)

[개요]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일반회계 「한국장학재단 출연」사업
 - 예산안: 4,285억 6,800만원(전년본예산 대비 순증)
 - 한국장학재단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포함한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조성」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대출 자금은 재단 채권을 발행하여 마련함
- 새로 도입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는, 등록금 실소요액 전액을 대출받은 후 미래에 일정수준의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상환하는 소득연계형 대출(Income Contingent Loan; ICL) 방식을 취함
 -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추진을 위한 「한국장학재단 출연」사업은, 2009년 본예산 대비 4,286억원 순증이며, 채권 이자비용 및 운영비로 집행될 예정임
 - 「국가장학기금 출연」(현행 학자금 대출 이차보전 등)과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등 기존의 맞춤형 국가장학제도는, 현재 대학 재학생만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자연히 감액 편성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조성 프로그램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09본예산	2009추경	2010안	전년본예산 대비	
				증가액	증가율
한국장학재단 출연	0	130,000	428,568	428,568	순증
국가장학기금 출연	410,678	451,213	277,532	-133,146	-32.4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222,300	293,250	181,700	-40,600	-18.3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109,500	120,000	75,000	-34,500	-9.1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103,100	103,100	99,900	-3,200	-3.1
합 계	845,578	1,097,563	1,062,700	217,122	29.8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10년도 예산안 주요사업비 설명자료」, 2009. 10.

[현안 검토]

- 기존의 학자금 대출과 달리 대출한도와 신용심사를 폐지하고 기준소득 발생 전까지 상환을 유예하였으나, 소득 7분위 이하 학생들에게 적용되던 무상장학금이나 이차보전 혜택이 감소하여 저소득층의 상환 부담은 다소 가중됨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으로 인한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변화〉

	기존 학자금 지원 제도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적용 대상	소득 전 분위	소득 7분위 이하 (8분위 이상은 기존 일반대출 방식)
자격 요건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신입생, 졸업예정자 제외) 100점 환산 70점 이상 신용등급 8등급 이상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신입생, 졸업예정자 제외) C학점 이상 신용요건 없음
대출 한도	1인당 4년간 4,000만원(학부 기준)	등록금 실소요액 전액
이차 보전	3분위 이하는 무이자 4~5분위는 대출금리 중 4%p 감경 6~7분위는 대출금리 중 1.5%p 감경	없음
상환 방법	거치기간 중 이자 납부 졸업과 동시에 상환의무 발생 (‘09년 미취업자 상환유예 한시지원)	기준소득 발생 전 납부의무 없음 기준소득 발생 후 원리금 상환
상환 기간	거치 및 상환기간 각각 최장 10년	기준소득 발생 후(상환기간 폐지)
저소득층 장학금	기초생활수급자 연 450만원 무상 차상위계층 연 230만원 무상	없음
생활비 대출	1학기당 100만원 한도 저소득층 이차보전 적용	기본: 연 200만원 한도는 유지 기초생활수급자는 상환의무 없음 (성적 요건 요구: 6등급 이상) 소득 1~3분위: 거치기간 무이자 소득 4~5분위: 취업 후 상환 소득 6~7분위: 일반대출 상환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리

-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향후 5년간 8,468억원으로 추정되므로, 저소득층 배려가 후퇴하는 부분을 개선하면서, 동 제도 재원과 고등교육 전반에 대한 재정투자를 증가시켜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근본적인 제도 정착 방안임
- 내년도 신규제도 선택학생은 107만명으로 예상되며, 한국장학재단은 총 9.4조원(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7.3조원 포함)의 채권을 발행할 예정임
 - 대출규모 확대와 동시에, 기준소득 발생 전까지 채권의 이자비용을 위한 재정부담이 가중되며, 이러한 재정부담으로 인해 기존 제도에서의 저소득층 배려가 후퇴한 것으로 생각됨
- 외국 사례에 비해 현재 교과부의 시행 구상은 대출자 부담이 다소 높아, 대출금리 인하나 상환조건 완화 등을 위한 다양한 예산 지원이 확대될 필요 존재
 - 주요 선진국은 국민소득 중앙치(호주)나 빈곤선의 150%(미국) 등의 기준소득, 상환율 10% 미만, 물가상승률 이하 수준의 대출금리, 상환면제 제도 운영 등으로 시행 중
 - 정부는 최근(11/19) 상환개시소득 1,592만원(4인가족 최저생계비), 상환율 20%, 대출금리 5%대, 상환기간 폐지(평생 상환의무), 파산 시에도 면책대상 제외 등 실행계획 발표함
- 동 제도 도입으로 등록금 인상이 유발되어 청년층의 상환부담이 가중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록금 문제에 대한 대학의 공적 책임성 확보 등이 필요하지만, 대학 자율화 방침 등에 따라 교과부와 대학의 노력은 미흡함
- 교과부는 내년 1월부터 공시되는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 근거나 대학알리미의 대학정보, 각종 대학평가사업에 교내 장학금 지표 반영 확대 등을 통하여 간접적인 억제력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임
 - 현재 등록금 인상률, 대학 회계 투명성, 사립대학 적립금 문제 등에 대한 구속력 있는 정책이나 사회적 신뢰 및 합의 시스템이 미흡한 상황임

- 국세청이 상환금 징수를 맡을 예정이므로, 자영업자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소득과약 시스템을 개선하여 원리금 상환의 공평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함
- 이러한 소득과약 개선노력은, 정당하지 못한 채무불이행 비율을 낮추어 재정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하는 동시에, 제도 정착을 위한 사회적 신뢰 확보에 중요한 전제조건이 될 것임

[자 료] 국회예산정책처, 「맞춤형 국가장학제도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 분석」, 『예산안 분석 II』, 2009. 11.

[담 당] 장은덕 예산분석관(788-4634)

[개 요]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일반회계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 예산안: 1601억원 (전년본예산 대비 1억원 증)
 - 한국연구재단을 통해 선정된 사업단에 출연금을 지급하며, 2008~2012년까지 총사업비 6,250억원 투자 예정임
-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이하 ‘WCU사업’)은 연구역량이 높은 우수 해외학자를 유치하여 국내 대학의 교육·연구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내년도 관련 예산안은 WCU사업(일반회계) 40억원 증액, 지방WCU사업(광특회계) 39억원 감액으로, 2009년 대비 1억원 증가한 1,601억원으로 편성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2010년도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09 (본예산)	2010안	전년대비	
			증가액	증가율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일반회계, 전국단위)	121,000	125,000	4,000	3.3
지방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광특회계, 지방단위)	39,000	35,100	-3,900	-10.0
합 계	160,000	160,100	100	0.0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10년도 예산안 주요사업비 설명자료」, 2009. 10.

[현안 검토]

- WCU사업의 지원과제 유형별로 사업취지 달성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중장기적으로 사업의 전체내역을 효율적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음
 - WCU사업 과제는 유형 1(해외학자 전일제 초빙 및 전공개설), 유형 2(해화학자 전일제 초빙 및 강의), 유형 3(세계적 석학 비전일제 초빙)로 구분되는데, 어떤 유형이 WCU사업에 더욱 효과적인가는 학계에서도 의견이 다양함
 - WCU 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 1에 대해서도 기존 전공 외에 새로운 전공을 개설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신입생 충원을 개선 등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관련 예산(예: 2010년도 일반회계 WCU사업 증액분 40억원) 억제 필요
 - 다만, 유형 3의 경우 「글로벌 연구네트워크 지원」, 「대학연구인력 국제교류 지원」, 「국제공동연구」, 「국제 연구인력 교류」등 다양한 국제연구교류 관련 사업과 통합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가능성이 높음
 - 유형 3의 경우 해외학자 체류 하한기간을 2개월로 정하고 있어 인건비나 연구비 지급 타당성이 미흡함
 - 유형 3이 3년 단위 과제를 상당수 포함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2011년도 예산안 심의 시에는 유형 3의 비중 축소여부 등을 사업내용 재편과 관련하여 사업성과 검토 필요
- WCU사업을 포함하여 각종 연구개발(R&D) 사업이 회계연도와 사업연도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시정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
 - WCU 사업의 경우, 2008년 6월 최초 사업공고 후 동년 12월에야 1차 사업연도(2008.12.1~2009.10.30)가 시작되었으며, 2010년도 예산은 3차 사업연도(2010.10.1~2011.8.30)분으로, 회계연도와 사업연도가 9~10개월 정도 불일치

- 현재 교과부 계획상으로는, 연도별 성과분석에 불과 1개월 내외만이 소요되는데, 현재 1차 사업연도 성과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임
 - 참고로 BK21사업의 경우 사업연도는 매년 3월 초~2월 말이며, 대학별 연차결과 보고서 제출(4월 말)에서 최종 분석(10월 말)까지 4~5개월 소요됨
 - 과제별로 3~5년간의 연구계획이 결정되어 있고 해외학자와의 계약 문제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2013년도 사업종료 시점까지의 사업비는 보장하는 형식으로, 순차적인 사업기간 혹은 예산안 조정 검토가 필요함
 - 회계연도와 사업연도 불일치로 인해 성과관리가 부실해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요구됨
 - 향후 전 부처의 각종 연구개발 사업에서, 사업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회계연도와 사업연도 간 불일치가 반복되지 않고 최소화되도록 예산편성 및 심의 전반의 제도적 개선 필요
- 동 사업의 향후 해외학자 유치 방향과 기준에 대한 합의와 검토도 필요
- 해외학자 345명 중 60세 이상 학자가 118명에 이르는데, 장기적 연구역량 확보라는 사업 취지를 강조하면, 5~10년 내에 두드러진 업적을 성취할 가능성이 높은 소장학자를 집중 유치할 필요성도 존재함
 - 반면, 명성이 높은 학자들을 유치하면 대학의 국제 인지도를 상승시키는 효과도 존재하므로, 사업단 선정 및 성과관리 개선을 위해 우수 해외학자의 기준에 대한 합의와 검토 필요

[자 료] 국회예산정책처, 「교육분야 재정분석」, 『예산안 분석 IV』, 2009. 11.

[담 당] 장은덕 예산분석관(784-4634)

국제교육교류협력활성화사업의 확대규모 및 신규내역 검토

[개 요]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일반회계 「국제교육교류협력 활성화」사업
 - 예산안: 526억 4,000만원(전년본예산 대비 73.1% 증)
 - 국립국제교육원이 직접 수행하거나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함
- ‘정부초청장학생교류’ 등 기존의 내외국인 대학생 유학 및 교류사업을 분리·보강하여 “Global Korea Scholarship”(이하 ‘GKS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확대·개편하고, 기존 중고생 국제교류 사업은 ‘세계학생교육교류지원’으로 재편함
 - 글로벌 인재네트워크 구축 및 한국의 국가위상 제고를 목적으로 하며, 특히 GKS 사업을 한국정부를 대표할 수 있는 국제 장학프로그램으로 추진하려 함

〈국제교육교류협력 활성화 사업 2010년도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09 (본예산)	2010안	전년대비	
			증가액	증가율
Global Korea Scholarship (소계)	30,181	52,158	21,977	72.8
외국인 장기학위프로그램	22,885	32,661	9,776	42.7
외국인 우수교환학생 지원(신규)	-	4,995	4,995	순증
외국인 우수자비유학생 지원(신규)	-	2,520	2,520	순증
주요국가 대학생 초청연수	(204)	314	(100)	(49.0)
외국인 현직 리더 프로그램(신규)	-	993	993	순증
내국인 장기학위 프로그램	2,229	2,875	646	30.0
한·일이공계대학 유학생 파견·관리	4,863	5,500	637	13.1
한·일 대학생 교류	-	2,300		

	2009 (본예산)	2010안	전년대비	
			증가액	증가율
세계학생교육교류지원 (소계)	232	482	250	107.8
한·일 중고생 교류	-	163	-	-
한·일 상대국어선택고교생 교류	-	69	-	-
한·중 중학생 교류	-	250	-	-
국제교육교류협력 활성화 (합계)	30,413	52,640	22,227	73.1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10년도 예산안 주요사업비 설명자료」, 2009. 10.

[현안 검토]

- 선발 및 관리 목표인원이 2009년 대비 1,957명(67.6%)이 증가한 4,853명이며, 특히 GKS사업은 1,757명이 증가한 3,885명을 선발 혹은 관리해야 함
 - 전년도에 비해 목표인원을 증가시킨 정도가 과다하여, 과거 외국인 유치 관련사업을 크게 확장할 때 홍보부족 및 관리미흡이 지적된 것이 반복될 우려 있음
 - 신규선발 증가를 억제하고, 기존 유학생 관리와 신규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에 관리 노력을 강화하며, 자비 유학생 등 외국인 유학생 전반에 대한 각종 편의 제공 인프라를 강화하는 것이 우선 과제로 생각됨
 - 외국인 유학생 유치 성과가 세계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정부의 유학생 지원혜택이 부족한 측면보다는 사회문화적 요인이나 홍보부족 측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 신규내역은 ‘외국인 우수교환학생 지원사업’, ‘외국인 우수자비유학생 지원사업’, ‘외국인 현직리더 지원사업’ 3가지인데, 지원방향 등 검토 필요함
 - 외국인 우수교환학생 지원사업은 내년 3월 학생선발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사업취지에 맞는 선발기준을 명확히 하여 준비할 필요 있음

- 선발 목표인원은 현재 목표보다 축소하여 향후 성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함이 바람직
- 실제 추진과정에서 저개발국 학생이라는 본래 취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며, 대학별로 기존에 이루어지던 외국인 유학생 지원규모가 국고로 대체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외국인 우수자비유학생 지원사업은 현재 유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전반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장학혜택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학생에게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현재 자비유학생의 경우 경제적 여건이 양호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학별 자체지원이 축소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유학생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추진 필요
- 외국인 현직리더 지원사업은 사업방향을 명확히 하고, 타 부처 개도국 리더 연수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저개발국의 유망한 현직 리더라는 사업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하며, 지원 조건도 그에 따라 사업취지 달성에 효과적인 범위로 조정해야 함
 - 타 부처의 유사 사업과 비교할 때, 연구분야나 지원조건의 차별성은 인정되지만, 교과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만한 필요성과 효율성에 대한 검토는 필요함

[자 료] 국회예산정책처, 「교육분야 재정분석」, 『예산안 분석 IV』, 2009. 11.

[답 당] 장은덕 예산분석관(784-4634)

[개요]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일반회계 「입학사정관제 도입 지원」 사업
 - 예산안: 350억원 (전년본예산 대비 48.3% 증)
 - 2007년도부터 계속되었으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선정대학 보조 사업임
 - 현재 진행 중인 2010학년도 대입전형에는 2009년 예산이 집행되는 것으로, 2010년도 예산안은 2011학년도 대입전형에 지원됨
- 성적 위주의 학생 선발을 지양하고 학생의 잠재력과 대학별 설립이념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별도의 입학전형 전문가가 학생을 선발하는 대입전형인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는 대학에 관련 경비를 지원

〈입학사정관제 도입 지원사업 2010년도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09 (본예산)	2010안	전년대비	
			증가액	증가율
입학사정관제 도입 지원	23,600	35,000	11,400	48.3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10년도 예산안 주요사업비 설명자료」, 2009. 10.

[현안 검토]

- 2010학년도 입학사정관제 전형에서 2009학년도 모집인원 4,476명의 4배가 넘는 19,825명을 선발하는 등, 입학사정관제 도입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나, 사정관 전문성이나 교육과정·교육환경 등 국내 정착여건은 매우 미흡함

- 입학사정관 전문양성·훈련프로그램 지원기관(5개) 선정이 2009년 6월 11일에야 이루어지는 등, 입학사정관의 체계적인 전문성 확보가 충분하지 않음
 - 입학사정관이 전형과정 전 단계에 참여하는 비율이 개선되고 있으나, 학생 선발의 최종 권한은 해당학부 교수 전심의 학생선발위원회에 있는 등, 동 제도는 아직 도입기 상태임
 - 2009년 하반기 현재 입학사정관 중 비정규직 비율은 80.3%로, 사정관이 장기간 전형에 참여하여 전문성·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여건은 여전히 미성숙
- 교사의 학생추천 단계부터 지속적인 관찰과 검증을 실시하는 서구와 달리, 입학사정관의 전문성과 수에 비해 응시인원 및 서류업무가 과다하여, 제도의 본래 취지 달성에 필요한 국내 대입전형 시스템 기반이 부족함
- 입학사정관제는 학교생활기록부 충실화, 단순 시험 위주의 각종 평가, 교육과정 및 수업실태 전반의 개선이 없는 현재 상황에서는 제대로 정착할 수 없음
 - 이로 인해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단기적으로 대비하는 사교육 시장이 급속히 팽창하고 있으나, 교과부의 대처는 홍보 강화 등 외형적 인프라 개선 위주로, 교육제도의 실질적인 내용변화는 중장기적인 논의에 그침
- 입학사정관의 전문성·독립성 향상, 사회적 신뢰 확보, 교육과정 및 대입제도 개선 등 국내여건 성숙 시까지 동 사업의 예산지원 및 입학사정관제 모집인원의 확대 속도를 조정할 필요 있음
 - 이번 2010년도 입학사정관제 전형은 2009학년도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우선임
 - 주요 명문대들이 입학사정관 전형을 확대할 예정인데, 특목고 우대나 독점 논란 등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신뢰 형성이 필요함

- 중장기적으로도 실제 교육현장에서 학생의 다양한 잠재력을 평가할 수 있는 변화를 먼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전년 대비 114억원의 증액 중 105억원이, 선도대학 증가(15개교 → 20개교) 및 선도대학별 지원금 증가(평균 9억원 → 12억원)에 기인하는데, 이미 재정여건이 충분한 대학들이 대부분인 선도대학에 대한 증액 필요성 부족함
- 지원 대학과 대학별 지원규모를 증가시키는 것보다, 입학사정관제 근무여건과 입학사정관 전형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자체 노력을 유도하고, 이를 지속적인 예산지원의 유인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 내년도에 신설되는 '모집단위 특성화 대학 지원' 과 같이 입학사정관제 본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지만 예산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대학을 잘 선정하는 것도 중요함

[자 료] 국회예산정책처, 「교육분야 재정분석」, 『예산안 분석 IV』, 2009. 11.

[담 당] 장은덕 예산분석관(784-4634)

[개요]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일반회계 「대학구조개혁 지원」 사업
 - 예산안: 260억원(전년본예산 대비 23.6% 증)
 - 선정 대학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총 2,514억원 투자
- 대학의 통폐합을 통한 강점분야 특성화와 구조개혁 노력을 지원하는 사업임
 - 2010년도 예산안은 2007년도에 통폐합이 선정된 국립대학(3개교) 과 사립대학 경영컨설팅(신규, 30개교) 지원으로 편성됨

〈대학구조개혁 지원사업 2010년도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08까지	2009 (본예산)	2010안	전년대비	
				증가액	증가율
국립대학 통폐합 지원	153,598	21,042	20,000	-1,042	-5.0
사립대학 경영컨설팅 지원	-	-	6,000	6,000	순증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	97,815	-	-	-	-
합 계	251,412	21,042	26,000	4,958	23.6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10년도 예산안 주요사업비 설명자료」, 2009. 10.

[현안 검토]

- 일부 국립대학교의 경우 통폐합 성과가 미흡하며, 연차평가를 통한 대학별 지원금 조정규모가 인센티브 및 체재수준으로 적정하지 못함

- 경북대학교의 경우 상주캠퍼스(구 상주대학교)와 대구캠퍼스 간 유사한 학부(학과)가 대부분 그대로 존재하며, 야간 모집 폐지로 인한 정원 감축 외에 실질적 통합은 미흡함
 - 동 사업에서 연차평가를 통해 학교별로 증감시킬 수 있는 금액은 해당년도 지원금의 20% 범위이지만, 2008년도의 경우 3개 대학을 합하여 연차평가 해당금액 15억 6,000만원 중 세부지표 평가를 통해 2억 400만원만이 조정됨
 - 2009년도 및 2010년도 연차평가에서는 실질적인 조정범위를 확대하는 등 통폐합 성과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종합대와 교대 간 통합은 교원양성기관 및 교육과정의 개선 후 지원이 바람직함
- 사립대학 경영컨설팅 지원(30개교)은 1개교 당 컨설팅 기간(평균 3개월)이나 컨설팅 예정팀(6~8개팀)에 비해 시행목표가 과다하며, 지원 필요성이나 예상되는 사업 효과성이 미흡함
- 교과부 계획 상 2010년 한 해 동안 경영컨설팅을 실제로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은 3~12월로 1팀당 2~3개교가 적절한 수준이므로, 6~8개팀이 30개교 경영컨설팅을 진행하려는 시행목표는 과다함
 - 국내의 대학경영 컨설팅 전문성이 부족한 것이 동 사업의 시행 취지 중 하나인 만큼, 사업 초기에 시행목표 규모를 줄이고, 한계사학을 중심으로 충분한 기간에 걸쳐 종합적인 경영개선 대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함
 - 경영진단과 관련하여 사학진흥기금에서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예산 및 기금 재원의 중복 투자 가능성 최소화를 위한 검토 필요
 - 경영컨설팅 작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등, 동 사업 국고 지원은 해당 학교에 실질적인 구속력을 발휘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 지남

- 2008년도까지 지원되었던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의 경우에도 해당 대학의 학부제 폐지 등에 대해 통제할 수단이나 의지가 부재하는 등, 현재 교과부의 대학자율화 방침 등에 따라 재정지원이 종료된 이후 대학별 구조조정 노력의 계속성을 담보하지 못함
 - 대학 및 모집단위별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학교 당 2억원 내외의 경영컨설팅 작업의 효과성은 미약할 것으로 예상됨
- 대학의 통폐합·구조조정·특성화 등에 대한 지원은 자체 노력을 유도한 후 실질적인 성과를 평가하여 사후에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보다 근본적으로는 현재 국내의 고등교육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대학의 구조개혁에 예산 지원을 어느 범위까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종합적인 논의와 합의가 필요함
 - 향후 국립대학 통폐합 및 사립대학 구조조정 관련예산을 확대하기보다는 위와 같은 중장기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자 료] 국회예산정책처, 「교육분야 재정분석」, 『예산안 분석 IV』, 2009. 11.

[답 당] 장은덕 예산분석관(784-4634)

[개 요]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일반회계 「해외산업체 맞춤형 전문기술인력 양성」 사업
 - 예산안: 30억원 (신규)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위탁 시행하며 선정된 대학(6개교 내외)에 보조금 지급
- 전문대학의 발전을 선도하는 우수대학 지원을 통해, 국제적 수준의 전문 직업기술교육 거점대학(Global Hub College)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임
 - 특히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근무할 현지 인력을, 산업체와 전문대학이 연계하여 실시하는 맞춤형 교육을 지원함

〈해외산업체 맞춤형 전문기술인력 양성사업 2010년도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09 (본예산)	2010안	전년대비	
			증가액	증가율
해외산업체 맞춤형 전문기술 인력양성	-	3,000	3,000	순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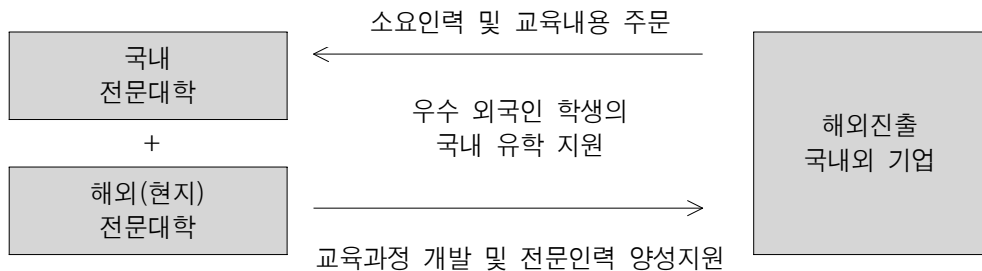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10년도 예산안 주요사업비 설명자료」, 2009. 10.

[현안 검토]

- 동 사업은 일부 해외 기업체나 현지에 특화된 외국인 인력 맞춤형 프로그램을 우수하게 운영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예산 지원의 타당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생각됨

- 동 사업 예산지원은 특정 기업체 수요에 특화된 교육과정 중심으로, 전문대학의 본래 목표인 국내 산업체와의 연계 강화를 통한 직업인 양성과 부조화됨
- 이미 해외진출 기반이 충분한 대기업 중심의 교육과정이나 국제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경쟁을 유발할 수 있음
- 국내 일자리 창출이나 우리나라 전문대학생에 직접 도움을 주는 사업은 아니며, 프로그램을 이수한 외국인 전문대학생의 국내 기업 취업이 담보되지도 않음

〈해외산업체 맞춤형 전문기술인력양성사업 기본 운영모형〉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10년도 예산안 주요사업비 설명자료」, 2009. 10.

- 교과부의 예산활용 계획 등을 분석하면, 동 사업이 인력양성 사업인지,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사업인지, 해외 유학생 유치기반 조성 사업인지, 사업의 중심목표가 불분명하므로 사업 방향의 명확화와 재편이 필요함
- 교과부는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전문대학 국제화의 전략적 추진이 어려운 것을 사업취지로 설명하고 있으나, 해외진출 대기업과 연계가 이미 활발한 5~6개의 특정 전문대학을 지원하는 것은 그러한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전문대학에 대한 지원확대는 필요하지만, 특정 대학과 해외 진출 기업체 간 협약을 모범으로 예산 지원하는 것은 전문대학 전반의 역량제고 및 국제화 기반 구축에 도움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큼
- 오히려 해외진출 기업을 중심으로 충분한 수요조사를 진행한 후 잠재력이 있는 전문대학과 연계하여, 기업의 자발적인 투자를 유도함이 바람직함
 - 지식경제부나 중소기업청 등 관련부처 사업과의 중복을 방지하면서, 협조 유도도 필요
- 만약, 해외대학과의 공동학위과정이나 유학생 유치 등 국제화 기반 구축에 집중하려고 한다면, 「전문대학교육역량강화」등 포괄적인 재정지원이나, 기존의 각종 유학생 유치 인프라(국립국제교육원 등)를 활용하는 편이 효율적으로 생각됨

[자 료] 국회예산정책처, 「교육분야 재정분석」, 『예산안 분석 IV』, 2009. 11.

[답 당] 장은덕 예산분석관(784-4634)

[개요]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일반회계 「영어능력평가시험 개발 및 운영」사업, 「교·사대 원어민 강사배치」사업, 「교육대학 영어심화과정 지원」사업
 - 예산안: 3개 세부사업 합계 79억 6,000만원(전년본예산 대비 31.9% 증)
 - 「영어능력평가시험 개발 및 운영」사업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보조사업으로, 2012년 본격 시행 전까지 문제은행 구축이나 예비검사 등을 실시함
 - 「교·사대 원어민 강사배치」, 「교대 영어심화과정 지원」은 교과부 및 국립대 직접수행임

〈영어교육 격차해소 단위사업 중 예산안 검토가 필요한 세부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09 (본예산)	2010안	전년대비	
			증가액	증가율
영어능력평가시험 개발 및 운영	1,974	4,500	2,526	128.0
교·사대 원어민 강사배치	2,860	2,860	0	0.0
교육대학 영어심화과정 지원	1,200	600	-600	-50.0
합 계	6,034	7,960	1,926	31.9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10년도 예산안 주요사업비 설명자료」, 2009. 10.

[현안 검토]

- 「영어능력평가시험 개발 및 운영」사업은, 2009년도 예산의 집행 잔액이 예상되고, 2008년도 집행부진을 이유로 축소된 시험규모 등이 다시 확대 계획되었으므로, 2010년도 예산 증액의 적절성 검토 필요

- 동 사업의 2008년도 예산으로 2009년 12월 예비검사 출제와 IBT 기반구축까지 집행하였고, 사업책임자 등 인건비도 50% 미만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 2009년도 예산의 상당액이 잔액 처리 가능성 높음
- 2008년도 집행부진으로 인하여 시험규모 축소 등을 통해 총사업비가 262억원에서 141억원(연평균 30억원 내외)으로 조정되었으나, 2010년 예산안은 45억원으로 다시 증가함
 - 산출단가에서는 각종 인건비 및 수당 단가 증가, 예비시험 규모 증가 등이 나타나므로, 적정 수준의 규모인지 검토가 필요
- 「교·사대 원어민 강사배치」사업은 9월말 실집행률이 64.7%로 다소 저조한데, 2010년도 예산안은 2009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책정되었으며, 대학별 실집행 편차를 고려하여 편성된 것도 아니어서 일부조정 검토 필요함
 - 24개 대학 중 3개 대학의 실집행률은 50% 미만으로 대학별 실집행률 편차가 크므로, 대학별 강사채용 시점(예: 3~12월인지 학기 단위인지)과 집행실적 등을 자세히 반영하여 일부 조정 필요
- 「교육대학 영어심화 과정 지원」의 실집행률은 34.8%로 이와 관련하여 내년도 예산안이 50% 삭감되었는데, 대학별 사업계획서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국고 지원금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교대 자체적인 영어교육 프로그램 추진에 한계가 있어 집행실적이 부진하므로, 전문 외부기관이나 인근 대학과의 연계 강화 필요
 - 초등학교 교사가 영어로 영어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사업목표의 필요성과 달성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 동 사업 취지 달성에는 초등 영어교사나 원어민 강사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효율적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교육분야 재정분석」, 『예산안 분석 IV』, 2009. 11.

[담당] 장은덕 예산분석관(784-4634)

[개 요]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일반회계 「학업성취도 및 시도교육청 평가」사업
 - 예산안: 63억 3,200만원(전년본예산 대비 252.0% 증)
 - 동 분석의 주요대상인 학업성취도 평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에 보조하여 위탁시행하며, 2010년도 학업성취도 평가 예산안 55억 9,400만원(전년본예산 대비 211.3% 증)

〈학업성취도 및 시도교육청 평가사업 2010년도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09 (본예산)	2010안	전년대비	
			증가액	증가율
학업성취도 평가	1,797	5,594	3,797	211.3
시·도 교육청 평가	(320)	320	320	순증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253)	418	(165)	순증
합 계	1,797	6,332	4,535	252.0

주: 1. 시·도 교육청 평가는 교육청별 행·재정 성과평가를 실시하며, 지방부담에서 일반회계로 편성.

2.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는 국가별 학생들의 학업수준을 평가하는 PISA와 TIMSS 참여 예산으로, 「인적자원통계정보체제구축사업」에서 이관됨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10년도 예산안 주요사업비 설명자료」, 2009. 10.

[현안 검토]

- 학업성취도 평가는 2007년까지 표집평가(5% 이내)로 시행되었으나 2008년 이후 전수평가로 전환되었으며, 2009년부터는 출제 및 보안 수준을 강화하고 시·도 채점단(52억원)을 운영하면서 소요예산이 크게 증가함

〈학업성취도 및 시도교육청 평가사업 2010년도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07(표집)	2008(표집+전수)	2009(전수)	2010(안)
국고(KICE)	1,085	1,235	1,797	5,594
특별교부금	0	200	10,000	(7,906)
합 계	1,085	1,435	11,797	(13,500)

주: 2010년도 특별교부금은, 기재부가 2009년도 평가수준으로 동결하면서 지방비 매칭으로 조정된 56억원 외에, 온라인채점 관련 예산액 등을 포함하여 교과부가 교부 예정으로 추정하는 액수임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내부자료

- 지역간 학력격차 해소와 관련 기초자료 수집이라는 평가목적에 비추어 볼 때, 평가 후의 학력미달 지역 지원은 교부금 목적에 부합하지만, 평가 자체의 예산은 국고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향후 국고 비중 정도에 대한 검토 필요
- 지역별·학교별 성적공개 방침으로 인해, 동 평가의 단기적 대비를 위한 시·도 교육청 간 과다경쟁 등이 유발되고 있고, 각종 행정비용과 채점비용 등이 과다 소요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내년도부터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도 교육청 평가에 12% 비중으로 반영 예정이어서, 현재의 단기적 성적 경쟁이 심화될 우려 있음
 -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교육청·학교·교사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도구 중 하나로 제시하는 것이 사업목적과 예산효율성에 부합함
- 2009년 및 2010년 소요예산 수준은, 2008년 10월 평가에서의 성적 처리 오류 등의 문제가 2009년도 예산안 확정 이후 드러나면서, 확정된 2009년도 예산내역과 달리 증액 집행된 것으로, 이번 예산안 심의 시에는 출제 및 보안 등의 각종 관리강화가 필수적인 부분인지 검토가 필요함

- 학력미달 학생 파악 및 지원이 가장 중요한 목적인 점을 고려할 때, 평가 자체를 위한 예산 증액의 적절성을 재검토하여, 실질적인 학생 지원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수능시험 등과 달리 학생 간 변별성이 주요 목적이 아니라 기초학력 도달 확인이 주 목적으로 학생들은 과목별 성취수준(4단계)만 확인할 수 있으며, 2008년 평가에서도 성적처리 오류 외에 출제나 보안 수준이 문제가 되지 않았음

〈학업성취도 평가 세부내역별 예산증액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09계획	2009집행(A)		2010안(B)		증감액 (B-A)	증감율
	국고	국고	특교	국고	특교(예정)		
출제본부	240	1,282	196	1,319	401	242	16.4
인쇄본부	1,037	-	3,547	3,709	689	851	24.0
문제운송	(1,037)	-	162	243	-	81	150.0
시·도 채점		-	5,200	-	5,500	300	5.8
기 타	120	515	895	323	1,316	229	16.2
합 계	1,397	1,797	10,000	5,594	7,906	1,703	12.6

[자 료] 국회예산정책처, 「교육분야 재정분석」, 『예산안 분석 IV』, 2009. 11.

[답 당] 장은덕 예산분석관(784-4634)

VI. 문화 · 체육 · 관광 분야

-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문화·체육·관광분야 재정투입은 연평균 3.4%의 증가율을 보이며, 2013년에는 규모가 3조 9,769억원에 달할 예정
 - 부문별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문화·체육·관광분야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문화·예술부문이 4.1%, 관광부문이 1.7%, 체육부문 5.0%로, 관광부문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저조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문화·체육·관광 분야〉

(단위: 억원, %)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문화·체육·관광	34,753	37,460	38,424	39,172	39,769	3.4
○ 문화·예술	12,908	14,922	14,884	14,932	15,170	4.1
○ 관광부문	8,948	8,711	8,374	8,736	9,581	1.7
○ 체육부문	6,175	6,492	7,557	7,623	7,517	5.0
○ 문화재부문	4,625	5,053	5,147	5,294	5,364	4.2
○ 문화및관광일반부문	2,096	2,282	2,462	2,587	2,137	0.5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09. 10.

- 2010년 문화체육관광분야는 10개의 회계 및 기금으로 구성될 예정으로, 복잡한 재정운용구조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정의 칸막이식 운용과 재정배분의 경직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 10개 회계·기금은 일반회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특별회계, 문화예술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언론진흥기금, 문화재보호기금임

- 정책상의 이유에 기인하는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일반회계 편입 문제외에는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문화재보호기금이 신설(2010년)되면서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
- 일반회계 외에 개별 회계 및 기금의 존재는 부문간 재원배분의 경직성을 유발시키고, 일단 배분된 재원은 주로 기금이나 회계 내에서 재량적으로 운용되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킴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문화재보호기금은 수입의 대부분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구성되면서, 별도의 기금존치 의미가 적고, 사업간의 중복문제조차 발생하고 있는 상황
-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분야에 대한 전반적이고 다양한 시각을 통해 재원 활용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국가재정법 등에 규정된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출입 등 재원의 효과적인 활용 노력 필요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NABO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2009. 11.

[담당] 이형진 예산분석관(788-4636)

[개요]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사업은 광화문 일대의 문화부청사부지와 별관부지 변경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역사박물관을 건립하고 운영하는 사업
 - 2010년도 예산안에는 추진단 운영 등 운영기반구축으로 37억 7,300만원,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사업으로 97억원이 계상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사업은 총사업비를 484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전시시설, 교육시설, 사무 및 연구시설, 부대시설 등의 시설을 계획
 - 2009년 10월말 현재 건립기본계획 수립 중이며, 이후 총사업비 규모나 건립방식 등 세부적인 건립내용이 확정될 예정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기반 구축 사업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성공적 건립을 위하여 전시조사·연구, 콘텐츠 수집·관리, 사회적 여건 조성을 위한 대국민 홍보, 건립위원회 및 추진단 운영 등 건립 운영기반을 구축하는 사업
 - 2010년도 예산안으로 전년도 예산액 9억원 대비 28억 7,300만원이 증액된 37억 7,300만원이 계상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청사유지관리 사업은 2010년도 예산안에는 전년도 예산액 13억 1,200만원 대비 142억 8,800만원이 증액된 156억원이 계상
 - 2010년 예산안에서 증액된 것은 국정과제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청사가 이전됨에 따라 임대보증금, 임차료, 관리비, 사무실 배치공사 등을 동 사업에서 지원하게 되었기 때문

[현안 검토]

- 건립기본계획 후 총사업비가 확정되고, 현재로서는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추진될 계획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동 사업의 추진이 일정 대로 진행될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 존재
 -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동시에 집행되는 일괄입찰(턴키) 방식을 취하는 경우 인허가 등 행정절차, 입찰자 선정지연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일반적으로 사업비가 증가하는 문제가 존재
 - 동 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가 484억원이라는 큰 규모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합한 설계기간을 8개월로 추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음
 - －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에 따르면, 공사비가 100억원에서 500억원 사이의 공사인 경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포함한 설계에 11.5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동 공사가 리모델링 공사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공사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짧은 기간을 설계기간으로 설정
 - － 타당성재조사가 확정된 부산영상센터 건립사업도 9개월, 국립예술단공연연습장건립 사업의 설계에도 14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
 - 한편, 일반적으로 일괄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공사의 경우 월드컵경기장 건설, 인천대교 건설 등 대규모의 공사에 적용되거나, 시급하게 공사를 추진할 경우에 실시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건물의 리모델링 등을 위주로 시행하는 동 사업에 이러한 방식이 적합한가에 대한 검토 병행 필요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 사업은 건축공사비가 300억원일 때를 기준(건축설계비 5.29%, 감리비 4.75%)으로 설계비 및 감리비의 효율을 적용하고 있는 바, 실제 공사비에 맞도록 조정 필요
 -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지침’에서는 동 사업의 건축공사비인 335억원에 맞도록 직선보간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이 때 건축설계비의 효율은 5.2725%, 감리비 효율은 4.638%이 됨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기반 구축 사업 중 전시콘텐츠 구입 등은 전시콘텐츠 구입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예산집행이 가능한데도, 아직 구체적인 구입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실정으로 필요성 및 집행가능성에 대한 검토 필요
 - 2010년도 예산안에 전시콘텐츠 세부연구 등이 계상되어 있으며, 전시콘텐츠 세부연구기간 및 검토기간 진행 후에야 전시콘텐츠 구입 예산이 집행 가능
 -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건립이 2012년 말로 예정되어 있는데, 전시콘텐츠의 구입을 2010년부터 실시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 검토가 필요
 -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사업내용이 광복 이후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한 자료 수집이라는 점에서 오랫동안 방치된 고대 유물과 같이 멸실 또는 훼손의 우려가 있는 자료가 아니고, 예산 투입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수집 가능한 자료라는 점에서 수장고도 존재하지 않아 임시수장고 예산을 별도로 투입하는 상황에서는 최소한으로 실시하는 것이 적절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 공사의 설계 등의 집행이 원활할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활하게 집행된다 하여도 실제 청사의 이전이 6~7월 경에 예정되어 있으므로, 청사유지관리 사업에 계상된 임차료는 다소 조정이 가능
 - 임차료의 경우 6개월을 기준으로 예산을 계상하고 있으며, 관리비는 8개월의 예산만을 계상
 - 이전 지역의 사무실재배치공사 등이 5~7월까지로 약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공사 완료 이전에는 실제로 청사 이전이 불가능하므로, 공사가 완료되는 8월 이후에야 실제 이전이 가능

[자 료] 국회예산정책처, 「2010년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분야 재정분석」, 『예산안 분석 IV』, 2009. 11.

[담 당] 이형진 예산분석관(788-4636)

[개요]

- 음악·캐릭터·만화·애니메이션 등 문화산업 콘텐츠의 창작의욕 고취, 지적 재산권 보호, 라이선싱 활성화 등을 통해 문화콘텐츠산업을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
 - 2010년도 예산안으로 전년도 예산액 151억 7,200만원 대비 80억 1,700만원 증가한 231억 8,900만원이 계상

〈전략콘텐츠 산업육성 사업의 2010년도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08년 결산	2009년 예산(A)	2010년(안)		증가액 (B-A)	증가율 (B/A)
			요구	조정(B)		
전략콘텐츠산업육성	11,531	15,172	24,072	23,189	8,017	52.8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현안 검토]

- 사업 대부분이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의 보조사업으로 수행되고 있어 민간이전비목이 전체 예산안의 대부분을 차지함에도 운영비, 여비 등의 직접수행경비가 계상되어 있어 별도 계상에 의문
 - 동 사업에 계상된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이 집행하는 직접수행경비
 - － 2009년도 직접 수행경비의 내역을 보면, 자문회의, 공청회, 토론회, 국제컨 본시 참가비, 전문가 간담회 등 지역적인 수준에 불과

- 동 사업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보조사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다시 보조사업자를 재선정하여 집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대부분의 사업 대상자 선정 또는 사업내용 설계 등을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수행
 - 이러한 경비는 2008년 이전에는 문화부의 기본경비로 수행
 -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편성되어 있는 차세대융합형콘텐츠지원, 디지털 콘텐츠산업육성사업의 운영비 등 직접수행경비도 함께 조정 필요
- 동 사업 중 한국대중음악차트발간 및 어워드 사업은 현재 민간의 다수 기관에서 이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가 이를 조성하기 위하여 별도로 예산 투입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
- 음반 및 모바일·온라인 음악콘텐츠 판매 집계 및 통합 차트운영을 통하여 권위있는 음악차트 및 대중음악상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0년 예산안에 4억원이 계상
 - 국가 주도의 차트신설로 음악산업의 활성화가 유도가능한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고, 과거 음악순위 선정과 관련하여 순위선정의 공정성, 편중된 음악장르, 음악인들 내부의 갈등 등으로 순위결정이 중단되었던 상황 고려 필요
 - 국가가 이를 시행한다고 하여 음악장르 및 팬클럽간의 갈등, 로비의혹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에 어렵고, 오히려 민간 시행시보다 더욱 큰 파장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선정의 공정성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기에는 어려움
 - 특히, 미국의 빌보드차트나 일본의 오리콘 차트의 경우 이에 대한 국고의 지원이 전혀 없는 것을 감안할 때, 우리의 경우에도 민간의 역량과 시장경제 원리를 통한 추진이 더욱 바람직
- OSMU(One-Source Multi-Use)킬러콘텐츠 지원 사업의 집행현황 및 사업초기연도임을 감안하여 예산지원규모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 필요

- 동 사업은 다양한 콘텐츠를 다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1차 콘텐츠 제작 및 파생콘텐츠의 제작지원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기존에 수행하는 사업을 연계·추진함으로써 충분한 사업효과를 달성 가능
 - 기본적으로 OSMU를 위해서는 개별 소스(콘텐츠)가 기반이 되어야 하며, 만화, 캐릭터, 패션 등 타 사업의 지원도 결국 OSMU의 활용을 위한 지원
- 동 사업은 2009년 신규사업으로 2009년에는 10억원씩 3편에 대해 지원하였는데, 프로젝트 선정이 지연됨에 따라 2009. 10월 현재까지 3개의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금 협약을 추진 중인 상황으로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함
 - 2009년 프로젝트당 10억원의 세부산출내역을 보면, 원작 및 기획에 소요되는 기간이 6개월 이상, 극본 및 시나리오 구상에 5~10개월 등의 예산을 산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산 집행은 더욱 지연 가능

[자 료] 국회예산정책처, 「2010년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분야 재정분석」, 『예산안 분석 IV』, 2009. 11.

[답 당] 이형진 예산분석관(788-4636)

[개요]

- 첨단 융복합 콘텐츠 기술개발 사업은 문화기술(CT) R&D의 전략적 추진으로 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 예산안으로 434억 5,000만원이 계상
 - 2009년의 CT경쟁력 강화 R&D, 창작기반 기술개발 R&D, 미래콘텐츠기술개발 R&D사업을 통합한 사업
 - 미래형 게임 첨단기술개발, 차세대 영상·뉴미디어기술개발, 가상현실 기술개발, 창작·공연·전시 기술개발 등을 실시하는 융합형콘텐츠핵심기술 개발 사업, 글로벌 프로젝트 기반 기술개발 사업, 대학내 문화기술 연구소 지원사업, 콘텐츠산업의 혁신역량강화 사업으로 구성

〈첨단융복합 콘텐츠 기술개발 사업의 2010년도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08년 결산	2009년 예산(A)	2010년(안)		증가액 (B-A)	증가율 (B/A)
			요구	조정(B)		
첨단융복합콘텐츠기술개발	13,000	30,000	52,500	43,450	13,450	44.8

주: 첨단융복합 콘텐츠기술개발(R&D): CT경쟁력 강화 R&D (13,000) + 창작기반 기술개발 R&D (9,500) + 미래콘텐츠기술개발 R&D (7,500) 사업통합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현안 검토]

- 기술개발이라는 특성에 기인하여 실집행실적이 다소 저조하고, 매년 이월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내용을 감안하여 사업기간을 회계연도와 최대한 일치시킬 수 있도록 하고, 실집행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사업의 성격이 문화콘텐츠 부문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과제선정기간 등으로 인하여 회계연도와 사업기간이 불일치
 - 단기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경우에도 사업기간을 회계연도를 고려하지 않고 설정하는 경우가 많음
- 기술료 징수율이 매년 저조하므로,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필요
 - 기술지원사업에서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료 1년 후부터 4년 분납으로 지원금의 30% 범위 내에서 기술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기한도래액 대비 회수액 비중이 저조
 - 지원받은 업체가 경제상황 악화와 영세한 자금력으로 인해 폐업되거나 유동자금 부족을 이유로 상환을 지체중이기 때문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감안할 때, 사업의 성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시기
 - 기술개발지원을 받은 개별 사업체가 징수된 기술료 납부를 못할 정도로 경영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기술개발 결과가 수익 창출로 이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이는 수익창출에 기반한 대상 기술 선정이 미흡하기 때문으로 풀이
 - 사업의 지원 대상 선정시 업체의 경영성과 등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하고, 기술개발의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필요
- 2010년도에 신규로 서비스 R&D를 추진하고자 하는데, 사업내용에 비추어 지원액에 비한 성과가 크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고, 타 부처의 사업과 큰 차별성을 가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 바, 동 사업의 추진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
 - 서비스 R&D 사업은 서비스선진화 방안에 근거하여 지원되는 콘텐츠 서비스 분야의 서비스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으로, 2010년도 예산안으로 20억원이 계상

- 서비스 R&D의 특징은 개별 콘텐츠나 분야에 대한 지원이 아닌 업무 추진 프로세스 등 경영 및 마케팅 분야에서의 개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가 독자적인 서비스 기술개발을 통하여 추진하는 데에는 한계 존재
 - 문화 콘텐츠에 대한 기술 개발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독자적으로 사업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반면에, 서비스 R&D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개별 기업이나 서비스 기술개발에 있어 큰 역할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결국 지식경제부나 중소기업청 등 타 부처에서 실시하는 경영 프로세스 관련 R&D 이상의 성과를 나타내기 곤란
 - 특히, 업무 프로세스 혁신과 디지털 환경에 부응하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목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문화기술기반조성 사업에서 실시하는 CT 기술 개발 및 성과확산, 국내외 교류협력 등의 비즈니스 사업,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 활성화, 문화콘텐츠 국내외 마케팅 활성화 등의 제 사업과 특별히 별개의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논의 필요

[자 료] 국회예산정책처, 「2010년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분야 재정분석」, 『예산안 분석 IV』, 2009. 11.

[답 당] 이형진 예산분석관(788-4636)

[개 요]

- 사회 문화적으로 소외된 아동복지시설(보육원)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및 군 장병, 교정시설 수용자 등에게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예술의 향유 및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사회계층간 문화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사업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데, 동 사업은 2010년도에 114억 4,500만원이 계상
 - 동 사업은 강사가 수행하는 강의시수를 기준으로 지원

〈사회문화예술교육활성화 사업의 2010년도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08년 결산	2009년 예산(A)	2010년(안)		증가액 (B-A)	증가율 (B/A)
			요구	조정(B)		
사회문화예술교육활성화	5,237	7,445	11,445	11,445	4,000	53.7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현안 검토]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강사료 지원 시 명확한 지원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측면 존재
 - 노인복지관에 대한 강사료는 참가자수가 20명인 경우 개월당 24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에 비해 장애인 복지관 및 종합복지관은 10명의 참가자 수에 200만원을 매월 지급하고 있으며, 일부 20명의 참가자

수에 대해 강의를 시행하고 있는데도 374만원 정도의 지원이 실시

- 사회복지관 및 장애인 복지관의 경우 참가자 수가 6명인 경우 120만원, 7명인 경우 140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참가자수가 같은 경우 같은 강의시간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음

○ 특히, 군 분야와 교도소나 소년원 등 특수분야의 경우 참가자수가 20명 정도인 경우 1,000만원 이상의 지원이 실시되고 있는데, 다소 과다

- 이는 분야별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장애인이나 노인들에 대한 교육보다 군 부대 및 특수분야 교육이 특별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

□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의 2010년도 예산안 산출내역을 보면, 강사비 산출 시 10개월을 기준으로 계상하고 있으나, 10개월 이상 사업이 추진된 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음

○ 2009년 실제 강의개월수를 보면, 전체 273개 프로그램 중 10개월인 경우가 9개에 지나지 않고 9개월인 경우가 165개 프로그램, 8개월이 81개 프로그램 등 대부분이 8~9개월

〈사회문화예술교육활성화(지자체) 사업의 교육기간별 프로그램수〉

개월	프로그램 수
10개월	9
9개월	165
8개월	81
7개월	9
6개월 이하	9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과 지원규모에서 차이가 나고 있어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의 쏠림현상으로 사업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음

[자 료] 국회예산정책처, 「2010년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분야 재정분석」, 『예산안 분석 IV』, 2009. 11.

[담 당] 이형진 예산분석관(788-4636)

[개요]

- 관광진흥개발기금은 폐광지역, 관광특구, 도시, 섬, 남해안 등 특정지역의 관광진흥 및 개발을 위한 예산을 지원
 - 폐광지역 관광상품개발 사업은 폐광지역의 생활현장을 보전하고, 어촌·산촌과 연계 개발하여 관광자원화 하는 사업으로, 강원도에 70%의 정률로 지원
 - 관광특구활성화 사업은 관광특구를 국제관광지역으로서의 매력과 이미지가 창출되는 거점지역으로 육성시켜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
 - 도시관광활성화 사업은 도시의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관광이미지 개선을 목적으로 2008년 추진된 사업
 - 섬관광자원활성화 사업은 가고싶은섬 시범사업과 국토끝섬 사업으로 구성
 - 가고싶은섬 시범사업은 남해안 등의 섬을 해양생활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외연도, 청산도, 흥도, 매물도 등 4개 섬을 지원하고, 국토끝섬 사업은 독도(최동단), 백령도(최서북단), 가거도(최서남단) 등 3개섬 환경친화적 관광시설 기반 확충, 관광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시행하는 사업
 - 남해안 관광활성화 사업은 2012년 여수엑스포 개최를 계기로 남해안 3개 시·도 공동 연계를 통한 관광 콘텐츠 개발 및 통합 마케팅 체계를 구축하고, 남해안을 국제적 수준의 해양관광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
 - 습지국제관광자원화 시범사업은 2012년 여수엑스포를 계기로 순천만 국제습지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09년에 신규로 시작

〈관광진흥개발기금 일부 사업의 2010년도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09년 예산(A)	2010년(안)		증가액 (B-A)	증가율 (B/A)
		요구	조정(B)		
폐광지역관광상품개발	3,000	5,000	5,000	2,000	66.7
관광특구활성화지원	5,000	4,500	4,500	-500	-10.0
도시관광활성화사업	6,000	6,400	6,400	400	6.7
섬관광자원활성화	4,600	3,700	3,700	-900	-19.6
남해안관광활성화	3,500	3,000	3,000	-500	-14.3
습지국제관광자원화시범사업	2,500	4,000	4,000	1,500	6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현안 검토]

-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집행되는 일부 관광지개발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성계획 및 마스터플랜, 설계 등이 지연됨에 따라 실집행이 원활하지 못한데, 연례적인 실집행부진을 감안한 예산조정 필요
- 폐광지역 관광상품개발 사업의 연례적인 집행부진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증액된 계획안을 편성하고 있는 바, 집행실적을 감안한 조정 필요

〈폐광지역 관광상품 개발 사업의 연도별 실지출실적: 2006~2010(안)〉

(단위: 백만원)

연 도	문화체육관광부		강원도						
	예산액	지출액	구분	조성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실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2006	5,000	-	국고	-	8,478	8,478	1,468	7,010	-
			지방비	2,993	5,263	8,256	-	8,256	-
2007	-	-	국고	-	7,010	7,010	1,811	5,199	-
			지방비	1,451	8,256	9,707	-	9,707	-
2008	3,000	3,000	국고	3,000	5,199	8,199	3,976	4,223	-
			지방비	-	9,707	9,707	-	9,707	1,693
2009.9	3,000	3,000	국고	3,000	4,223	7,223	534	-	-
			지방비	1,286	8,014	9,300	4,969	-	-
2010(안)	5,000	5,000	국고	5,000					
			지방비	2,14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특구활성화 사업은 2010년 계획안으로 전년대비 5억원이 감소된 45억원이 계상되었으나, 지속되는 집행부진문제와 지방비 매칭규모, 전년도의 이월금액 등을 감안할 때, 계획안의 조정 필요
 - 최초로 사업이 시작된 2008년 50억원의 계획액이 전액 실지출되지 못한 채 차년도로 이월되었으며, 2009년에도 계획액 50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50억원을 포함한 100억원 중 20%인 20억원만이 실지출되어 50% 이상이 차년도로 이월될 것으로 예상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의 연도별 실지출실적; 2008~2010(안)〉

(단위: 백만원)

연 도	문화체육관광부		보조사업자						
	예산액	지출액	구분	조성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2008	5,000	5,000	국비	5,000	-	5,000	0	5,000	0
			지방비	5,000	-	5,000	0	5,000	0
2009.9	5,000	5,000	국비	5,000	5,000	10,000	2,315		
			지방비	5,000	5,000	10,000	2,013		
2010(안)	4,5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도시관광활성화 사업은 2010년 계획안으로 전년대비 24억원이 감액된 64억원을 계상하였으나, 과거의 집행실적 부진을 감안할 때, 2009년 계획액의 50% 이상을 집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므로 계획안의 조정 필요
 - 2008년 추진된 사업으로 교부액 40억원이 전액 미지출되어 이월, 2009년에도 계획액 86억 1,8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40억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26억 1,800만원 중 24억 5,700만원만이 실지출되어 집행실적이 매우 부진

〈도시관광활성화 사업의 연도별 실지출실적: 2008~2010(안)〉

(단위: 백만원)

연 도	문화부		보조사업자						
	예산액	지출액	구분	조성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실지출 액	이월액	불용액
2008	4,000	4,000	국고	4,000	-	4,000	-	4,000	
			지방비	4,000	-	4,000	-	4,000	
2009. 9	8,618	8,618	국고	8,618	4,000	12,618	2,457		
			지방비	8,618	4,000	12,618	3,300		
2010(안)	6,4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섬관광자원활성화 사업의 연례적인 집행 부진을 감안한 예산 조정 필요
 - 2007년 계획액 64억원 중 4억 9,100만원만이 실지출되었고, 2008년에도 계획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138억 5,900만원 중 10억 6,800만원만이 지출, 2009년에도 9월말 현재 예산현액 167억 4,100만원 중 33억 9,100만원만이 실지출

〈섬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의 실지출실적: 2007~2010(안)〉

(단위: 백만원)

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충남, 전남, 경남 등						
	구분	예산액	지출액	구분	조성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실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2007	가고싶은섬	6,700	6,700	국고	6,700	0	6,700	491	6,209	0
				지방비	6,740	0	6,740	491	6,249	
2008	가고싶은섬	7,650	7,650	국고	7,650	6,209	13,859	1,068	12,791	0
				지방비	7,680	6,249	13,929	1,068	12,861	
2009.9	가고싶은섬	3,950	3,950	국고	3,950	12,791	16,741	3,391		0
				지방비	3,951	12,861	16,812	2,523		
	국토골섬	600	600	국비	600	0	600	0		
2010(안)	가고싶은섬	2,650								
	국토골섬	1,05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남해안 관광활성화 사업은 2009년 신규사업으로, 마스터플랜 수립 및 기본용역, 행정절차 등이 지연되어 2009년 9월말 현재 계획액 35억원 중 2억원만이 실지출되는 등 집행이 부진

〈남해안 관광활성화 사업의 연도별 실지출현황: 2009~2010(안)〉

(단위: 백만원)

연도	문화체육관광부		부산, 전남, 경남 등						
	예산액	지출액	구분	조성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실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2009. 9	3,500	3,500	국고	3,500	0	3,500	200		
2010(안)	3,000		국고	3,0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습지국제관광활성화 사업도 2009년 신규사업으로 2009년 9월 전액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계획안을 전년대비 증액하여 계상하였는 바, 집행실적을 고려한 계획안의 조정 필요

〈습지 국제관광자원화 사업의 연도별 실지출실적: 2009~2010(안)〉

(단위: 백만원)

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전남						
	예산내역	예산액	지출액	구분	조성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실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2009.9	순천만 습지센터	2,500	0	국고	2,500	0	2,500	0	-	-
				지방비	2,500	0	2,500	0	-	-
2010 (안)	순천만 습지센터	4,000		국고	4,000					
				지방비	4,0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자 료] 국회예산정책처, 「2010년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분야 재정분석」,
『예산안 분석 IV』, 2009. 11.

[담 당] 이형진 예산분석관(788-4636)

[개요]

-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의 수익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으로 배분되고 있는데,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경우 매출액 중 환급금, 위탁관리비, 법정배분금 등을 제외한 부분을 기금으로 전입
 - 체육진흥투표권의 기금전입금은 매출액에서 환급액과 위탁관리비를 제외한 수익금액에서 타 기금 등예의 법정배분금을 빼고 남은 금액과 지급보증원리금이 기금전입액으로 귀속되는 구조
 - 2010년(안)에는 3,386억 5,200만원이 기금전입액으로 계획

[현안 검토]

- 체육진흥투표권의 위탁관리비는 매출액 대비 8.0%~19.362%로 다소 과다한 바, 적절한 위탁관리비 운영 필요
 -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귀속되는 출국납부금이나 카지노부담금의 총납부금 대비 위탁관리비율인 5.5%, 경륜사업 기금전입금의 총매출액 대비 총사업비 비율인 7.8%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
 - 위탁관리비의 증가는 기금전입금액의 감소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편성되는 것이 바람직
 - 감사원에서도 발매금액 예측이 위탁운영비율 산정의 주요 요소임에도 발매금액을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예측함으로써 위탁운영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예상보다 많은 위탁운영비가 지급되는 등 산정의 부적정성에 대하여 지적

- 위탁운영비 산정에 있어 현실적인 여건의 변화와 기금 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의 위탁사업자에 대한 위탁운영비 지원비율을 현실화하여 적정수준의 수입계획안 계상 필요
 -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에 대해서 2009년 말까지 위탁운영비율의 재지정을 위하여 연구용역을 의뢰하였으며, 동 결과에 따라 위탁운영비율을 확정할 것 이라 설명
 - 2009. 9월말 현재 연구용역의 결과를 반영하여 2010년부터 적용하는 위탁 운영비율을 합리적으로 확정함으로써 향후에는 적정수준의 수입계획안을 계 상 필요

[자 료] 국회예산정책처, 「2010년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분야 재정분석」,
『예산안 분석 IV』, 2009. 11.

[답 당] 이형진 예산분석관(788-4636)

[개요]

-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는 2009년도 9월 현재 국립극단, 국립창극단, 국립무용단, 국립국악관현악단 4개 단체로 2010년도 예산안은 50억 원을 반영
 - 2010년도에는 단원체제 개편을 통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국립극단 법인화를 추진할 계획임
 - 국립극단의 법인화 추진일정은 2010년 1월에 TF구성·의견수렴, 3월에 관계 규정 제정, 4월에 법인 설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법인화에 따라 인원을 총원할 계획인 바 기존 30명 정원에서 58명으로 증원할 예정

〈국립극단 법인화 예산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09년도		2010년도	
	예산액	세부내역	예산액	세부내역
공연사업비	844	○정기공연 : 485 (4편×121) ○국가브랜드 : 150 (1편×150) ○해외공연 : 71 (1회×71) ○지방공연 : 120 (10회×12) ○창작공모전 : 18 (1회×18)	1,860	○정기공연 : 1,000 (5편×200) ○국가브랜드 : 250 (1편×250) ○해외공연 : 300 (4회×75) ○지방공연 : 290 (20회×14.5) ○창작공모전 : 20 (1회×20)
인건비	1,220	○총인원 : 30명 - 예술감독(1명) : 60 - 책임피디 및 총무(2명) : 85 - 단원(27명) : 1,075	2,640	○총인원 : 58명 - 단장겸 예술감독(1명) : 70 - 창작팀(3명) : 150 - 사무국(7명) : 320 - 단원(47명) : 2,100
경상운영비	-	-	500	○사무실 임대료 : 300 ○수용비 및 공공요금 등 : 200
합계	2,064		5,0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극장

[현안 검토]

- 4월에 법인을 설립할 예정인 바, 인건비 26억 4,000만원 중 법인화 이후 필요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법인화 일정상 4월 이후부터 필요한 예산이므로 법인화 이후 증가 인력 28명 인건비의 1/3은 삭감 조정할 필요가 있음

[자 료]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2009. 11.
[담 당] 이형진 예산분석관(788-4636)

[개 요]

-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은 「문화재보호법」 제39조 및 「국가재정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를 원형으로 보수·복원하는 총액계상사업
 - 2010년도 예산안에는 전년도 추경예산액 2,110억 2,600만원 대비 210억 2,600만원이 감소된 1,900억원이 계상
 -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은 「국가재정법」 제37조에 의거 총액계상사업으로 지정되어 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후 사업대상이 확정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의 2010년도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08년 결산	2009년 추경(A)	2010년		증감	
			요구안	조정안(B)	(B-A)	B/A
문화재보수정비 (총액사업, 지자체)	190,029	211,026	190,000	190,000	-21,026	90.0

자료: 문화재청

[현안 검토]

-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은 매년 집행행실적이 부진하여 국회 결산심사시 제도개선 지적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집행실적 제고를 위해서 세부사업의 시행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집행을 독려하고, 차년도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의 대상선정 시 집행이 되지 않은 사업의 지원을 중지하는 등 사업방식의 변경도 고려 필요
 - 「국가재정법」 제37조에 의거 총액계상사업으로 지정되어 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후 사업대상이 확정되므로 지방비를 적기에 확보할 수

없다는 제도적인 측면과 문화재의 특수성으로 인한 보수범위 확대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토지 등 매입시 소유자와의 보상 협의 지연 등의 운영상의 측면에 기인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의 당해연도 예산액의 연도별 실적행실적: 2005~2010년(안)〉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실집행액	집행률	이월액	불용액
2005	156,625	82,454	52.6	73,794	377
2006	171,752	71,621	41.7	99,765	365
2007	163,886	76,106	46.4	86,974	806
2008	190,029	95,182	50.1	93,398	1,449
2009.9	211,026	109,172	51.7		
2010(안)	190,000				

자료: 문화재청

- 세계유산 관련 문화재보수정비 사업과 같은 대규모의 사업을 편성함에 따라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의 실적행실적도 저하되고 있으며, 국회의 사업내용에 대한 통제가 미흡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규모 사업은 별도로 편성하는 것이 필요
 - 제주 세계자연유산은 2007년 세계자연유산으로 UNESCO에서 지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동 유산의 관리 및 보급을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을 통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내용이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의 목적과 괴리
 - 사업내용이 유산지구의 토지매입과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유지 매입은 IUCN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하여 농경지를 매입하는 것이며,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은 홍보, 연구·교육,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한 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소규모 문화재의 보수, 주변 정비 등을 실시하는 사업인 문화재보수정비와는 목적이 괴리

- 문화재보호구역 내 사유지 매입비나 제주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 사업과 같은 대규모 사업의 목적,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의 실질행실적 부진 해소, 대규모 사업에 대한 국회심의 필요 등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을 문화재보수정비 사업 내로 두기보다는 별도 사업으로 편성하여 국회 심의를 거치는 방안의 강구 필요

[자 료] 국회예산정책처, 「2010년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분야 재정분석」,
『예산안 분석 IV』, 2009. 11.

[담 당] 이형진 예산분석관(788-4636)

[개요]

- 문화재보호기금은 2009.6월 제정된 「문화재보호기금법」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
 - 동 기금의 수입내역을 보면, 총 1,034억 2,800만원의 수입액 중 민간출연금 20억원, 기타잡수입 40억원을 제외한 974억 2,800만원이 일반회계 및 복권기금의 전입금으로 구성

〈문화재보호기금의 2010년도 수입계획안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2009계획액 (A)	2010년도		증 감	
		요구	조정(B)	(B-A)	%
총 계	-	129,348	103,428	103,428	순증
민간출연금	-	2,000	2,000	2,000	순증
기타잡수입	-	4,000	4,000	4,000	순증
전입금	-	123,348	97,428	97,428	순증
일반회계전입금	-	87,508	61,588	61,588	순증
복권기금전입금	-	35,840	35,840	35,840	순증

자료: 문화재청

- 목조문화재상시감시체계구축 사업은 문화재 방화 및 훼손을 미연에 방지하고, 화재 등의 발생시 초동대응을 위하여 안전경비인력을 배치하는 사업으로, 당초 일반회계로 수행하던 사업을 문화재보호기금의 설치에 따라 기금으로 이관

- 2009년 신규 사업으로, 2010년도 계획안에 25억 5,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목조문화재 125개소에 337명의 감시인력 배치를 사업 내용으로 함
- 문화재긴급보수 사업은 퇴락 및 훼손, 자연재해 피해 문화재 발생시 긴급보수비를 활용, 신속히 복구하여 보수·정비 지연에 따른 예산의 과다 소요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문화재 원형유지·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
- 2010년도 계획안으로 전년도 계획액 48억원 대비 52억원이 증가한 100억원이 계상되었는데, 당초 70%의 보조율로 수행되던 국고지원 비율을 2010년부터 100%로 증가시켰기 때문

[현안 검토]

- 문화재보호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가 과다하므로, 기금이 본래의 목적을 다하기 위해서는 민간출연금이나 입장료수입과 같은 소규모 지원 외에도 장기적이고 대규모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 필요
- 문화재보호사업의 추진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별도의 기금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향후 동 기금이 일반회계 및 복권기금의 전입금만을 재원으로 운용되어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 존재
 - 복권기금의 사업을 제외하면, 2010년도 총 지출액의 91.1%가 일반회계로 충당되고 있어 실제 일반회계로 동 사업을 운영하는 것과 차이가 없음
- 목조문화재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되나, 실질적인 감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채 일자리 제공 사업으로만 실시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동 사업의 수행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검토 필요

- 현재 문화재재난방지시스템 등의 구축을 통하여 주요문화재의 훼손방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문화재당 1인이 배치되는 경우도 있어 실제 문화재에 대한 감시보다는 일자리 제공에 불과
 - 2009년 첫 사업으로서 사업성과 및 효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거친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 측면에서 바람직
- 문화재긴급보수 사업의 사업추진실적이나 집행실적에 비추어 볼 때, 전년도 예산액 대비 51억 2,900만원이나 증액된 계획안을 편성한 것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고, 동 사업이 기금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계획안의 조정 필요
- 연도별 사업성과를 보면, 2004년에는 50억원, 2005년 70억원이 집행되는 등 국비가 100% 지급되던 과거에는 70억원 정도가 집행되었으나, 국비지원이 70%로 결정된 2008년에는 42억원만이 교부되었으며, 2009년의 경우 9월 14일 현재 20억원만이 교부
 - 2010년부터는 전액 국고보조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 설명하고 있는데, 동 보조율이 적정한가에 대한 검토도 병행 필요
 - 지방비의 확보 지연으로 인하여 긴급보수경비의 집행이 지연되는 측면이 있으나, 국고의 우선집행 후 지방비 확보 등의 사업방식 변경을 통하여도 동 사업이 목적인 바를 충분히 달성 가능

〈문화재긴급보수사업의 연도별 사업 추진내역: 2004~2009년〉

(단위: 억원)

연도	보수 건수	교부액
2004	상당산성 등 38건	50
2005	낙산사 등 42건	70
2006	탑골공원 등 95건	69
2007	서울 흥인지문 등 49건	69
2008	송례문 등 24건	42
2009. 9	통도사 대웅전 등 15건	20

주: 2007년까지는 국비 100% 지원, 2008~2009년에는 국비 70% 지원

자료: 문화재청

- 2009년 집행실적을 보면, 문화재청이 지방자치단체로 20억원을 교부하였으나 실제 집행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이러한 계획안의 편성은 일반회계가 아닌 문화재보수기금으로 수행함에 따른 측면이 존재하는데, 문화재보호기금의 사업이 실질적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을 통하여 수행되는 체계임에 비추어 볼 때, 집행가능성이 낮고 과다하게 계상된 사업 계획안의 조정을 통하여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규모 축소 필요
- 특히 문화재긴급보수 사업은 긴급보수를 위한 사업목적은 정해져 있으나 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는 예비비성의 사업성격이고, 사업의 집행이 저조한 경우 동 사업의 불용액은 기금의 여유자금으로 수납되게 되기 때문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0년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분야 재정분석」,
『예산안 분석 IV』, 2009. 11.

[담당] 이형진 예산분석관(788-4636)

Ⅶ. 환경 분야

1

환경분야 자원배분

- 정부는 5년간(2009~2013) 연평균 3.5%의 증가율로 환경분야에 재원을 투자할 계획인 바, 2013년에는 그 규모가 5조 8,382억원에 이를 전망
- 2009~2013년간 상하수도·수질 및 자연부문에 대한 투자비중은 증가할 전망이다, 폐기물, 대기, 해양, 환경보호부문은 감소가 예상됨
 - 상하수도부문이 환경분야에서 가장 큰 투자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2009년 환경분야 전체투자의 64.3%에서 2013년에는 65.6%에 이를 전망이고, 폐기물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6.3%에서 6.1%로 약간 감소하고, 대기부문도 6.1%에서 5.6%로 감소될 전망
 - 자연부문은 7.2%에서 7.7%로 증가하는 반면, 해양부문은 4.5%에서 4.1%로 그리고 환경일반부문은 11.6%에서 10.9%로 감소될 전망

〈환경분야 자원배분계획: 2009-2013년간〉

(단위: 억원, %)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상하수도·수질	32,785	35,597	35,975	37,353	38,287	4.0
폐기물	3,189	3,219	3,335	3,455	3,579	2.9
대기	3,098	2,861	2,975	3,094	3,259	1.3
자연	3,673	4,098	4,221	4,348	4,478	5.1
해양	2,289	2,064	2,115	2,200	2,397	1.2
환경보호	5,921	5,730	5,936	6,150	6,371	1.8
계	50,954	53,539	54,558	56,600	58,382	3.5

자료: 대한민국정부,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09. 10.

- 상하수도 및 수질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상하수도 시설의 지역간 보급률 격차 문제와 더불어 비점오염원관리강화 및 토양지하수정화에 대한 투자확대 필요성이 새로이 대두되고 있어 중점투자 방향의 재조정이 요구됨
- 상수도의 전국보급률은 92.1%, 하수도의 전국보급률은 87.1%인데, 충청남도 및 전라남도의 상수도보급률은 아직 60%대에 머물고,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의 하수도보급률은 50~60%대에 머물고 있어, 상하수도 재원투자에 있어 지역간 환경서비스의 형평성 제고가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최근 수질오염원 중 비점오염원이 점오염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연간 2조원에 달하는 수질관리 예산 중 겨우 230억원 정도가 비점오염원관리에 지원되고 있어 비점오염원관리와 점오염원관리간 투자비중의 조정이 요구됨
- 폐금속광산, 산업단지, 주한미군부대 주변 토양 및 지하수오염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토양지하수정화 관련기술개발 및 토양지하수오염정화사업에 대한 지원이 취약한 실정
- 최근 폐기물에너지화시설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데, 국내 신재생에너지 관련기술의 개발정도와 폐기물에너지 시장의 취약성 등을 고려할 때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
 - 유기성폐기물에너지화의 경우, 기술수준이 아직 선진국의 60% 수준으로 기술개발이 동반되지 않은 단기간의 사업 확대는 해외기술의 의존도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음
 - 폐기물 고형연료의 경우, 낮은 공급가격에도 불구하고 품질에 대한 불신으로 수요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폐기물에너지 시장이 아직은 취약한 실정
- 대기부문 기후변화 대응대책 관련사업의 경우,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 부재하고 부처간 중복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이의 조정이 요구되는 실정임
 - 환경부와 지식경제부가 각각의 온실가스배출계수개발과 배출계수검증절차를 개발·추진하면서 국가온실가스통계시스템의 총괄관리를 요구하는 실정
 -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 환경부는 총량제한방식의 배출권거래제를 추진하는데 반하여 지식경제부는 크레딧방식의 인센티브제를 추진하고 있어 국가정책의 혼선을 야기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NABO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2009. 11.

[담당] 강상규 예산분석관(788-4635)

[개 요]

□ 환경부 소관 환경개선특별회계 하수도사업

- 예산안: 1조 8,893억원(전년본예산 대비 15.4% 증)
 - 하수도사업은 사람의 건강을 보호함에 필요한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의 개선과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수질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하수처리장, 하수관거, 분뇨처리시설 등과 같은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이며, 중앙정부는 이 사업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책무를 지고 있음
- 설치시설별로 2010년 예산안을 보면, 하수처리장확충사업과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전년대비 각각 17.7%와 26.3% 증액 편성되어 하수도사업 전체 사업비의 68.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과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지원에서는 전년대비 각각 20.2%와 25.8%가 감액편성

〈2010년 하수도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09 (본예산)	2010안	전년대비	
			증가액	증가율
하수처리장확충	564,173	663,759	99,586	17.7
하수관거정비	499,033	630,386	131,353	26.3
면단위하수처리장확충	102,460	93,267	-9,193	-9.0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98,241	99,697	1,456	1.5
댐상류하수도시설설치	206,517	189,216	-17,301	-8.4
분뇨처리시설확충	16,564	13,222	-3,342	-20.2
개인하수처리시설설치지원	1,636	1,214	-422	-25.8
하수처리장용자원리금상환	126,052	134,057	8,005	6.4
하수관거용자원리금상환	15,721	14,328	-1,393	-8.9
하수관거정비BTL사업 임대료지급	6,886	50,163	43,277	628.5
합 계	1,638,565	1,889,309	250,744	15.4

자료: 환경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 요구(안)」, 2009. 10.

[현안 검토]

- 2010년 하수도사업의 지자체별 재원배분계획을 2009년(추경예산)과 비교하면, 전라남·북도와 제주도의 경우 아직 보급률이 60~70%대에 머물고 있음에도 감액지원이 예정되고, 대구, 광주, 대전의 경우 이미 보급률이 90%를 넘고 있는 실정에 대폭 증액지원이 예정되어 설득력이 떨어짐
 - 하수도보급률이 90%가 넘는 대구, 광주, 대전은 각각 전년대비 174.8%, 357.7%, 582.1% 증액 편성된 반면, 보급률이 60~70%대에 머물고 있는 전라북도와 제주도의 경우 2009년에 비하여 각각 29.8%와 35.5% 감액된 국고지원이 예정
 - 2010년 지자체별 재원배분은 2006년부터 기존 도시지역과 공업단지 중심의 하수도사업지원에서 하수도서비스의 지역간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면단위하수처리장 확충,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댐상류 하수도시설 설치에 투자를 늘려왔던 정부 정책방향과도 부합하기 어려움
- 이러한 2010년 하수도사업 지자체별 재원배분은, 1조 4,800억원에 이르는 ‘4대강살리기사업’ 직접연계사업인 하수처리장, 하수관거, 댐상류하수도, 농어촌마을하수도, 면단위하수처리장 설치 지원이 4대강 중점권역에 집중된 것에서 비롯됨
 - 하수도사업 중 직접연계사업의 권역별 지원계획을 보면, 전체사업비의 55.6%, 특히 신규사업의 78.6%를 4대강 중점권역에 투자할 예정
 -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하수관거정비사업,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경우, 각각의 신규사업비 중 86.1%, 79.9%, 69.5%가 4대강 중점권역에 지원되고, 댐상류하수도시설설치사업 계속사업비 91.7%가 이 지역에 투입될 예정
 - 직접연계사업에 대한 투자가 중점권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들 중점권역을 지자체별로 확인하면, 대구, 광주, 대전의 경우 전년대비 각

각 189.7%, 394%, 647.2% 증액지원이 예정이고, '4대강살리기 사업'의 영향을 적게 받는 강원도, 전라북도, 제주도는 감액 지원이 계획되어 있음

- 2010년도 하수도사업 예산안은 하수도보급률 향상으로 하수도서비스의 지역간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하수도사업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어 지자체간 재원배분 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4대강 중점권역 중심의 투자계획으로 하수도보급률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2010년 예산안 편성에서 배려가 적었던 지자체의 실정을 재고하여, 지자체간 재원배분을 조정할 필요가 제기됨

[자 료] 국회예산정책처, 「하수도사업 예산지원의 지역간 격차」, 『예산안 분석 IV』, 2009. 11.

[담 당] 강상규 예산분석관(788-4635)

[개 요]

□ 환경부 소관 4대강 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

- 기금운용계획안: 1,253억원(전년대비 5.4% 감)
- 주민지원사업은 4대강 수질개선 특별법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지정과 같은 토지이용규제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주민에게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 등에 재정을 지원하여 생활환경 및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상수원 수질보전에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

〈2010년 주민지원사업 지출계획안〉

(단위: 백만원, %)

	2009 (본예산)	2010안	전년대비	
			증가액	증가율
[주민지원사업]				
한 강	73,459	66,087	-7,372	-10.0
낙동강	26,962	27,264	302	1.1
금 강	18,097	18,125	28	0.2
영산강	14,000	13,861	-139	-1.0
합 계	132,518	125,337	-7,181	-5.4

자료: 환경부, 「2010년도 4대강 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정부안)개요」, 2009. 10.

[현안 검토]

- 각 수계에 있어 시·군별 주민지원사업비는 규제지역의 종류(규제의 정도), 면적, 인구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2003~2009년간 인구 및 규

제지역 면적변화 추이를 보면 이러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음

○ 2003~2009년간 규제지역 면적은 23.9%가 증가하고 대상인구수는 66.6% 감소하였음에도 주민지원사업비 규모는 단지 2.3%의 변동이 있었을 뿐임

– 한강수계의 경우, 인구수는 연평균 10.6% 그리고 규제면적은 연평균 1%씩 감소하였으나, 지원액은 단지 연평균 0.5% 감소

– 낙동강 수계를 보면, 인구수는 연평균 29.7% 그리고 규제면적은 연평균 1.5%씩 감소하나, 지원액은 연평균 단지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금강의 경우, 인구수는 연평균 10.9% 감소하였으나 규제면적이 연평균 19.5% 증가하여 지원금액은 연평균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영산강에 있어서는 인구수는 연평균 2.6% 그리고 규제면적은 연평균 4.8% 증가하였으나, 지원규모는 오히려 연평균 0.6%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규제면적 및 인구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주민지원사업비 지원의 근원적 문제는, 각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연간 주민지원사업비 지원규모를 미리 결정하고 이 규모 안에서 해당 시·군의 지원비를 배분하는데 있음

– 즉, 각 수계에서 발생한 규제면적 변화와 지원대상 인구수 변동이 수계위원회의 주민지원사업비 총 규모의 결정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2010년 주민지원사업 지출계획안은 각 수계에 있어 규제면적과 지원대상 인구를 정확하게 반영하여 산출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을 바탕으로 재조정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주민지원사업비 규모결정에 규제면적 및 지원대상 인구의 변화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요구됨

[자 료] 국회예산정책처, 「4대강 수계관리기금사업 운영체계의 비효율성」, 『예산안 분석 IV』, 2009. 11.

[담 당] 강상규 예산분석관(788-4635)

[개 요]

□ 환경부 소관 환경개선특별회계 공단폐수처리시설확충사업

○ 예산안: 1,960억원(전년본예산 대비 13.1% 증)

- 동 사업은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시행주체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비의 50~100% 보조

〈공단폐수처리시설확충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09 (본예산)	2010안	전년대비	
			증가액	증가율
공단폐수처리시설확충	173,233	195,945	22,712	13.1

자료: 환경부, 「2010년 예산안 사업설명 자료」, 2009. 10.

[현안 검토]

- 공단폐수처리시설확충사업은 공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설치된 폐수처리시설의 운영실태를 감안할 때, 증액편성이 타당한지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 2008년 현재 운영 중인 60개 공단처리시설의 시설용량 대비 오·폐수 유입률은 평균 59.3%이고, 전체 공단폐수처리시설의 36.7%에 해당하는 22개 시설의 가동률은 시설용량의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농공단지의 경우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여 전체 76개 시설의 시설용량 대비 실제 오·폐수 유입률은 40.5%를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21개 시설에 있어서는 가동률이 시설용량의 30%에도 미치지 못함
- 2010년 예산지원의 대상이 되는 사업이 공업단지 및 농업단지에 입주가능한 업체수와 발생 오·폐수량을 정확히 산정하였는지 면밀한 재검토와 더불어 예산안의 조정이 요구됨

[자 료] 국회예산정책처, 「공단폐수처리시설 운영실적 부진」, 『예산안 분석 IV』, 2009. 11.

[담 당] 강상규 예산분석관(788-4635)

[개요]

- 환경부 소관 환경개선특별회계 물산업 선진화 및 수출산업화 지원사업
 - 예산안: 25억원(신규)
- 수도사업의 구조개편을 위해 ‘물산업육성 5개년 세부추진계획’에서 제시한 상수도서비스 평가체계구축, 기술고도화 및 연관산업 육성,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신규로 편성

〈2010년도 물산업 선진화 및 수출산업화 지원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2010안
수도용자재 및 제품품질기준 개발 및 인증제도 운영	500
물산업 전문가 양성 및 교육지원	1,000
생태독성 및 위해성평가 전문인력 양성	700
국제 환경규제정책 전문인력 양성	317
합 계	2,517

자료: 환경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 요구(안)」, 2009. 10.

- **정책적 여건:** 물산업 선진화 및 수출산업화 지원사업은 수도사업 구조개편을 위한 재정사업
 - 2007년 환경부는 지방상수도과 광역상수도 이원화에 따른 시설중복 및 과잉투자, 수도물 공급에 있어서 지역간 불균형, 지방상수도사업자의 영세성과 누적적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물산업육성 5개년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수도사업의 전면적 개편을 추진

- 동 계획은 첫째, 기존 행정구역에서 규모의 경제를 반영하는 광역단위로 사업관리방식의 전환, 둘째 기존 지자체나 공기업에 의해 독점적으로 추진되는 상수도사업에 민간참여를 통한 공개경쟁 환경의 조성, 셋째 상수도서비스 평가체계의 구축과 기술고도화 및 연관산업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국제적 경쟁력 확보, 넷째 물산업의 적극적 해외진출 모색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수도사업 구조개편을 위한 재정사업으로 ‘급수체계조정방안구축사업’ 과 ‘지방상수도경영개선사업’ 을 도입하여, 전국을 9개 대권역과 26개 중권역의 수도사업 관리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 통합을 통한 수도사업의 광역화와 관리의 전문화를 추진
- 광역급수체계의 전문적 관리를 위해 지자체간 연계관리, 민간위탁, 공사화 추진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수도사업의 광역화와 전문화를 위한 법·제도적 발판으로 ‘물산업지원법’ 제정을 추진하였음
- 물산업 선진화 및 수출산업화사업은 수도사업 구조개편의 연장선상에서 이 해될 수 있는데, 급수체계조정방안구축사업과 지방상수도경영개선사업을 통하여 수도사업 구조개편을 위한 외형적 여건이 어느 정도 마련되고,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상하수도서비스 국제표준 제정을 계기로 상수도사업의 개방화와 표준화 압력에 대비하여 국내 상수도기술 고도화 및 이를 통한 적극적 해외진출을 의도하고 있음

[현안 검토]

- 물산업 선진화 및 수출산업화사업의 내용을 보면, 법적 근거가 제대로 갖추어 있지 못하고 물산업과 관련성이 없는 세부사업을 포함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요구되는 상황
 - 2007년 ‘물산업육성법’ 의 제정 노력이 있었지만 법제화되지 못하였는데, 금번 물산업 선진화 및 수출산업화 지원사업도 법적 근거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편성
 - 생태독성 및 위해성평가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국내·외 화학물질 규제 강화에 따라 화학물질 생태독성 시험 및 위해성평가 전문 인력을 양

성하는 것이며, 국제 환경규제정책 전문인력 양성사업도 국제환경협상이나 환경규제에 대응하여 국제기구, 기업, 연구소 등에서 활동할 인력을 양성하는 것으로 물산업과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있음

- 수도권 자재 및 제품품질기준 개발 및 인증제도 운영사업과 물산업 전문가 양성 및 교육지원사업만을 세부사업으로 인정하고, 조속히 물산업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자 료] 국회예산정책처, 「물산업 선진화 및 수출산업화 지원사업 신규편상의 제반문제」, 『예산안 분석 IV』, 2009. 11.

[담 당] 강상규 예산분석관(788-4635)

[개 요]

- 환경부 소관 환경개선특별회계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 등
 - 예산안: 132억원(신규사업 포함)
- 저탄소 녹색성장의 구현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저탄소녹색마을 조성사업, 기후변화 시범도시 테마사업,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사업을 추진
 -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은 바이오매스 및 자연력을 자체 에너지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에너지자립을 실현하는 마을을 조성하는 것으로 2010년 사업내용은 1개 마을에 바이오매스 에너지화시설 설치를 위해 15억원을 지원하는 것
 -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 테마사업은 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 시범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후변화 홍보관 및 테마타운,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사업, 폐식용유 연료화사업, 옥상녹화사업, 탄소중립형 도시 기반 구축사업 등에 107억원을 투자할 계획
 -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사업은 온실가스과 환경오염을 줄이고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표본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0년에는 표본도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 10억원을 편성

〈2010년도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시범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2010안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1,500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 테마사업	10,700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사업	1,000
합 계	13,200

자료: 환경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 요구(안)」, 2009. 10.

- **정책적 여건:** 환경분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분야에 걸쳐 정부는 기존 지속가능한 발전을 발전·대체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발전전략을 제시
 - 저탄소 녹색성장은 기존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은 상충된다는 인식을 전환하여 양자는 상호보완적으로 공존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존은 신재생에너지기술, 에너지자원 효율화기술, 환경오염저감기술 등 녹색성장 기술을 통하여 가능하다는 것
 - 저탄소 녹색성장은 녹색기술을 신성장동력으로 하여 경제·산업구조는 물론 삶의 양식을 저탄소·친환경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전략
 - 최근 정부는 녹색성장을 구현하기 위해 녹색뉴딜대책, 신성장동력 종합추진계획,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등을 제시하고 다양한 재정사업을 전개

[현안 검토]

- 비록 시범사업이라고 하지만 사업이 법적 근거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사업간 차별성을 찾기도 쉽지 않는 실정
 - 대부분의 사업이 대체에너지를 활용하는 마을(도시)공동체를 조성한다는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점은 현재 저탄소 녹색성장이 가지는 한계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음
 - 지속가능한 발전이나 녹색성장이나 종국적 목표는 우리 삶을 지탱하는 사회적·물리적 기반의 지속성(sustainability)을 확보하는 것인데, 이를 위협하는 요인을 에너지 문제로만 한정해 놓고 있음
- 시범사업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기본구상 연구가 현재 연구용역과정에 있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정비하고 있지 못하고, 녹색마을이나 녹색도시가 도입하려는 재생에너지나 대체에너지 관련 국내 기술수준이 선진국에 비하여 아직 열악할 뿐만 아니라 이들 기술의 활용에 따르는 비용과 편익에 대한 평가도 부족한 실정

- 각종 폐기물자원화시설과 같은 신재생 또는 대체에너지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는데, 이들 사업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에너지 자립형 마을 조성사업간 대체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미흡한 상태
 - 폐기물 자원화시설 확충을 위하여 2009년부터 자원화시설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 각 지역에서 자립형 에너지타운의 생성은 이러한 자원화시설의 활용도를 저해할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저탄소녹색마을이나 녹색도시 조성사업이 계획하는 대체에너지원은 대부분 생활주변에 있는 유기성폐기물(음식물폐기물, 목재, 볏짚 등)과 같은 바이오매스의 연료화인데, 이러한 연료화시설의 마을 및 도시 입지에 따르는 저항이나 연료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소화여액과 같은 각종 부작용에 대한 대응방안이 미흡한 실정
- 이러한 측면들을 고려할 때, 유사한 시범사업의 전면적 실시보다는 시범사업의 규모를 좀 더 제한적으로 하고, 점진적으로 효과와 부작용을 평가하면서 사업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시범사업의 중복 및 사업계획 미비」, 『예산안 분석 IV』, 2009. 11.

[답 당] 강상규 예산분석관(788-4635)

[개 요]

- 환경부 소관 환경개선특별회계 지하수수질보전대책사업 등
 - 예산안: 436억원(전년본예산 대비 37.7% 증)
 - 토양지하수 오염정화 관련사업은 지하수 수질보전대책을 포함한 9개 사업으로 구성되는데, 특히 5개 반환예정 미군기지와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13개 한국군 시설의 토양오염 실태조사사업인 '군사기지 환경조사 및 위해성 평가 사업'이 2010년 신규로 편성되었음
- 토양오염방지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전국 토양 및 지하수의 오염실태를 조사하여 오염원인자로 하여금 정화하도록 하는 토양지하수 오염정화 관련사업에 전년대비 119억원을 증액 편성
 - 최근 폐금속광산, 산업단지, 군부대 주변 토양 및 지하수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 고조와 이에 따른 토양지하수 정화시장의 급속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술의 취약성으로 인해 해외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키고 있는 형편
 - 이런 실정을 고려하여, 토양환경보전대책사업과 토양오염방지기술개발 사업을 전년대비 각각 3.6%와 12.4% 증액 편성
 - (구)장항제련소 오염토양정화대책사업은 토지매입비로 인해 전년대비 70% 증액 편성

〈2010년도 토양지하수관리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09 (본예산)	2010안	전년대비	
			증가액	증가율
지하수수질보전대책	4,022	3,802	-220	-5.5
토양지하수오염지역정화	700	700	-	-
(구)장항제련소오염토양정화대책	10,000	17,000	7,000	20.0
폐금속광산토양오염실태조사	2,650	2,650	-	-
토양환경보전대책	1,016	1,053	37	3.6
군부대 환경관리협력사업	90	90	-	-
산업단지오염실태조사	2,400	2,160	-240	-10.0
군사기지환경조사 및 위해성평가(신규)	-	4,018	순증	순증
토양오염방지기술개발	10,810	12,149	1,339	12.4
합 계	31,688	43,622	11,934	37.7

자료: 환경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 요구(안)」, 2009. 10.

[현안 검토]

□ ‘토양지하수오염지역정화사업’은 10개 주한 미군기지 공여구역 및 반
 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환경기초조사사업이나, 현행 사업추진체계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주한미군의 오염정화를 담보할
 방안을 가지고 있지 못하여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됨

- 동 사업의 추진체계를 보면, 첫째 환경부가 환경기초 조사지침을 지자체에
 하달하면, 지자체는 환경오염조사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환경부에 제출, 둘
 째, 환경부는 이를 검토한 후 2단계 환경기초조사를 수행하여 치유대책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며 주한미군(오염원인이 공여구역인 경우)
 과 치유협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남
- 동 사업 추진체계의 문제는 지자체와 주한 미군이 오염정화를 추진하
 고, 그 결과를 확인할 방안이 마련되지 못한데 있는데 특히, 주한미군
 의 경우 기지 내부의 환경관리는 자체적 환경기준(Environmental
 Governing Standard)에 따라 추진함으로써 토양환경보전법 상의
 정화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발생하여 환경부와 정화협의 시 갈
 등의 여지가 존재

- 미군기지 내부 오염토양이 국내 기준에 부합하게 정화되지 않을 경우, 기지 외부의 환경오염 정화의 효과성을 담보하는데 문제가 발생
- ‘군사기지 환경조사 및 위해성평가사업’은 캠프롱을 비롯한 5개 반환 예정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조사 및 위해성평가와 상수원보호지역 주변의 13개 한국군시설에 대한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추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비록 환경조사 및 위해성평가를 마치더라도 이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미군과 정화협상을 하여야 하기에 실효성 있는 반환기지의 정화를 담보하기 쉽지 않는 실정
- ‘산업단지오염실태조사사업’의 경우, 산업단지 환경조사는 환경부(환경관리공단)가 수행하고, 산업단지의 정화조치 관리는 지자체의 소관으로 하고 있어, 정화명령에 대한 이행을 담보하는데 어려움이 존재
 - 2004~2008년간 산업단지에 대한 환경조사 결과, 이 지역 토양오염도가 전국 평균치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고, 특히 온산공단의 경우 토양오염 초과율이 15.7% (568개 지점 중 89개 초과)로 나타나고 있음
 - 산업단지오염실태조사 결과, 2004~2008년간 112개 초과업체에 정화명령을 통보하였는데, 정화가 완료된 곳은 42개 업체(37.5%), 정화계획 중이거나 정화중인 곳 22개 업체(19.6%), 미이행이 44개 업체(39.3%) 업체로 나타나고 있어 정화이행을 환경부 차원에서 보다 엄격히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토양오염실태조사사업’의 세부사업 중 신규로 추진되는 폐석면광산 오염실태조사사업의 경우, 토양 내 석면의 오염정도를 판단할 기준과 석면오염 정화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법적 근거도 결여되어 사업의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됨
 - ‘토양오염실태조사사업’은 폐금속광산, 폐석탄광산, 폐석면광산의 토양오염실태 및 광해방지완료사업장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주요 내용으

로 하고 있는데, 특히 석면피해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여 2010년 폐석면광산 주변 토양지하수 오염실태조사에 14억원을 지원할 예정

- 토양지하수오염지역정화와 관련된 대부분의 사업이 사후관리이행을 담보하지 못하는 단순 조사사업에 그칠 수 있어 사업의 성과를 확신할 수 없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예산지원은 이들 사업의 결과로 나오는 정화조치가 실제적으로 추진되어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정화지역에서 환경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고려하여 조정되어야 할 것임

[자 료] 국회예산정책처, 「토양지하수오염정화 관련사업 추진기반 미흡」,
『예산안 분석 IV』, 2009. 11.

[담 당] 강상규 예산분석관(788-4635)

[개요]

- 환경부 소관 4대강 수계관리기금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사업
 - 기금운용계획안: 3,280억원(전년대비 8.7% 증)
 -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사업은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등의 시설설치 및 운영비의 지방비 부담분을 지원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동시에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촉진하여 상수원지역의 수질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
 - 기금의 지원비율은 수계, 규제지역 및 시설별로 차별을 두고 있는데, 시설설치비의 경우 지방비 부담분의 15~95%를 그리고 운영비의 경우 20~97%를 지원
 - 2010년 환경기초시설 설치지원비의 경우 수계기금 전체 지출규모의 21.7%인 1,713억원으로 전년대비 6.2%가 증액 편성되고, 운영비 지원의 경우 기금 전체 지출액의 19.8%인 1,567억원으로 전년대비 12.2%가 증액

〈2010년 주민지원사업 지출계획안〉

(단위: 백만원, %)

		2009 (본예산)	2010안	전년대비	
				증가액	증가율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사업]					
한 강	환경기초시설 설치	81,137	98,834	17,697	21.8
	환경기초시설 운영	78,225	82,136	3,911	5.0
낙동강	환경기초시설 설치	45,669	39,856	-5,813	-12.7
	환경기초시설 운영	44,873	55,969	11,096	24.7
금 강	환경기초시설 설치	30,809	32,101	1,292	4.2
	환경기초시설 운영	13,824	15,617	1,793	13.0
영산강	환경기초시설 설치	3,739	507	-3,232	-86.4
	환경기초시설 운영	2,719	2,958	239	8.8
합 계	환경기초시설 설치	161,354	171,298	9,944	6.2
	환경기초시설 운영	139,641	156,680	17,039	12.2
	소 계	300,995	327,978	26,983	8.7

자료: 환경부, 「2010년도 4대강 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정부안)개요」, 2009. 10.

[현안 검토]

- 4대강 수계관리기금에서 지자체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 규모가 연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과연 지속적 지원이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
 -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polluter pay principle) 또는 사용자부담원칙(user pay principle)에 따라 마련하여야 하나, 현행 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되는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은 이러한 원칙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이는 태생적으로 동 기금이 하류지역 주민들이 부담하는 물이용부담금을 통하여 조성되어, 상류지역 수질개선 사업지원과 수질보전을 위한 규제로 인해 지역민이 받는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는데 이유가 있음

- 이러한 태생적 한계로 실제 수계관리기금에 의한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은, 수질개선이라는 측면보다는 규제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이 강조되어 단순히 지역별 규제정도와 시설별로 차등을 두고 지원되는 실정
 - 이러한 지원방식은 첫째 각각의 환경기초시설 설치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차별화하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 지원을 받는 지자체의 환경기초시설 운영 상태와 수질개선 노력의 정도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음
- 2010년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 지원사업은 각 지자체의 환경기초시설 운영실적 등을 고려 조정이 요구되고, 향후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4대강 수계관리기금의 지원은 수질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방식의 개선이 필요
 - 상수원지역의 특수성과 수계관리기금의 태생적 한계를 고려할 때, 환경기초시설 설치지원을 중단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시설별 지원방향이나 지원비율은 수질개선 효과를 고려 재정립될 필요가 있음
 -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각 지자체의 수질개선 노력정도 및 환경기초시설 운영실적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규모 산출방식에 있어 개선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사용자부담원칙을 충실히 반영하여 사용료로 운영비를 충당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음

[자 료] 국회예산정책처, 「4대강 수계관리기금사업 운영체계의 비효율성」, 『예산안 분석 IV』, 2009. 11.

[답 당] 강상규 예산분석관(788-4635)

VIII. 국방 분야

- 국방부·방위사업청 소관 일반회계 국방비 2010년 예산안: 29조 6,039억원(전년 대비 3.8% 증)
- 국방비는 국방부의 경상운영비(병력운영 + 전력유지)와 방위사업청의 방위력개선비로 구성됨
 - 국방비 중 인건비와 급식·피복비용인 병력운영비는 12조 812억원(1.4% 증), 부대운영, 장비·시설 정비 및 유지, 교육훈련, 보건복지 등의 비용인 전력유지비는 8조 2,751억원(3.3% 증)임
 - 무기획득 및 연구개발 비용인 방위력개선비는 9조 2,476억원(7.3% 증)임

〈국방비 예산안〉

(단위: 억원, %)

		2009	2010안	증감액	증감률
국방부	병력운영(A)	119,096	120,812	1,716	1.4
	전력유지(B)	80,083	82,751	2,668	3.3
	경상운영비 소계(A+B)	199,179	203,563	4,384	2.2
방위사업청	방위력개선(C)	86,147	92,476	6,329	7.3
국방비(A+B+C)		285,5326	296,039	10,713	3.8

주: 특별회계(국방군사시설이전, 주한미군기지이전, 혁신도시건설)와 기금(군인복지, 군인연금)은 미포함.

자료: 국방부, 방위사업청, 2009.10.

-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09 ~ 2013년간 국방분야 재정지출은 연 평균 4.2%의 증가율로 증가하여 2013년에는 33조 7,000억원로 확대됨

〈2009~2013년 국방 분야 재정지출계획〉

(단위: 조원)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28.5	29.6	30.9	32.3	33.7	4.2

자료: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2008 ~ 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연증가율과 비교해보면, 연증가율이 6.9%에서 4.2%로 하향(-2.7%) 조정된 것임

〈국방 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 2008~2012년과 2009~2013년의 연증가율 비교〉

(단위: %)

2008-2012년(A)	2009-2013(B)	증감(B-A)
6.9	4.2	- 2.7

자료: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국방부는 지난 수년간(2004~2010년) 국회의 확정예산보다 연평균 6,153억원이 과다한 중기예산계획을 수립하여 왔음
 - 특히 2010년도에는 국방중기계획과 정부예산안 사이에는 약 1조원 이상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으며, 2004년 ~ 2009년간 국방중기계획과 국회확정안 사이에는 최소 2,445억원에서 최대 1조 371억원이라는 연례적인 국방중기계획의 과다요구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국방비의 연례적인 과다지출 계획은 국방 전 분야에 걸쳐 비정상적인 예산운용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2010년도에는 1조원 이상의 과다 지출계획(예산 부족)으로 전력유지, 병력운영 그리고 방위력개선 전반에 운영 및 사업비 부족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임
- 국가 경제상황과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국방재원은 지속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국가 재정능력을 초과하는 과다한 국방비 증

액보다는 불필요한 국방조직과 군의 업무를 우선적으로 퇴출시켜 국방비와 병력을 절감하는 것이 국방 예산부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접근임

[개요]

□ 국방부·방위사업청 소관 일반회계 국방비 2010년 예산안: 29조 6,039억원(전년 대비 3.8% 증)

- 국방비는 국방부의 경상운영비(병력운영 + 전력유지)와 방위사업청의 방위력개선비로 구성됨

〈국방비 예산안〉

(단위: 억원, %)

		2009	2010안	증감액	증감률
국방부	병력운영(A)	119,096	120,812	1,716	1.4
	전력유지(B)	80,083	82,751	2,668	3.3
	경상운영비 소계(A+B)	199,179	203,563	4,384	2.2
방위사업청	방위력개선 (C)	86,147	92,476	6,329	7.3
국방비(A+B+C)		285,5326	296,039	10,713	3.8

주: 특별회계(국방군사시설이전, 주한미군기지이전, 혁신도시건설)와 기금(군인복지, 군인연금)은 미포함.

자료: 국방부, 방위사업청, 2009.10.

[현안 검토]

1. 국가 재정능력을 초과하는 국방비의 연례적 과다 요구

□ 국방재원의 지속적인 제한성

- 국가 경제상황과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국방재원은 지속적으로 제한될 것으로 전망됨

- 국방분야 2009~2013년 국가재정운영계획의 연증가율이 6.9%(2008~2012년 국가재정운영계획)에서 4.2%로 하향(- 2.7%) 조정되고 있음(일반회계 기준)

- 국방비의 대폭 증액은 국가 재정능력과 재원배분의 우선순위, 현행 국방관리체계의 비효율성, 그리고 국방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고려할 때 상당한 기간 기대하기 어려운 사안임

□ 국가 재정능력을 초과하는 지출계획과 국방비의 연례적 과다 요구

- 국방부는 국가 재정여건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2010년에 정부 예산안보다 약 1조원을 초과하는 국방비를 요구하였고, 지난 2004~2009년에는 국회의 확정예산보다 평균 5,000억원을 초과한 국방중기계획(지출계획)을 수립하며 국가 재정능력을 초과하는 과다한 국방비 요구를 하고 있음
- 국가 재정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국방부의 독자적인 지출계획은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고 연례적인 국방예산의 부족으로 귀결됨

<2010년도 국방비 요구액과 국방중기예산계획 비교>

(단위: 억원)

	국방비	차 이
국방중기예산계획 (A)	306,725	
국방 요구액 (B)	307,817	1,092 (B - A)
정부 편성액 (C)	296,039	- 10,686 (C - A)

□ 국방중기계획의 사전 국회보고 필요

- 국방부는 국방중기(지출) 계획 수립시, 국회(국민과 사회)의 시각이 사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방중기계획을 확정 전에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하여 국방비 지출계획과 국가 재정능력 간의 지나친 차이를 사전에 줄이는 노력이 필요함

- 국회에서 국방중기계획을 사전에 보고받는 절차를 통해 국방분야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사전적으로 확보한다면 국정감사나 국방 예산안 심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임
- 2009년도에 작성하는 국방중기계획은 2011-2015년 계획임

2. 비정상적인 국방예산편성에 따른 연례적인 문제점

- 국방부는 매년 국가 재정능력이 허용하기 어려운 과다한 국방지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단년도 국방예산이 부족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국방 전분야에 비정상적인 예산운영 현상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2004~2010년간 국방중기예산계획이나 단년도 국방비 요구안을 확정예산이나 정부 예산안보다 최소 2,445억원에서 최대 1조 686억원 까지 과다하게 수립·요구하고 있음
- 2010년도의 1조원 이상의 과다 지출계획(예산 부족)으로 전력유지와 병력운영 전반에 운영경비 부족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며, 감시정찰 정보전자전, 연구개발, 함정, 정밀타격 및 신특수무기, 기동전력 프로그램 등 다수의 방위력개선사업들에 보다 적극적인 사업비 절감요구와 지불연기의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과다하게 계획된 국방사업들은 예산확보가 어려워 지연 및 축소되고, 지출이 불가피한 경직성 비용이나 의무(법정)지출 사업의 부족 자금은 타 사업예산의 이용과 전용으로 해결하는 등 비정상적인 국방예산 운영의 현상이 매년 발생되고 있음

〈비정상적인 국방예산편성에 따른 연례적인 문제점〉

	주요 문제점
병력운영 (국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례적인 인건비 부족을 예산의 이전용으로 해결 * 병 급여 증액의 제한 * 피복·급식 향상의 제한
전력유지 (국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원부족으로 생활관·군관사사업 민자(BTL 및 BTO) 차입 * 장비·수리부속 예산부족으로 정비지연, 가동률저하, 사고율 증가 * 시설 개보수 지연으로 시설 노후화 가속 * 부대운영비 부족으로 초급간부들의 개인부담 증가와 군 사기의 저하 * 교육·훈련 비용(연료, 교탄 등) 제한으로 훈련 축소 등 전투준비태세 약화 * 훈련장 부지 및 시설확보 지연으로 실전적 교육훈련 제한 * C4I 및 자원관리체계 등 정보화 체계 유지보수 및 성능개선 미흡으로 업무효율성 저하 및 지휘통제통신 기능 저하 * PC, 주전산기 등 정보화 기기 노후화로 업무효율성 저하 * 장병 의료지원 체계 미비 및 시설노후화 * 우수자원의 장기복무 회피와 총원 어려움 * 위장망/텐트 등 전투력 유지 필수물자 및 행정사무기기, 부대비품 등 부대운영 기본물자 부족 심화 * 공군 전투기조종사들 조기 전역(민항기 시장으로 이동) * 위험수당 증액 제한으로 잠수함 등 기피업무 증가 * 유급지원병 및 부사관 증원에 차질 발생과 전투준비태세의 불안정성 증가 * 예비군 훈련시설 및 환경개선, 훈련지원비 현실화 지연
방위력 개선 (방위 사업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수의 고가 및 거대 첨단무기 사업의 추진으로 다수의 중·소 전력사업들의 사업지연 및 기간 연장 * 해·공군 전력증강과 자주적 군사력 건설 연기 * 전략무기 획득제한 * 국산화보다 조기해외획득 선호로 국방과학기술개발 저조 * 전력증강 사업비 우선 배정으로 연구개발비 증액의 제한 * 감시정찰정보전자전, 연구개발, 정밀무기 및 신특수무기, 함정사업 축소(2010년 예산부족)

□ 국가 재정능력을 초과하는 국방비의 요구 이전에, 불필요한 국방 조직과 군의 임무를 퇴출시켜 예산 낭비적인 요소를 축소하고 국방 예산부족 문제를 완화하려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함

- 예산부족으로 발생하는 국방 전 분야의 문제들을 국방비 규모의 확대
로 해결하려는 단순한 접근보다도, 국방 규모의 축소와 국방경영의 효
율화 그리고 예산운영의 합리화로 해결하려는 선제적인 노력이 더욱
현실적임

3. 불필요한 조직· 업무 퇴출을 위한 국방조직진단체제 필요

- 과도한 국방예산 소요가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는
국방 전역에 불필요한 조직과 업무가 예산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임
 - 기무사령부 방산지원실은 업무폭주로 인력의 증원을 요구하다면서도
고유의 방산보안과 비리발굴 업무 이외 방산제도와 정책 그리고 방위
력개선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업무를 하고 있음
 - 국방대학교는 교육관리의 훈련과 경험이 미흡한 5명의 장성급 현역군
인(중장급 1명, 소장급 1명, 준장급 3명)이 주요한 보직을 점하고 있
고, 각 대학원마다 별도의 교무처를 운영하고 있음
 - 각군은 군수정보화체계가 2008년에 완료되었음에도, 군수전산화에
따른 군수인력의 절감운영 미실시
 - 각 군은 과학화경계화시스템을 주둔지나 공군기지에 설치한 후에도 경
계병력의 축소운영에는 소극적임
- 국방 전역의 불필요한 조직·업무를 지속적으로 퇴출할 수 있는 시스
템 필요
 - 예산과 병력을 절감하여 국방비 소요 급증을 억제할 수 있도록 불필
요한 국방조직과 군의 업무를 퇴출시킬 수 있는 상시적이고 전문적이
며, 이해중립적인 ‘국방 조직진단체계(체도와 조직)’ 를 신설하는 것
이 필요함
 - 현재 국방부 조직관리과에서 비전투부대 조직진단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문성과 업무인원에서 진단역량에 한계가 있음¹⁹⁾

□ 국방 조직진단 결과 및 예산절감 효과의 국회보고 필요

- 국방부는 정부 예산안 제출시 다음 사항을 포함한 ‘연간 국방조직진단 결과보고서’를 국회국방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함
 - ① 불필요한 조직·업무 축소 및 제도개선 현황
 - ② 정원조정 현황
 - ③ 병력절감 및 효율화 효과
 - ④ 예산절감 효과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국방비 총괄분석」, 『2010년도 예산안 분석V』, 2009. 11.

[담당] 문종열 사회예산분석팀장(788-3771)

-
- 19) 조직관리과 21명 중 12명(현역 7명, 공무원 5명)이 비전투부대 조직진단 업무에 투입되고 있으나, 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성 미흡과 업무과중을 겪고 있으며, 현역들은 각 군의 이해관계로부터 초탈하기 어려운 환경임. 현재 국방부는 조직관리과의 조직진단 기능을 부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개요]

- 국방부·방위사업청 소관 일반회계 2010년 외화예산안 3조 5,424억원 (28억 7,997만달러, 1,230원/\$기준)(전년대비 1.3% 감)

〈2010년도 국방 일반회계 외화 예산안〉

(단위: 천\$, 백만원, %)

	2009 (본예산)	2010안	전년대비	
			증가액	증가율
경상운영비(국방부)	\$930,357 (1,023,393)	\$951,010 (1,169,742)	\$20,653 (146,349)	2.2
방위력개선편비(방위사업청)	\$1,986,840 (2,185,524)	\$1,928,964 (2,372,626)	-\$57,876 (187,102)	-2.9
합 계	\$2,917,197 (3,208,917)	\$2,879,974 (3,542,368)	-\$37,223 (333,451)	-1.3

- 주: 1. 정부예산안 편성환율은 2009년 1,100원, 2009년 추경 1,300원, 2010년 1,230원
 2. 경상운영비 = 병력운영 + 전력유지; 2010년 국방부 외화 예산안의 99%는 전력유지비임.
 3. 특별회계(국방군사시설이전, 주한미군기지이전, 혁신도시건설)와 기금(국인복지, 군인연금)은 미포함.

자료: 국방부, 방위사업청, 2009.10.

[현안 검토]

- 2010년도 국방 예산안의 환차익으로 약 1,268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 정부는 2010년 국방 예산안 편성을 1,230원/\$기준으로 하였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2010년도 환율을 1,186원으로 전망함에 따라, 달러 당 44원의 환차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2010년도 국방 예산안 환차이익 전망〉

		외화 예산(만\$)	예상 환차익(억원)
국방부	병력운영	1,132.34	4.98
	전력유지	93,968.62	413.46
	소계	95,100.96	418.44
방사청	방위력개선비	192896.40	848.74
합계		287,997.35	1,267.19

주: 2010년도 예산안 환차익 44원/\$ = 1,230원/\$ (정부) - 1,186원/\$ (국회 예산정책처)

□ 예상 환차익 1,268억원을 고려하면 국방 예산안을 조정할 필요

- 국방부 환차익: 약 418억원
- 방위사업청 환차익: 약 849억원

[자 료] 국회예산정책처, 「환차익으로 국방 여유예산 1,268억원 발생」, 『2010년도 예산안 분석V』, 2009. 11.

[담 당] 문중열 사회예산분석팀장(788-3771)

[개요]

- 방위사업청·국방부 소관 일반회계 사이버방호사령부창설사업 2010년 예산안: 31억 3,900만원(신규사업)
 - 이 중 30억 5,900만원은 건물신축을 위한 기본조사, 시스템개발, 편제장비임차 비용으로 방위사업청의 방위력개선비에 편성되었고, 8,000만원은 피복·급식 등 경상운영비로서 기무사령부에 편성됨
 - 국방 정보관련 3개 기관의 사이버전 관련 기능과 업무를 사이버방호사령부로 통합함

〈사이버방호사령부창설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2009 (본예산)	2010안	전년대비	
			증가액	증가율
방위사업청	-	3,059	3,059	순증
기무사령부	-	80	80	순증
합계	-	3,139	3,139	순증

자료: 국방부, 방위사업청, 2009.10.

- 사업 2년 조기시행
 - 사이버방호사령부창설사업은 본래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2012년부터 추진하도록 예정되었으나, 국가 사이버 역량 강화를 통한 사이버전 위협을 조기에 대비하기 위해 2년을 앞당겨 2010년도에 시행하려 함

[현안 검토]

□ 사업계획 및 법적근거 미비

- 사령부를 기무사 예하조직으로 두는 것을 전제로 편성되어 있으나, 현재 합참에서 사이버사령부 안을 새로이 기획하고 있으므로 2010년 사이버방호사령부창설사업 예산안은 사업계획 미비에 해당됨
- 동시에 사령부 설치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비하므로 동 예산안은 법적근거 미비에 해당됨
-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 정부가 그 사업계획 및 내역을 변경하는 것은 현행 제도상 수정예산안 제출의 경우만 허용됨

□ 사령부 건물신축의 타당성 검토필요

- 기무사령부의 사이버방호사령부안은 정보관련 3개 기관의 사이버전 관련 기능과 업무를 한 장소에서 통합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장소에 건물의 신축이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장소와 거리를 초월하는 네트워크 중심의 사이버 업무특성을 고려하고 사이버운영의 비밀성과 은밀성을 고려할 때, 사이버전의 기능과 업무를 1개의 고정된 장소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혹은 위험성은 없는지를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동시에 국방예산의 절약 차원에서 큰 비용소요가 큰 건물의 신축은 가능한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사이버방호사령부창설사업 예산안 전액 조정 필요

- 동 예산안은 사업계획 미비, 사업의 법적 근거 미비 그리고 예산소요가 많은 사령부 건물신축의 타당성이 검토될 필요가 있으므로, 예산안 31억 3,900만원 전액을 조정할 수 있음

[자 료] 국회예산정책처, 「사이버방호사령부창설사업의 계획 및 법적근거 미비」, 『2010년도 예산안 분석V』, 2009. 11.

[담 당] 문종열 사회예산분석팀장(788-3771)

[개요]

- 국방부 소관 일반회계 국방대학교 2010년 예산안: 237억 2,200만원(전년대비 1.9% 감)
 - 국방대학교 예산안에는 현역 군인(장교, 부사관, 병)의 인건비는 각 군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국방대학교 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09 (본예산)	2010안	전년대비	
		증가액	증가율
24,203	23,722	-481	-1.9

주: 국방대학교를 정책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국방부의 부서는 ‘교육훈련정책과’임.
 자료: 국방부, 2009.10.

- 국방대학교 논산으로 이전
 - 국토해양부의 ‘국방대학교 이전사업 예산’이 있는데, 서울 수색에서 충남 논산으로 이전하는 계획으로서 2009~2012년간 총사업비 2,582억원이 국토해양부의 사업비로 계획되어 있음
 - 현재 논산의 부지선정이 지연되어, 2009년 145억원은 차기 연도로 이월될 예정이고, 2010년도 이전 예산안은 921억원이 편성되어 있음

[현안 검토]

□ 조직 비대와 병력 과다운영

- 학생수 연간 2,800명인 순수 비전투기관인 국방대학교에 장군이 5명 (중장급 1명, 소장급 1명, 준장급 3명) 있고, 행정관리 현역장교가 111명 그리고 부사관 및 병이 128명이나 근무하지만 특정직(일반) 교수는 26명 불과함

〈국방대학교 인력 현황〉

(단위: 명)

교수 (전임직 61명)			장 교	군무원	부사관/병	합계
특정직 (일반교수)	군(현역)	군무원				
26	32	3	111	182	128	482명

주: 현황은 '현재 인원'임.

자료: 국방대학교, 2009.10.

□ 교육 및 연구 관리역량의 비전문성

- 국방대학교의 대부분 기관들은 교육 및 연구관리의 전문성에서 민간의 일반 대학교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경험과 경력이 풍부하다고 보기 어려운 현역의 고급장교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 유사중복 행정조직과 예산낭비

- 국방대학교의 5개 기관은 각각 교무업무 부서를 두며 총 62명을 투입하고 있는데, 국방분야에 특화된 단순 대학교로서는 과도한 인력운용 현상이고 유사·중복조직의 운용임

□ 현역간부들은 가능한 전투임무에 전환배치 필요

- 현역 간부인원이 지속적으로 부족하므로, 교육 및 연구의 전문성이 높은 우수 인원을 제외한 국방대학교의 현역 간부(장교, 부사관, 군무

원)들은 최대한 전투임무로 전환·배치하여 조직의 적정화와 병력운영의 효율화가 필요함

□ 국방대학교를 국방부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

- 인사와 조직 및 대학경영의 자율권이 보장되어 특성화와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국방대학교를 국방부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국방대학교의 선진화 필요성」, 『2010년도 예산안 분석V』, 2009. 11.

[담당] 문종열 사회예산분석팀장(788-3771)

[개 요]

- 국방부 소관 일반회계 기무사령부 방산지원실 경상운영비 2010년 예산안: 6,390만 5,000원(전년대비 0.3% 감)
 - 방산지원실은 기무사령부 내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보안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방산지원실 정보활동예산(비공개)은 국가정보원이, 경상운영비는 국방부가 편성·감독함

〈기무사령부 방산지원실 경상운영비 예산안〉

(단위: 천원, %)

2009 (본예산)	2010안	전년대비	
		증가액	증가율
64,104	63,905	-199	-0.3

자료: 기무사령부, 2009.10.

[현안 검토]

- 기무사령부 방산지원실의 방위력개선사업 분석·평가업무는 법적근거 미흡
 - 방산지원실에서 방산보안 업무 이외 방위사업청의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한 정책 및 제도평가, 사업집행점검, 사업성과 분석업무 등을 수행하고 기무사령부의 의견과 정보를 방위사업청의 정책결정 라인에 비공식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 기무사령부는 동 업무의 법적근거로 「국군기무사령부령」, 「기무사령부 사무분장/운영규정」을 제시하며 방산보안과 부정비리 발굴을 위한 첩보수집의 일환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동 업무의 정확한 법적 근거로 보기는 어려움
- 또한 “동 업무에 대한 정확한 법적 근거는 3급 비밀이기 때문에 제시하기 어렵다” 함

□ 방위사업청의 분석평가업무와 유사중복됨

-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정책·제도 평가, 집행점검, 성과분석 업무들은 방위사업청의 감사조직, 각 국 및 관리본부 사업부서, 특히 분석시험평가국 등에서 공식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기무사령부방위력개선사업 분석·평가 및 관련 비공식적 정보제공 업무는 법적 업무영역을 넘어 불필요하게 확대된 부적절한 업무이고 방위사업청의 공식적 업무와 유사·중복적이므로, 동 업무를 재검토하고 2010년도 관련 경상운영 및 정보활동 예산안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기무사령부 ‘방산지원실’의 직제 명칭이 부적절한 업무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명칭을 ‘방산보안실’ 등으로 변경하여 업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제한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자 료] 국회예산정책처, 「기무사령부 방위력개선사업 분석업무의 문제점」, 『2010년도 예산안 분석V』, 2009. 11.

[담 당] 문종열 사회예산분석팀장(788-3771)

[개요]

- 방위사업청 소관 일반회계 방위력개선비 2010년 예산안: 9조 2,476억원(전년 대비 7.3% 증)

〈방위력개선비 예산안〉

(단위: 억원, %)

2009 (본예산)	2010안	전년대비	
		증가액	증가율
86,147	92,476	6,329	7.3

자료: 방위사업청, 2009.10.

- 동 예산안은 경제상황과 재정여건을 감안한 정부의 증가율 하향 조정(전년 대비 11.6%→7.3%)으로 방위사업청 요구액 대비 3,600억원이 하향 조정된 규모임
 - 국가 경제여건의 악화로 불가피하게 감액·조정된 방위력개선 사업은 56개 사업의 약 4,000억원이며, 평균 감액 규모는 약 70억원 그리고 방위사업청 요구 대비 평균 감액비율은 30% 수준임

〈국가 재정여건으로 감액 조정된 방위력개선 사업현황〉

(단위: 백만원, %)

조정 사업수	감액 합계	감액 평균	감액비율 평균
56	-398,808	-7,122	-29.7

자료: 방위사업청, 2009.10.

[현안 검토]

- 감시정찰정보전자전, 연구개발, 정밀타격·신틱수무기사업 예산 축소편성은 국방개혁 방향과 배치됨
 - 방위력개선비가 요구 대비 3,678억원이 감액된 9조 2,476억원(전년 대비 7.3%)으로 축소 편성됨에 따라 가장 크게 감액 조정된 영역은 감시정찰정보전자전과 연구개발, 정밀타격·신틱수무기 그리고 함정 프로그램임

〈국가 재정여건으로 조정된 방위력개선 프로그램〉

大 감액	① 감시정찰정보전자전사업 ② 국방 연구개발사업 ③ 정밀타격·신틱수무기 ④ 함정사업
小 감액	① 지휘통제통신사업 ② 화력탄약

- 이러한 2010년도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안의 편성은 감시·정찰·정밀타격·요격 능력을 우선적으로 확충한다는 국방개혁 2020 조정안의 방향과 배치됨
- 2010년도 방위력개선비 예산안 편성은 자주적인 첨단 군사력 건설과 방위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해 국방연구개발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방위사업청의 성과관리 전략목표와도 거리가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국방비 총괄분석」, 『2010년도 예산안 분석V』, 2009. 11.

[담당] 문종열 사회예산분석팀장(788-3771)

[개 요]

- 방위사업청 소관 일반회계 방위력개선비 2010년 예산안: 9조 2,476억원(전년 대비 7.3% 증)

〈방위력개선비 예산안〉

(단위: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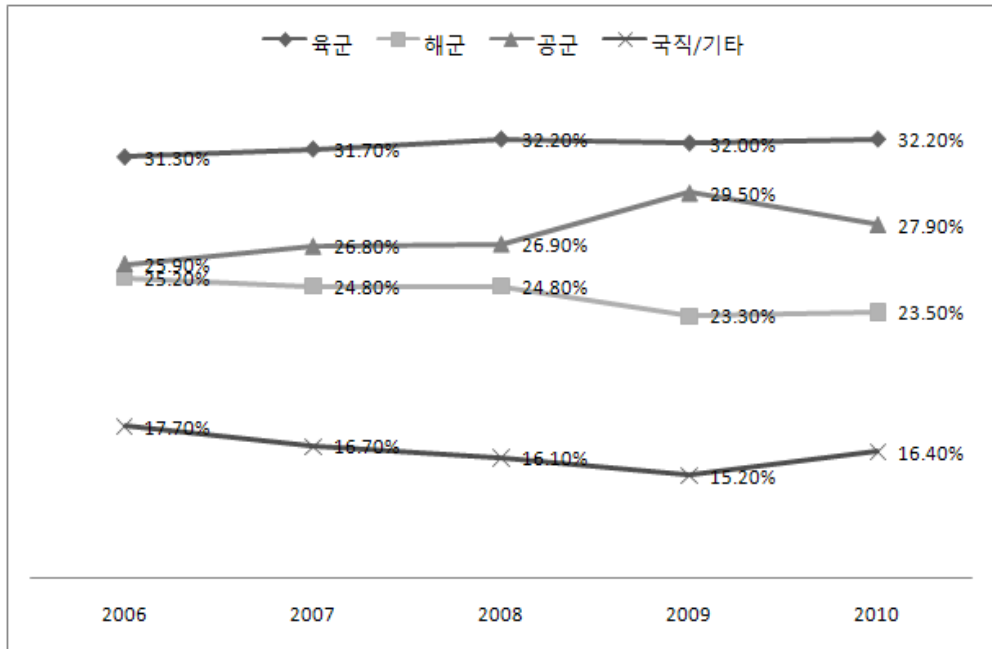
2009 (본예산)	2010안	전년대비	
		증가액	증가율
86,147	92,476	6,329	7.3

자료: 방위사업청, 2009.10.

[현안 검토]

- 지난 5년간(2006-2010년) 방위력개선비의 해군 군사력 건설 투자비율이 감소함.
 - 2006-2010년간 육군과 공군전력 증강을 위한 방위력개선비의 편성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해군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2010년 미미한 증가 제외).
 - 2010년 공군 전력 투자비 감소: 29.5%(2009년) → 27.9%(2010년, 1.6% 감)

〈2006~2010년 군별 방위력개선비 비율의 추세〉



- 방위력개선비 중 해상전력 투자비율이 감소하는 것이 국방개혁의 방향과 일치하는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방위력개선 사업비는 국방중기계획에 근거하여 편성되므로, 지난 5년간 방위력개선비 군별 편성비율의 추세가 국방개혁의 방향성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09년도에는 2011년-2015년 국방중기계획을 작성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방위력개선비의 외화지출 축소노력 미흡」, 『2010년도 예산안 분석V』, 2009. 11.

[담당] 문종열 사회예산분석팀장(788-3771)

[개 요]

- 방위사업청 소관 일반회계 방위력개선 10대 해외획득사업 2010년 예산안: 2조 5,202억원(전년 대비 75.7% 증)

〈2010년도 10대 외화지출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안(합계)〉

(단위: 억원, %)

2009 (분예산)	2010안	전년대비	
		증가액	증가율
23,428.58	25,201.85	1,773.27	75.7

자료: 방위사업청, 2009.10.

- 10대사업의 예산안 중 외자 예산안 합계는 2조 989억원 (17.06억\$) 인데, 이것은 2010년도 방위력개선비 전체 외자예산안의 88%임
- 10대 사업은 ① F-15K 2차(전투기), ② 장보고-II(잠수함), ③ 차기유도무기(SAM-X), ④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 ⑤ 광개토-III급(전투함), ⑥ 함대공유도탄(SM-II급), ⑦ 탄도유도탄조기경보레이더, ⑧ 전자전훈련장비, ⑨ F-16전투기성능개량, 그리고 ⑩ 레이저유도폭탄(GBU-24급) 사업임

〈2010년도 10대 해외사업 외자 비율〉

(단위: 억원)

	방위력개선비(A)	외자(B)	10대사업 외자 (C)
규모	92,476	23,726	20,989
비율		26% (B/A)	88% (C/B)

주: B = 1,928,963,954\$ × 1,230원

자료: 방위사업청, 2009.10.

[현안 검토]

- 소규모 해외지불 연기로 방위력개선비의 외화지출 축소가 가능함
 - 경제여건이 어렵고 국방비가 부족하므로, 소규모의 외화를 무이자로 지불연기함으로써 약 34~69억원의 환차익과 1,000~2,000억원의 해외지출을 줄일 수 있음
 - 무이자 지불연기는 국내 방산업계에 일어나는 관행적인 현상이고,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사업의 경우 이미 20% 지불연기 동의를 받음
- 외자 예산안의 5-10% 조정할 경우, ① F-15K 2차 299 - 597억원, ② 장보고-II 268 - 535억원, ③ 차기유도무기 182 - 365억원, ⑤ 광개토-III급 61 - 121억원, ⑥ 함대공유도탄 53 - 105억원, ⑦ 탄도유도탄조기경보레이더 35 - 69억원, ⑧ 전자전훈련장비 27 - 54억원, ⑨ F-16전투기성능개량 19 - 38억원, 그리고 ⑩ 레이저유도폭탄 15 - 30억원 감액 조정이 가능함 (단 ④순위인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사업은 이미 50% 감액 편성되었으므로 제외)

〈2010년도 10대 해외획득사업 예산안 조정 현황〉

(단위: 억원)

	외자 예산안	조정 감액(5~10%)
F-15K 2차	5,971.18	299 ~ 597
장보고-II급	5,351.33	268 ~ 535
차기유도무기 (SAM-X)	3,648.21	182 ~ 365
공중조기경보 통제기(E-X)	이미 외자예산안 50% 감액(제외)	
광개토-III급	1,210.77	61 ~ 121
함대공유도탄 (SM-II급)	1,053.24	53 ~ 105
탄도유도탄 조기경보레이더	692.47	35 ~ 69
전자전훈련장비	535.49	27 ~ 54
F-16전투기 성능개량	375.38	19 ~ 38
레이저유도폭탄 (GBU-24급)	294.50	15 ~ 30
합 계	19,132.57	약 957~1,913

주: 외자 예산안 조정액은 정부예산안 환율인 1,230원/\$을 적용한 것임. NABO 예상환율 1,186원/\$을 적용할 경우 조정감액 합계는 922~1,845억원으로 줄어드는데, 그것은 계산의 모수가 달라이기 때문임.

- 개별 사업의 상황에 따라 10% 이상 혹은 5% 이하로 탄력적으로 금액을 조정함으로써 외자예산의 축소에 따른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국가 경제상황이 호전되는 것에 맞추어 연기된 외화지불을 정상화할 수 있음²⁰⁾

[자 료] 국회예산정책처, 「방위력개선비의 외화지출 축소노력 미흡」, 『2010년도 예산안 분석V』, 2009. 11.

[담 당] 문종열 사회예산분석팀장(788-3771)

20) 방위력개선사업은 장기계속사업으로서 계약기간, 생산일정, 연도별·월별 납품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금지불 시기가 계약서상에 명시되므로 지불시기 조정을 위해서는 수정계약이 필요함.

[개 요]

- 방위사업청 소관 일반회계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사업 2010년 예산안: 2,329억 400만원(전년 대비 23.6% 감)
 -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사업은 북한 및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활동을 감시, 탐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독자적인 조기경보 및 공중통제능력을 구비하는 사업으로, 미국 보잉사에서 구매하여 공중조기경보통제기 0대²¹⁾와 통제기에 대한 지상지원체계 0조를 공군에 전력화하는 사업

〈공중조기경보통제기사업 예산안〉

(단위: 억원, %)

2009 (본예산)	2010안	전년대비	
		증가액	증가율
3,049.63	2,329.04	-720.59	-23.6

자료: 방위사업청, 2009.10.

- E-X사업 2010년도 외화지불금(해외지불금)의 50% 축소 편성
 - 기획재정부는 2010년도 해외지불을 위한 외자예산(2.83억\$)의 50%(1.415억\$, 1,738억원, 1,230원/\$ 기준)만 편성함

21) 전력화 대수는 군사비밀 사항이므로 '0'으로 표시함.

[현안 검토]

- 2010년도 E-X사업 외자지출금의 50% 하향 편성은 지나친 축소로서, 得보다 失이 많은 예산안 편성임
 - 방위력개선비의 해외지출을 줄이고, 환차익이라는 부수적 이득을 위해 방위사업청의 많은 외자사업 중 단지 E-X 1개 사업만의 해외지불금을 50% 축소 편성하는 것은 E-X사업추진에 과다한 애로사항을 발생시켜 사업지연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접근임

〈E-X사업 외자 50% 지불연기에 따른 편익과 비용〉

이익(편익)	손해(비용)
① 1.415억\$(1,738억원) 외화지출 감소 ② 환차익 약 40-180억원(예상)	① 지불지연 이자 92억원 발생 ② 국가 신뢰도 훼손 ③ 국내업체의 약 521억원의 절충교역량에 부정적인 영향 ④ 2011년 외화지불금액 4,800억원에서 6,500억원으로 증가 ⑤ E-X 전력화 지연 가능성과 이에 따른 경제적 및 군사적 손실

- 위험분산 및 고통분담 차원에서, 단일사업(E-X) 외자의 50% 축소보다 다수의 해외획득사업의 외자지출을 소규모(약 5~10%)로 축소(해외지불 연기)하는 방안이 합리적임
- 동 예산안에 대한 증액이 어려울 경우, 방위력개선사업의 2010년도 환차익과 집행잔액을 E-X사업 외화 지불금의 부족분에 우선 충당할 수 있음

[자 료] 국회예산정책처, 「조기경보통제기사업 외자예산 50% 축소의 위험성」, 『2010년도 예산안 분석V』, 2009. 11.

[담 당] 문종열 사회예산분석팀장(788-3771)

[개 요]

- 방위사업청 소관 일반회계 GOP과학화경제시스템사업 2010년 예산안: 5억 4,400만원(신규사업)
 - 사업기간은 2010~2012년이고, 총 사업비는 67억 3,300만원이며, 연구개발로 추진
 - 과학화경제시스템이란 민간의 방범시스템과 유사한 군용 경계시스템임.
 - 동 연구개발 사업은 2006~2009년 시범사업으로 실시된 GOP과학화경제시스템 사업의 후속사업임

〈GOP과학화경제시스템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2009 (본예산)	2010안	전년대비	
		증가액	증가율
-	544	544	순증

자료: 방위사업청, 2009.10.

- GOP, 탄약창, 주둔지, 공군기지 등 국방 전역에서 과학화경제시스템 사업이 추진됨
 - 과학화경제시스템사업은 2009년 현재 4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1개는 방위사업청의 방위력개선사업으로, 3개는 국방부의 전력유지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들 사업들은 2009년에 종료 및 2010년에 일시 중단되었다가 2011년에 재개됨

〈연도별 국방 과학화경계시스템 사업〉

	2009	2010	2011년 이후
방위 사업청	GOP과학화경계시스템 (시범사업, 2006~2009)	GOP과학화경계시스템 (연구개발, 2010~2012)	GOP과학화경계시스템 (연구개발) + 13개 사단 GOP 철책선 전력화
국방부	탄약창과학화경계 시스템(2008~2009) 공군기지과학화경계 시스템(2008~2009) 주둔지과학화경계 시스템(2005~2009)	2011~2015년 중기계획 검토중(일시 중단)	84개부대(육군 8, 해군 24, 공군 52) 전력화: 1,851억원 소요예상

주: 탄약창 및 공군기지과학화경계시스템사업은 2008년 단년도 사업이나, 이월에 의해 2009년까지 추진됨.

자료: 국방부, 방사청, 2009.10.

[현안 검토]

□ 과학화경계시스템사업들의 중복투자와 사업관리의 비효율성

- 국방 과학화경계시스템 4개 사업(GOP, 탄약창, 공군기지, 주둔지 과학화경계시스템)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들 사업은 설치장소와 요구성능이 다소 다를 뿐 거의 유사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2개 부서와 방위사업청으로 분산관리되고, 사업방식은 구매와 연구개발 등으로 다르며, 예산과목도 각각 다름에 따라, 공통적으로 개발 및 구매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중복지출이 발생하고 사업관리의 비효율성이 누적되어 국방예산이 낭비될 수 있음

□ 급증하는 수요를 대비한 경계시스템 표준화와 통합 사업관리체계 필요

- GOP철책선 이외 향후 국방 전역에 걸쳐 급증하는 육·해·공군 부대의 경계과학화 수요를 감안하면 경계시스템의 공통기술과 체계에 차등적인 요구성능(A급, B급, C급)을 첨가하는 표준화 방식이 경제적이며, 따라서 국방예산의 효율화를 위해 4개 과학화경계시스템사업들에 대한 통합관리가 필요함

[자 료] 국회예산정책처, 「과학화경계시스템사업 분산관리의 예산낭비성」, 『2010년도 예산안 분석V』, 2009. 11.

[담 당] 문종열 사회예산분석팀장(788-3771)

[개 요]

- 방위사업청 소관 일반회계 대대급C4I사업 2010년 예산안: 4억 3,400만원(신규사업)
 - 대대급 C4I²²⁾(전투지휘체계)사업은 컴퓨터 네트워크 체계인 지상전술C4I체계를 대대 - 소대까지 확대하는 사업으로서, 대대급이하 제대의 전장상황인식 및 지휘통제 보장을 위한 전투지휘체계를 연구개발하여 000조를 전력화하는 사업임
 - 동 사업기간은 2010~2014년(5년간)이며, 총사업비는 266억 7,600만원임

〈대대급 C4I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2009 (본예산)	2010안	전년대비	
		증가액	증가율
-	434	434	순증

자료: 방위사업청, 2009.10.

- 군단급C4I 2차성능개량사업과 대대급C4I체계개발사업이 2010년 동시에 출발하고 있음

22) C4I란 지휘(Command), 통제(Control), 통신(Communication), 컴퓨터(Computer), 그리고 정보(Intelligence)의 영문 머리 글자로서 지휘통제통신전산정보체계라고 부름.

<육군 지상전술C4I 체계개발과 성능개량>



[현안 검토]

- 대대급C4I사업 2010년 개시는 예산낭비의 가능성이 있음
 - C4I체계는 컴퓨터 SW와 HW 그리고 네트워크망으로 구성된 컴퓨터 네트워크 전투지휘체계이므로, 체계의 성능개량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첨단 군사정보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 영역임
 - 군단급C4I체계 1차 성능개량이 2006년 8월, 2차 성능개량이 2010년 추진되고 있음
 - 대대급C4I사업은 군단급 C4I사업과 연동된 하위 네트워크체계이므로, 군단급 C4I의 경우와 같이 개발이 완료됨과 동시에 곧 바로 1차 성능개량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음
- 대대급C4I사업 1~2년 후 추진이 타당
 - 군단급C4I 2차성능개량과 대대급C4I체계개발의 2010년 동시출발은 지속적인 성능개량으로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으므로, 대대급C4I사업은 군단급C4I체계 2차성능개량사업과 1~2년 격차를 두며 점진적으로 출발하는 것이 효율적임
 - 2010년도 대대급C4I사업의 예산안 4억 3,700만원은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자 료] 국회예산정책처, 「대대급 C4I사업 시기상조」, 『2010년도 예산안 분석V』, 2009. 11.

[담 당] 문종열 사회예산분석팀장(788-3771)

[개 요]

- 방위사업청 소관 일반회계 비살상지향성음향무기에관한연구사업
2010년 예산안: 1억 3,200만원(전년 대비 44% 감)
 - 2010년도 음향무기개발과 관련된 사업은 ‘비살상 지향성 음향무기에 관한연구’ 1개 사업이 있으며, 2010년도 예산안은 사업종료로 인한 잔여집행액임
 - 동 사업의 총사업비는 4억 7,000만원, 사업기간은 2008.9~2010.7, 수행기관은 국방과학연구소(ADD)
 - 동 사업의 내용은 높은 출력과 지향성을 얻을 수 있는 초 지향성 음파 발생장치 개발(기초 연구)임

〈음향무기 관련 사업 2010년도 예산안〉

(단위: 억원, %)

	2009 (본예산)	2010안	전년대비	
			증가액	증가율
비살상 지향성 음향무기에 관한 연구	2.35	1.32	- 1.03	- 44

자료: 방위사업청, 2009.10.

□ 음향무기란?

- 음향무기 일명 소리총 이란 탄알이나 폭탄 대신 음파를 사용하는 군사무기로서, 음파의 지향성 및 비지향성 특성을 적절히 활용하여 개인 및 지역방어를 위한 병사 휴대형, 지상 고정형, 차량 탑재형, 헬기 탑재형 등으로 운용하고, 외륜 음파의 경우 수중환경에서의 운용까지 가능함

〈휴대방법에 따른 소리총의 형태〉



개인휴대형

차량탑재형

지상고정형

자료: 김도수, 「이렇게 준비하면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 2009, 53쪽.

[현안 검토]

□ 한반도 전장의 특수성에 부합된 무기

- 한반도에서의 대량살상과 전국토의 파괴를 초래하는 대대적인 전쟁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의 동북아 혹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국가의 총역량을 투입하는 장기간의 전면전보다는 단기간의 국지전 양상이 될 가능성이 크며, 비록 단기간의 국지전일지라도 도시화와 인구집중 현상으로 단기간에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므로 고출력의 소리를 적에게 발사하여 일정 작전지역의 적 인원으로 하여금 두통, 질식, 충격, 감각기관 기능의 저하 등 육체적 또는 심리적 영향을 주어 활동을 무력화시키는 무기체계인 음향무기는 산악지역이 많은 한반도 전장의 특수성에 다양한 용도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비대칭 무기가 될 수 있음

□ 음향무기는 군사전략·전술적 가치와 경제성이 높음

- 음향무기체계는 고출력의 음향 에너지를 이용하여 육체적 또는 심리적 충격을 주어 활동을 무력화시키는 무기체계로서, 산악지역이 많은 한반

도 전장의 특수성에 다양한 용도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으며, 민간의 활용 용도도 넓어서 경제성이 뛰어나

□ 음향무기 개발에 대한 군과 방위사업청의 무관심

- 음향무기는 시장잠재력과 군사전술적 효과가 큰 비살상 및 비대칭의 첨단전술무기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군사기술 기획과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방위사업청과 무기 소요를 제기하는 군은 이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음

□ 합참의 하향식 소요제기 시급

- 합참은 음향무기체계에 대한 소요기획을 통해 각 군에 하향식 전력소요제기를 할 필요가 있음
- 방위사업청은 음향무기 관련 민·군겸용기술개발의 과제를 개발하고, 상용기술을 활용하여 개발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음향무기 관련 연구개발에 신개념 기술시범제도(ACTD)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자 료] 국회예산정책처, 「음향무기(소리총)개발의 필요성」, 『2010년도 예산안 분석V』, 2009. 11.

[담 당] 문종열 사회예산분석팀장(788-3771)

IX. 외교 · 통일 분야

- 2010년도 외교·통일분야 예산안은 전년대비 14.7%인 4,353억원 증액된 3조 3,964억원
 - 외교통상 부문 예산안은 2조 1,006억원으로 전년대비 23.6%인 4,006억원 증액
 - 통일 부문 예산안은 1조 2,958억원으로 전년대비 2.8%인 347억원 증액
 - 2010년도 증액분(4,353억원) 중 외교통상 부분의 증액이 92.0%(4,006억원), 통일부분의 증액은 8.0%(347억원)
-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외교·통일 분야 투자계획은 연평균 3.6%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외교통상 부문이 연평균 5.3% 증가, 통일 부문이 연평균 1.2% 증가
 - 2009~2013년의 기간에 연평균 증가율은 3.6%이지만 이는 대부분 2010년의 증가율에 기인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외교·통일 분야 투자계획〉

(단위: 억원, %)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외교·통일 분야	29,611	33,964	33,963	34,064	34,161	3.6
○외교통상	17,000	21,006	20,874	20,908	20,917	5.3
○통일	12,611	12,958	13,089	13,156	13,244	1.2

자료: 기획재정부,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 2009.10

- 총지출 대비 외교·통일 분야의 지출비중 : 2009년 0.99%, 2010년 1.17%, 2011년 1.11%, 2012년 1.06%, 2013년 1.01%
- 외교·통일 분야의 지출비중은 2010년까지는 증가하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
- 2010년 이후 총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외교·통일 분야의 투자액은 제자리 수준에 머무르게 되기 때문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외교·통일 분야 투자계획 비중〉

(단위: 조원, %)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총지출	301.8	291.8	306.6	322.0	335.3	4.2
외교·통일 분야	3.0	3.4	3.4	3.4	3.4	3.6
비중	0.99	1.17	1.11	1.06	1.01	-

주: 2009년도 총지출은 추경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 2009.10

- 외교통상 부문에서는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임
- 2008년 기준 GNI 대비 0.09% 수준(잠정치)인 공여규모를 2012년 0.15%, 2015년 0.25%까지 확대
- 공적개발원조 규모는 2009년 1.1조원에서 2013년 2.5조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임
- 외교통상부는 2010년도에는 한국국제협력단에 대한 출연금을 2009년도(3,172억원) 대비 21.7%(688억원) 증액된 3,860억원으로 편성

- 통일 부문에서는 남북 상생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비핵·개방·3000구상」의 이행을 준비하고 개성공단사업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할 계획임
 -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예산안 17% 증액(2009년 1,237억원 → 2010년 1,448억원)
 - 개성공단조성 사업의 예산안 32.2% 증액(2009년 656억원 → 2010년 867억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NABO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2009. 11.

[담당] 김민재 예산분석관(788-4642)

[개 요]

- 외교통상부 소관 일반회계 2010년도 외화 예산안 : 7억 1,310만 달러
(원화 환산금액 8,771억 1,300만원)
 - 총 외화예산안 중 59%인 4억 2,094만 달러는 본부, 41%인 2억 9,216만 달러는 재외공관 예산안

〈외교통상부 2010년도 외화 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09 (추경예산)	2010안	전년대비	
			증가액	증가율
인건비	79,482	74,182	-5,300	-6.7
기본경비	158,441	190,179	31,738	20.0
주요사업비	239,352	422,811	183,458	76.6
보전지출사업비	19,270	25,926	6,656	34.5
합계	496,546	713,098	216,552	43.6

자료: 외교통상부, 2009. 10.

[현안 검토]

- 환율 하락 기조가 유지될 경우 환차익 발생 예상
 - 2010년도 예산안 편성 기준환율은 달러 당 1,230원인데, 2009년 11월 11일 현재 환율은 1,158원
 - 현재수준의 환율이 지속될 경우 환차익 발생이 예상되며, 환율 하락기조가 지속된다면 환차익 규모가 더 커질 수 있음

- 국회예산정책처의 2010년도 예상환율 1,186억원을 적용할 경우, 약 314억원의 환차익 발생 전망

- 총 외화예산안 7억 1,310만 달러 × 44원 = 313억 7,600만원

□ 최근 5년간(2005~2009) 환차손익 발생 및 처리 현황

- 환차익 발생 현황 : 2005년 486억원, 2006년 139억원, 2007년 69억원 발생
- 환차손 발생 현황 : 2008년 685억원, 2009년 9월 말 까지 854억원 발생
- 환차익 처리 현황 : 2005년 26% 반납·74% 자체 사용, 2006년 41% 반납·59% 자체 사용, 2007년 61% 반납·39% 자체 사용
- 환차손 처리현황 : 2008년 53%는 예비비 및 이·전용으로 보전, 47%는 사업축소 또는 절감, 2009년 추경 편성 및 예비비 보전 협의 중

〈최근 5년간 외교통상부 환차손익 발생현황 : 2005~2009〉

(단위: 원/달러, 억원, %)

	예산편성 기준환율	집행 평균환율	환차손익 발생액	처리현황	
				A	B
2005	1,150	1,030	486	127(26.1)	359(73.9)
2006	1,000	964	139	57(41.0)	82(59.0)
2007	950	935	69	42(60.9)	27(39.1)
2008	920	1,061	-685	364(53.1)	321(46.9)
2009	-본예산: 1,100 -추경: 1,300	1,313 (9월말기준)	-854 (9월말기준)	예비비 보전 협의중	

주: 1. 환차익의 경우 A- '국고 반납', B- '자체 사용'

2. 환차손의 경우 A- '예비비, 이·전용 등으로 보전', B- '사업축소, 절감 등 자체해결'

자료: 외교통상부, 2009.10

[자 료] 국회예산정책처, 「외교통상부 외화예산의 환차익 발생 가능성」, 『예산안 분석 V』, 2009. 11.

[담 당] 김민재 예산분석관(788-4642)

[개요]

- 정부는 국정과제 및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확대계획에 따라 ODA지원을 2008년 GNI대비 0.09%에서 2012년 0.15%, 2015년 0.25%까지 확대할 계획
 - 기획재정부 소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대개도국 차관사업의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4,700억원으로 전년대비 34.3% 증액
 - EDCF에 대한 일반회계출연금 예산안은 1,500억원으로 전년대비 25%인 300억원 증액
 - 외교통상부 산하 KOICA에 대한 출연금은 4,260억원으로 전년대비 19.3% 증액
 - 일반 출연금 예산안은 3,860억원으로 전년대비 21.7% 증액
 - 동아시아기후파트너쉽 출연금 예산안은 400억원으로 전년대비 동일
 - 2010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10년 GNI대비 0.13% 수준

〈ODA사업 2010년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09 (본예산)	2010안	전년대비	
			증가액	증가율
○ 유상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대개도국 차관	350,000	470,000	120,000	34.3
○ 무상 : 한국국제협력단 출연(KOICA) 합계	357,200	426,000	68,800	19.3
- 한국국제협력단 출연(KOICA)	317,200	386,000	68,800	21.7
- 동아시아기후파트너쉽 출연	40,000	40,000	-	-
합계	707,200	896,000	188,800	26.7

자료: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2009. 10.

[현안 검토]

- 유상원조를 줄이고 무상원조를 늘려 해외지원 효과와 국가이미지를 제고시키는 것이 ODA와 관련된 국제적 추세이므로, 정부도 무상원조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OECD DAC²³⁾ 국가들의 무상원조 비율은 2003년 이후 매년 100% 이상을 보이고 있으며, 2008년 잠정치 기준으로는 101.5%임(순지출 기준)²⁴⁾
 - DAC 국가들은 ODA 선진화를 위하여 기존 유상원조의 채무도 탕감해주는 추세이며, 수원국들은 부채부담 및 개발 Ownership 선호 등의 원인으로 유상원조보다는 무상원조를 선호하는 측면이 있음
 - 우리나라의 2008년도 무상원조 비율은 67.2%(잠정치)로 2007년의 73.2%에 비하여 오히려 하락
- EDCF 대개도국차관사업은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
 - 사업비 집행률 : 2006년 52%, 2007년 52%, 2008년 68%, 2009.10월 64%
 - 기획재정부는 집행률 저조의 원인으로 사업승인 시점부터 자금집행 시점의 시차가 있고, 과거 승인금액이 저조하여 최근 집행금액이 크지 않다는 설명
 - 그러나 최근 승인액은 2005년 3,200억원, 2006년 3,500억원, 2007년 5,500억원으로, 승인시점으로부터 2~4년이 지난 2009년 10월 말 현재 집행액이 2,233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23) DAC :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24) 순지출 기준에서는 당해연도 신규 제공한 총원조가 100% 무상이면서 일부 유상원조상환액이 있을 경우, 무상원조액이 순지출액보다 커지므로 100% 이상의 비율이 나올 수 있음

- 2010년도 예산안에서는 무상원조보다 유상원조금액이 더 크게 증액되었는 바, 유·무상원조 예산안 비율의 조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KOICA를 통한 무상원조는 전년대비 19.3%인 688억원 증액, EDCF를 통한 유상원조는 전년대비 34.3%인 1,200억원 증액

[참 고] 국회예산정책처, 「공적개발원조(ODA)사업 예산안 분석」, 『예산안 분석 I』, 2008. 10.

[답 당] 김민재 예산분석관(788-4642)

[개 요]

- 외교통상부 소관 일반회계 재외공관 현지인 행정원 역량강화사업
2010년도 예산안 100억원, 신규사업
 - 직접사업, 2010~2012, 총사업비 350억원

〈재외공관 현지인 행정원 역량강화사업 2010년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09 (본예산)	2010안	전년대비	
			증가액	증가율
합 계	-	10,000	10,000	순증

자료: 외교통상부, 2009. 10.

[현안 검토]

- 인건비 인상폭 일부조정 검토 필요
 - 동 사업은 초임보수를 사무직 2,000달러, 전문직 3,300달러, 선임연구원 7,000달러로 각각 편성
 - 선임연구원 보수 7,000달러는 주미대사관을 기준으로 편성한 것이지만, 선임연구원 채용인원 총 22명이 중 미국 채용인원은 3명이고, 중국·러시아 등 물가수준이 비교적 낮은 국가의 선임연구원이 6명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각 국가의 임금 및 물가수준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재외공관 행정원 예산의 2원화 부적정

- 동 사업 신설 시 2010년도 재외공관 인건비는 기존 행정원 인건비인 '재외공관 기본경비'와 동 사업으로 2원화되어 편성됨
- '재외공관 기본경비' 2010년도 예산안 706억원, 동 사업 예산안 100억원, 합계 806억원
- 같은 목적을 가진 행정원 예산을 신규사업과 기본경비로 나누어 편성·집행하는 것은 일관성이 결여되고 사업추진의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일원화 방안 검토 필요

□ 철저한 수요조사에 입각하여 우선순위에 따른 효율적 배치 필요

- 선임연구원은 채용요건을 엄격히 적용하여, 기존 행정원 및 전문직 행정원과 활용방안 및 업무분야 등에 뚜렷한 차별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전문직 행정원 74명을 해당 공관이 수행하는 중점정책의 수와 종류에 따른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배치할 필요
 - － 중점정책 다수 추진 공관에 배치한다는 계획이지만, 중점정책이 4~5개인 공관과 1개인 공관에 일률적으로 1인씩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는 비효율적인 배치계획
-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과정에서 기존 행정원의 보수현실화 등 소요액을 동 사업에 반영할 것인지를 두고 수차례 계획변경이 있었던 바,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향후 면밀한 계획수립이 필요할 것임
 - － 전문직 행정원의 보수는 기존 인력 보수에 10% 인상분이 반영된 반면 사무직 행정원의 보수는 기존 인력 보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되는 등, 채용 인력 및 보수수준의 결정에 혼선이 있었음

[자 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9.11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2010년도 외교통상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09.11
국회예산정책처, 「2010년도 예산안 분석V」, 2009. 11

[담 당] 김민재 예산분석관(788-4642)

[개 요]

- 외교통상부 소관 일반회계 정상회의 참가 및 총리순방사업 2010년도 예산안 : 114억 5,900만원, 전년대비 -15.4%인 20억 9,100만원 감액
 - 직접사업, 계속사업
- 다자 및 양자 정상회담과 총리의 회의·회담 참석을 지원하는 사업

〈정상회의 참가 및 총리순방사업 2010년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09 (본예산)	2010안	전년대비	
			증가액	증가율
합 계	13,550	11,459	-2,091	-15.4

자료: 외교통상부, 2009. 10.

[현안 검토]

- 부처의 지출한도 내에서 타 사업예산을 확보·증액하기 위하여 의무적 지출 성격을 갖는 동 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향후 예비비 사용을 초래하여 실질적으로는 부처의 지출한도를 확장시키는 효과를 갖는다는 점에서 부적절함
 - 동 사업은 대통령 및 총리의 해외순방 계획이 확정되면 예산을 지출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의무적 지출의 성격
 - 최근 5년간(2005~2009) 연례적으로 과다한 예비비 배정
 - 2005년 62억원, 2006년 107억원, 2007년 34억원, 2008년 46억원, 2009년 10월 192억원

- 최근 5년간(2005~2009) 연례적으로 예산안 편성기준보다 많은 순방 실적
 - (실제 순방횟수 - 예산안 편성횟수) = 2005년 5회, 2006년 2회, 2007년 1회, 2008년 5회, 2009년 10월 10회
- 외교통상부 2010년도 예산안은 2009년 추경예산 대비 19.2% 증액, 10개의 신규사업에 187억원 반영 : 지출한도 내 기존사업의 구조조정 필요
- 일부 순방계획이 연도 중 확정되어 예산안에 미리 편성하지 못하는 점은 인정될 수 있으나, 과도한 예비비 사용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동 사업 예산안을 감액한 것은 부적절
- 이는 지출한도와 연계되어 타 사업 예산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동 사업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면서 일부 신규사업의 감액을 검토할 필요

[자 료] 국회예산정책처, 「정상회의 참가 및 총리순방사업 부적절한 과소편성」, 『예산안 분석 V』, 2009. 11.

[답 당] 김민재 예산분석관(788-4642)

[개 요]

- 외교통상부 소관 일반회계 외교정보 전용망 구축 및 운영사업 2010년도 예산안 121억 1,800만원, 전년대비 33.1%인 30억 1,100만원 증액
 - 직접사업, 계속사업

〈외교정보 전용망 구축 및 운영사업 2010년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09 (본예산)	2010안	전년대비	
			증가액	증가율
합계	9,107	12,118	3,011	33.1

자료: 외교통상부, 2009. 10.

[현안 검토]

- 연례적으로 과다한 전용감액 발생으로 일부 예산안 조정 검토 필요
 - 2008년 전용감액 5억 4,300만원, 6개 공관 신설경비 예산으로 사용
 - 2009년 전용감액 7억 200만원, 현지 전문가 양성사업으로 사용
 - 동 사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일부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2010년도 예산안 일부를 조정하는 방안 검토 필요

[자 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9.11

[담 당] 김민재 예산분석관(788-4642)

[개 요]

- 외교통상부 소관 일반회계 글로벌코리아 미래전략기반 네트워크 강화사업의 2010년도 예산안 : 11억 4,300만원, 신규사업
 - 외교안보연구원 수행, 미래기획위원회와 공동 추진, 계속사업
- 외교안보연구원의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연구인력 보강, 국제회의 개최 등을 통하여 외교 네트워크 강화를 도모

〈글로벌코리아 미래전략기반 네트워크 강화사업 2010년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09 (본예산)	2010안	전년대비	
			증가액	증가율
전문인력 보강	-	319	319	순증
해외 연구기관 방문 네트워크 강화	-	109	109	순증
주요인사 초청 국제회의 개최	-	188	188	순증
연구개발비	-	300	300	순증
국내 연구기관 네트워크 강화	-	47	47	순증
주요 현안 워크숍	-	66	66	순증
정책연구자료 발간	-	114	114	순증
합 계	-	1,143	1,143	순증

자료: 외교통상부, 2009. 10.

[현안 검토]

- 해외 연구기관 방문 네트워크 강화 사업은 외교안보연구원의 기존사업들과 유사한 점이 있으므로,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미흡
 - '외교안보 연구활동'사업 중 '해외 연구기관 방문 오만찬' 예산안(1,355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외교안보연구원 기본경비'에는 '외국 학술기관과의 인적 네트워크 강화' 예산안(2,368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 사업준비 미흡 : 해외 연구기관과의 정기적 교류 및 공동연구를 위하여 MOU를 체결한다는 계획이지만, 2009년 10월 말 현재 MOU가 체결된 기관은 1개 기관에 불과
 - 체결된 미국의 RAND 연구소는 이미 외교안보연구원과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음
- 연구인력 10명(박사급 5명, 석사급 5명)을 채용한다는 계획이지만, 2009년 9월 말 현재 외교안보연구원의 인력은 정원 80명, 현원 88명으로 일부 초과 상태
 - 채용 인력은 1년 계약직으로 정규인력은 아니지만, 인력소요 및 채용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자 료] 국회예산정책처, 「글로벌코리아 미래전략기반 네트워크 강화사업 사업차별성 부족 및 사업계획 미흡」, 『예산안 분석 V』, 2009. 10.

[담 당] 김민재 예산분석관(788-4642)

[개요]

- 외교통상부 소관 일반회계 글로벌 인적인프라 구축사업 2010년도 예산안 : 6억원, 신규사업, 중기재정계획 상 4년간(2010~2013) 총 91억원 투자계획
 - 직접사업, 계속사업
-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재외 명예영사, 국제기구 고위인사, 국제법·안보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세미나 및 포럼을 개최하는 사업

〈글로벌 인적인프라 구축사업 2010년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09 (본예산)	2010안	전년대비	
			증가액	증가율
재외 명예영사 초청	-	391	391	순증
국제기구, 국제법·안보 전문가 초청	-	209	209	순증
합 계	-	600	600	순증

자료: 외교통상부, 2009. 10.

[현안 검토]

- 기존 사업 중 유사사업이 존재하여 사업을 신설할 필요성이 미흡하므로, 기존 사업들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재외 명예영사 초청 : 각 지역국의 '교류협력 강화'사업에서 친한인사 초청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있음
 - 사례 : 남아시아대양주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사업, 한-동남아 교류증진 세미나, 5,500만원

- 국제기구, 국제법·안보 관련 전문가 초청 : 국제기구국, 조약국, 정책 기획국, 외교안보연구원 등에서 기존 유사 사업이 존재
 - 사례 : 조약국 국제법규과, 국제법적 기반구축사업(2.2억원) 중 국제법 관계 인사 초청
 - 사례 : 외교안보연구원, 동북아 다자안보 전문가 초청 및 학술회의 개최
- 동 사업 주관부서는 '문화외교국'으로 실제사업은 각 소관부서에서 추진하고 총괄만 한다는 설명이지만, 기존 부서에 유사 사업들이 존재하므로 총괄을 위해 신규사업을 창설하기보다는 각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 강구 필요
 - 국제기구, 국제법·안보 전문가 초청 등은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한 문화외교국 업무분장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자 료] 국회예산정책처, 「글로벌 인적인프라 구축사업 신규추진 필요성 미흡」, 『예산안 분석 V』, 2009. 11.

[담 당] 김민재 예산분석관(788-4642)

[개요]

- 외교통상부 소관 일반회계 재외공관 국유화사업 원리금 상환의 2010년도 예산안: 361억 1,600만원, 전년대비 20.2%인 60억 7,800만원 증액
 - 직접사업, 계속사업
 - 2010년도 예산안 중 원금상환 319억 5,000만원, 이자상환 41억 6,600만원
- 재외공관 청사·관저의 국유화를 위해 차입한 국고채무부담행위액의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 사업

〈재외공관 국유화사업 원리금 상환 2010년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09 (본예산)	2010안	전년대비	
			증가액	증가율
원금상환	23,243	31,950	8,707	37.5
이자상환	6,795	4,166	-2,629	-38.7
합계	30,038	36,116	6,078	20.2

자료: 외교통상부, 2009. 10.

[현안 검토]

- 차입방식²⁵⁾이 장기간 유지되면서 과다한 이자부담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재정부담의 일시적인 연기라는 국고채무부담행위

25) 외교통상부는 「재외공관용재산의취득·관리등에관한특례법」 제5조(부동산의 취득)에 근거하여 재외공관이 해외에서 자금을 차입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재외공관용재산의취득·관리등에관한특례법」 제5조(부동산의 취득)

① 재외공관의 장은 특히 필요할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부로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공관청사 또는 관저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의 장점이 퇴색되고 국가채무와 이자부담 증가로 인한 재정의 비효율성이 발생되고 있음

- 9년간(2001~2009.9) 이자상환액 합계는 452.7억원(환율 1,230원 적용)으로 같은 기간 연도별 기채액 누적금액(3,364억원)의 13.8%, 원금상환액(2,073억원)의 22.3%에 달함
- 향후 10년간(2010~2019) 상환계획에 따르면, 이자상환액이 723억원으로, 이는 같은 기간 원금상환액(4,094)억원의 17.7%이고 연도별 기채액 누적금액(3,962억원)의 18.2%에 달하는 규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재외공관 국유화사업 이자부담 과다 문제」, 『예산안 분석 V』, 2009. 11.

[답 당] 김민재 예산분석관(788-4642)

[개 요]

- 통일부 소관 일반회계 남북협력기금 출연사업의 2010년도 예산안 : 3,500억원, 전년대비 동일
 - 남북협력기금 출연금

〈남북협력기금 출연사업 2010년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09 (본예산)	2010안	전년대비	
			증가액	증가율
합 계	3,500	3,500	-	-

자료: 통일부, 2009. 10.

[현안 검토]

- 2009년도 사업비 집행 저조로 대규모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며, 이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입계획에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
 - 2009년 9월 말 기준 사업비 집행률은 계획현액 대비 4.8%로 저조한 수준
 - 2009년도 일반회계출연금 예산액 3,500억원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사유로 배정을 유보한 상태여서, 10월 말 현재 전액 미배정 상태임
 - 2010년도 수입계획안 중 '통화금융기관예치금 회수'는 8,441억원으로서, 이는 2009년도 사업비 집행률을 17.28%로 가정한 금액

- 연도 말 기준 사업비 집행률이 17.28%보다 낮아질 경우²⁶⁾ '통화금융기관예치금 회수'를 증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출규모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일반회계출연금'을 조정할 수 있음
- 사업비 집행률이 17.28%에서 1%p 낮아질 때마다 약 116억원의 '통화금융기관예치금 회수'의 조정이 가능함

[자 료] 국회예산정책처, 「남북협력기금 수입계획안 일부 조정 검토」, 『예산안 분석 V』, 2009. 11.

[답 당] 김민재 예산분석관(788-4642)

26) 남북협력기금의 올해 사용률이 10%를 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음(「남북협력기금 10월 말까지 5.7% 사용」, 연합뉴스, 2009.11.16)

[개 요]

-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을 일정한 부담금이 없어 자체 수입으로 조달하지 못하므로, 정부출연금과 공자기금예수금(추후 상환 의무 있음)으로 지원받음
 - 예산안: 3,500억원(전년 동)

〈남북협력기금 정부 지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남북협력기금 출연	5,000	5,000	6,500	6,500	3,500	-	3,500
공자기금예수금	7,444	6,472	3,796	1,475	2,580	550	9,629
합계	12,444	11,472	10,296	7,975	6,080	550	13,129

주: 2009년 실적은 9월말 기준

자료: 외교통상부

[현안 검토]

- 남북협력기금의 목적사업 집행 부진이 연례화되고 있어, 여유자금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
 - 남북협력기금의 목적사업 집행실적이 2007년 이후 매년 계획에 못 미치고 있고, 2009년 9월 기준으로도 561억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이 5%에 그침

〈2007년 이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계획 대비 지출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사업비	8,704	7,157	11,045	2,312	11,182	561	11,184
· 경상사업비	5,333	4,353	5,955	1,946	9,412	350	8,695
· 용자사업비	3,371	2,805	5,089	366	1,770	212	2,489

주: 2009년 실적은 9월말 기준

자료: 통일부

- 이러한 목적사업비 집행부진으로 여유자금 규모가 매년 증가하여 2009년 9월 기준 여유자금은 1조원을 초과

〈2007년 이후 남북협력기금 여유자금 연말잔액 계획 대비 실적〉

(단위: 억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여유자금 잔액	1,547	5,717	1,165	10,537	2,575	10,451

주: 2009년 실적은 9월말 기준

자료: 통일부

- 남북협력기금의 출연금 예산은 2010년 예산에 계상하되, 사업진행 추이를 보면서 집행하는 한편, 여유자금 중 일부를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위탁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 동 기금에 대한 정부 출연금은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집행 가능성이 결정되므로 예산 계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2009년과 동일하게 2010년에도 사업 진행 추이를 보고 실제로 출연할 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
- 또한, 2009년 9월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여유자금 중 당장 사업에 사용될 부분을 제외한 금액은 공자기금에 위탁하는 것을 전체 국가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검토해 볼 필요
 - 공자기금 위탁은 공자기금의 재원을 늘려 국채 발행 축소 가능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사업성기금에 대한 정부 지원 실태 분석」, 『예산안 분석 II』, 2009. 11.

[담당] 정금희 예산분석관(788-4627)

[개 요]

- 통일부 소관 일반회계 사회 통일교육 내실화사업의 2010년도 예산안 : 30억 4,500만원, 전년대비 182.2%인 19억 6,600만원 증액
 - 통일교육원을 통한 수행, 계속사업
- 통일교육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정책소통을 강화하고 사회 통일교육을 활성화하려는 사업

〈사회 통일교육 내실화사업 2010년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09 (본예산)	2010안	전년대비	
			증가액	증가율
통일대화의 광장	133	622	489	367.7
사회통일 거버넌스 구축	770	2,247	1,477	191.8
사회통일교육 자료 개발	176	176	-	-
평화통일 제도화 추진	-	-	-	-
합계	1,079	3,045	1,966	182.2

자료: 통일부, 2009. 10.

[현안 검토]

- 동 사업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지역협의회 활동지원’사업(예산안 119억 9,400만원) 중 일부 기능의 중복이 나타나고 있음

- '통일대화의 광장'은 지자체별로 여론 주도층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여론수렴 및 정책소통을 도모하는 사업인데, 민주평통도 '통일담론 형성사업'(9억 7,600만원), '통일시대 시민교실'(3억 700만원) 등을 통해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
 - '사회통일교육 거버넌스 구축'은 통일교육위원회의 지원,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원 등의 예산안인데, 민주평통도 각 지역협의회의 활동을 통해서 통일교육 기능을 일부 수행하고 있음
- 이처럼 기관 간 일부 기능의 중복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각 사업의 2010년도 예산안이 모두 증액 편성되었으나 체계적인 조정노력이 미흡
- 통일부의 '사회 통일교육 내실화사업'의 예산안은 182.2% 증액, 민주평통의 '지역협의회활동지원사업'의 예산안은 46.8% 증액(81억 7,100만원→119억 9,400만원)
 - 통일부와 민주평통은 통일교육 및 여론수렴 기능과 관련하여 몇 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공식적이고 주기적인 협의체계는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 통일교육 및 여론수렴과 관련하여 중복되는 기능을 효율화하여 사업효과 제고 및 예산절감 방안을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사회 통일교육 내실화사업 민주평통과 유사기능 효율화 필요」, 『예산안 분석 V』, 2009. 11.

[담 당] 김민재 예산분석관(788-4642)

[개요]

- 통일부 소관 일반회계 북한이탈주민 행정지원사업의 2010년도 예산안 : 85억 8,500만원, 전년대비 35.6%인 22억 5,400만원 증액
 - 직접사업, 보조사업(북한이탈주민후원회 지원,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 지원)
- 민간기관인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지원 예산안이 64억 5,500만원으로 전년대비 53.7%인 22억 5,400만원 증액

〈북한이탈주민 행정지원사업 2010년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09 (본예산)	2010안	전년대비	
			증가액	증가율
북한이탈주민지원대책 수립	230	230	-	-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지원	4,201	6,455	2,254	53.7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 지원	1,900	1,900	-	-
합계	6,331	8,585	2,254	35.6

자료: 통일부, 2009. 10.

[현안 검토]

-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지원 예산안 중 연구 커뮤니티 구축사업(1억 5,000만원) 사업계획 미비
 - 북한이탈주민 관련 연구 커뮤니티 구축이란 관련 연구를 위한 세미나·포럼 등을 개최하는 것인데, 세부적인 계획이 미비한 상태여서 사업 부실화 우려

-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지원 예산안 중 분야별 연구활동 지원사업(5억 100만원)은 정책적 성격 상 정부가 직접 수행·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
 - 통일부 별도 사업인 '정책연구개발'사업의 2010년도 예산안은 4.8억 원으로 2009년과 동일한데, 후원회를 통한 연구용역비를 5억원 증액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 정책연구개발사업의 2010년도 연구계획 중 북한이탈주민 관련 주제는 3개 포함되어 있음
-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지원 예산안 중 전문상담사 육성·활용사업(20억 300만원)은 북한이탈주민 심리상담이 전문적 역량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내실 있는 추진 필요
 - 북한이탈주민의 다수가 심리질환을 겪고 있음
 - 통일부에 따르면 하나원에 입소하는 여성 중 25.2%가 PTSD²⁷⁾ 증상을 보이며, 청소년의 경우 37.5%가 우울감과 불안감을 호소, 28.6%는 위축감을 호소, 30.3%가 공격성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됨

[자 료] 국회예산정책처,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신규 지원사업 효과미흡 우려, 『예산안 분석 V』, 2009. 11.

[담 당] 김민재 예산분석관(788-4642)

27)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개 요]

- 통일부 소관 일반회계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교육사업의 2010년도 예산안 : 42억원, 신규사업
 - 지방자치단체 보조(국고보조율 100%)
- 지역별로 지역적응센터를 운영하여 거주지에 편입된 신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3주간의 지역안내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1년간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사업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교육사업 2010년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09 (본예산)	2010안	전년대비	
			증가액	증가율 순증
합 계	-	4,200	4,200	순증

자료: 통일부, 2009. 10.

[현안 검토]

- 동 사업은 100% 국가보조사업의 형식이지만 통일부는 지방비 부담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여서 지방자체단체의 재정부담이 우려되며, 지방비 확보에 차질이 생길 경우 센터운영의 부실화 우려
 - 당초 계획에서는 센터 당 1.4억원 국고보조(70%), 0.6억원(30%) 지방비부담의 매칭펀드 방식이었으나, 지방비부담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부정적 견해 표명으로 정책지원 방식을 택하고(지원금액은 동일) 통일부는 지자체에 지방비 추가 확보를 요청하고 있음

- 당초 계획 상 센터 운영비용은 1개 센터 당 2억원이었으므로, 지방의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태에서 지방비 확보에 차질이 생길 경우 센터운영의 부실화 우려
- 형식적으로는 100%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을 의무화할 수 없음

□ 단계적 확대를 통한 내실화 방안 검토 필요

- 2009년 10월 현재 6개 센터가 운영 중인데, 2010년도 신규사업으로 30개 센터로 확대하는 것은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부실화 우려가 있음
- 센터 운영 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1개 센터 당 국고지원액을 상향시켜주는 방안을 검토하여, 사업 초기에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을 것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교육사업 지방비 확보 차질 및 부실화 우려」, 『예산안 분석 V』, 2009. 11.

[담 당] 김민재 예산분석관(788-4642)

[개 요]

- 통일부 소관 일반회계예산으로 수행
 - 예산안: 748억원(전년대비 21% 증)
- 북한을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북한주민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신속히 적응·정착하는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을 하기 위해 추진
 - 금년에만 9월 기준 2,114명이 입국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총규모는 만 7,000여명에 이르지만, 이들의 우리 사회 부적응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예산안〉

(단위: 억원, %)

단위사업명	2009	2010안	전년대비	
			증가액	증가율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및 정착금 지급	555	620	65	11.7
북한이탈주민 행정지원	63	128	65	103.2
합 계	618	748	130	21.0

자료: 통일부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에 의한 정착지원체계
 - 통일부의 각종 정착금 지급과 하나원 교육, 노동부의 취업지원, 보건복지가족부의 기초생활보장지원,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례 편·입학 지원 등은 중앙정부에 의한 지원임

- 지방자치단체는 거주지보호담당관, 취업보호담당관, 신변보호담당관 등 보호담당관제도를 운영함
- 민간단체는 지역적응센터, 정착도우미, 정주도우미, 복지기관 등을 통해 지원함

[현안 검토]

- 첫째,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은 다부처에 걸쳐 추진되고 있지만, 부처간 연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지원체계의 비효율성이 나타났음
 - 통일부는 기본계획 수립을 법제화하여 총괄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통일부, 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추진되고 있는 정착지원 현황에 대한 개인별 DB를 구축하여 정착과정의 데이터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사업목표인 ‘북한이탈주민의 우리 사회 조기 정착’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에 대한 성과평가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 않아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부족함
 - 통일부에서 수행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률 및 고용률 관련 통계조사는 신뢰성에 한계점이 있어 성과관리에의 활용이 어려움
 - 성과지표 또한 취업 관련 성과정보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거나 목표치 수준이 낮게 설정되어 있어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조기 정착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셋째,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관련 교육이 중요하므로 내실 있는 교육이 필요함
 - 하나원은 맞춤형 교육, 개방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교육기관으로서 하나원의 역할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 금년에 도입된 지역적응센터는 2010년 센터수를 30개로 확대 실시한다는 계획에 따라 2010년도 42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 센터 운영에 대한 평가 및 검토를 통해 전국적 도입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사업의 부실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바, 예산안 심사 시 고려되어야 할 사안임

[자 료] 국회예산정책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평가」, 2009. 11.

[담 당] 남은정 사업평가관(788-4674)

[개 요]

- 통일부 소관 일반회계 북한정세지수 개발사업 2010년도 예산안 : 18억 5,000만원
 - 신규사업, 직접사업
- 북한정세지수(NSI : North Korea Situation Index)는 북한체제의 상황변화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를 지향하는 지수이며, 통일부는 연구용역을 통하여 지수를 개발한다는 계획

〈북한정세지수 개발사업 2010년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09 (본예산)	2010안	전년대비	
			증가액	증가율
운영비	-	402	402	순증
업무추진비	-	22	22	순증
연구개발비	-	1,426	1,426	순증
합계	-	1,850	1,850	순증

자료: 통일부, 2009. 10.

[현안 검토]

- 북한정세지수 개발로 일정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측면도 있으나, 북한 자극 등의 부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등 사업효과 제한 우려
 - 지수 공개 시 부작용으로 북한을 자극하게 되어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가능성

- 비공개 시 정부 내부의 참고용으로만 활용되는 것이므로 대내·외 심리적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개발한 지수의 활용도 반감
 - 지수의 공개여부는 개발 이후 유관기관 회의 등을 거쳐 결정할 계획
- 통일부는 원칙적으로 1년에 1회 지수를 산출한다는 계획인데, 1년에 1회 산출되는 지수로는 대북 상황변화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대내·외 심리적 안정 효과를 얻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자 료] 국회예산정책처, 「북한정세지수 개발사업 신중한 추진 필요」, 『예산안 분석 V』, 2009. 11.

[담 당] 김민재 예산분석관(788-4642)

X. 공공질서 · 안전 분야

1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자원배분

-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009년 12.3조원에서 2013년 14조원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이 3.3%로서 같은 기간 동안 총지출 연평균 증가율인 4.2%보다 증가율이 낮은 편임
 -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의 연평균 증가율은 6.7%
- 전체 총지출 중에서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4.32%에서 2010년에 4.42%까지 증가하였다가, 2011년부터 계속 감소하여 2013년에는 4.17%까지 감소할 계획

〈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투자계획 〉

(단위: 억원, %)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A)	123,224	128,521	132,406	136,642	140,154	3.3
법무 및 검찰	22,541	23,352	24,193	24,959	25,678	3.3
법원 및 헌재	13,272	13,626	14,328	14,684	15,136	3.3
경찰	72,656	75,145	77,556	80,174	83,637	3.6
해양경찰	8,465	9,401	9,643	10,055	9,287	2.3
재난관리	6,290	6,997	6,686	6,770	6,416	0.5
총지출 (조원, B)	284.5	291.8	306.6	322.0	335.3	4.2
총지출 중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비중 (A/B)	4.3	4.4	4.3	4.2	4.2	

자료: 기획재정부, 「2009 ~ 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09. 10.

- 법무 및 검찰 부문은 지문감식시스템 도입 등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추진할 계획임
 - 2010년도 예산안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시설운영사업’에 외국인 지문감식시스템 BPR/ISP 비용으로 5억원의 연구용역비 편성
 - 2009년 11월 11일 외국인 지문채취제도의 근거법률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 해양경찰 부문은 해양오염 사고 및 해상치안 대응 능력 확충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나, 해양오염예방사업, 해양오염방제활동사업, 방제정건조사사업, 방제비축기지신축사업 모두 감액편성되어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2009. 11.

[담당] 오세일 예산분석관(788-4640)

[개 요]

□ 법무부 소관 일반회계 검찰청 예산

- 예산안: 7,215억 3,200만원(전년대비 대비 2.1% 증)
- 검찰청 소관 2010년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4,587억 4,700만원과 기본경비가 403억 7,900만원의 규모로 인건비와 기본경비가 전체 예산의 69.2%를 차지하고 있고, 주요사업비는 검찰운영, 검찰업무정보화, 수사지원 및 역량강화, 공판활동 및 형집행, 형사사법선진화, 검찰시설조성 등으로 2,224억 700만원임

〈2010년도 검찰청 소관 예산안 사업별 내역〉

(단위: 백만원, %)

세항-세세항	2009 예산	2010 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인건비	455,357	458,747	3,390	0.7
검찰청운영	455,357	458,747	3,390	0.7
기본경비	44,569	40,379	-4,190	-9.4
검찰청운영	44,569	40,379	-4,190	-9.4
검찰운영	25,188	31,130	5,942	23.6
검찰청 시설운영	12,627	18,128	5,501	43.6
검찰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	5,749	5,517	-232	-4.0
영상녹화등과학수사	6,812	7,485	673	9.9
검찰업무정보화	33,224	38,437	5,213	15.7
검찰업무정보화	25,316	27,378	2,062	8.1
첨단범죄및디지털수사	7,908	11,059	3,151	39.8
수사지원 및 역량강화	70,020	65,592	-4,428	-6.3
검찰수사지도	4,640	4,753	113	2.4
수사일반	53,838	49,891	-3,947	-7.3
공안수사	3,747	3,141	-606	-16.2
국민생활침해사범단속	4,285	4,072	-214	-5.0
마약수사	3,509	3,735	226	6.4

(단위: 백만원, %)

세항-세세항	2009 예산	2010 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공판활동 및 형집행	19,289	17,485	-1,804	-9.4
공소유지	8,227	7,368	-859	-10.4
형집행	6,849	6,156	-693	-10.1
형사보상 및 범죄피해자구조금지급	4,214	3,961	-253	-6.0
형사사법선진화	1,279	4,236	2,957	231.2
형사실체법정비	542	504	-38	-7.0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추진단운영	737	3,732	2,995	406.2
검찰시설조성	57,633	65,527	7,894	13.7
서울북부지검	9,342	19,800	10,458	111.9
서울동부지검	500	-	-500	-100.0
창원지검진주지청	500	1,715	1,215	243.0
검찰시설기타	12,643	9,700	-2,943	-23.3
춘천지검원주지청	1,359	3,790	2,431	178.9
목포지검목포지청	8,400	7,928	-472	-5.6
울산지검	2,196	1,795	-401	-18.3
전주지검	300	500	200	66.7
수원지검여주지청	1,911	7,899	5,988	313.3
대전지검공주지청	500	2,000	1,500	300.0
창원지검마산지청	5,577	-	-5,577	-100.0
수원지검성남지청	2,752	-	-2,752	-100.0
서울중앙지검별관	6,252	10,400	4,148	66.3
합 계	706,559	721,532	14,973	2.1

자료: 법무부

[현안 검토]

□ 검찰청 소관 예산의 독립편성 필요

- 「국가재정법」 제21조 및 제31조에 의해 예산안은 중앙관서별로 독립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중앙행정기관 중 검찰청만 예산안을 독립 편성 하지 않고 법무부에 통합편성하고 있음
- 법무부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및 중립성 침해 및 책임행정 구현이 어렵다는 점과 「법무부와 그소속기관 직제」상 법무부장관이 검찰사무를 관장하는 점 등을 법무부에 통합편성의 근거로 설명하고 있음

- 대통령령인 동직제가 상위법인 국가재정법의 규정을 대체할 수는 없음
- 동사안은 지금까지 국회의 보고서²⁸⁾에서 수차례 지적하였고 2008 회계연도 결산심사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²⁹⁾에서도 논의되었으나 국회결산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으로 미반영됨
- 검찰청소관 예산상의 문제점을 중앙관서의 장인 당해 기관장에게 직접 물을 수 없는 등 책임성 확보 미흡

[자 료] 국회예산정책처, 「검찰청 예산의 독립편성 필요, 『2010년도 예산안 분석V』, 2009. 11.

[답 당] 부길환 예산분석관(788-4641)

28) 국회법제사법위원회 「2009 예산안 검토보고」; 국회예산정책처, 「2009 예산안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08 결산쟁점 분석」

29) 2008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 사항

시정 요구명	요구기관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 대상기관	비 고
검찰청은 법무부로부터 독립하여 예산을 편성할것	예결위 (종합 심사)	사업명	검찰청 전체 예산	시정 및 제도 개선	법무부	김성순 위원 안민석 위원 이시종 위원
		지적사항	국가재정법을 위반하여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소속으로 편성하고 있음			
		시정 요구 사항	국가재정법에 따라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로부터 독립하여 편성 할것			

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2008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

[개 요]

- 법무부 소관 일반회계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 예산안: 82억 4,800만원(전년대비 대비 90.2% 증)
 - 직접계속사업으로 사업기간은 범죄피해구조금 :06~계속,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 87~계속임

[현안 검토]

- 범죄피해자 지원 예산안은 범죄자 지원 예산안의 3.6%에 불과

〈연도별 범죄자 및 범죄피해자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예산안
범죄자 (수용자)	국선번호	35,000	37,100	33,800	33,500
	교정·교화	165,528	169,574	173,262	187,418
	갱생보호	6,787	6,867	7,094	7,361
	소 계	207,315	213,541	214,156	228,279
범 죄 피해자	범죄피해구조금	2,109	1,878	2,246	3,268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944	1,200	1,500	4,326
	형사조정활성화	260	500	590	654
	소 계	3,313 (1.6%)	3,578 (1.7%)	4,336 (2.0%)	8,248 (3.6%)

주: ()는 범죄피해자 지원 예산의 범죄자 지원 예산에 대한 비율
 자료: 법무부

-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정신적 고통에 지속적으로 시달리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생업에도 종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자 지원 예산안은 범죄자 지원 예산안(2010년도 : 2,283억원)의 3.6%에 불과
- 주요국의 범죄피해자 예산제도를 보면, 미국(1,305백만달러, 2005)·네덜란드(1,200만유로, 2008)·독일(민간 2,700억원, 2006) 등은 원인자부담원칙 하에 벌금 등을 주재원으로 기금을 설치·운용

□ 최근 3년간 연평균 벌금 수납율이 10.3%임을 감안 할때 우리나라의 경우도 벌금(최근 3년간 평균 1조 5,000억원) 등의 일정부분을 재원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있음

〈최근 3년간 연도별 벌금 수납액〉

(단위: 백만원, %)

	수 납 액	전년대비 증가율	비 고
2007년	1,328,917	8.4	2006년 : 1,225,985
2008년	1,545,807	16.3	
2009년	1,642,663	6.3	예산액

자료: 법무부.

□ 향후 보완과제로는 범죄피해자관련 부처 대상(검찰·경찰·여성부, 보건복지가족부 등)으로 범죄피해자 및 유가족의 신체 및 재산상 피해 규모와 이에 따른 본인·유가족 지원을 위한 선행적인 재정소요 규모 파악과 범죄피해가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연구용역이 필요하며 범죄피해자 본인·유가족 지원을 위한 법률구조, 치료, 생활, 교육, 취업 등 종합적인 패키지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

[자 료] 국회예산정책처,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의 국가책임 미흡」, 『2010년도 예산안 분석V』, 2009. 11.

[담 당] 부길환 예산분석관(788-4641)

[개 요]

□ 법무부 소관 일반회계 갱생보호사업

- 예산안: 73억 6,100만원(전년대비 대비 3.8% 증)
 - 국고보조의 계속사업으로 보조사업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및 민간법인

□ 갱생보호사업의 성과

- 특수소외계층 지원, 생활안정 도모
 - 출소자들을 대상으로 숙식제공, 직업훈련, 취업알선, 주거지원, 재사회화교육 등 연간 평균 5만 여건 등 자립갱생을 위한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갱생보호사업을 도모

〈출소자에 대한 갱생보호 실시 현황〉

(단위: 건)

	숙식제공	주거지원	취업알선	직업훈련	긴급구호	사전면담	사후관리	재사회화교육	기타	계
2006	3,177	153	3,638	1,631	2,615	21,515	6,995	3,337	13,750	56,811
2007	3,240	152	3,601	1,548	3,000	22,326	9,239	5,441	16,715	65,262
2008	3,245	152	4,487	1,694	3,200	23,945	8,348	4,513	17,312	66,896
2009 (9월)	2,134	114	3,026	1,181	2,387	15,652	6,070	2,871	11,935	45,370

자료: 법무부

- 재범률 축소를 통한 사회적 비용 경감에 기여
 - 일반출소자 재입소율이 52.3%인 반면, 갱생보호시설내 입소자의 재범률은 1.6%에 그치고 있어 갱생보호시설내에 입소자의 재범률이 크게 낮은 것으로 출소자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 등에 이바지하고 있음

〈일반출소자 재입소율과 갱생보호시설내 출소자 재범률 비교〉

(단위: %)

구 분	재 범 률	
	일반출소자 재입소율	갱생보호시설내 입소자 재범률
재범률(2007)	52.3	1.6

자료: 2008 범죄백서

[현안 검토]

- 갱생보호대상자는 복지제도의 또다른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많은 차별과 무관심속에 사실상 방치된 서민들로서 정부전체 1일 식대 급량비 비교시, 수용자(3,430원), 소년원(3,980원), 경비교도대(5,550원), 해양경찰(5,899원), 군병사(5,550원) 등과 가장 낮은 3,200원으로 급량비의 처우개선이 요구됨.

〈2010년 예산안 갱생보호대상자·재소자·군인 등 식대 단가 비교〉

(단위: 원)

구분	갱생 보호 대상자	수용자 (미결 포함)	소년원	경비 교도대	해양경찰			전· 의경	군병사· 영내 하사	영외거 주중사
					교육 (배치전)	함정	육상			
단가	3,200	3,430	3,980	5,550	5,979	5,899	5,779	5,550	5,550	4,784

- 여성출소자 사회성 향상 사업은 성인지적 예산관점에서 여성권의 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인권 옴부즈만으로부터 최우수 인권신장 사례로 평가(2005. 법무부) 및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중 단위위탁 사업별 우수사업 선정(2006. 여성부)된 사업이나 여성발전기금으

로부터 지원중단 위기에 놓여 있는데, 동사업의 취지 및 성과를 감안하고 여성발전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여성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여성발전기금으로부터 여성출소자를 위한 사회향상 프로그램사업비를 지속적으로 지원받는 방안 강구를 하는 한편, 일반회계로의 추진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동사업 계속 유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여성출소자 사회성향상 프로그램사업 운영실적〉

(단위: 회, 명)

	횟 수			참여인원		
	계	성 인	청소년	계	성 인	청소년
2005	148	95	53	2,831	1,599	1,232
2006	275	88	187	4,134	2,799	1,335
2007	855	132	723	8,250	1,461	6,789
2008	740	207	533	8,407	2,525	5,882
2009. 9.	504	145	359	4,784	1,643	3,141
계	2,522	667	1,855	28,406	10,027	18,379

자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갱생보호사업중 주거지원사업에 있어, 영세민 등 일반 저소득층의 총 주거지원 기간은 10년인데 비하여 갱생보호대상자는 4년에 불과하여 형평성측면에서 문제가 있어 사회적·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출소자에게 최대한 수혜가 미치도록 주거지원사업의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가 필요
- 갱생보호사업이 사회복지사업의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갱생보호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공동모금법」에 따른 민간 기부 세제감면, 전기·수도 등의 사용료 감면 및 물품납품 시 의무구매에서 제외되는 등 사회복지 혜택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 과중되므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도록 하는 등 입법적 방안 마련이 필요

〈갱생보호시설과 사회복지법상 시설 비교〉

	갱생보호시설	사회복지시설
근거법률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사회복지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기부시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인 경우 소득금액의 5% ■ 개인의 경우 소득금액의 15%내 ※ 법인세법 24,36조, 소득세법 3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기부금으로 분류하여 100% 세액 공제 ※ 조특법76조, 소득세법34조 소득세법시행령79조의2
전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할인 혜택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한 금액의 20% 감면
가 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할인 혜택 없음 ※ 662.61원 / 1㎡(일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금 할인 적용 (각 도시마다 차이가 나며 상업용 단가를 적용받음) ※ 555.25원 / 1㎡(상업용)
수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할인 혜택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한 금액의 30% 할인
시설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보조 및 자체수입으로 운영, 지자체 지원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와 지자체가 일정비율로 부담 ※ 조례에 따라서도 상이
건축 신·증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지지역에 신·증축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지지역에서 신·증축 가능
복권기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임

□ 갱생보호 민간법인의 경우 재정여건이 취약함에도 자체재무구조 대비 평균 국고보조율이 30% 정도인데 타 복지사업의 경우 국고보조율 70%를 정도를 지원하고 있어 형편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 동 단체들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갱생보호민간법인에 대한 국고보조금 비율이 타 복지사업에 비해 국가보조율 지원이 미미하므로 예산지원과 제도개선 마련이 필요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갱생보호사업 분석 : 복지예산의 또다른 사각지대」, 『2010년도 예산안 분석V』, 2009. 11.

[담당] 부길환 예산분석관(788-4641)

[개 요]

- 경찰청 소관 일반회계 도로교통공단 출연
 - 예산안: 609억 8,100만원(전년대비 28억 3,000만원, 4.4% 감)
 - 사업추진방식 : 출연
 - 사업기간 : '02~계속
 - 지원근거 : 「도로교통법」 제130조(운영자금 등)
- 도로교통공단의 세입재원이었던 도로교통안전분담금이 준조세 정비방안에 따라 2002년 1월부터 폐지되면서 2002년부터 공단의 세출예산 총액 중 자체수입을 제외한 부족분을 출연금으로 지원

〈2010년도 도로교통공단 출연 예산안 편성현황〉

(단위: 백만원, %)

	2009 (본예산)	2010안	전년대비	
			증가액	증가율
도로교통공단 출연	63,811	60,981	-2,830	-4.4

자료: 경찰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자료」, 2009. 10.

[현안 검토]

- 공단의 자체수입이 연례적으로 과소 계상됨에 따라 정부 출연금 또한 과다 계상
 - 세출예산 총액에서 자체수입을 제외한 부족분을 지원하는 ‘수지차보전방식’에서는 자체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출연금이 늘어남
 - 최근 5년간 연평균 81억원(19.3%)이 초과징수됨

〈도로교통공단 연도별 자체수입 실적〉

(단위: 백만원)

연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예산현액(A)	30,782	33,120	39,249	45,626	48,464
징수결정액(B)	34,528	36,478	46,147	56,759	64,158
증감(B-A)	3,746	3,358	6,898	11,132	15,694
증감율(%)	(12.2)	(10.1)	(17.6)	(24.4)	(32.4)

자료: 도로교통공단

□ 자체수입이 계획 대비 초과징수되는 것은 자체수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수입대체경비가 매년 초과징수되고 있고, 재화용역 판매수입, 관유물 매각대 등 기타수입을 예측이 어렵다는 이유로 계상하지 않고 있기 때문임

- 도로교통공단 수입대체경비의 최근 5년(2004~2008년) 간 초과징수액은 연평균 44억원(9.6%)

〈최근 5년간 도로교통공단 자체수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항 목	2005		2006		2007		2008		2009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예상	
계	33,120	36,478	39,249	46,147	45,626	56,759	48,464	64,158	49,017	55,773	
재산 수입	소 계	1,536	1,646	1,435	1,810	1,514	1,551	1,616	5,865	2,097	4,590
	임대수입	1,268	990	1,035	1,047	996	1,144	1,056	1,192	1,096	1,134
	이자수입	268	656	400	763	518	407	560	4,673	1,001	3,456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	292	-	132	-	2,193	-	2,065	-	270	
관유물매각대	-	24	-	83	-	98	-	39	-	237	
차입금및여유자금	-	33	-	37	-	42	-	76	-	76	
수입 대체 경비	소 계	31,584	34,478	37,814	44,085	44,112	52,875	46,848	56,113	46,920	50,600
	용역수입	21,549	25,489	27,220	33,146	32,082	37,724	33,580	39,631	33,559	37,791
	유료교육	7,872	7,059	8,294	8,186	9,500	11,826	10,485	13,303	10,361	10,361
	방송협찬	2,163	1,930	2,300	2,753	2,530	3,325	2,783	3,179	3,000	2,448
내부수입및기타	-	5	-	-	-	-	-	-	-	-	

자료: 도로교통공단

- 국회는 2008년 결산 심의과정에서 도로교통공단의 자체수입 과소편성으로 인한 출연금 과다편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공단의 자체수입 예산을 최근 수납 실적을 기초로 현실화시킬 것을 시정요구하였으나 2010년도 예산안에 미반영되었는바, 자체수입 예산을 재산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출연금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공단은 사업수입 실적이 매년 계획을 초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인단속장비 관리용역 수량 감소를 이유로 2010년도 수입예산안을 전년도 예산 대비 48억원 감액편성하였음. 그러나, 감액 소요의 반영은 전년도 예산(계획)이 아닌 수납액(실적)을 기준으로 이뤄져야 하므로, 2009년도 수납액 506억원에 감액 소요 48억원을 반영할 경우 2010년도 사업수입은 정부안보다 37억원 증액된 458억원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자체수입 산정시 과소계상되거나 누락된 재산수입,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등 15억원을 반영할 경우 자체수입은 총 52억원이 늘어나고, 그만큼 도로교통공단 출연금을 감액할 수 있음

[자 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안 분석 V」, 2009. 11.

[답 당] 오세일 예산분석관(788-4640)

[개 요]

- 경찰청 소관 일반회계 교통안전활동 사업의 세사업인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방안 시범도시 운영 사업
 - 예산안: 150억원(신규사업)
 - 사업추진방식 : 지자체보조(국비보조를 70%)
 - 사업기간 : 2010~2011
 - 20~40만 인구 2개 도시, 40~60만 인구 2개 도시, 60~80만 인구 1개 도시 등 총 5개 도시 지원
- 인구 30~70만 규모 중소도시를 선정하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2009년 4월 발표한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방안’에서 제시된 모든 과제를 패키지로 시행하도록 지원

〈2010년도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방안 시범도시 운영사업 예산안 편성현황〉

(단위: 백만원, %)

	2009 (본예산)	2010안	전년대비	
			증가액	증가율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방안 시범도시 운영	-	15,000	15,000	-

자료: 경찰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자료」, 2009. 10.

[현안 검토]

- 시범도시에서 실시될 과제들은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관리, 회전 교차로 설치, 일방통행의 확대 등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교통 안전시설 및 도로에 관련된 조치들로서 원칙적으로 지방비로 수행하여야 함
 -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신호기 및 안전표지(교통안전시설)를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일체의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 「도로법」 제67조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는 “국도”에 관한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한 비용은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여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 현재까지 진행된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1단계, 2단계 과제들도 별도의 국고지원없이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추진
- 총사업비를 정함에 있어 현장실사를 통해 비용을 계산한 것이 아니라, 인구와 도로·교통 예산액이 비례한다는 가정에 근거하여 사업비 규모를 정하고 있어 산출근거가 부정확하고 사업계획이 미흡한 것으로 보임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방안 시범도시 총사업비 산출기준〉

도시규모 (인구기준)	기준 도시	'09 도로·교통 예산액(천원)	1개소당 단가(억원)	개소수	사업비 총액(억원)
20~40만	A	7,122,012	60	2	120
40~60만	B	12,574,421	90	2	180
60~80만	C	13,193,420	120	1	120
계			270	5	420

자료 : 경찰청

- 경찰청은 인구 30만 규모의 도시 한 군데(원주)를 현장실사하여 비용을 산정한 결과 약 6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 도시를 기준으로 인구규모와 도로·교통예산이 비례한다는 가정에 따라 40~60만 인구도시의 단가를 90억원, 60~80만 인구도시의 단가를 120억원으로 하여 예산을 편성함
 - 그러나, 인구규모와 도로·교통예산이 정확히 비례하는 것은 아니며, 도로·교통예산액의 규모는 인구뿐만 아니라 해당 지자체의 재정여건, 도로율, 면적, 산업구조 등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되는 것임
 - 교통운영체계선진화방안의 각 세부과제들은 해당 도시의 도로구조, 교통량, 교통안전시설 설치현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단순히 인구에 비례하여 예산액을 산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현장실사를 하지 않고서는 그 도시에 어느 정도 비용이 소요되는지 알기 어려움
- 교통운영체계선진화방안에 포함된 세부과제들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조치들이고, 교통문화의 변화를 수반해야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조치들이므로 충분한 여론수렴 필요
- 적색신호시 우회전 허용(RTOR)을 선별적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우회전 전용신호등을 설치한다거나, 자전거 전용신호등을 설치하는 과제는 아직 관련 법령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임
 - 경찰청은 2009년 7월에 교통운영체계의 선진화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도로교통공단,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대학교통학회 등에 발주하여 그 결과가 2010년 3월에 나올 예정이므로, 동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인 추진전략으로 보임
-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방안의 세부과제들은 원칙적으로 지방비 부담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점, 예산안의 산출근거가 부정확하여 사업계획이 미흡하다는 점,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시범도시 운영사업을 한꺼번에 5개 도시를 추진하기보

다는 소규모 2개 도시 정도를 시범적으로 추진한 후 그 성과를 보아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108억원 감액조정 필요

【부대의견】

“경찰청은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방안 시범도시를 선정함에 있어 지방비만으로는 교통운영체계선진화 과제를 추진하기 어려운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한다”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안 분석 V」, 2009. 11.

[답 당] 오세일 예산분석관(788-4640)

[개 요]

- 경찰청 소관 일반회계 전의경대체지원 사업의 세사업인 집회시위 관리장비
 - 예산안: 59억 8,800만원(전년대비 32억 4,000만원, 117.9% 증)
 - 사업추진방식 : 직접수행
 - 사업기간 : 계속
- 집회시위 관리를 위하여 조명차, 물포, 소화기, 이격용분사기, 차벽트럭 등을 구입

〈2010년도 집회시위 관리장비 예산안 편성현황〉

(단위: 백만원, %)

	2009 (본예산)	2010안	전년대비	
			증가액	증가율
집회시위 관리장비	2,748	59,88	3,240	117.9

자료: 경찰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자료」, 2009. 10.

[현안 검토]

- 간이소화기 구입예산, 다목적 차량 구입 예산 등 5억 6,200만원 감액 필요
- 물포구입예산을 조정하여 물포와 물보급차의 수량이 균형을 맞추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국회는 2009년도 예산안 심의시 물포와 물보급차의 수량을 동일하게 맞추어 물포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물포와 물보

급차를 각각 4대씩 구매하려던 경찰청의 계획을 수정하여 물보급차 11대 구입예산만을 반영하였음

- 현재 물포 17대 물보급차 16대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2010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물포 2대 구입예산을 조정하여, 물포 1대와 물보급차 2대를 구입할 필요가 있음 (5,000만원 감액)

□ 간이소화기는 소화기 본래의 목적보다는 주로 시위대와의 신체접촉을 막는 이격용으로 사용되어왔으나, 2010년부터 이격용 분사기가 전격 도입될 예정이고, 작은 용량 및 일회용이라는 점으로 인해 효과가 떨어지므로, 추가구매예산(3,200만원)은 삭감할 필요가 있음

□ 다목적 차량은 기존의 조명차에 방충장비와 영상촬영기능을 탑재한 신규장비로, 향후 2년 간 매년 9대씩을 추가로 구매할 예정이나, 신규장비의 필요성 및 활용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일률적으로 지방청당 최소 1대 이상 구비하겠다는 계획은 다소 성급하다고 판단되므로, 6개 권역당 1대씩을 보급하여 1년간 그 활용도를 검증하고 추가 소요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 현재 2대를 보유한 서울청을 제외한 경기, 충청, 대구·경북, 부산·경남, 호남에 1대씩 5대를 구매하고 4대분의 예산 4억 8,000만원 삭감 필요

[자 료]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2009. 11.

[담 당] 오세일 예산분석관(788-4640)

[개 요]

- 경찰청 소관 일반회계 지방청수사활동 중 부검안경비
 - 예산안: 49억 2,500만원(전년대비 21억 3,200만원, 76.3% 증)
 - 사업추진방식 : 직접수행
 - 사업기간 : 계속
 - 세부편성내역 : 부검비 11억 5,000만원, 사체운구경비13억 5,000만원, 검안비 22억원, 부대경비 2억 2,500만원
- 부검안경비는 변사체에 대하여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의사에게 검안을 의뢰 실시하고, 검사지휘에 따라 대학병원 등에서 부검을 실시하는 경우 지급하는 비용임

〈2010년도 부검안경비 예산안 편성현황〉

(단위: 백만원, %)

	2009 (본예산)	2010안	전년대비	
			증가액	증가율
부검안경비	2,793	4,925	2,132	76.3

자료: 경찰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자료」, 2009. 10.

[현안 검토]

- 경찰청은 2010년도 예산안에서 부검비와 검안비의 단가를 2009년도보다 2배 인상하여 편성하고 있는데, 이는 해양경찰청의 부검비와 검안비 단가보다 높은 수준
 - 2009년도에는 부검비는 1건당 25만원, 검안비는 1건당 5만원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2010년도 예산안에는 부검비는 1건당 50만원, 검안비는 1건당 10만원을 기준으로 편성하고 있음

- 해양경찰청의 경우 2010년도 예산안에서 부검비 단가는 40만원, 검안비 단가는 3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음
- 동일한 업무에 대해 단가를 달리하여 편성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경찰청의 인상률이 해양경찰청보다 높을 경우 향후 부처간 형평성을 이유로 전반적인 비용인상 요구를 촉발할 수 있으므로, 2010년도에 단가를 2배 인상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인상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다만, 현재의 검안비 단가를 해양경찰청에 맞추어 인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부검비 인상분만 해양경찰청과 동일하게 40만원으로 조정함으로써, 2010년도 부검비 증액분 5억 7,500만원 중 2억 3,000만원을 삭감할 필요가 있음

[자 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안 분석 V」, 2009. 11.

[담 당] 오세일 예산분석관(788-4640)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업무이양 여부와 청사이전사업의 연계 검토 필요

[개 요]

- 경찰청 소관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이전사업
 - 예산안: 21억 4,400만원(전년대비 17억 1,700만원, 402.1% 증)
 - 사업추진방식 : 직접수행
 - 사업기간 : '09~'12
 - 총사업비 : 142억 4,500만원
 - 법적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제3항(공공기관의 지방이전)
 - 세부편성내역 : 토지매입비 16억 8,000만원, 기본설계비 및 실시설계비 4억 6,400만원
-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혁신도시로 이전하기 위한 청사신축 예산

〈2010년도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이전 예산안 편성현황〉

(단위: 백만원, %)

	2009 (본예산)	2010안	전년대비	
			증가액	증가율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이전	427	2,144	1,717	402.1

자료: 경찰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자료」, 2009. 10.

[현안 검토]

- 동 사업은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청사를 울산 혁신도시로 이전하려는 사업이나,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업무 이양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도로교통공단의 경우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을 추진 중이므로,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업무 이양 여부에 대한 법률안 심의가 완료된 이후에 청사 이전을 논의하는 것이 타당함

- 정부는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업무를 도로교통공단으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08년 11월 28일 제출하여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
- 2009년에 편성된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이전부지 매입비 4억 2,700만원은 9월말 기준으로 전액 집행되지 못하고 있음

[자 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안 분석 V」, 2009. 11.

[담 당] 오세일 예산분석관(788-4640)

[개 요]

- 경찰청 소관 일반회계 범죄감식 및 관리사업 중 다기능 현장증거분석실 구축
 - 예산안: 20억 7,000만원(전년대비 15억 9,000만원, 331%증)
 - 사업추진방식 : 직접수행
 - 2007년 서울청에 대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9년까지 16개 지방청에 대해 총 16억 3,000만원 기투입
- 버스형 차량 내에 각종 과학수사장비를 탑재한 이동식 다기능 현장증거분석실 3식을 구축
 - 연쇄살인·대규모 화재 등 중요 사건사고 현장에서 채취한 증거물의 분석·감정을 위하여 지방청 실험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증거가 훼손되거나 감정이 지연될 우려
 - 실험실 1식당 차량 1억 5,000만원, 기반시설 1억 3,000만원, 무선 서버 3억원, 장비 1억 1,000만원 등 6억 9,000만원 소요

〈2010년도 다기능 현장증거분석실 구축 예산안 편성현황〉

(단위: 백만원, %)

	2009 (본예산)	2010안	전년대비	
			증가액	증가율
다기능 현장증거분석실 구축	480	2,070	1,590	331

자료: 행정안전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자료」, 2009. 10.

[현안 검토]

- 이동식현장증거분석실의 기능이 현장증거분석실 구축사업과 다소 중복되고, 2010년도에 최초로 제작, 도입되는 대형버스 형태의 이동식 증거분석실이 한국적 수사현실에 맞는지에 대한 보다 면밀한 사전검증이 필요하므로 도입 물량 조정 등 신중한 사업추진 필요
-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 외에는 유전자감식장비를 포함한 과학수사장비를 구축하고 있어 과학수사장비 구입 및 다기능 현장증거분석실 구축사업과 다소 중복

[자 료] 국회행정안전위원회 「201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2009. 11.

[담 당] 오세일 예산분석관(788-4640)

[개 요]

- 해양경찰청 소관 일반회계 해양오염예방사업
 - 예산안: 45억 1,000만원(전년대비 34억 3,300만원, 43.2% 감)
 - 사업추진방식 : 직접수행
 - 사업기간 : 계속
 - 방제·분석장비 확보 7억 4,000만원, 비축기지 방제물품 구입 25억 7,000만원, 방제운영 및 해양오염 방제 민간참여제도 운영 등 10억 1,200만원, 국제협력 1억 8,800만원
- 해양오염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깨끗한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오염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피해를 최소화

〈2010년도 해양오염예방 예산안 편성현황〉

(단위: 백만원, %)

	2009 (본예산)	2010안	전년대비	
			증가액	증가율
해양오염예방	7,943	4,510	-3,433	-43.2

자료: 해양경찰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자료」, 2009. 10.

[현안 검토]

- 동 사업의 세부 내역 중 해양오염방제 민간참여제도 운영은 해양환경보전활동 프로그램 운영,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 해양쓰레기 zero운동, 해양오염 신고보상금 등 3억 5,5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그런데, 해양오염에 대한 정화활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8조제1항에 의거하여 국토해양부와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바, 해양경찰청

은 관련법상 해양 쓰레기 정화의 직접적인 소관 부처라고 보기 어려우며 해양경찰인력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해양경찰의 임무에 포함 시키기보다는 국토해양부로 일원화하는 것이 타당함

- 국토해양부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는 ‘환경관리해역 관리 및 시스템 구축’ 사업에 해양환경 시민참여 프로그램 육성지원으로 2억원, ‘해양 수자원관리사업’에 해양쓰레기 정화로 29억원이 편성되어 있음

[자 료]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2009. 11.

[담 당] 오세일 예산분석관(788-4640)

[개 요]

- 해양경찰청 소관 일반회계 직무교육운영사업 중 적성검사 연구개발
 - 예산안: 4억원(신규)
 - 사업추진방식 : 직접수행, 사업기간 : 단년도
- 최근 잇따른 경찰관 범죄·비위행위로 국민적 불신과 우려 증대에 대응하여 경찰관 직무형태를 의학적·과학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신규채용 시 적성 부적격자를 배제하고자 함

〈2010년도 적성검사 예산안 편성현황〉

(단위: 백만원, %)

	2009 (본예산)	2010안	전년대비	
			증가액	증가율
적성검사 연구개발	-	400	400	순증

자료: 해양경찰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자료」, 2009. 10.

[현안 검토]

- 경찰청이 2003년에 개발한 적성검사 프로그램과 별도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지 재검토 필요(4억원 전액 감액)
 - 해양경찰청은 경찰청이 '92년에 개발한 프로그램을 '93년부터 사용
 - 그동안 경찰청이 개발한 프로그램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03년에 경찰청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공동 사용해본 바도 없이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음

[자 료]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2009. 11.

[답 당] 오세일 예산분석관(788-4640)

[개 요]

- 해양경찰청 소관 일반회계 해상안전활동사업의 세사업인 해상교통관제사 양성
 - 예산안: 3,900만원(신규사업)
 - 사업추진방식 : 직접수행
 - 사업기간 : 계속
- 해양경찰청이 연안교통관제(연안 VTS³⁰)업무를 국토해양부로부터 이관받기로 함에 따라 해상교통관제사 자격인증교육(총 20명)을 실시하기 위한 비용
 - 2007년 12월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후 국무총리실은 우리나라 연안을 항해하는 선박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연안해역의 해상교통관제(VTS)업무를 해양경찰청이 수행하도록 조정함
 - 이와 관련하여 '09년 6월 8일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2010년도 해상교통관제사 양성 예산안 편성현황〉

(단위: 백만원, %)

	2009 (본예산)	2010안	전년대비	
			증가액	증가율
해상교통관제사 양성	-	39	39	순증

자료: 해양경찰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자료」, 2009. 10.

30) VTS(Vessel Traffic Services)란 선박통행정보서비스 시스템으로서 선박통행의 안전과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항만과 출입항로를 항해하거나 이동하는 선박의 움직임을 레이다, CCTV, VHF 등 첨단 과학장비로 관찰하여 안전운항을 위한 조인 또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임

[현안 검토]

- 연안교통관제(연안 VTS)업무를 국토해양부로부터 이양받는다 하더라도, 기존에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근무하던 관제사 인력이 있으므로, 별도로 신규 관제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는지 재검토 필요(3,900만원 전액 감액)
 - 현재 15개 VTS 중 연안 VTS는 진도 1곳으로 관제사 8명이 근무 중
 - 해양경찰청은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른 해안경계인력 소요, 'PSI 안보리결의 1874호' 이행을 위한 특공대 인력증원 소요 등 신규 인력소요가 증가하여 인력부족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자료]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2009. 11.

[담당] 오세일 예산분석관(788-4640)

[개 요]

□ 소방방재청 소관 일반회계 재난피해자심리안정지원사업

- 예산안: 1억 8,000만원(전년 대비 1억 2,000만원, 40% 감)
 - 사업추진방식 : 지자체보조(국비보조율 50%)
 - 사업기간 : '07~ 계속
 - 시·도재난심리지원센터를 지원하는 자치단체보조금 1억원, 자치단체와 중앙 간 네트워크 유지·강화 등 사업의 운영비 8,000만원으로 구성

〈2010년도 재난피해자심리안정지원사업 예산안 편성현황〉

(단위: 백만원, %)

	2009 (본예산)	2010안	전년대비	
			증가액	증가율
재난피해자심리안정지원	300	180	-120	-40.0

자료: 소방방재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자료」, 2009. 10.

[현안 검토]

□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실적이 연례적으로 부진함

- 2007년도 예산액 13억 9,000만원 중 9.5%인 1억 2,500만원만 집행되었고, 8억 3,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억 4,500만원 불용됨
- 2008년도에는 전년도 이월액 8억 3,9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3억 8,500만원 중 92.2%인 12억 7,7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이 높은 것으로 보이나, 지자체의 실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전체 자치단체보조금 3억 4,900만원 중 46.5%인 1억 6,200만원만 집행됨
 - 울산(0.4%), 경남(1.1%), 서울(3.1%) 등은 집행률이 5% 미만

- 2009년 8월말 기준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울산 0.2%, 충남 2.4%, 대구 4.9% 등 전체 평균 집행률이 39.7%에 불과

〈재난피해자심리지원사업 지자체별 국고보조금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사·도	'08예산 집행			'09예산 집행(8월말 기준)		
	국고보조금	집행금액	비율	국고보조금	집행금액	비율
서울	21,832	673	3.1	10,000	3,624	36.2
부산	21,832	20,973	96.1	10,000	8,715	87.1
대구	21,832	5,425	24.0	10,000	493	4.9
인천	21,832	8,086	37.0	10,000	5,704	57.0
광주	21,832	3,095	14.2	10,000	1,017	10.2
대전	21,832	2,865	13.1	10,000	549	5.5
울산	21,832	96	0.4	10,000	17	0.2
경기	21,832	19,702	90.2	10,000	9,339	93.4
강원	21,832	21,782	99.8	18,227	17,167	94.1
충북	21,832	8,041	36.8	10,000	7,183	71.8
충남	21,832	3,151	14.4	18,000	437	2.4
전북	21,832	21,832	100	10,000	3,344	33.4
전남	21,832	21,832	100	18,000	7,300	40.5
경북	21,832	11,829	54.2	18,000	9,447	52.5
경남	21,832	237	1.1	10,000	1,484	14.8
제주	21,832	12,743	58.4	18,000	3,698	20.5
계	349,312	162,362	46.5	200,227	79,518	39.7

자료: 소방방재청

- 시·도재난심리지원센터의 2009년 활동실적을 살펴보면, 부산, 경기, 충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시·도 재난심리지원센터의 활동이 전문요원 자체교육 또는 워크숍 실시에 그치고 있음

〈시·도 재난심리지원센터의 2009년 활동실적〉

시·도	지정일자	지정기관	인원	주 소	활동상황
서울	'09. 4. 17	서울시 정신보건센터	20명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06 일양빌딩 별관 7층	전문요원 워크숍 실시('09.6월)
부산	'08. 8. 26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10명	부산시 진구 개금동 633-165	심리지원관련 수첩 제작, 호우피해주민 심리상담활동 (20명/'09.7~8월)
대구	'09. 9. 22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4명	대구광역시 중구 동 인동 2가 101번지	전문요원 워크숍 예정('09.11월중)
인천	'09. 7. 22	(사)한국EAP협회 인천희망 나눔센터	5명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637번지 4층	전문요원 워크숍 예정('09.10.27~28)
광주	'09. 7. 31	(사)한국EAP협회 광주희망 나눔센터	4명	광주시 북구 대촌동 958-14번지 한국산업단지공단 서남지역본부	호우피해주민 심리 상담활동(4명/'09.9월)
경기	'08. 11. 28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신경정신과	4명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74	전문요원 자체교육 실시('09.6월), 호우피해주민 심리 상담활동 (7명/'09.7월)
	'08. 11. 28	카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정신과	3명	수원시 팔달구 지동 93-6	
강원	'08. 10. 8	한림대학교 심리학과	3명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길 39	전문요원 워크숍 실시('09.7월)
인천	'09. 7. 22	(사)한국EAP협회 인천희망나눔센터	5명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637번지4층	전문요원 워크숍 예정('09.10.27~28)
충북	'09. 8. 18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3명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410번지	호우피해주민 심리 상담활동(8명/'09.8월)
전북	'09. 9. 29	예수대학교 산학협력단	3명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1가 168-1번지	전문요원 워크숍 예정('09.11월중)
전남	'08. 12. 30	동신대학교 심리상담학과	5명	전남 나주시 건재로 253	전문요원 자체교육 실시('09.2월)

자료: 소방방재청

□ 집행실적이 부진하고, 성과가 미흡한 점을 감안하여 사업의 지속여부 재 검토 필요(1억 8,000만원 전액 감액)

[자 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안 분석 V」, 2009. 11.

[담 당] 오세일 예산분석관(788-4640)

XI. 일반공공행정 분야

-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2010년 지출규모는 49조 4,926억원으로서 2009년도에 비해서 1.8% 증가, 2010년 정부총지출 규모인 291.8조원의 17.0%를 차지함
 - 부문별로는 지방재정·재정지원 부문의 지출규모가 27조 2,738억원으로서 2009년 본예산에 비해 6.9% 감소
 - 동 부문에는 내국세 법정률(18.97%)에 해당하는 금액(지방교부세의 2010년 예산안은 26조 5,800억원)으로 지출되는 지방교부세가 포함되어 있음
 - 2008년 세제개편과 2009년 추경예산으로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하락, 이에 따라 전체적인 지방재정·재정지원 부문의 2010년 투자규모도 전년 본예산에 비해서 대폭 하락
 -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의 2010년 지출규모는 7,220억원으로 전년 본예산대비 10.3% 증가, 이는 2010년 상반기에 있을 전국 동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대비한 지출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
 - 재정·금융 부문은 18조 3,991억원으로 전년 대비 15.1%가 증가, 일반행정 부문은 3조 977억원으로서 전년 대비 14.7%가 증가

〈 일반공공행정분야 자원배분현황 〉

(단위: 억원, %)

	2009년 예산	2010년 예산안	전년 대비 증감	
			증감액	증감률
일반공공행정분야	486,377	494,926	8,549	1.8%
지방재정·재정지원	293,020	272,738	-20,282	-6.9%
입법 및 선거관리	6,547	7,220	673	10.3%
재정·금융	159,794	183,991	24,197	15.1%
일반행정 등 기타	27,016	30,977	3,961	14.7%

자료: 대한민국정부,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 2009.10.

- 「2009 ~ 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2013년까지 일반공공행정분야 투자는 연평균 3.0%의 증가율을 유지할 계획임
 - 재정투자규모는 2009년도 48조 6,377억원에서 2013년도에 54조 7,894억원으로 증가할 계획임

〈 일반공공행정분야 투자계획 〉

(단위: 억원, %)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일반공공행정분야	486,377	494,926	527,214	540,385	547,894	3.0
지방재정·재정지원	293,020	272,738	296,885	303,822	319,657	2.2
입법 및 선거관리	6,547	7,220	7,216	13,464	8,537	6.9
재정·금융	159,794	183,991	193,581	192,636	191,146	4.6
일반행정	27,016	90,977	29,532	30,463	28,554	1.4

자료: 대한민국정부,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09.10.

[자 료] 국회예산정책처, 「일반공공행정분야 재원배분분석」, 『NABO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2009. 11.

[답 당] 김경수 예산분석관(788-4643)

기준환율 변경을 통한 외화예산안의 원화경비액 감액 필요

[개 요]

- 외화예산은 다음회계연도에서 외화로 지출될 금액을 결정하고, 소요 외화에 예산 편성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원화를 예산으로 편성
 - 예산안: 41억 8,057만 달러(전년대비 17.0% 증)
 - 2010년 예산안의 원/달러 기준환율은 1,230원/\$
 - 기준환율 1,230원/\$ 적용시 원화경비액은 총 5조 1,421억원 편성(전년대비 10.7% 증)
 - 대표적인 외화예산: 무기구입관련 예산, 공무원 국외여비, 국제기구분담금 등

〈2010년도 외화예산안〉

(단위: 천 달러, 억원, %)

구 분	2009 (추경)		2010안		전년대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증가액	증가율	
합 계	외화	3,574,452	100.0	4,180,565	100.0	606,113	17.0
	원화	46,468		51,421		4,953	10.7
- 일반회계	외화	3,305,557	92.5	3,916,827	93.7	611,270	18.5
	원화	42,972		48,177		5,205	12.1
- 특별회계	외화	268,895	7.5	263,738	6.3	-5,157	-1.9
	원화	3,496		3,244		-252	-7.2

주: 각 연도 원화예산은 외화예산에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임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0년도 예산안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2009. 10

- **정책적 여건:** 외화예산은 환율 변동에 따른 환위험에 노출
 - 외화예산은 예산 편성의 기준환율을 적용한 원화경비액을 예산으로 편성하고, 지출 시점에 시장환율을 사용하여 외화로 환전하여 지출
 - 환율이 변동하여 시장환율이 기준환율보다 상승할 경우 원화경비 부족액 발생
 - 시장환율이 기준환율보다 하락할 경우에는 원화경비 여유재원 발생

[현안 검토]

- 2010년 예산안의 기준환율 1,230원/\$은 국내·외 주요 기관의 2010년 환율 전망치(1,100~1,200원/\$)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국내·외 주요 기관의 2010년 환율 전망치〉

(단위: 원/\$)

구분	국 내							국 외	
	국회예산 정책처	KDI	한국 경제연	한국 금융연	삼성 경제연	LG 경제연	현대 경제연	글로벌 인사이트	블룸 버그
전망일	10.16	10.12	10.16	10.28	9.23	9.21	9.16	9.28	8.17
전망치	1,186	1,054	1,145	1,120	1,130	1,140	1,150	1,054	1,100

자료: 각 기관

- 예산의 효율성 및 재원배분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현재의 기준 환율 1,230원/\$을 각 기관의 전망치 수준으로 낮춤으로써 대응되는 원화예산안을 감액할 필요
 - 기준환율이 실제 환율보다 높을 경우 원화예산안은 필요 예산보다 과다편성 되고 이로 인해 예산이 불용되거나 불필요하게 사업이 확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

- 기준환율을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1,186원/\$으로 낮출 경우 약 1,800억원의 예산 절감 가능

〈기준환율 변경을 통한 2010년 외화예산의 원화경비 감소액 전망〉

(단위: 천 달러, 억원)

구 분	외화예산안	원화경비액		원화경비 감소액 (A-B)
		정부(A) ¹⁾ (1,230원/\$)	예산정책처(B) ²⁾ (1,186원/\$)	
합 계	4,180,565	51,421	49,582	1,839
일반회계	3,916,827	48,177	46,454	1,723
특별회계	263,738	3,244	3,128	116

주: 1) 2010년 외화예산안에 정부의 예산안편성 기준환율 1,230원/\$ 적용시 산출된 원화경비.

2) 2010년 외화예산안에 국회예산정책처 환율전망치 1,186원/\$ 적용시 산출된 원화경비.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 11월 현재, 정부의 기준환율 결정방식에 따라 기준환율을 재산출해 보면 최근 3개월(9.1~11.29 현재)간 평균환율은 1,185.15원/\$(중가기준)임

[자 료] 국회예산정책처, 「2010년도 외화예산안 분석」, 『예산안 분석 II』, 2009. 11.

[담 당] 황선호 예산분석관(788-4624)

[개요]

-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지원되는 재정은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있음
 - 2010년 예산안 : 지방교부세 26.6조원(추경대비 116억 증), 국고보조금 31.1조원(추경대비 2.3조원 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1.8조원(추경대비 1.4조원 증)
 - 교부금(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안)은 2008년도 예산이 전년대비 17.7% 증가, 2009년 예산은 전년대비 4.5%감, 2010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2.5% 증
 - 국고보조금 예산은 2008년도 예산이 전년대비 18.3% 증, 2009년 예산도 전년대비 26.1%로 큰 폭으로 증가, 2010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7.0% 감소
- 2010년 정부의 지방재정안정화와 자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
 - 지방재정 안정화를 위해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 분권교부세 운영기한을 연장,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위하여 기존 균특회계를 광특회계로 개편하고 포괄보조금 제도를 도입
 - 큰 흐름은 지방정부의 재정자주권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현안 검토]

- 2008년 감세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5년간 지방재정 30.2조원 감소
 -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인해서 기준연도 방식으로 계산된 국세세입의 감소규모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총 90조 1,533억원
 - 지방재정 감소규모는 2008~2012년 동안 총 30조 1,741억원
 - 소득세, 법인세의 감세로 인한 주민세 감소가 6조 2,784억원
 - 내국세 감세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가 13조 6,032억원
 - 종합부동산세 감세로 인한 부동산교부세 감소 10조 2,925억원
 - 실제로 지방교부세의 2010년 예산안은 26.6조원인 바, 지방교부세 예산의 누적 감액분은 2008~2010년 동안 5.6조원임(2008년 예산 기준)
 - 2008년 감세와 세제개편, 2009년 감액 추경 등에 기인
- 지방소비세 도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지방소비세 도입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은 연간 6.5조원의 결손
 - 정부는 의존재원 중심의 지방재정 구조를 개선하고,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를 2010년부터 도입하기로 확정
 - 2010년부터 부가가치세의 5%(2010년 예산기준 2.4조원)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소비세를 신설
 -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지방재정 세입 순증규모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총 4조 4,355억원
 - 2010년 부가가치세 세입예산기준으로 연간 2조 4,334억원의 지방소비세 수입이 지방정부의 자체재원으로 산입,
 - 부가가치세 5% 지방세 전환으로 인한 연간 지방교부세 감소분(지방교부세 자연감소분+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분)이 9,549억원

-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연간 세입 순증규모는 1조 4,785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지방소비세가 도입되더라도 지방재정 순증규모가 작아서 감세로 인한 세입결손을 보전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음
 - 2008년 감세와 세제개편으로 2010년 지방재정 세입은 7.9조원의 감소가 예상되지만, 지방소비세는 1.5조원 순증에 그쳐서 지방재정은 여전히 6.5조원의 결손이 예상됨
- 지방재정 감소분 보전을 위한 목적예비비 편성 등 대책마련 필요
- 중앙정부는 감세정책하에서도 국채발행 등을 통한 적자재정을 통해서 적절한 재정지출의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 가능
 -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감세로 인해서 자체재원(지방세)과 의존재원(지방교부세)이 모두 감소하기 때문에 적절한 재정지출의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 중앙정부의 감세는 별다른 재정정책 수단이 없는 지방정부의 재정을 압박할 수밖에 없고 이럴 경우 지방정부는 재정압박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역공공재 지출에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음
 - 지방소비세가 부가가치세의 10%로 증대되는 2012년까지는 지방재정 결손분에 대한 일정부분을 목적예비비를 편성하여 보전할 것을 제안
 - 현실적으로 지방재정결손이 예상되는 6.5조원을 모두 보전할 수는 없음
 - 중앙정부 재원의 한계와 지방정부의 자구노력을 감안
 - 최소한 작년 기준 목적예비비 수준인 1.9조원 정도의 지방재정 보전 목적예비비를 편성할 것을 제안함

□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방정부간 재정형평성 악화 우려

-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세입 순증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서울지역으로서 동 기간동안 총 1조 1,612억원의 지방세입이 순증할 것으로 예상
- 다음으로 경기 9,242억원, 경남 5,894억원, 부산 5,538억원, 대구 3,587억원, 경북 3,277억원, 충남 3,088억원의 지방세입이 순증할 것으로 예상
-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이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세입순증이 큰 이유는 이들 지역의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율이 원래 50.6% 로 매우 커서 가중치를 적용한 조정비율도 29.0%에 달하기 때문임
-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전남, 전북, 광주, 울산, 강원, 제주 지역 등은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세입순증이 타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전망

□ 지방소비세 배분 관련 권역별 가중치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

- 현재 정부는 지방소비세 도입과 관련하여 「지방세법」 등 7개의 관련 법률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지만, 지방소비세액의 시도별 배분액을 결정할 민간최종소비지출액 통계 연도, 권역별 가중치 등에 대해서는 개정법률안에 규정하고 있지 않음
- 향후 행정입법에 의해 이러한 부분들이 결정될 예정인 바, 이 때문에 정확한 내역이 공개되지 않을 뿐 아니라 행정부의 자의적인 배분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고금관리법」과 「지방재정법」 등에 “지방소비세의 배분에 있어서 재정력에 기초하여 민간최종소비지출액에 대한 권역별 가중치를 설정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

□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를 제고하는 제도적 개선 필요

- 지방소비세 도입과 포괄보조금제도 도입으로 인한 지방정부 자율성 신장되었음
 -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지방정부 재정자립도는 약 2.2%p 상승(2009년 53.6%→2010년 55.8%)
 - 200여개 균특회계 사업의 24개 포괄보조금화
- 중앙정부-지방정부-지방교육재정 간 총재정사용액 기준 재원배분에 있어서도 지방정부의 재원배분 비중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2009년 당초예산기준 : 중앙정부-일반지방정부-지방교육재정 간 재원배분은 42.9 : 43.3 : 13.8
-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필요
 - 지방정부의 재원배분 비중이 증가한 만큼 책임성 강화를 제고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 구체적으로는 지방정부의 세출구조조정방안, 낭비성 예산에 대한 개선 등이 필요

[자 료] 국회예산정책처,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지원 예산안 분석」, 『2010년도 예산안 분석Ⅱ』, 2009. 11.

[담 당] 김경수 예산분석관(788-4643)

[개 요]

- 행정안전부 소관 일반회계 공공기관인턴제운영사업
 - 예산안: 178억 7,800만억원(전년대비 194억 9,500만원, 47.8%감)
 - 사업추진방식 : 지자체 보조(국고 보조율 50%)
 - 사업기간 : '09~계속
 - 지원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제1항(국가 및 지자체의 실업대책 시행의무)
 - 산출근거 : 4,680명 × 764,000원(4대보험료 포함) × 10개월 × 50%(국고보조율)
- 취업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 대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행정현장 체험 및 직업탐색의 기회제공을 통해 역량강화로 경쟁력 있는 우수노동력 양성 기여

〈2010년도 공공기관인턴제운영사업 예산안 편성현황〉

(단위: 백만원, %)

	2009 (추경예산)	2010안	전년대비	
			증가액	증가율
공공기관인턴제운영	37,372	17,878	-19,495	-47.8

자료: 행정안전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자료」, 2009. 10.

[현안 검토]

- 정부는 2010년도에 인턴 1인당 근무시간을 하루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이고, 월 임금수준을 110만원에서 76만 4,000원으로 축소하는 대신, 사업

추진기간을 당초 계획인 5개월에서 10개월로 늘이려 하고 있으나, 사업 추진기간을 5개월로 단축하고, 일일 근무시간 및 임금을 2009년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50억원 감액조정)

- 2009년 근무 중인 공공기관 인턴의 경우 월 110만원의 임금을 받고 있고, 2010년 다른 부처에서 추진하는 인턴사업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할 계획(노동부의 고용서비스 인턴의 경우 월 105만원, 문광부의 관광분야 청년인턴의 경우 월 100만원)
 - 근무시간과 임금수준을 조정할 경우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잃게되며, 인턴제 사업의 매력이 이전보다 크게 떨어져 참여하는 청년대졸자들의 불만이 생길 것으로 우려됨
 - 인턴만 일일 6시간 근무할 경우 기존 근로자와 이질감이 커지고, 단순 반복업무 위주의 업무분장도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음
- 정부가 예상한 국내외 경제여건을 보면 경기부양효과가 점차 가시화되면서 2010년부터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므로, 일일근무시간을 줄여 가면서까지 고용기간을 10개월로 늘릴 타당성이 부족함
- 공공기관 인턴 참가자들이 2010년 상반기 취업시장에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기간을 당초 계획대로 5개월 수준으로 재조정 필요
- 2009년도 사·도별 행정인턴 채용 현황을 살펴보면, 총 1만 3,232명을 채용하였는데, 이 중 사회복지 분야 채용인원은 3,475명(26.3%)
- 전국 읍면동이 3,562개이므로 읍면동 당 약 1명씩 배치된 것으로 보임
 - 사회복지분야 인력수요에 대해서는 수요조사가 이뤄진바 없으며, 향후 실시계획 또한 없는 상태임
 - 다만, 2007년 9월에 보건복지가족부 주최로 실시한 정책세미나에 따르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수는 10,205명(현원 9,805명),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수는 21,890명(현원 21,502명)이며, '08~' 10

년 전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을 전년 대비 매년 20%씩 증원하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전년 대비 매년 30%씩 증원하는 정책과제가 제안된바 있음³¹⁾

- 공공기관 인턴 중 사회복지 분야 채용인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2010년도 예산안 심의시 “정부는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회복지 분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한다” 라는 부대의견을 채택할 필요가 있음

[자 료]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2009. 11.

[담 당] 오세일 예산분석관(788-4640)

31)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홍백의 교수가 “주민생활서비스 환경변화에 따른 공공인력 확충 방안”이라는 정책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임

국가온실가스 인벤토리시스템 구축사업 관련부처 간 조정미흡

[개 요]

- 국무총리실 소관 일반회계 국가온실가스 인벤토리시스템 구축사업의 2010년도 예산안 : 22억원(전년대비 22.2% 증)
 - 녹색성장위원회(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에서 추진, 직접사업 및 출연사업, 출연사업자 미정
- 국가온실가스 인벤토리시스템이란 배출되는 모든 온실가스를 파악하여 기록·유지관리·보고하는 총괄적인 온실가스 관리체계이며, 이를 구축하기 위하여 녹색성장위원회 주관으로 사업장별 배출량 산정 지원, 민간 검증 전문기관 육성 등을 수행하는 사업

〈국가온실가스 인벤토리시스템 구축사업 2010년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09 (본예산)	2010안	전년대비	
			증가액	증가율
운영비	-	27.6	27.6	순증
연구개발비	-	820	820	순증
출연금	1,800	1,352.4	-447.6	-24.9
합계	1,800	2,200	400	22.2

자료: 국무총리실, 2009. 10.

[현안 검토]

- 관계부처인 환경부와 지식경제부 간 업무조정 지연으로 2009년도 예산액 18억원을 전액 집행하지 못하고 있음

- 녹색성장위원회 및 국무총리실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이 통과 되면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주관부처를 결정하고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동 법안은 현재 계류 중에 있음
- 관계부처 간 업무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각 부처가 관련 사업을 2010년도 예산안에 편성함에 따라 비효율적 추진 우려
 - 기후변화대책 관련 부처 간 조정이 지연되는 근본원인은 국제적 추세와 우리나라 산업현실에 대한 고려 사이에서 주관부처 결정이 쉽지 않기 때문
 - 지식경제부는 '온실가스 통계기반구축(44.5억원)', '온실가스배출량 및 감축량 검증(6억원)'사업 등을,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계수개발(16억원)', '국가온실가스 배출계수 검증(4억원)'사업 등을 각각 2010년도 예산안에 편성
 - 기후변화대책 및 국가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관련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2010년도 예산안이 적절히 집행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간 업무조정을 조속히 완료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자문위원회 성격의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직접 예산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측면도 있으므로, 부처 간 업무조정 이후 예산을 이관할 필요가 있음
 - 2009년에 18억원을 국무총리실에 편성한 것은 부처 간 업무조정이 되면 예산을 이관할 것을 계획한 것이었음

[자 료]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온실가스 인벤토리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부처 간 조정미흡으로 예산투자의 비효율성 우려」, 『예산안 분석 V』, 2009. 11.

[담 당] 김민재 예산분석관(788-4642)

[개요]

- 금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모기지론 이차보전 사업
 - 예산안: 4,563백만원(전년대비 16.9% 증)
 - 저소득·무주택 서민의 주택마련을 지원(민간이전)
- 정부의 이차보전을 통하여 저소득·무주택 서민에 대한 모기지론 금리를 0.5~1.0%p 인하함으로써 주택마련을 지원
 -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에 대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모기지론(금리우대 보금자리론) 금리를 차등적으로 지원
 - 연소득 16백만원 이하 1.0%p, 16백만원 초과~18백만원 이하 0.75%p, 18백만원 초과~20백만원 이하 0.5%p 보전

〈모기지론 이차보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09 (본예산)	2010안	전년대비	
			증가액	증가율
모기지론 이차보전	3,903	4,563	660	16.9

자료: 금융위원회,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2009. 10

[현안 검토]

- 국민주택기금(국토해양부 소관)의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사업’과 유사·중복
 - 지원대상이 상당부분 중복 : 부부합산 소득 2,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전용면적 85㎡ 이하, 3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지원

- 금융위원회의 ‘모기지론 이차보전 사업’은 2009년까지 공급되는 금리우대 보금자리론만 지원하고, 2010년부터는 국민주택기금에서 통합운용 필요
 - 2010년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예상 취급분(2,000억원)에 해당하는 모기지론 이차보전 예산 930백만원은 조정 필요
 - 2010년 예상 취급분 평잔 1,000억원 × 평균금리 0.93% = 930백만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모기지론 이차보전 사업과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사업 간의 유사·중복」, 『예산안 분석 V』, 2009. 11.

[담당] 유인규 예산분석관(788-4623)

[개 요]

- 구조조정기금은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 부실징후기업 및 구조개선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효율적인 인수·정리 등을 위하여 2009년에 설치되었으며, 2014년까지 운용될 예정
 - 구조조정기금채권 발행자금, 정부 및 금융기관 출연금, 차입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부실채권의 인수,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 비업무용자산 및 구조개선기업 자산의 인수, 구조조정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 등으로 운용
 - 예산안: 200,000억원(전년대비 동일)

〈2010년 구조조정기금 운용계획안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09계획	2010계획안	전년대비	
			증감액	증감률
구조조정지원	200,000	200,000	-	-
- 금융구조조정지원	150,000	175,000	25,000	16.7
- 기업구조조정지원	50,000	25,000	-25,000	-50.0

자료: 금융위원회

[현안 검토]

- 구조조정기금은 2009~2010년 총 40조원의 재원을 조성하여 61.5조 원 규모의 부실채권과 구조조정기업 자산을 매입할 예정
 - 2009년에는 총 20조원으로 채권액 30.8조원을 매입할 예정

- 금융회사 부실채권 인수정리 사업 15조원으로 부실채권 약 25조원 인수 예정
 - 구조조정기업 자산 인수정리 사업 5조원으로 자산 약 5.8조원 인수 예정
 - 2010년에는 총 20조원으로 채권액 30.7조원을 매입할 예정
 - 금융회사 부실채권 인수정리 사업 17.5조원으로 부실채권 약 27.8조원 인수 예정
 - 구조조정기업 자산 인수정리 사업 2.5조원으로 자산 약 2.9조원을 인수 예정
- 2009년 9월말 현재 금융회사 부실채권 및 구조조정기업 자산 매입실적을 살펴보면, 총 20조원의 계획 중 4.1%인 8,146억원만을 집행하여 실적이 부진
- 금융회사 부실채권 인수정리 사업은 15조원의 계획 중 4.1%인 6,164억원만을 집행하여 은행권 PF대출채권 8,164억원과 일반담보부채권 2,216억원 인수
 - 구조조정기업 자산 인수정리 사업은 5조원의 계획 중 3.8%인 1,982억원만을 집행하여 해운사 보유 선박 17척 인수

〈2009년도 구조조정기금 지원계획 대비 실적〉

(단위: 조원, %)

구 분	연간계획	9월말실적	집행률
금융회사 부실채권	15.00 (25.00)	0.62 (1.04)	4.1 (4.2)
구조조정기업자산	5.00 (5.80)	0.20 (0.20)	4.0 (3.45)
합 계	20.00 (30.80)	0.81 (1.24)	4.1 (4.03)

주: 괄호 안은 채권액(자산가액) 임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 2010년도에도 금융회사 부실채권 및 구조조정기업 자산 인수정리 사업은 2009년과 같이 계획액 대비 집행이 부진할 우려가 있으므로 2010년도 계획액은 집행액 대비 과다편성 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2010년 경제여건을 고려해 볼 때, 인수 대상인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과 구조조정기업의 자산이 감소하여 계획액 대비 집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
- 따라서 2010년 경제상황과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금융기관 부실자산 인수정리 사업 17.5조원과 구조조정기업 자산 인수정리 사업 2.5조원 등 총 20조원인 2010년도 계획액을 전반적으로 감액할 필요
 - 한편, 구조조정기금은 총 지원자금 40조원을 구조조정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하고 있는데 2010년 사업 계획액을 감액할 경우 구조조정기금채권 발행 계획도 감액액만큼 축소할 필요

[자 료] 국회예산정책처, 「구조조정기금의 부실자산 인수정리 사업규모 축소 필요」, 『예산안 분석 V』, 2009. 11.

[답 당] 황선호 예산분석관(788-4624)

[개 요]

- 국가보훈처 소관 일반회계 ‘현충시설 건립사업’ 중 ‘순국선열 위패봉안관 건립사업’의 2010년도 예산안: 25억 8,100만원, 신규사업
 - 총사업비 287억 8,100만원, 2010~2012년
- 기존 봉안관(서대문독립공원 내 독립관)의 환경이 열악하여 새로운 위패봉안관을 설립하는 사업으로서, 2010년부터 추진될 예정

〈순국선열 위패봉안관 건립사업 2010년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09 (본예산)	2010안	전년대비	
			증가액	증가율
합 계	-	2,581	2,581	순증

자료: 국가보훈처, 2009. 10.

[현안 검토]

- 설계비 및 감리비 산정 시 기준요율을 높게 적용하여 일부 과다 산정한 측면이 있음
 - 위패봉안관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묘지관련시설'이며, 묘지관련시설은 국토해양부 고시 및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지침 등에 의하면 '보통의 공종'에 해당되지만, 국가보훈처는 동 시설물을 '복잡한 공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설계비 및 감리비 요율을 높게 적용
 - 동 시설물을 '보통의 공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설계비 및 감리비를 재산정할 경우, 예산안 일부 조정 검토 가능

- 부지선정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 간 협의가 미흡하여 사업지연 우려가 있음
 - 국가보훈처는 '용산가족공원'을 이전부지로 잠정 결정한 상태이지만, 순국선열유족회 측은 이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하고 있어서 부지선정이 지연될 우려가 있으며 이 경우 착공이 지연될 수 있음
 - 관계 기관 간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부지선정이 원만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현충시설 건립사업 중 순국선열 위패봉안관 건립사업비 일부 과다 산정」, 『예산안 분석 V』, 2009. 11.

[답 당] 김민재 예산분석관(788-4642)

[개요]

- 국가보훈처 소관 일반회계 6·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의 2010년도 예산안: 235억원, 신규사업
 - 직접사업, 단년도사업
- 6·25전쟁 60주년을 맞이하여 각종 기념사업을 수행하여 6·25전쟁의 역사적 의미를 일깨우고 평화의식을 고취하려는 사업

〈6·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 2010년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09 (본예산)	2010안	전년대비	
			증가액	증가율
국제 학술회의	-	453	453	순증
UN참전용사 현지위로행사	-	2,189	2,189	순증
참전유공자 전적지 순례	-	1,082	1,082	순증
UN참전용사 재방한 및 청소년평화캠프	-	7,024	7,024	순증
기념사업위원회 운영	-	5,119	5,119	순증
평화염원 범국민 한마당	-	1,106	1,106	순증
특집 드라마, 다큐멘터리 제작	-	1,000	1,000	순증
60주년 기념식	-	1,184	1,184	순증
서울수복 기념행사	-	1,602	1,602	순증
기 타	-	2,741	2,741	순증
합 계	-	23,500	23,500	순증

자료: 국가보훈처, 2009. 10.

[현안 검토]

- 일부 예산안 편성 시 달러 당 1,300원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과다 편성
 - 기념사업위원회운영비 중 해외홍보비 21억원 편성 시 기준환율을 달러 당 1,300원으로 적용하여 약 1억원 가량 과다 편성
- 국내홍보비 예산안이 18억 9,35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가주요정책 광고'사업을 활용하는 방안 등 홍보비 절감방안 강구 필요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가주요정책 광고'사업의 목적은 국가 주요정책 및 국정현안 홍보이며 2010년도 예산안은 81.5억원이므로, 동 사업을 일부 활용하여 예산안을 최소화 하는 방안 강구 필요
- 청소년 게임대회(1억 5,000만원), 특집드라마 및 다큐멘터리 제작(15억원)은 동 사업의 취지를 적절히 구현할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 하에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6·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 일부 예산안 재검토 필요」,
『예산안 분석 V』, 2009. 11.

[담 당] 김민재 예산분석관(788-4642)

[개 요]

-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
 - 예산안: 23,000억원(전년 추경예산 대비 42.3% 감)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총액으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
 - 목적예비비³²⁾는 2009년과 같은 규모라고 할 수 있는 1조원 편성
 - 2009년도 예비비에 이례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부동산교부세 감소분 지원(18,600억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285억원)' 예산을 제외하면 1조원 규모
 - 일반예비비는 2009년에 비해 2,000억원 증액된 1조 3,000억원 편성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09 (추경예산)	2010안	전년대비	
			증가액	증가율
일반예비비	11,000	13,000	2,000	18.2
목적예비비	28,885	10,000	-18,885	-65.4
합 계	39,885	23,000	-16,885	-42.3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0년도 예산안」, 2009. 10.

32) 재해대책비(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액 포함), 인건비(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연금 부담금 등 연동경비 포함),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에 사용하도록 예산총칙에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

[현안 검토]

□ 1조 3,000억원이 편성되어 있는 일반예비비를 일부 조정할 필요

- 과거 지출규모를 감안할 때 1조 3,000억원은 예년에 비해 다소 큰 규모라고 할 수 있음
 - 최근 일반예비비 지출액이 9,000억원을 넘지 않았음. 2005년 이후의 일반예비비 지출액을 보면, 2006년에 8,683억원을 지출한 것이 최고 규모이었으며, 다른 해에는 8,000억원 이내에서 지출하였음
- 일반예비비는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최소한으로 지출하도록 노력할 필요
 - 불요불급한 사업을 예비비를 사용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실질적 규모 팽창을 가져오게 되고,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사전예측불가능성·불가피성·시급성·보충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 행사성 경비, 조직신설·개편 경비 등에 예비비를 사용하거나, 예비비를 사용한 사업에서 다른 사업으로의 전용 또는 대규모 불용이 발생하는 경우 등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예비비 사용은 억제되어야 할 것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의 적정성 분석」, 『예산안 분석 II』, 2009. 11.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검토보고」, 2009.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2009. 11.

[담 당] 유인규 예산분석관(788-4623)

[개 요]

- 기획재정부 일반회계사업인 재정사업 성과평가사업과 기금운용평가 및 제도개선사업의 201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7.2% 증가한 9억 6,000만원임
 - 재정사업 성과평가사업(기금운용평가 및 제도개선사업)은 재정사업과 기금사업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함으로써 사업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평가 결과의 환류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임

[현안 검토]

- 기획재정부는 2010년도 예산편성시 2008년 재정 및 기금사업의 평가 결과를 제대로 환류하지 않고 있음
 - 원칙적으로 '우수'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하는 반면, '미흡' 또는 '매우 미흡'한 평가결과를 받은 사업에 대해 10% 이상 삭감 또는 사업폐지를 검토하여야 함
 - 평가결과가 '우수'함에도 예산이 감액 편성되거나, 평가결과가 '미흡'(또는 '매우 미흡')함에도 예산이 증액 편성되는 사례가 발견되었음
 - 사업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평가 결과의 환류를 강화하여야 할 것임

〈2008년 재정 및 기금사업의 평가와 환류 현황 사례〉

(단위 : 억원)

부처명	사업명	평가결과	2009예산 (A)	2010예산안 (B)	B-A
국방부	환경시설 개선 및 운영	미흡(예산)	986	1,200	214
노동부	여성·고령자고 용촉진컨설팅	매우 미흡(기금)	18	33	15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인력 양성	미흡(예산)	74	78	4
농림수산식품부	축산물수급관리	우수(기금)	1,958	1,154	-804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의 국제협력 증진	미흡(기금)	52	64	12

[자 료] 기획재정부위원회, 『기획재정부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검토보고』, 2009. 11.

[담 당] 서세욱 예산분석관(788-4625)

[개요]

- 기획재정부 소관의 일반회계사업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은 디지털예산회계기획단 운영 및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및 관리사업으로 구분되며, 2010년도 예산규모는 203억 5,100만원(전년대비 3.1% 감)
 - 디지털예산회계기획단 운영: 3억 8,400만원(전년대비 5.7% 감)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및 관리: 199억 6,700만원(전년대비 3.1% 감)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구축 관련 재정투입 규모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직접투입된 비용 1,210억 4,500만원과 기존 재정정보시스템개발 비용 490억 6,400만원을 합한 1,701억 900만원임

〈직접투입 비용〉

(단위: 백만원)

	2006까지	2007결산	2008결산	2009예산	2010예산안	합계
기획단 운영	3,186	487	220	387	384	4,664
시스템 운영 및 관리	21,645	31,390	21,787	21,592	19,967	116,381
합 계	24,831	31,877	22,007	21,979	20,351	121,045

주: 2009년 예산은 예산현액기준으로 2008년에서 이월된 9억 9,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기존 재정정보시스템개발 비용〉

(단위: 백만원)

시스템명	사업명	기간	금액
국가재정 정보시스템	정보전략계획 수립	2001.07 ~ 2002.04	1,128
	국가재정정보시스템 구축	2002.02 ~ 2002.11	5,190
	통합연계시스템 구축	2002.07 ~ 2002.12	18,246
	장비확대사업	2003.09 ~ 2004.02	10,250
	백업시스템 구축	2003.11 ~ 2004.02	9,980
	소 계	-	44,794
예산정보 관리시스템	기획예산정보시스템 1차 개발	1999.09 ~ 2000.08	2,980
	기획예산정보시스템 2차 개발	2000.12 ~ 2001.06	1,290
	소 계	-	4,270
기존 재정정보시스템 구축비용 총계			49,064

자료: 기획재정부

[현안 검토]

□ 집행실적 부진과 연례적으로 이월 및 불용이 발생

- 여비의 집행률이 2008년 31.9%, 2009년 8월말 20.5%로 저조, 불용처리된 여비는 2007, 2008 2년간 1억 3,300만원임
- 운영비의 집행률은 2008년 59.9%, 2009년 8월말 47.1%로 저조, 불용처리된 운영비는 2007, 2008 2년간 1억 9,700만원임
- 업무추진비의 집행률은 2008년 58.0%, 2009년 8월말 61.1%로 저조, 불용처리된 운영비는 2007, 2008 2년간 1억 5,300만원임
운용성과 미흡

□ 운용성과 미흡

- 실적집행률 계산위한 실적집계에 어려움 존재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연계되어 실적집행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행정안전부의 e-호조시스템에는 246개의 지자체의 회계시스템이 연계되어있어 있으며, 지자체 보조사업 중 일부 지자체의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e-호조

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은 별도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 실적집계에 어려움이 많음

- 단순 합계 자료를 제공하여 재정정보로서 오해를 가져올 가능성 높음
 - 기금 여유자금운용 지출액이 매월잔액의 합계치를 적시하여, 여유자금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할 가능성 존재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사용자 체감만족도는 100점 만점의 54.7점으로 매우 낮음
- 예산사업 원가정보 산출이 불가능하여 재정사업의 성과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현재의 프로그램 예산제도 하에서 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간접원가는 사업비에 포함되어있지 않고 행정지원 프로그램(7000항)으로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어 사업별 원가정보를 산출할 수 없는 상황임
- 정책결정자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 있음
 - 과거 시계열자료의 누락과 집행실적 등의 실시간 정보, 성과관리 등 예산심사의 필요정보의 누락 등으로 인해 재정정보를 통한 효율적인 재정구현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용 성과미흡과 시스템기능 보완 필요」, 『예산안 분석 III』, 2009. 11.

[담당] 서세욱 예산분석관(788-4625)

[개요]

- 기재부에서는 재정집행에 따른 일시 부족자금을 조달하고자 발행한 재정 증권 또는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등 외부에서 조달한 자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일시차입금이자상환 사업비를 계상
 - 예산안: 1,930억원(전년대비 644.1% 증)
 - 2010년도 상반기에 자금을 일반회계 예산 중 63%만큼 배정할 경우 발생하는 상반기 세입에 비해 부족한 재원 20조원을 차입할 예정인데,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 발생액(2,465억원) 중 국고금운용수익잔액(535억원)을 차감한 금액 1,930억원을 계상함

〈일시차입금 이자 산출내역〉

구분	금액
2010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A)	200.8조원
상반기 자금배정율(B)	63.0%
자금수요(C=A×B)	126.5조원
상반기 세입(D, 적자국채 포함) (적자국채)	106.5조원 (19.5조원)
부족자금규모(E=C-D)	20.0조원
차입 이자율(F)	4.5%
차입기간(G)	100일/365일
이자총소요 (H=E × F × G)	2,465억원
국고금운용수익잔액(I)	535억원
2010 차입이자예산 소요(H-I)	1,930억원

주: 국고금운용수익잔액은 예상되는 2009년말 금액
 자료: 기획재정부

[현안 검토]

- 일시차입금이자상환사업은 2006년 이후 집행 부진이 연례화되고 있음
 - 사업비가 2006년 23.0% 집행한 것을 제외하고는 2007년에서 2009년 10월까지 집행된 바 없음

〈2006~2009년도 집행 현황〉

(단위: 억원, %)

연도	예산	집행	집행률
2006	75,000	17,282	23.0
2007	40,000	-	-
2008	5,000	-	-
2009	25,936	-	-

자료: 기획재정부

- 2010년도 상반기 자금 배정률을 2009년도와 비슷한 63.0%로 책정하는 것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봄
 - 국내 경제성장률 안정화추세와 세계 경제 역시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측면이 고려된 출구전략이 논의되고 있는 점 감안
 - 최종집행기관에 재배정되기까지 많은 시일이 걸리는 보조금(2010년도 예산안 36.2조원) 및 출연금(2010년도 예산안 16.8조원) 사업의 경우, 조기집행에 대한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

〈최근연도 자금배정률의 추이〉

(단위 : 조원)

구 분	'05	'06	'07	'08	'09
· 예산	134.4	144.8	156.5	175.0	203.5
· 배정실적 (배정률)	84.4 (62.8%)	78.6 (54.3%)	93.1 (59.5%)	94.5 (54.0%)	128.9 (63.3%)
· 집행실적 (집행률)	81.0 (60.3%)	75.3 (52.0%)	89.9 (57.4%)	91.2 (52.1%)	126.5 (62.2%)

자료: 기획재정부

□ 일시차입금 금리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 기재부에서는 내년도 예산편성 기준금리(국고채 5년물기준, 6%) 및 일시차입금 추이(금년도 2분기 이후 상승세)를 감안하여 산정하였다고 설명
- 일시차입금금리는 국고채(5년물) 금리보다 한은기준금리와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본격적인 출구전략이 시행되는 경우에도 한은의 기준금리가 4.0%를 상회할 가능성이 많지 않음

〈최근연도 일시차입 금리의 추이〉

(단위 : %)

구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안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한은기준금리	5.0	5.0	5.25	3.0	2.0	2.0	2.0	-	-
일시차입금리	5.3	5.08	5.23	5.45	3.42	1.84	2.25	2.43	4.5
국고채 5년물	5.13	5.98	5.75	3.77	4.69	4.64	4.81	-	6.0

자료: 기획재정부

-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200.8조원, 상반기 배정률 63.0%, 차입금리 4.5%로 2010년 예산안에 반영된 이자액 1,930억원은 차입금리를 조정하여 예산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자 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검토보고」, 2009. 11.

[담 당] 정금희 예산분석관(788-4627)

[개요]

- 기획재정부 일반회계사업인 미래기획위원회운영의 201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70.0% 증가한 26억 3,300만원임
 - 인건비 3억 3,700만원, 직무수행비 1억 2,800만원은 순증되었으며, 연구개발비는 5억 5,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20% 증액됨

[현안 검토]

- 미래기획위원회 연구개발비 중 '해외연구소와의 공동연구 용역'은 '국제기구 공동연구 자문사업'과 중복될 우려가 있음
 - '해외연구소와의 공동연구 용역(3억원)'의 추진방법은 국내연구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해외연구소의 자문 등을 통해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임
 - '국제기구 공동연구 자문사업'도 국내연구기관과 국제기구 간의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중복 우려가 있으므로, 연구용역 간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협의를 통해 주제를 선정할 필요가 있음
- 미래기획위원회 연구개발비 중 '대통령 어젠다(agenda)'와 '미래연구 네트워크 구축·활용'사업은 중복될 우려가 있음
 - '미래연구 네트워크 구축·활용사업'은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내 미래연구 기관 간 정보공유 및 연구협력 체계를 구축·활용하여 미래연구 자문을 위한 전문기관 및 전문가 풀(pool)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며, 일반회계예산으로 3억 4,800만원이 신규로 편성
 - '미래연구 네트워크 구축·활용사업'은 미래기획위원회 연구개발비 중 '대통령 어젠다'와 중복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해외네트워크 구축은 미래기획위원회가 전담하고, '미래연구 네트워크 구축·활용사업'은 국내 부분에 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미래연구 네트워크 구축·활용사업'의 해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계상된 국외여비(3,200만원)와 사업 범위의 조정에 따른 연구용역 예산(3,400만원)을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음

[자 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부처별 1】』, 2009. 11.

[담 당] 서세욱 예산분석관(788-4625)

[개요]

- 기획재정부 소관 공공자금관리기금 용자사업의 201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28.4% 감소한 2,847억원임

[현안 검토]

-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하고, 2009년 10월 15일까지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계획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사업이 존재
 - '호남권복합화물터미널건설'과 '수도권내륙화물기지건설'사업이 그 사례이며,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은 예산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공공자금관리기금 용자사업의 집행률 추이와 계획액〉

(단위: 백만원, %)

	2006 집행률	2007 집행률	2008 집행률	3년평균 집행률	2009.10 집행률	2009 계획액	2010(안) 계획액	증감률
환경개선자금	100.0	100.0	100.0	100.0	100.0	60,000	-	-100.0
저소득층생업자금	100.0	100.0	100.0	100.0	100.0	7,200	7,200	0.0
장애인자립자금	100.0	100.0	75.0	91.7	75.0	16,000	16,800	5.0
민간보육시설환경개선용자	-	-	-	-	-	-	30,000	순증
저소득모부자가정복지자금	100.0	100.0	100.0	100.0	100.0	3,000	4,000	33.3
농축산경영자금	100.0	100.0	100.0	100.0	100.0	20,968	-	-100.0
영어자금	100.0	100.0	100.0	100.0	100.0	51,000	51,000	0.0
선대구조개선용자	100.0	100.0	100.0	100.0	0.0	5,200	5,200	0.0
호남권복합화물터미널건설	0.0	100.0	0.0	33.3	0.0	1,000	34,020	3302.0
중부권복합화물터미널건설	100.0	100.0	100.0	100.0	0.0	28,898	-	-100.0
영남권복합화물터미널건설	100.0	100.0	100.0	100.0	100.0	32,300	-	-100.0
수도권복합화물터미널건설	-	0.0	100.0	50.0	0.0	53,555	38,889	-27.3
수도권내륙화물기지건설	-	0.0	0.0	0.0	0.0	1,000	42,552	4155.2
화물자동차공동차고지건설	65.7	0.0	0.0	21.9	100.0	1,000	-	-100.0

(단위: 백만원, %)

	2006 집행률	2007 집행률	2008 집행률	3년평균 집행률	2009.10 집행률	2009 계획액	2010(안) 계획액	증감률
여수세계박람회지원	-	-	-	-	-	-	50,000	순증
초고속공중망구축지원	100.0	99.8	100.0	99.9	100.0	30,000	-	-100.0
양산부산대병원건립	-	-	100.0	100.0	100.0	16,500	5,000	-69.7
신협중앙회경영정상화지원	-	100.0	100.0	100.0	0.0	70,000	-	-100.0

주: 1. 2009년 10월 15일까지의 집행률임

2.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은 3년 평균 집행률 및 2009년 집행률이 매우 저조하지만, 2009년 대비 2010년 예산액이 전년과 같거나 증액된 연구용역비를 나타냄

자료: 기획재정부, 「2010년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2009. 10

[자 료] 국회예산정책처, 「공공자금관리기금 용자사업 집행실적 부진과 예산 과다편성」, 『예산안 분석 III』, 2009. 11.

[답 당] 서세욱 예산분석관(788-4625)

[개 요]

- 기재부 소관 외평기금은 2010년도에 만기가 도래하는 공자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분 19.4조원과 추가적인 외환 매입 자금의 용도로 신규 예수금 14조원 등 총 33.4조원을 공자기금으로부터 예수할 계획
 - 계획안: 33조 4,157억원(전년대비 25.6% 증)
- 한편, 외평기금의 여유자금은 2008년말 기준으로 34조 7,882억원에 달하여 2007년 대비 34조 1,480억원 증가된 규모
 - 2004년 이후 최대 여유자금은 2.7조원, 최저는 0.5조원인 것에 비한다면 2008년말 기준 여유자금 34.8조원은 매우 높은 수준
 - 기재부에서 2008년 10월 기준 여유자금을 공개하지 않아 2009년말 여유자금 규모 추정 어려움³³⁾

〈외평기금 여유자금 규모〉

(단위: 백만원)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여유자금 잔액	10,829	27,001	4,945	6,402	347,882

자료: 기획재정부

33) 2010년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시 첨부한 추정 대차대조표에 따르면, 2009년 및 2010년말 여유자금 운용잔액은 각각 34.8조원, 34.9조원으로 계획되었으나, 이를 제출한 기획재정부에서는 여유자금 규모 예측이 어려운 기금의 특성상, 추정 재무제표상에 전년도말 여유자금을 전액 익년도 추정연말잔액으로 반영하였다고 설명하여, 다른 기금과는 달리 2009년도 및 2010년도의 여유자금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운 상태임

[현안 검토]

- 외평기금의 2008년말 여유자금 규모(34.8조원)가 과거(0.5~2.7조원)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2009년말 여유자금 규모가 예년 1~2조원에 비해 높은 수준일 것으로 추정 가능함
- 그러나, 동 기금은 2010년도에 일정규모의 여유자금을 보유하면서도 이를 우선적으로 외화자산 매입에 사용하기 보다는, 공자기금으로부터 신규로 예수받은 14조원을 이용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 여유자금 보유하면서 공자기금 예수금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여유자금 운용수익률과 예수로 인한 조달이자율 간 금리차로 인해 기금 결손금 규모를 더욱 확대하는 효과가 있음
 - 14조원³⁴⁾ 대한 기회손실 규모는 기금운용계획안 상의 여유자금 운용수익률 기준 5,670억원, 2008년도 여유자금 운용수익률 기준 938억원으로 집계됨

〈외평기금 여유자금 보유로 인한 기회손실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금액
공자기금 신규 예수금(A)	140,000
예상이자율(a)	6.00
여유자금 운용수익률(기금운용계획안: b)	1.95
기회손실[B=A×(a-b)]	5,670
여유자금 운용수익률(2008년 실적: b')	5.33
기회손실[B'=A×(a-b')]	938

주: 1. 예상이자율(a): 기금운용계획안에서 공자기금 예수금에 따른 이자상환 금액 산정시 이용한 이자율

2. 여유자금운용수익률(b): 기금운용계획안에서 투자풀위탁에 따른 유가증권 매각익 산정에 이용한 수익률

3. 여유자금운용수익률(b'): 2008년도에 외평기금에서 투자풀위탁에 따른 여유자금 운용수익률 실적치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산정

34) 앞서 설명했듯이, 기획재정부에서 동 기금의 2009년 9월 기준 여유자금 규모를 공개하지 않아, 여유자금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어 2010년에 계획된 19.4조원의 공자기금 예수원금 상황이 가능한지 판단할 수 없는 바, 신규 예수금은 2009년말에 보유할 여유재원으로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전제하여 산출하였음

- 외국환평형기금은 계획하지 못한 외환 매입에 사용될 최소한의 금액만을 여유자금으로 보유하고, 나머지는 수입재원으로 회수하여 2010년에 계획된 공자기금 예수금 규모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봄
 - 여유자금이 없는 상황에서 사업비가 부족하여 공자기금으로부터 사업비 재원을 예수 받는 경우가 아니므로, 여유자금을 사업비 재원으로 우선 사용하여 예수금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
 -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깊은 현 상황에서, 외평기금에서 공자기금으로부터 예수받는 규모만큼 공자기금에서는 국채 발행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전체 국가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함
 - 예수금 축소를 통해 궁극적으로 공자기금에서는 국채발행 규모를 감소 가능

[자 료] 국회예산정책처, 「외국환평형기금의 공자기금예수금 규모 조정 필요」, 『예산안 분석 III』, 2009. 11.

[답 당] 정금희 예산분석관(788-4627)

[개 요]

- 기재부 소관 외평기금은 여유자금 중 일정부분을 한국투자공사에 위탁하여 운용하고 있음
 - 계획안: 8.6조원(전년대비 32.3% 증)

[현안 검토]

- 한국투자공사의 위탁자산 중 외환보유액 기준에 부합되지 못하는 외화자산의 비중이 증가
 - 한국투자공사에 위탁할 여유자금의 규모를 면밀히 검토하여 가용 외환 보유액 부족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필요

〈한국투자공사(KIC)의 위탁자산 포트폴리오〉

(단위: 억불, %)

종류	2007		2008		2009.9월	
	투자액	수익률	투자액(누적)	수익률	투자액(누적)	수익률
채 권	18	8.20	46	3.75	32	9.37
- 물가연동채권	-	-	-	-	3	3.58
주 식	9	-2.21	12	-40.59	43	25.43
합 계	27	1.72	58	-14.41	78	16.76

자료: 기획재정부

- 한국투자공사의 자산운용 실적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며, 2009년 9월말 현재 위탁자금의 수익률이 저조
 - 한국투자공사는 전략적으로 메릴린치 주식에 20억 달러를 투자하였으나, 9월말 기준 주식평가액은 12억 달러로 떨어져 수익률(△40.2%)이 매우 저조
 - 현재까지 한국투자공사의 자산운용 실적이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2010년도 한국투자공사에 위탁할 여유자금의 규모를 전년 보다 증가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한국투자공사에 위탁할 여유자금의 규모를 축소하여야 할 것으로 봄

[자 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부처별 I」, 2009. 11.

[답 당] 정금희 예산분석관(788-4627)

[개 요]

- 대외경제협력기금은 양허성 차관을 제공하여 기후변화·식량위기 등 글로벌 이슈 해결에 기여하고, 우리의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를 중점 지원하여 성숙한 세계 국가 위상 정립과 함께 국내 관련 사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조성하고자 설립됨
-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재원확충을 통해 차관사업을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정부출연금을 매년 지원
- 예산안: 1,500억원(전년대비 25% 증)

〈대외경제협력기금출연금사업 예산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안
대외경제협력기금출자	1,700	1,600	1,200	1,200	1,500
· 회계기금간전출	1,700	1,600	1,200	1,200	1,500

자료: 기획재정부

[현안 검토]

- 동 기금의 주요목적사업인 대개도국차관사업의 집행부진이 연례화되고 있어, 일정규모의 여유자금이 매년 유지되고 있는 실정
- 2006년 이후 매년 집행률이 52~68%로 부진하고, 2009년 9월말 기준 집행실적도 계획액 대비 49%에 그쳤으나, 2010년 계획액은 4,700억원으로 증액됨

〈2006년 이후 대개도국차관사업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A)	지출액(B)	집행률(B/A)	불용액(C)
2006	260,000	136,079	52	123,921
2007	300,000	155,335	52	144,665
2008	350,000	237,136	68	112,864
2009	350,000	170,864	49	-

주: 2009년 실적은 9월말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 목적사업에서 발생한 미집행액은 사업비에서는 불용액으로 표시되나, 동액만큼 여유자금으로 흡수되어, 매년 여유자금의 실적이 계획보다 높은 실정
 - 여유자금이 대략 5,600억원을 상회하고 있어, 비교적 높은 규모의 여유자금을 유지하고 있음

〈2007~2009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 여유자금 규모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9월)
운용잔액	4,263	5,676	3,113	5,631	2,912	5,672

주: 운용잔액은 해당 연도의 회계연도말 여유자금액을 말하며 2009년은 계획은 12월말 기준, 실적은 9월말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 2010년도에 증액된 대개도국 차관사업의 집행이 부진하면, 2010년도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여유자금을 과도하게 보유할 가능성 여전
- 향후 우리나라의 대외원조 규모 확대에 따라 유상원조 규모도 확대될 전망이므로 대개도국차관 집행률 제고를 통하여 ODA 확대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집행률 제고를 통해 여유자금을 과도하게 보유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대외경제협력기금 출연금사업 분석」, 『예산안 분석 III』, 2009. 10.

[담당] 정금희 예산분석관(788-4627)

[개 요]

- 국세청 소관 일반회계사업인 납세안내 및 세금교육 지원사업의 201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8.1% 감소한 23억 8,800만원임

[현안 검토]

-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집행률(88.9%~91.7%)은 양호한 편이지만, 2009년도 10월 29일까지의 집행률은 61.4%로 부진
 - 2009년도 10월 29일까지의 집행률이 부진한 이유는 새로 도입된 '온라인여론 모니터링 및 온라인 홍보'의 집행률이 19.1%로 매우 부진하기 때문임
 -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연말정산',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연말에 집중 홍보할 예정이기 때문에 '온라인여론 모니터링 및 온라인 홍보' 사업비를 연내 전액 집행 가능하다고 설명

〈납세안내 및 세금교육 지원사업의 세사업별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08			2009			2010	
	예산 현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현액 (A)	집행액	집행률	예산안 (B)	증감률 (B-A)/A
세금신고·납부안내	304	274	90.1	214	214	100.0	214	0.0
세금안내 홍보물 제작	510	458	89.8	407	300	73.7	407	0.0
선진납세의식 고취	350	324	92.6	730	459	62.9	600	-17.8
학생세금교육 교재제작	214	195	91.1	216	175	81.0	216	0.0
대중매체 홍보	572	513	89.7	591	364	61.6	591	0.0
온라인여론 모니터링및온라인 홍보	-	-	-	440	84	19.1	220	-50.0
정책여론수렴 설명회	-	-	-	-	-	-	140	순증
합 계	1,950	1,764	90.5	2,598	1,596	61.4	2,388	-8.1

주: 집행률은 예산현액 대비 10월 29일까지의 실집행률임

자료: 국세청, 「2010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2009. 10

- 2010년도 예산안에 새로 편성된 '정책여론수렴 설명회'는 기존의 '세금안내 홍보물 제작' 및 '대중매체 홍보'사업과 차별성이 없어 보이며, 차별성이 없는 사업을 새로 편성하는 것은 사업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자 료] 국회예산정책처, 「국세청 주요 사업 예산안 분석」, 『예산안 분석 III』, 2009. 11.

[담 당] 서세욱 예산분석관(788-4625)

[개 요]

- 국세청 소관 일반회계사업인 '대형집단상가 등 기준시가 산정사업'의 201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9.8% 감소한 13억 8,000만원임

[현안 검토]

- '대형집단상가 등 기준시가 산정사업'의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2007년 53.2%, 2008년 75.6%로 부진하며, 매년 예산현액의 일정비율이 불용
 - 전용 및 불용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예산액을 삭감할 필요가 있음

〈대형집단상가 등 기준시가 산정사업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예산액 (A)	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D)	집행률 (C/A)	집행률 (C/B)	불용률 (D/B)
2006	2,125	-200	1,925	1,883	0	42	88.6	97.8	2.2
2007	2,125	-756	1,369	1,130	0	239	53.2	82.5	17.5
2008	1,800	-260	1,540	1,360	0	180	75.6	88.3	11.7
2009.9	1,530	-	1,530	-	-	-	0.0	0.0	-

주: 전용 등에는 전용, 이용, 조정, 이체가 포함되어 있음

자료: 국세청, 「2010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2009. 10

- 국세청의 '대형집단상가 등 기준시가 산정사업'은 국토해양부의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조사 시범사업'과 유사하며, 국토해양부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

- 국세청은 국회의 2007년 결산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대형집단상가 등 기준시가 산정사업'을 국토해양부로 이관하도록 협의 완료하였다는 조치결과를 2009년 1월 보고
 - 국세청이 '대형집단상가 등 기준시가 산정사업'의 2010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것은 조치결과 보고와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가격조사 업무의 유사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해양부 소관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개정한 후 국세청 소관의 「소득세법」을 개정할 필요

[자 료] 국회예산정책처, 「국세청 주요 사업 예산안 분석」, 『예산안 분석 III』, 2009. 11.

[담 당] 서세욱 예산분석관(788-4625)

[개 요]

- 밀수관련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범죄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세법」 제324조에 따라 밀수신고자 및 검거자에게 포상금을 지급
 - 예산안: 2,574백만원(전년대비 동일)
 - 민간인인 밀수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밀수신고 포상금’ 과 공무원인 밀수검거자에게 지급하는 ‘밀수검거 포상금’ 으로 구분
 - 밀수신고자(민간인) 포상금 : 7억 4,000만원
 - 밀수검거자(공무원) 포상금 : 18억 3,360만원

〈2010년 밀수감시단속 포상금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09	2010(안)	전년대비	
			증가액	증가율
밀수감시단속 포상금	2,574	2,574	-	-
- 밀수신고	740	740	-	-
- 밀수검거	1,834	1,834	-	-

자료: 관세청

[현안 검토]

- 2007, 2008년 밀수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집행실적이 다소 부진
 - 2007년에는 76.0%, 2008년에는 2007년보다 낮은 63.6%를 집행

□ 관세청에서는 집행실적을 제고하고자 2009년에 포상금 지급기준을 상향 조정

- 그 외 밀수신고 처리기한 및 포상금 지급시기를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고, 사이버감시단 전용 홈페이지 운영 등 밀수신고 홍보를 강화
- 이에 따라 2009년 밀수신고 포상금의 집행률은 9월 말 현재 90.0%로 다시 높아지고 있음

〈2007~2009년 밀수감시단속 포상금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연도	밀수신고 (민간인)			밀수검거 (공무원)			합 계		
	예산	집행	집행률	예산	집행	집행률	예산	집행	집행률
2007	840	638	76.0	1,834	1,834	100.0	2,674	2,472	92.4
2008	840	534	63.6	1,834	1,834	100.0	2,674	2,368	88.6
2009	740	666	90.0	1,834	1,627	88.7	2,574	2,293	89.1

주: 2009년은 9월말까지의 집행실적임
자료: 관세청

□ 지급기준 상향 조정 및 지속적인 홍보 등에 따라 밀수신고 포상금의 집행실적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동 경우 2009년과 동일한 규모인 7억 4,000만원이 편성된 2010년도 예산안은 다소 부족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2010년도 밀수신고 포상금 예산안을 다소 증액할 필요

- 증액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예산 증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써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밀수검거 포상금 규모를 감액하고 감액분만큼 밀수신고 포상금 예산안을 증액할 필요
 - 밀수검거 포상금은 밀수신고 포상금보다 2배 이상 많으며, 2009년 기준으로 관세청에는 밀수검거 포상금 이외에도 기본포상금 등 공무원 및 유관기관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이 6억 3,000만원 정도 별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

- 한편, 관세청의 2010년 예산안에는 관세행정지원 사업에 ‘관세행정 중장기 발전전략 우수자 및 우수기관 포상금’이 3,3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와 유사한 ‘관세행정 중장기 발전계획 업무유공 포상금’이 본부 기본경비 사업에도 9,000만원 편성되어 있음
- 두 포상금은 유사·중복 우려가 있으므로 둘 중 하나의 포상금 예산안을 감액하는 등 동 포상금들의 예산은 조정될 필요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관세청 주요 사업 예산안 분석」, 『예산안 분석 III』, 2009. 11.

[담당] 황선호 예산분석관(788-4624)

[개 요]

- 행정안전부 소관 일반회계 교육환경개선유지사업
 - 예산안: 24억 2,900만원(전년대비 5억 1,000만원, 26.6%증)
 - 사업추진방식 : 직접수행
 - 사업기간 : '81~계속(단년도 계속사업)
 - 지원근거 : 「중앙공무원교육원 훈령」 제224조(청사방호 및 시설보호 규정)
- '81년 12월 중앙공무원교육원 건물 준공 후 장기간 시설 사용에 따른 노후 시설물을 적기에 개·보수

<2010년도 교육환경개선유지사업 예산안 편성현황>

(단위: 백만원, %)

	2009 (본예산)	2010안	전년대비	
			증가액	증가율
교육환경개선유지	1,919	2,429	510	26.6

자료: 행정안전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자료」, 2009. 10.

[현안 검토]

-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년까지 총 사업비 1,642억원을 투입하여 중앙공무원교육원을 충청북도 진천군으로 이전 추진 중
- 2010년에 시설을 개·보수하더라도 그 효용은 2010년에서 2012년까지 3년에 불과하므로, 시설 개·보수의 필요성을 엄격히 심사할 필요

- 교육환경개선유지의 세사업 중 ‘소운동장 시설개선’ (1억 1,200만원), ‘테니스장 개보수’ (1억 900만원), ‘옥상 정원 인조잔디 교체’ (2,600만원)은 다른 세사업에 비해 시설의 안전을 위한 시급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짐

〈2010년도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환경 개선유지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세사업	산출내역	예산안
·청소용역	391,386천원 * 1.05= 410,955천원	410
·시설관리 용역	661,533천원 * 1.05= 694,610천원	694
·소운동장 시설개선	지반보강 및 탄성바닥재 시공 : 919㎡ * 74,000원 = 68,006천원 관전 스텐드 보강 등 : 44,000천원 * 1식 = 44,000천원	112
·대강당 옥상방수	바닥 및 벽체 우레탄 도막방수 : 420㎡ * 50,000원 = 21,000천원	21
·도움관 3층 세미나실 개수공사	바닥재 철거 및 깔기 등 : 125,000원 * 268㎡ = 33,500천원 흡음벽체 철거 및 깔기 등 : 151,000원 * 335㎡ = 50,585천원 천장재 철거 및 텍스 붙임 등 : 132,000원 * 268㎡ = 35,376천원	119
·정문철재대문 교체	석주 철거 및 설치 : 35,000천원 * 1식 = 35,000천원 철재 대문 철거 및 교체 : 20,000천원 * 1식 = 20,000천원	55
·옥상 정원 인조잔디 교체	인조잔디 515㎡ * 33,000원 = 16,995천원 데크제 60㎡ * 150,000원 = 9,000천원	25
·기계 및 전기·통신 설비 보강	강의장 등 노후 기계설비 교체 : 60,000천원 강의장 등 노후 전기선로 교체 : 40,000천원 강의장 등 노후 통신시설 교체 : 30,000천원	130
·시청각 노후시설 개보수 및 노후장비 교체	통합음향제어시스템 시설 : 50,000천원 * 1식 = 50,000천원 VIP행사 및 홍보영상촬영 등 스튜디오 개선 : 50,000천원 * 1식 = 50,000천원	100
·국가고시센터 시설 개선	체육실 다목적 마루 설치 등 : 273,000원 * 210㎡ = 57,750천원	57
·녹색성장 교육관 조성	전시물 교체 등 : 20,000천원 * 5회 = 100,000천원	100
·노후시설 개보수 및 현대화	크레이코트 교체 : 32,500,000원 * 2면 = 65,000천원 인조코트 교체 : 65,000원 * 680㎡ = 44,20천원	109
·시설부대비 (조달수수료 등)	시설대수선 조달수수료 등 4,668천원	4
·시청각교육 기자재 교체	전자교탁(세미나, 2, 3강의실) : 6,000천원 * 3대 = 18,000천원	18
·체육시설 관리장비 구입	테니스장 로링기(10HP) 교체 : 8,000천원 * 1대 = 8,000천원 동력 잔디 깎기 구입 : 2대 * 900천원 = 1,800천원 동력기계 체인톱 구입 : 1대 * 850천원 = 850천원 전정기 구입 : 2대 * 700천원 = 1,400천원	12

세사업	산출내역	예산안
·시청각 교육기자재 소모성 용품교체	프로젝터 램프 교체 : 600,000원*13대* 3회 = 23,400천원 멀티큐브 램프 교체 : 1,900,000원*2대= 3,800천원 무선마이크 및 레이저 포인터 건전지 구입 : - 300일*2개*15강의장*600원 = 5,400천원 - 300일/14일*2개*15강의장*600원= 378천원	32
·새날관 노후물품 교체	침대 매트리스 교체 : 490,000원 * 121대=59,290천원 기숙사 에어컨 설치 : 336,960천원 - 에어컨 구입 : 680,000원 * 72실 =48,960천원 - 전기공사 : 4,000,000천원*72실=288,000천원	396
·시청각 유지보수비용	음향방송시설211,000,000원*0.08=16,900천원 영상시설156,490,000원*0.08=12,519천원	29
합 계		2,429

자료: 행정안전부

[자 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안 분석 V」, 2009. 11.

[담 당] 오세일 예산분석관(788-4640)

[개 요]

- 행정안전부 소관 일반회계 국가시험시행사업
 - 예산안: 69억 8,600만원(전년대비 2억 4,300만원, 3.6%증)
 - 사업추진방식 : 직접수행
 - 사업기간 : '49~계속(단년도 계속사업)
 - 지원근거 : 「공무원 임용령」 제8조
- 중앙행정기관에 근무할 유능한 인재 선발
 - 고등고시, 7급 공채, 9급 공채, 공직적격성 평가 등

〈2010년도 국가시험 시행사업 예산안 편성현황〉

(단위: 백만원, %)

	2009 (본예산)	2010안	전년대비	
			증가액	증가율
국가시험 시행	6,743	6,986	243	3.6

자료: 행정안전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자료」, 2009. 10.

[현안 검토]

- 최근 3년간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행정안전부도 예산절감대상사업으로 선정
 - '06년 1억 4,800만원, '07년 4억 2,000만원, '08년 5억 4,700만원

〈최근 3년간 국가시험시행사업 연도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등	예산 현액	집행액	집행률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06	5,054	-	±55	5,054	4,906	97.1	-	148
2007	5,859	-	-	5,859	5,439	92.8	-	420
2008	6,672	-	-106	6,566	5,958	89.3	61	547

자료: 행정안전부

-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안 편성시 예상한 인원보다 실제 출원인원이 미달되고 있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에도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의 출원예상인원을 토대로 예산안을 편성

〈최근 3년간 국가시험 출원 현황〉

(단위 : 명)

	2007		2008		2009	
	예상출원	실제출원	예상출원	실제출원	예상출원	실제출원
고시	17,000	14,592	16,000	15,646	16,000	16,091
7급	84,000	58,513	68,000	52,992	68,000	47,947
9급	199,000	186,478	198,000	164,690	198,000	140,879
계	300,000	259,583	282,000	233,328	282,000	204,917

자료: 행정안전부

- 연례적인 불용액 발생, 실제출원인원이 예상출원인원보다 미달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2010년도 예산안 중 전년도 대비 증액분 2억 4,300만원 감액 필요

[자 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안 분석 V」, 2009. 11.

[담 당] 오세일 예산분석관(788-4640)

XII. R&D 분야

- 2010년도 R&D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대비 10.5% 증가한 13조 6,403억원
- 3대 부처(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방위사업청)의 R&D 투자 예산안이 전체 정부 R&D 투자의 77.4%를 차지

〈 2010년도 R&D 예산안 현황 〉

(단위: 억원, %)

	2009		2010안 (B)	전년대비	
	본예산(A)	추경		증가액(B-A)	증가율
교육과학기술부	38,975	40,160	43,558	4,583	11.8
지식경제부	40,003	42,140	44,062	4,059	10.1
방위사업청	16,090	16,081	17,962	1,872	11.6
3개 부처 소계 (a)	95,068	98,381	105,582	10,514	11.1
(비중, a/b)	(77.0)	(77.4)	(77.4)		
국토해양부	5,468	5,699	5,760	292	5.3
중소기업청	4,895	4,870	5,607	712	14.5
농촌진흥청	4,333	4,410	4,580	247	5.7
국무총리실	3,401	3,401	3,811	410	12.1
보건복지가족부	2,774	2,767	3,078	304	11.0
농림수산식품부	2,169	2,165	2,357	188	8.7
환경부	1,974	1,980	2,142	168	8.5
산림청	691	691	788	97	14.0
식품의약품안전청	623	626	544	-79	-12.7
기상청	555	555	490	-65	-11.7
문화체육관광부	494	519	601	107	21.7
문화재청	305	307	310	5	1.6
소방방재청	190	190	222	32	16.8
행정안전부	44	44	54	10	22.7
국방부	239	239	260	21	8.8
기타	216	213	218	2	0.9
합 계 (b)	123,437	127,059	136,403	12,966	10.5
예산 (일반회계+특별회계)	106,274	109,696	119,008	12,734	12.0
기금	17,163	17,363	17,395	232	1.4

주: 기타는 재정부, 노동부, 외통부, 법무부, 공정위, 법제처, 통일부, 여성부, 해경청, 행복청, 방송위, 경찰청 12개 부처임.

자료: 기획재정부, 2009. 10.

- 「2009 ~ 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2013년까지 R&D분야 투자는 연평균 10.5%의 증가율을 유지할 계획임
 - 정부 R&D 예산을 2012년까지 2008년(11조 784억원) 대비 1.5배로 확대하고, 이러한 기조를 2013년까지 이어나갈 계획

〈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R&D분야 투자계획 〉

(단위: 억원, %)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추경					
R&D분야 (A)	123,437	127,059	136,403	149,000	166,167	183,877	10.5
기초·환경·에너지 등	35,376	31,934	40,850	46,541	49,965	55,345	11.8
우주항공·생명 등	30,596	37,617	31,412	35,078	42,905	50,342	13.3
기계·제조 등	12,554	14,290	14,957	16,540	17,458	18,043	9.5
정보·전자 등	19,676	20,332	20,838	21,809	23,409	25,012	6.2
인력양성·장비구축 등	25,235	22,886	28,346	29,032	32,430	35,135	8.6
총지출 (조원, B)	284.5	301.8	291.8	306.6	322.0	335.3	4.2
총지출 중 R&D 비중 (A/B)	4.3	4.2	4.7	4.9	5.2	5.5	

주: 연평균 증가율은 2009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2009년도 추경포함을 기준으로 할 경우 R&D분야 연평균 증가율은 9.7%가 됨.

자료: 기획재정부, 「2009 ~ 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09. 10.

- 정부는 R&D 총 투자(민간 포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12년에는 GDP 대비 R&D 총 투자비율을 5%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임
 - 2007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R&D 총 투자비율은 3.37%임

〈 총 연구개발비 국제비교 〉

(단위: 억달러, %)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스웨덴	핀란드	중국
총연구개발비	312.9	3,688.0	1,507.9	842.3	538.8	502.9	163.4	94.4	487.7
GDP대비	3.37	2.68	3.44	2.54	2.08	1.79	3.60	3.46	1.49

주: 한국과 핀란드는 2008년도 기준, 나머지는 2007년도 기준임

자료: 교육과학기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학기술통계백서」, 2009. 1.

□ 우리나라는 연구개발비의 74% 정도를 민간부문이 담당하고 있음

- 2007년 기준 전체 연구개발비 중 정부재원은 25.1%, 공공재원은 1.0%, 민간재원은 73.7%, 외국재원은 0.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재원별 연구개발비 국제비교 〉

(단위: %)

	한국 (2008)	미국 (2007)	일본 (2007)	독일 (2006)	프랑스 (2006)	영국 (2007)	중국 (2007)
정부·공공	26.8	33.6	22.0	28.1	40.6	35.1	24.6
민 간	72.9	66.4	77.7	68.1	52.4	47.2	70.4
외 국	0.3	0.0	0.3	3.8	7.0	17.7	1.4

자료: 교육과학기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09년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 2009. 9.

□ 정부 연구개발 예산 중 기초·원천연구에 대한 투자 비중을 2012년 까지 5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임

- 기초연구비 비중은 2008년도에 25.6%, 2009년도에 29.3%³⁵⁾
- 2012년까지 기초연구는 35%, 원천연구는 15%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
 - 원천연구에 대한 개념 정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필수불가결한 독창적 기술로서 지속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다양한 기술 분야에 응용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활동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교육과학기술부, 「원천연구 개념 및 비중 산정」,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 2009. 7.)

[자 료] 국회예산정책처, 「R&D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 현황」, 『2010년도 예산안 분석 IV』, 2009. 11.

[담 당] 전용수 예산분석관(788-4628)

35)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교육과학기술부, 「원천연구 개념 및 비중 산정」,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 2009. 7.

[개 요]

□ 지식경제부 소관 일반회계의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7개 단위사업)

○ 예산안: 6,608억원(전년대비 2.8% 감)

- 지경부의 예산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 출연되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과제수행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과 협약을 맺고 사업비를 지급함

〈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의 2010년도 예산안 현황 〉

(단위: 백만원, %)

	2009		2010안 (B)	전년대비	
	본예산	추경(A)		증가액	증가율
그린카등수송시스템산업원천기술개발	63,100	93,100	88,530	-4,570	-4.9
산업소재산업원천기술개발	72,815	92,815	87,014	-5,801	-6.3
로봇산업원천기술개발	52,778	62,778	58,728	-4,050	-6.5
바이오의료기기산업원천기술개발	80,129	110,129	89,128	-21,001	-19.1
청정제조기반산업원천기술개발	100,742	110,742	128,362	17,620	15.9
지식서비스-USN산업원천기술개발	60,969	60,969	68,469	7,500	12.3
산업융합기술산업원천기술개발	100,256	130,256	121,856	-8,400	-6.4
합 계	530,789	660,789	642,087	-18,702	-2.8

자료: 지식경제부, 2009. 10.

[현안 검토]

- 지식경제부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연구가 개시되는 시점에 사업자에게 해당연도 연구비 전액을 지급하고, 연구기간이 종료된 후 연구비 정산을 실시하고 있음

- 지식경제부는 연구 개시 시점에 연구비를 모두 지급하는 것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동 규정은 연구기간이 단기간이어서 연구비를 분할 지급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연구비를 한꺼번에 지급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연구비를 일시에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것 보다는 연구의 추진 상황에 따라 연구비를 나누어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주관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시기를 월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과제가 6월 이후에 협약을 체결하고 연구를 시작하였음
 - 연구 협약은 1년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2010년도 협약에 의한 연구비의 대부분은 2011년에 실집행이 이루어지게 됨
- 2010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금액 중 2011년에 실집행될 금액은 2011년도 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있음
 - 협약기간이 연도말에 걸쳐있는 계속과제는 연도말까지의 소요금액을 산정하여 예산안에 반영하고, 차차년도에 소요되는 연구비는 차차년도 예산안에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자 료] 국회예산정책처,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의 차차년도 연구비의 예산안 편성」, 『2010년도 예산안 분석 III』, 2009. 11.

[답 당] 전용수 예산분석관(788-4628)

[개 요]

□ 지식경제부 소관 일반회계의 Eco-Ener 플랜트 경쟁력확보사업

- 예산안: 55억원 (전년과 동일)
 - 지경부의 예산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 출연되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산학연 컨소시엄을 선정하여 협약을 맺고 사업비를 지급함

〈 Eco-Ener 플랜트 경쟁력 확보사업의 2010년도 예산안 현황 〉

(단위: 백만원, %)

	2009	2010안	전년대비	
			증가액	증가율
Eco-Ener 플랜트 경쟁력 확보	5,500	5,500	-	-

자료: 지식경제부, 2009. 10.

- 동 사업은 환경, 에너지 등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미래 유망플랜트의 원천기술개발 및 플랜트 핵심 기자재의 국산화를 통하여 플랜트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관련 산업의 동반성장을 견인하고자 하는 사업
 - 2009년도 신규사업으로 LNG Main Cargo 펌프 개발, 정삼투식 다목적 담수화 플랜트 개발 과제를 지원하였음

[현안 검토]

- Eco-Ener 플랜트 경쟁력확보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플랜트기술고도화사업과 사업내용이 중복됨
 - 지경부는 지원분야에서 일부 중복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으나 사업 수준에서의 중복이 없으며, 양 사업에서 수행하는 과제 간 기술적 차별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실제로 2009년도 과제 지원결과 양 사업 모두 해수담수화와 LNG 플랜트라는 동일한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사업에 중복성이 있음

〈 Eco-Ener 플랜트 경쟁력확보사업과 플랜트기술고도화사업간 비교 〉

구분	플랜트기술고도화사업 (국토해양부)	Eco-Ener 플랜트 경쟁력확보사업 (지식경제부)
사업목표	고부가가치 플랜트 건설사업에 요구되는 핵심공정, 기본설계 및 플랜트 실증과 해외플랜트 수출 증대를 통한 국부 창출	환경, 에너지 등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미래 유망 Eco-Ener 플랜트의 원천기술 및 핵심 기자재 개발을 통하여 플랜트 산업의 경쟁력 확보
사업내용	- 가스플랜트사업 - 해수담수화플랜트사업	-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유망 플랜트 기술개발 - 기자재 산업 육성을 위한 플랜트 기자재 기술 개발
사업기간	2007~계속	2009~계속
사업예산	2010: 예산 785억원 요구 2009: 521억원 (추가경정예산 포함) 2008: 111억원 2007: 145억원	2010: 예산 55억원 요구 2009년: 55억원 (R&D 15억원, 인력양성 40억원)
2009년 지원과제	- LNG 플랜트 핵심공정 및 기본설계 패키지 개발 실증을 통한 LNG 플랜트 EPC 필수 기술 개발 - 고효율 역삼투법 해수담수화플랜트 설계, 시공, 운용기술 개발	- LNG Main Cargo 펌프 개발 - 정삼투식 다목적 담수화 플랜트 개발

자료: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Eco-Ener 플랜트 경쟁력확보사업', 「2010년도 지식경제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09. 11.

□ 양 사업간 중복성을 최대한 제거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수요에 기반한 양 사업간 예산의 합리적 재배분이 논의되어야 함

○ 지경부는 엔지니어링, 설계, 기자재 운영에 중점을 두고, 국토부는 시공기술에 특화를 하는 방안으로 중복성 제거 필요

[자 료]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Eco-Ener 플랜트 경쟁력확보사업」, 『2010년도 지식경제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09. 1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co-Ener 플랜트 경쟁력확보사업: 유사중복사업간 조정 필요」, 『2010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2009. 11.

[담 당] 전용수 예산분석관(788-4628)

[개 요]

- 지식경제부 소관 일반회계의 QoLT(Quality of Life Technology) 기술개발사업
 - 예산안: 90억원 (신규)
 - 지경부의 예산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 출연되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대학, 기업, 출연연 등 기술개발 주체를 선정하여 협약을 맺고 사업비를 지급함
 - 장애인에게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기술교육을 통해 이공계 장애인 역할 모델을 양성하는 사업

〈 QoLT 기술개발사업의 2010년도 예산안 현황 〉

(단위: 백만원, %)

	2009	2010안	전년대비	
			증가액	증가율
QoLT 기술개발사업	-	9,000	9,000	순증

자료: 지식경제부, 2009. 10.

[현안 검토]

- 장애인에게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를 개발하는 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67조 및 동법시행규칙에 의거 보건복지가족부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의료기술개발사업(2009년도 예산 1,282억원)을 통해 장애인보조기기를 개발하고 있음
 - 또한 생산기술연구원에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총 200억원을 투입하여 고령친화형 Automated Care System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2010년도 예산안 15억원)이므로 추진과제의 중복을 피하기 위한 협의가 필요함

[자 료]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QoLT 기술개발사업」, 『2010년도 지식경제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09. 1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QoLT 기술개발사업: 유사 사업간 협의추진 필요」, 『2010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2009. 11.

[담 당] 전용수 예산분석관(788-4628)

[개 요]

□ 지식경제부 소관 일반회계의 부품소재산업경쟁력향상사업

- 예산안: 3,587억원 (전년대비 11.5% 증)
 - 지경부의 예산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주관기관으로 출연되며, 주관기관은 과제수행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과 협약을 맺고 사업비를 지급함

〈 부품소재산업경쟁력향상사업의 2010년도 예산안 현황 〉

(단위: 백만원, %)

	2009		2010안 (B)	전년대비	
	본예산(A)	추경		증가액(B-A)	증가율
부품소재산업경쟁력향상사업	318,737	321,737	358,737	37,000	11.5
부품·소재기술개발	189,337	189,337	182,737	-6,600	-3.5
부품·소재기반구축	45,400	48,400	47,000	-1,400	-2.9
핵심소재 경쟁력 강화	67,000	67,000	111,000	44,000	65.7
부품·소재 국제협력	12,000	12,000	13,000	1,000	8.3
부품·소재 사업화지원	5,000	5,000	5,000	-	0.0

자료: 지식경제부, 2009. 10.

[현안 검토]

□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은 사업방식에 따라 단독주관기술개발과 공동주관기술개발로 나누어짐

- 단독주관기술개발은 기업 단독으로 세계적 조달참여가 유망하고 국가간 무역구조 개선효과가 큰 부품·소재를 개발하는 과제를 민간투자 유치를 전제로 지원함
- 공동주관기술개발은 부품소재 중핵기업 육성 및 기존 제품의 고부가가치화에 필요한 중장기 과제를 지원하는데, 생산기업과 수요기업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개발하도록 함으로써 개발제품의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함

□ 공동주관기술개발의 사업 비중 확대가 필요하나, 2010년도 예산안에서는 공동주관기술개발 지원예산의 비중이 축소되었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³⁶⁾는 부품·소재 기술개발과 수요산업간 협력체계의 미흡으로 완제품산업의 고부가가치 구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소재의 경우 대부분이 대기업 위주의 완제품 산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산업연계형 공동주관기술개발의 사업 비중 확대가 중요하다고 지적하였음
- 국회예산정책처³⁷⁾도 현재 부품·소재 분야 대일 무역역조 심화 등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수요대기업과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하는 공동주관기술개발이 보다 유리하다고 지적하였음
- 2009년도까지는 공동주관기술개발의 지원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였으나, 2010년도 예산안에서는 공동주관기술개발의 지원 비중이 감소하였음

〈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의 공동주관기술개발과 단독주관기술개발의 예산배분 현황 〉

(단위: 백만원, %)

	2006	2007	2008	2009 (A)	2010안 (B)	전년대비	
						증감(B-A)	증가율
단독주관	73,072	61,700	62,500	57,600	65,237	7,637	13.3
공동주관	108,908	100,400	94,000	107,000	96,800	-10,200	-9.5
합 계	181,980	162,100	156,500	164,600	162,037	-2,563	-1.6
(공동주관 지원비중)	(59.8)	(61.9)	(60.1)	(65.0)	(59.7)		

자료: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2010년도 지식경제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09. 11.

□ 2010년도 공동주관기술개발 예산지원비중을 최소한 2009년도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안의 세부편성내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자 료]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부품소재산업경쟁력향상」, 『2010년도 지식경제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09. 11.

[담 당] 전용수 예산분석관(788-4628)

36)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방향」, 2009. 8., pp.30-31 및 「2009년도 국가 연구개발예산 배분방향」, 2008. 8., p.25.

37) 국회예산정책처, 「부품·소재산업 경쟁력 향상사업 평가」, 2009. 4., p.40.

[개 요]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과학기술진흥기금의 공자기금예수금이자상환
 - 계획안: 389억원(전년대비 14.6% 증)

〈 2010년도 과학기술진흥기금의 공자기금예수금 이자상환 계획안 현황 〉

(단위: 백만원, %)

	2009	2010안	전년대비	
			증가액	증가율
공자기금예수금이자상환	33,898	38,862	4,964	14.6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09. 10.

- 교육과학기술부(당시 과학기술부)는 R&D 투자확대를 위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국채를 발행하여 조성된 자금으로 대형국가연구개발실용화 사업 등을 추진함
 - 당시 과학기술부는 국채발행을 통하여 조성된 자금을 공공자금관리 기금을 통하여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예수 받았으며, 지식경제부(당시 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부의 차세대 성장동력 기술개발, 대형연구개발 실용화사업 등에 지원하였음
- 2007년도와 2008년도에는 전년도까지의 예수금 누적액에 대한 이자를 차년도 국채 발행 규모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음(즉, 국채 발행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상환하기 위하여 다시 국채를 발행하였음)

- 2008년까지 국채 발행을 통하여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전입된 자금의 규모는 6,477억원이며, 관련 이자는 2007년도에 158억원이었으나 2010년에는 388억 6,200만원에 이를 전망임

〈 과학기술진흥기금의 공자기금예수금 이자상환 추이 〉

(단위: 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공자기금예수금이자상환	15,805	30,154	33,898	38,862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09. 10.

[현안 검토]

- 2010년도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2,410억원이며, 여유자금 운용은 194억원에 불과함
 - 2010년도에 도래하는 원금을 차환(借換)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 기금으로부터 700억원을 예수하고, 이를 상환하므로 실제 운용규모는 1,410억원에 불과함
- 과학기술진흥기금 자체수입의 대부분은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인데, 전입금보다 많은 금액을 공자기금예수금이자상환에 사용하게 되어 사업비가 축소됨
 - 2010년도에는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조달액은 315억 2,900만원으로 계획되어, 조달액보다 73억 3,300만원 많은 금액을 이자상환에 사용하게 됨
 - 2010년도 자체사업비는 1,118억원으로 전년대비 25.2% 축소될 계획임

- 국채를 발행하여 조성된 자금으로 대형국가연구개발실용화사업을 추진한 결과가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사업 축소를 가져오는 것은 문제가 있음
 - 공공지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을 활용한 사업비의 대부분이 출연 사업에 사용된 점을 감안하면 관련 사업으로부터 원금 상환의 재원을 마련하기는 앞으로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출연금으로 지급된 연구개발사업비는 일반적으로 기술료 징수에 의하여 회수할 수밖에 없음
 - 정부출연금에 의한 기술료 징수액의 50% 이상을 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술료 징수를 통하여 상환 자금을 마련하기는 어려움
- 공공지금관리기금에 대한 이자 상환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의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원되는 것이 타당함
 - 공자기금예수금 이자상환에 필요한 388억 6,200만원은 교과부와 지경부 소관 일반회계로부터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2009년도 예산안 심사시 부대의견으로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는 2010년도 이후 과학기술진흥기금 국채원리금을 기존에 사용한 자금의 비율에 따라 상환한다.’ 고 명시한 바 있음

[자 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과학기술진흥기금의 공자기금예수금 원리금 상환의 부적절과 국회 부대의견 미반영의 문제」, 『2010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2009. 11.

국회예산정책처, 「과학기술진흥기금의 공자기금예수금 이자상환 부적절」, 『2010년도 예산안 분석 IV』, 2009. 11.

[답 당] 전용수 예산분석관(788-4628)

[개 요]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일반회계의 정지궤도복합위성 개발사업

○ 예산안: 2,069백만원 (신규)

– 교과부가 주관연구기관(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과 협약을 맺고 사업비를 지급함

〈 정지궤도복합위성 개발사업의 2010년도 예산안 현황 〉

(단위: 백만원, %)

	2009	2010안	전년대비	
			증가액	증가율
정지궤도복합위성 개발사업	-	2,069	2,069	순증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09. 10.

□ 동 사업은 기상예보의 연속성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상·해양 및 환경 관측용 정지궤도 위성을 개발하려는 사업임

○ 당초 총사업비 3,253억 5,000만원 규모로 2010년부터 7년 4개월간 수행될 계획이었으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AHP가 0.353에 불과하여 계획을 보완 후 예비타당성조사를 재실시할 계획임

○ 2010년도에는 사업의 연속성 유지 및 선행연구를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음

[현안 검토]

□ 2010년도 예산은 예비타당성조사 재실시 기간 동안 기술, 지식 및 전문 인력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범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지상국 개념설계(3억원)와 시스템 요구사항 수립예산 등(2.5억원)은 예비타당성조사 재실시 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함

[자 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지궤도복합위성 개발의 사업 범위 제한 및 예산안의 감액 조정 필요」, 『2010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2009. 11.

[담 당] 전용수 예산분석관(788-4628)

[개요]

- 핵융합에너지개발사업은 국내의 대형 핵융합 실험 장치인 차세대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KSTAR³⁸)의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사업과 EU, 미국, 일본 등 6개 국가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ITER³⁹)으로 구분
-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일반회계, 원자력연구개발기금 및 지식경제부의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수행되며, KSTAR 장치개발 및 운영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 일반회계로 수행
 -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 예산안: 1,377억원(전년대비 112.6% 증)
 - 대학중심 핵융합기초연구 및 인력양성지원사업 예산안 50억원(전년과 동일)
 - 국가핵융합연구소 기관목적사업 예산안 380억(전년대비 50.6% 증)

〈핵융합에너지개발 관련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사업명	2009	2010안	전년대비	
				증가액	증가율
교과부 일반회계	대학중심 핵융합 기초연구 및 인력양성지원사업	5,000	5,000	-	-
교과부 일반회계 및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지경부 전력산업기반기금 소계	국제핵융합실험로공동개발사업	41,400	48,372	6,972	16.8
		23,400	89,400	66,000	282.0
		64,800	137,772	72,972	112.6
교과부 일반회계	국가핵융합연구소 연구운영지원사업 중 기관목적사업	25,266	38,047	12,781	50.6
전체 합계		95,066	180,819	85,753	90.2

주: 핵융합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은 교과부의 일반회계, 원자력발전기금 및 지경부의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다양한 재원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있음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및 지식경제부, 기초기술연구회 제출자료를 재정리

38) Korea Superconducting Tokamak Advanced Research

39) 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

- 핵융합에너지개발사업은 수소와 같은 가벼운 원자핵의 융합을 통해 창출되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핵융합 발전소 건립을 위한 사업으로, 2040년 한국형 핵융합 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을 목표로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 우리나라는 ITER 사업 총사업비 13조 4,000억원의 9.09% 분담, 2015년 건설단계까지 8,767억원, 2040년까지 약 1조 6,221억원 투자 분담 계획

[현안 검토]

- 핵융합에너지개발사업 투자 중 ITER 사업비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ITER 성과를 흡수 및 활용할 국내 연구기반에 대한 투자 약화가 우려 되기에 금번 예산안 심사 시 재원배분 구조 개선을 위한 논의 필요
 - 2008년 기준 전체 핵융합에너지개발사업 투자비 905억원 대비 ITER 건설단계(10년)의 평균 분담금이 800.2억원으로 ITER 투자 비중은 88.4% 수준
 - 미국 20.9%, 일본 38.0%, EU 59.3%에 비해 높은 수준, 향후 ITER 사업 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핵융합에너지개발 투자 중 ITER 사업 비중이 더욱 높아질 수 있음

〈ITER 참여국의 2008년 핵융합에너지개발사업 투자 현황 비교〉

구분	한국	미국	일본	EU
핵융합투자	905 (억원)	2.86 (억달러)	155.7 (억엔)	3.89 (억유로)
		3,830억원	2,101억원	6,753억원
ITER 건설 단계 연도별 평균 분담금	4.61 (억유로)	4.61 (억유로)	4.61 (억유로)	23.09 (억유로)
	800.2 (억원)	800.2 (억원)	800.2 (억원)	4,008.42 (억원)
ITER 투자/핵융합투자	88.4%	20.9%	38.0%	59.3%

- ITER 사업과 국내 핵융합에너지개발사업 투자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국내 투자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핵융합에너지개발사업 자원배분 구조 개선 논의 및 예산안 심의 필요

□ KSTAR 장치개발 관련 총사업비 규모에 대한 심의 필요

- 핵융합에너지개발 관련 국내사업은 국가핵융합연구소 기관목적사업 (KSTAR 운영사업 및 기관고유사업)과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중심 핵융합기초연구 및 인력양성지원사업으로 구성
 - ‘대학중심 핵융합기초연구 및 인력양성지원사업’은 2009년 50억원 예산의 60%인 32.5억원이 KSTAR 장치개발 연구 직접비로, 2009년 국가핵융합연구소 기관목적사업비 240억원 중 97억원이 KSTAR 장치개발 및 성능향상에 투입
- 다양한 사업에서 KSTAR 기본장치 개발 및 성능향상 장치개발, 유지관리 목적으로 KSTAR 장치에 투자하고 있는 바, 금년 예산안 심사에서는 KSTAR 장치개발 관련 총사업비 규모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자 료] 국회예산정책처, 「대형연구개발사업평가 - 핵융합에너지개발사업 중심으로」, 2009. 9.
 [담 당] 윤성식 사업평가관(788-4677)

작성자 명단

□ 기획·조정

예산분석실장 김호성
예산분석심의관 박인화
경제예산분석팀장 송병철

□ 세부 집필

【예산분석실】

산업예산분석팀장 조영철 사회예산분석팀장 문종열
행정예산분석팀장 천우정
예산분석관 서세욱 유인규 황선호 정금희
전용수 이화실 양성선 변재연
한정수 이형진 강상규 김대철
장은덕 김태은 오세일 김민재
부길환 김경수

【경제분석실】

재정정책분석팀장 이남수
경제분석관 박승준

【사업평가국】

경제사업평가팀장 이환성 산업사업평가팀장 최미희
행정사업평가팀장 박상진
사업평가관 이은경 허가형 윤성식 고성철
여차민 정유진 박제성 남은정

□ 편집

경제예산분석팀 인정은

「2009 예산정책보고서」 발간 현황 목록

	제 목	집필진	발간일
1	일자리 정책: 예산과 입법과제	사회예산분석팀	2009. 2. 26
2	일본의 지역 중심 고용대책 사례와 시사점	박인화 김봉주 서세욱 조혜정	2009. 4. 21
3	재정법률 개선과제	예산분석실	2009. 6. 10
4	중소기업 지원정책: 예산과 입법과제	이화실 유인규 정상훈 전승훈 이진우 윤성식	2009. 9. 22
5	「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분석」에 대한 「소관부처 의견」 검토	예산분석실	2009. 9. 23
6	2009년도 국가재정운용 점검보고서	예산분석실	2009. 10. 5
7	2010년도 예산안 분석 가이드라인	예산분석실	2009. 10. 16
8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 예산과 입법과제	전용수 유인규 강상규 김성은 변재연 이형진 한정수	2009. 10. 20

[2009 예산정책보고서 제9호]

2010년도 예산안 분야별 세출현안 검토

발 간 일 2009년 12월 1일
발 행 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신 해 룡
발 행 처 국회예산정책처
편 집 인 예산분석실장 김 호 성
편 집 예산분석실 경제예산분석팀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TEL 02·2070·3114
인 쇄 처 성지문화사 (TEL 02·2273·5090)

1. 이 보고서의 무단 복제 및 전재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2. 보고서의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회예산정책처 경제예산분석팀 (TEL 02·788·3769)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ISBN 978-89-6073-270-4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09

